

2000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金勝權
曹愛姐 李三植
金柔敬 宋寅珠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정부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과 병행하여 추진해 온 人口增加抑制政策을 도입 35년만인 1996년에 폐지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그간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87년이래 우리 나라 여성의 合計出産率과 부인의 避妊實踐率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勞動力 需給問題, 老齡 人口의 급증에 따른 福祉負擔, 核家族化의 촉진과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家族解體 등 제반 문제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해온 出生性比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靑少年의 性問題, 人工妊娠中絶의 蔓延, 에이즈의 增加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은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時宜適切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선진국은 100여 년에 걸쳐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이룩된 人口 轉換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30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강력한 인구정책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전환은 그간 조성되어 온 低出産 및 避妊實踐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1964년 이후 18번째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부인의 出産 및 避妊行態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識者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이 조사보고서가 정부의 新人口政策이 추구하고 있는 인구자질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本 研究는 본 연구원 가족복지·인구정책연구팀장 金勝權 博士의 책임 하에 研究陣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을 위해 애써주신 桂勳邦 招聘研究委員과 자료처리를 도와 준 申昌雨 主任研究員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總選 등 외부환경으로 예정보다 약 2개월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조사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수정을 짧은 기간에 성실하게 마무리해 준 李乾雨, 金知淑, 李漢璟, 元惠京 등 자료정리요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報告書를 검독하여 주신 張英植 副研究委員과 韓英子 責任研究員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次

要約	23
第1章 序論	70
第1節 調査背景 및 目的	70
第2節 調査方法 및 内容	73
第3節 出産力 關聯調査의 沿革	78
第4節 標本設計 概要	80
第5節 現地調査 및 調査資料處理	82
第6節 調査統計上の 留意事項	86
第2章 調査對象家口 및 應答婦人の 特性	88
第1節 家口の 特性	88
第2節 家族構造의 變化	94
第3節 應答婦人の 特性	98
第3章 出産行態의 變化	104
第1節 出産力の 變動推移	104
第2節 有配偶出産率의 變化	111
第3節 妊娠回數 및 終結形態	113
第4節 出生兒의 數 및 性比	120
第5節 現存子女數 및 性比	129
第6節 出産間隔의 變化	133
第7節 出産行態 變化의 示唆點	136

第 4 章 避妊受容實態	139
第 1 節 避妊實踐狀態의 變動推移	140
第 2 節 避妊實踐樣相	151
第 3 節 避妊非實踐實態	170
第 4 節 妊娠露出狀態 및 子女希望與否別 避妊實態	179
第 5 節 避妊受容實態 變化의 示唆點	186
第 5 章 人工妊娠中絶實態	188
第 1 節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190
第 2 節 人工妊娠中絶經驗 實態	192
第 3 節 人工妊娠中絶受容婦人의 避妊實態	202
第 4 節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	205
第 5 節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209
第 6 節 人工妊娠中絶實態 變化의 示唆點	212
第 6 章 母子保健實態	214
第 1 節 産前 및 産後管理	214
第 2 節 分娩實態	228
第 3 節 授乳樣相	239
第 4 節 先天性代謝異常檢査 實態	247
第 5 節 豫防接種 實態	251
第 6 節 母子保健實態 變化의 示唆點	253
第 7 章 結婚樣相 및 家族週期	258
第 1 節 結婚樣相	259
第 2 節 解婚實態	269
第 3 節 家族週期의 變化	282
第 4 節 結婚樣相 및 家族週期 變化의 示唆點	292

第 8 章 家族價值觀의 變化	295
第 1 節 結婚·離婚·再婚에 관한 態度	295
第 2 節 子女價值觀 및 男兒選好價值觀	302
第 3 節 家族關係 價值觀	318
第 4 節 戶主相續 및 祭禮,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332
第 5 節 家族價值觀 變化의 示唆點	342
第 9 章 家族生活과 福祉	345
第 1 節 家族의 經濟生活	345
第 2 節 婦人 및 男便의 就業實態	361
第 3 節 子女의 養育實態	371
第 4 節 家族의 情報生活	392
第 5 節 家庭暴力 實態	404
第 6 節 家族生活과 福祉의 示唆點	431
第 10 章 政策的 含意 및 提言	437
參考文獻	464
附 錄	471
附錄 1. 標本設計 概要	473
附錄 2. 主要 統計表	489
附錄 3. 調查票	509
附錄 4. 調查地域	537

表目次

〈表 1- 1〉 調査結果 家口數	78
〈表 1- 2〉 韓國에서의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 關聯調査의 沿革	80
〈表 1- 3〉 標本調査區 抽出 結果	81
〈表 1- 4〉 調査對象 家口數와 加重標本家口數의 比較	82
〈表 2- 1〉 年度別 家口員數別 分布(1966~2000年)	89
〈表 2- 2〉 年度別 平均 家口員數(1966~2000年)	90
〈表 2- 3〉 家口主의 一般特性	92
〈表 2- 4〉 性別 家口員의 居住地域 分布	93
〈表 2- 5〉 地域別 家口員의 性 分布	94
〈表 2- 6〉 年度別 世代別 構成 比率(1966~2000年)	95
〈表 2- 7〉 地域別 親族家口 및 非親族家口의 類型別 分布	97
〈表 2- 8〉 核家族의 形態別 分布	97
〈表 2- 9〉 擴大家族 構成員의 年齡分布	98
〈表 2-10〉 15~64歲 應答婦人의 地域別 一般特性	101
〈表 3- 1〉 合計出産率의 變化(1960~1999年)	106
〈表 3- 2〉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1960~1999年)	109
〈表 3- 3〉 世界 主要國의 合計出産率 水準	110
〈表 3- 4〉 年齡別 有配偶出産率의 變動推移(1960~1999年)	112
〈表 3- 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總妊娠回數의 變化 (1991~2000年)	114
〈表 3- 6〉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總妊娠回數 分布	115
〈表 3- 7〉 15~44歲 有配偶婦人의 妊娠終結形態別 平均回數 (1994~2000年)	117

〈表 3- 8〉 15~44歲 有配偶婦人の 妊娠終結形態(1994~2000年) ·	119
〈表 3- 9〉 15~44歲 有配偶婦人の 地域別 妊娠終結形態(2000年) ·	120
〈表 3-10〉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平均 出生兒數 ·····	122
〈表 3-11〉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出生兒數 分布 ·····	126
〈表 3-12〉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出生兒 性比 ·····	128
〈表 3-13〉 15~44歲 有配偶婦人の 現存子女數 分布 (1994~2000年) ·····	130
〈表 3-14〉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現存子女數 分布 ·····	131
〈表 3-15〉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現存子女의 性比 (2000年) ·····	132
〈表 3-16〉 15~49歲 初婚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結婚年齡과 첫째 및 막내아 出産時 年齡 ·····	135
〈表 4- 1〉 15~44歲 有配偶婦人の 避妊實態 變化(1976~2000年) ·	142
〈表 4- 2〉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避妊實態 ·····	145
〈表 4- 3〉 15~44歲 有配偶婦人の 年齡 및 教育水準別 避妊實態	147
〈表 4- 4〉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避妊實踐率 (1976~2000年) ·····	149
〈表 4- 5〉 15~44歲 有配偶婦人の 避妊方法別 避妊實踐率 (1976~2000年) ·····	150
〈表 4- 6〉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 및 方法別 避妊實踐率 ···	153
〈表 4- 7〉 15~44歲 有配偶婦人の 地域, 年齡別 就業與否別 避妊實踐率 ·····	154
〈表 4- 8〉 15~44歲 有配偶婦人の 年齡, 現存子女數別 避妊實踐率 및 不妊手術實踐率 ·····	156
〈表 4- 9〉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避妊目的에 따른 避妊實態 ·····	158
〈表 4-10〉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の 避妊方法別 避妊目的 ·····	160

〈表 4-11〉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의 避妊方法別 滿足度 및 不滿足 理由	162
〈表 4-12〉 15~44歲 有配偶婦人 中 非永久的 避妊實踐婦人의 方法別 繼續 使用意向 및 變更希望 避妊方法	164
〈表 4-13〉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의 避妊方法別 費用負擔實態	166
〈表 4-14〉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의 避妊方法別 費用負擔 實態의 年度別 推移	168
〈表 4-15〉 15~44歲 有配偶 不妊手術 實踐婦人의 結婚에서 不妊手術受容時까지의 所要期間別 分布	170
〈表 4-16〉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過去使用 最終 避妊方法	172
〈表 4-17〉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中斷 및 無經驗婦人의 比率과 理由	174
〈表 4-18〉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非實踐婦人의 向後 實踐意向	176
〈表 4-19〉 15~44歲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希望婦人의 選好避妊方法	177
〈表 4-20〉 15~44歲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不願婦人의 理由	178
〈表 4-2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妊娠露出狀態	181
〈表 4-22〉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避妊普及對象者	182
〈表 4-2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子女追加 希望與否 및 避妊實踐	185
〈表 5- 1〉 20~44歲 有配偶婦人의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 變動推移(1975~1999年)	191
〈表 5- 2〉 15~44歲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 變動推移 (1976~2000年)	193

〈表 5- 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總妊娠 및 妊娠消耗 對比 人工妊娠中絶終結率의 變化(1994~2000年)	194
〈表 5- 4〉 15~44歲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 分布 (1994~2000年)	195
〈表 5- 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人工妊娠中絶 回數 分布	198
〈表 5- 6〉 15~44歲 有配偶婦人의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의 妊娠順位別 分布와 當時 婦人年齡	200
〈表 5- 7〉 15~44歲 有配偶婦人의 마지막 人工妊娠中絶의 妊娠順位別 分布와 當時 婦人年齡	202
〈表 5- 8〉 15~44歲 有配偶婦人 中 1998年 以後 人工妊娠中絶 受容婦人의 特性別 妊娠當時 避妊實踐與否	205
〈表 5- 9〉 15~44歲 有配偶婦人의 첫 人工妊娠中絶 受容理由	207
〈表 5-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 人工妊娠中絶 受容理由 (1997~2000年)	209
〈表 5-1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選別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210
〈表 6- 1〉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產前受診率 (1985~2000年)	215
〈表 6- 2〉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初診時期	217
〈表 6- 3〉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產前受診 回數	218
〈表 6- 4〉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健康手帖(母子保健手帖) 受取與否	220
〈表 6- 5〉 15~44歲 有配偶婦人의 受取한 健康手帖 種類	221
〈表 6- 6〉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產前後 健康手帖 受取時期	221

〈表 6- 7〉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後 産後受診率	223
〈表 6- 8〉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産後管理期間	224
〈表 6- 9〉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兒出生 出産後 産後調理院 利用率	225
〈表 6-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兒出生 出産 後 産後調理院 利用時 健康問題 經驗率	227
〈表 6-11〉 追加出産을 願하는 15~44歲 有配偶婦人의 向後 産後調理院 利用計劃	227
〈表 6-12〉 15~49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施設分娩率 및 分娩場所(1985~2000年)	229
〈表 6-1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 分娩場所 ·	230
〈表 6-14〉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帝王切開分娩 比率(1982~2000年)	232
〈表 6-1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 出産時 分娩形態	233
〈表 6-16〉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帝王切開分娩 勸誘者 및 理由	234
〈表 6-17〉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帝王切開分娩 勸誘者別 勸誘理由	235
〈表 6-18〉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分娩場所別 分娩形態	236
〈表 6-19〉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體重	237
〈表 6-20〉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의 體重	238
〈表 6-21〉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低體重(2,500g 未滿)時 理由	239

〈表 6-22〉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 授乳様相 (1985~2000. 6)	240
〈表 6-23〉 15~44歲 有配偶婦人の 特性別 最終出生兒 授乳様相 ·	241
〈表 6-24〉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의 生後 6個月時의 授乳様相	242
〈表 6-25〉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 月齡別 授乳様相 ·	243
〈表 6-26〉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調査當時 1歲 以上)의 生後 1年間 母乳授乳 様相	244
〈表 6-27〉 15~44歲 有配偶婦人の 母乳授乳 無經驗 및 中斷 理由 ·	245
〈表 6-28〉 15~44歲 有配偶婦人中 最終兒 出産時 帝王切開分娩과 授乳様相(出生後 1個月時)과의 關係	246
〈表 6-29〉 母子保健事業에 의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種類 및 支援費用(1991~2000年)	248
〈表 6-30〉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受檢 與否	249
〈表 6-31〉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費用支拂形態	250
〈表 6-32〉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費用負擔	251
〈表 6-33〉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 豫防接種率 (1998~2000. 6月 出生兒)	252
〈表 6-34〉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의 豫防接種 種類別 接種場所	253
〈表 7- 1〉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結婚經歷別 分布	259
〈表 7- 2〉 15~64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結婚經歷	260
〈表 7- 3〉 15~49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結婚經歷(1997, 2000年) ·	261
〈表 7- 4〉 15~64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初婚年齡別 分布	263
〈表 7- 5〉 男便 및 婦人の 特性別 平均 初婚年齡	264

〈表 7- 6〉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教育水準別 分布	266
〈表 7- 7〉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婚前 最長居住地別 分布	267
〈表 7- 8〉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平均 結婚持續期間	268
〈表 7- 9〉 15~64歲 既婚婦人中 死別·離婚·別居婦人의 一般特性	270
〈表 7-10〉 解婚狀態別 解婚當時 婦人 및 男便의 年齡分布	272
〈表 7-11〉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特性別 離婚·別居 理由	273
〈表 7-12〉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結婚年度別 離婚·別居 理由	275
〈表 7-13〉 15~64歲 既婚婦人 中 解婚婦人의 平均 結婚期間	276
〈表 7-14〉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特性別 離婚·別居 提議者	277
〈表 7-15〉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 婦人의 特性別 離婚의 成立形態	279
〈表 7-16〉 15~64歲 既婚婦人中 離婚·別居 婦人의 離婚·別居當時 年齡別 18歲 未滿 子女數	280
〈表 7-17〉 子女와의 同居者別 養育費 提供者	281
〈表 7-18〉 15~64歲 初婚婦人의 初婚年度別 出生兒 有無	284
〈表 7-19〉 15~64歲 初婚 出產經驗 婦人의 結婚年度別 特性	285
〈表 7-20〉 家族週期 各 段階의 始作 및 終結當時 婦人의 平均年齡	286
〈表 7-21〉 家族週期 各 段階別 期間	288
〈表 7-22〉 家族週期 中 夫婦만의 期間, 子女養育期間, 女子老人만의 生活期間	292
〈表 8- 1〉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結婚의 必要性에 관한 態度	297

〈表 8- 2〉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離婚의 必要性에 관한 態度	299
〈表 8- 3〉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再婚의 必要性에 관한 態度	301
〈表 8- 4〉 15~44歲 有配偶婦人의 子女必要性(1991~2000年)	303
〈表 8- 5〉 15~44歲 有配偶婦人의 子女必要性에 대한 態度	305
〈表 8- 6〉 15~44歲 有配偶婦人의 年齡別 平均 理想子女數 變動推移 (1976~2000年)	307
〈表 8- 7〉 15~44歲 有配偶婦人의 地域別 및 年齡別 理想子女數 分布	309
〈表 8- 8〉 15~44歲 有配偶婦人의 아들 必要性의 變化 (1991~2000年)	311
〈表 8- 9〉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아들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312
〈表 8-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아들의 必要理由	315
〈表 8-1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理想子女의 性區別 與否	317
〈表 8-12〉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에 대한 態度	320
〈表 8-13〉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 에 대한 意見	321
〈表 8-14〉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態度	322
〈表 8-15〉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에 대한 態度	324
〈表 8-16〉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325

〈表 8-17〉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에 대한 態度	327
〈表 8-18〉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 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329
〈表 8-19〉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330
〈表 8-20〉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戶主相續에 대한 態度	333
〈表 8-21〉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祭祀에 대한 參與度	334
〈表 8-22〉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儀禮形態에 대한 態度	336
〈表 8-23〉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夫婦間 役割分擔에 대한 態度	338
〈表 8-24〉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341
〈表 9- 1〉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現 居住住宅의 類型	347
〈表 9- 2〉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現 居住住宅의 所有形態	348
〈表 9- 3〉 地域別 住宅의 延建坪 分布 및 家口員 1人當 平均坪數	349
〈表 9- 4〉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保有不動產 規模分布	351
〈表 9- 5〉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保有動產 規模分布	353
〈表 9- 6〉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自家用 所有 與否	355
〈表 9- 7〉 地域別 所有 自家用的 種類	356
〈表 9- 8〉 所得·消費 規模別 家口分布	358
〈表 9- 9〉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家計 所得水準 分布	359
〈表 9-10〉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家計 消費支出水準 分布	360
〈表 9-11〉 15~64歲 既婚婦人의 結婚前·後 就業實態	362
〈表 9-12〉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結婚前 및 現 就業與否	364

〈表 9-13〉 15~49歲 就業婦人の 年齡別 職業 分布	365
〈表 9-14〉 家口 및 男便 特性別 15~64歲 既婚婦人の 就業率	367
〈表 9-15〉 15~49歲 既婚婦人の 年齡 및 教育水準別 就業理由	369
〈表 9-16〉 15~49歲 既婚婦人の 年齡 및 教育水準別 未就業理由	370
〈表 9-17〉 15~49歲 既婚婦人の 就業與否別 嬰幼兒 年齡分布	372
〈表 9-18〉 15~49歲 既婚婦人の 特性別 兒童分布	373
〈表 9-19〉 15~49歲 既婚婦人の 子女年齡別 同居與否	374
〈表 9-20〉 15~49歲 既婚婦人の 嬰幼兒 養育形態	376
〈表 9-21〉 0~5歲 兒童의 子女養育者 및 利用施設의 類型	377
〈表 9-22〉 嬰兒 年齡別 現 子女養育者 및 利用施設 類型	378
〈表 9-23〉 15~49歲 既婚婦人の 嬰幼兒가 利用하는 保育施設의 運營主體	378
〈表 9-24〉 15~49歲 既婚婦人 嬰幼兒의 保育施設 運營時間別 利用率	379
〈表 9-25〉 兒童特性別 놀이방·어린이집의 晝·夜間 時間 利用率	380
〈表 9-26〉 15~49歲 既婚婦人 嬰幼兒의 年齡別 月平均 養育費	381
〈表 9-27〉 應答婦人の 特性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	382
〈表 9-28〉 嬰兒 年齡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	384
〈表 9-29〉 0~5歲 兒童을 가진 既婚婦人の 向後 保育施設 및 兒童教育機關 利用率 및 利用機關	385
〈表 9-30〉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年齡別 놀이방·어린이집의 運營時間 類型別 向後 利用率	386
〈表 9-31〉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年齡別 適切な 月平均 保育料	386
〈表 9-32〉 未就學 兒童을 가진 15~49歲 既婚婦人の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387
〈表 9-33〉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學齡別 初等學校 兒童分布	388
〈表 9-34〉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學齡別 어머니 同居與否	388

〈表 9-35〉 兒童學齡別 既婚婦人 特性	390
〈表 9-36〉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學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391
〈表 9-37〉 地域別 컴퓨터 保有 및 인터넷 設置 現況	394
〈表 9-38〉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컴퓨터 使用 頻度	396
〈表 9-39〉 家口 및 夫婦 特性別 家族의 컴퓨터 共用 與否	398
〈表 9-40〉 컴퓨터 主 使用 家口員의 特性	399
〈表 9-41〉 컴퓨터 活用 前後 日常生活의 變化	401
〈表 9-42〉 컴퓨터 活用 前後 家族生活의 變化	403
〈表 9-43〉 家庭暴力發生率	405
〈表 9-44〉 主要 先行研究의 夫婦暴力 發生率	407
〈表 9-45〉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分布	409
〈表 9-46〉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 教育水準	410
〈表 9-47〉 婦人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411
〈表 9-48〉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年齡 및 教育水準別 發生頻度	412
〈表 9-49〉 婦人虐待 및 暴力의 理由	414
〈表 9-50〉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分布	415
〈表 9-51〉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416
〈表 9-52〉 男便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417
〈表 9-53〉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418
〈表 9-54〉 男便虐待 및 暴力의 理由	419
〈表 9-55〉 兒童虐待의 加害者別 分布	421
〈表 9-56〉 虐待 및 暴力 被害兒童의 特性別 加害者 分布	421
〈表 9-57〉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特性	422
〈表 9-58〉 被害兒童의 性別 虐待 및 暴力 類型 分布	423

〈表 9-59〉 加害者別 兒童虐待 및 暴力類型 分布	425
〈表 9-60〉 加害者別 兒童虐待 및 暴力的 發生頻度	427
〈表 9-61〉 兒童虐待 및 暴力的 理由	428
〈表 9-62〉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類型 分布	429
〈表 9-63〉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的 發生頻度	430
〈表 9-64〉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理由	431

圖 目 次

[圖 4-1] 15~44歲 有配偶婦人 中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의 追加子女 希望與否別 避妊實踐狀態	184
--	-----

附 表 目 次

〈附表 1〉 人口住宅總調查區의 層別 家口數 및 크기의 測度(MOS)	478
〈附表 2〉 人口住宅總調查區의 層別 標本調查區數 配分 內譯	479
〈附表 3〉 人口住宅總調查區 中에서 抽出한 家口數別 調查區數	479
〈附表 4〉 人口住宅總調查區를 利用한 標本調查區 抽出 및 境界線 調整 結果	480
〈附表 5〉 新築 아파트의 層別 標本調查區數 決定 內譯	481

〈附表 6〉	新築 아파트의 層別 標本調査區數 抽出結果	482
〈附表 7〉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482
〈附表 8〉	標本調査區 抽出 基礎資料 上的 家口數 調整結果	485
〈附表 9〉	크기의 測度 調整結果	485
〈附表 10〉	調査 着手 및 未着手 家口數	486
〈附表 11〉	家口主의 地域別, 性別 年齡 및 結婚狀態	491
〈附表 12〉	地域別 家口員의 年齡 및 結婚狀態別 分布	492
〈附表 13〉	核家族의 形態別 家口主의 年齡分布	493
〈附表 14〉	15~64歲 應答婦人의 年齡別 特性	494
〈附表 15〉	15~49歲 應答婦人의 地域別 一般特性	495
〈附表 16〉	15~49歲 應答婦人의 年齡別 特性	496
〈附表 17〉	15~49歲 既婚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就業理由	497
〈附表 18〉	15~49歲 既婚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未就業理由	498
〈附表 19〉	兒童年齡別 保育施設을 이용 않는 理由	498
〈附表 20〉	15~49歲 既婚婦人의 兒童年齡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	499
〈附表 21〉	15~49歲 既婚婦人 嬰幼兒의 嬰幼兒의 向後 兒童教育機關 利用率	499
〈附表 22〉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他 媒體 接觸時間 變化	500
〈附表 23〉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趣味活動時間 變化	500
〈附表 24〉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睡眠時間 變化	501
〈附表 25〉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工夫·家事時間 變化	501
〈附表 26〉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社會的 交際時間 變化	502

〈附表 27〉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의 共有·對話時間 變化	503
〈附表 28〉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間 對話內容의 變化	504
〈附表 29〉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間 葛藤·다툼 頻度의 變化	505
〈附表 30〉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間 家事 共有 程度의 變化	506
〈附表 31〉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生活의 質 變化	507

要約

第1章 序論

1. 調査目的 및 方法

□ 調査目的

- 1996년 人口増加抑制政策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부인의 出産 및 避妊行態의 時系列的 變化를 부인 및 가족특성별로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전망을 예측함.
 -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인 2.1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97년에는 1.6에 도달하였음.
 - 이러한 저하추세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더 저하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에 의하여 추진된 인구의 資質向上 및 福祉增進에 중점을 둔 新人口政策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절실함.
 - 子女性選好와 이로 인한 性比不均衡, 높은 수준의 人工妊娠中絶 등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母子保健은 가족보건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은 인구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임.

-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의 인구정책이 人口增加抑制에서 人口資質 向上 및 福祉增進 側面으로 전환된 이후 부인의 出産 및 避妊行態變化에 대한 時系列的인 分析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전환에 따른 對應戰略을 재조명하고,
 - 둘째, 出産行態의 變化가 家族構造 및 家族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의 家族福祉 增進方案을 모색하며,
 - 셋째, 자녀의 性選好와 性比不均衡, 人工妊娠中絶, 母子保健, 脆弱階層의 家族福祉 등 현안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수립 및 가족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둠.

□ 調査方法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중 20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여 2000. 6. 19~8. 31일 기간 중 현지실태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는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연구진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전에 표본 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直接面接調査」의 형태를 취하였음.
- 조사는 家口調査와 個人調査로 구분, 실시되었음.
 - 가구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가족생활을 응답

해줄 수 있는 가구원으로서, 가능한 한 家口主 또는 既婚婦人을 대상으로 하였음.

- 개인조사는 가구내에 살고 있는 15~64歲 既婚婦人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가구내 2명 이상의 기혼부인이 있는 경우 부인 각각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됨.

2. 出産力 關聯調査의 沿革

-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에 관련된 조사는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79년부터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國家指定統計인 본 조사는 18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본 영역에 있어서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3. 調査結果의 家口數 및 婦人數

- 200개 표본조사구의 조사대상 총가구수는 13,416가구(조사구 내 전수조사)이었으며, 이 중에서 11,388가구에 대하여 가구기본조사를 완료하였음.
 - 가구조사의 완료율은 84.9%로 이는 1997년의 87.6%보다 2.8% 포인트 낮은 수준임.
- 조사완료가구인 11,388가구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부인수는 9,131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8,935명 대하여 부인조사를 완료하였음.
 - 따라서 부인조사의 완료율은 97.9%로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의 완료율을 나타내었음.
- 분석대상인 가중표본가구수는 13,429가구로, 동부지역 11,807가구, 읍·면부지역 1,622가구이었음.

第2章 調査對象家口 및 應答婦人의 特性

1. 家口의 特性

□ 家口의 規模

-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보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임.
- 平均 家口員數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3.1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평균가구원수는 동부 3.2명, 읍·면부 2.8명으로 나타났음.

□ 家口主의 特性

- 가구주는 남자 82.7%, 여자 1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임.
 -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有配偶가 75.4%, 死別은 10.2%, 離婚·別居는 4.7%, 그리고 未婚은 9.7%이었음.
 -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동일한 수준인 26.5%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임.

□ 家口員의 特性

-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은 41,884명으로 洞部地域에 89.3%, 邑·面部地域에는 10.7%가 거주하고 있어 점차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全國적으로는 여자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자 48.9%, 여자 51.1%), 특히 邑·面部地域이 洞部地域 보다 여자가구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2. 家族構造의 變化

□ 世代別 家口類型

- 1세대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3세대 이상의 가족은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족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2세대 가족에 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核家族化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음.
 - 동부지역에서의 1세대 가족의 증가는 완만한데 비해 읍·면부지역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農村地域의 老人에 대한 특별한 關心이 필요함을 시사함.

□ 形態別 家族類型

-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親族家口는 84.6%,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非親族家口는 15.4%였음.
 - 親族家口 중 핵가족 비율은 82.8%, 확대가족은 11.5%, 기타 친족가구는 5.7%로 구성되어 있으며, 核家族의 비율은 동부지역(83.2%)이 높은 반면, 擴大家族은 읍·면부지역(15.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非親族家口는 1인 가구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非血緣家口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인 家口는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非血緣家口는 동부지역이 높았음.

- 핵가족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典型的인 핵가족은 72.8%,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19.3%, 그리고 편부모가족은 7.9%로 나타났음.

3. 應答婦人의 特性

- 본 조사에 응답한 부인은 15~64세 기혼부인 10,715명으로 洞部地域 89.1%(9,546명), 邑·面部地域 10.9%(1,169명)가 거주하고 있었음.
 - 주요 연령분포를 보면 15~44세 62.4%, 45~49세 12.0%, 그리고 50~64세 25.6%로 나타났음.
 - 응답부인의 89.8%는 유배우부인이었으며, 사별부인 7.0%, 이혼 및 별거중인 부인 3.2% 등이었음.
 -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가장 높은 40.8%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이 19.4%로 나타나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을 가진 부인이 전체 응답부인의 60.2%나 되었음.
 - 응답부인의 45.5%가 현재 就業을 하고 있으며,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6.2%로 높았음.

第 3 章 出産行態의 變化

□ 合計出産率의 變化

- 合計出産率은 1960~19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1999년에는 1.425로 매우 낮은 출산수준을 보여주었음.
 - 1993~1996년 기간에 보여준 낮은 출산수준이 1999년에 큰 폭으로 저하된 것은 低出産觀의 定着과 함께 IMF 경제위기 하에서 많은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였고,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더군다나 1999년도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뉴 밀레니엄 베이비’의 전망에 의한 出産遲延도 하나의 요인으로 추측됨.

□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

- 出産率의 低下는 1960년 이후 전체 年齡層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연령층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음.
 - 전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정도는 다소 낮아지고 있음.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24세 연령층 出産率의 급격한 低下임. 이는 女性 教育水準의 向上과 雇傭機會의 擴大, 結婚年齡의 上昇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30~34세 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의 다음으로 높은 출산수준 보여주었음. 이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하는 晩婚 女性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3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출산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러나 이는 전체 出産水準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人口政策 次元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님.

第 4 章 避妊受容實態

1. 避妊實踐狀態의 變動推移

□ 避妊實踐率의 變化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79.3%로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수준이었음.

-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고,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避妊實踐이 安定化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최근 피임방법은 女性避妊方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男性避妊方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전환되었음. 이는 性 平等的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의 永久的인 避妊方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및 기타 피임방법 등 一時的인 方法으로 점차적 바뀌고 있어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의 사용 증가로 원치 않는 임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음.

2. 避妊實踐樣相

□ 避妊方法別 避妊實踐

-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동부지역의 경우 정관수술, 콘돔, 기타방법 등이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월경주기법 등은 읍·면부에서 높게 나타났음.
-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및 취업여부에 따라 피임방법,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같은 永久避妊方法의 피

임실천율이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一時的 避妊方法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의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시적피임방법이 높았음.
- 현존 자녀수에 따른 피임방법은 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구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半永久 避妊方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시적피임방법의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났음.

□ 避妊實踐 目的

- 15~44세 유배우부인이 피임을 하는 목적은 68.8%가 斷産으로 나타났고, 터울조절인 경우는 7.4%, 健康이나 就業 또는 經濟的인 理由 등으로 피임을 하는 경우는 3.1%이었음.
 - 피임방법별로는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터울조절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避妊方法에 대한 滿足度 및 不滿足 理由

- 현재 避妊을 實踐하는 부인 가운데 78.1%가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만족하였고, 不滿足하는 부인은 9.2%,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부인은 12.7%이었음.
 - 만족도는 피임방법별로 차이를 보여 정관수술이 93.6%, 난관수술이 87.9%, 자궁내장치 83.0% 순이었으며, 기타방법이 58.6%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不滿足한 理由로는 임신염려가 5.1%로 가장 높았고, 부작용 2.5%

그리고 기타 이유는 1.6%이었음.

-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실패임신을 우려하였으며, 난관수술이나 먹는 피임약, 자궁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副作用을 우려한 불만족이 높았고, 정관수술의 경우 영구불임이면서도 불만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現 使用避妊方法 繼續 使用意向 및 選好避妊方法

- 非永久的 避妊方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71.3%,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인은 22.3%이었음.
 - 피임방법별로는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부인 중 현재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기타 피임방법의 사용부인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향후 변경의향을 가진 부인 중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6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가 15.8%, 난관수술이 8.3%의 비율을 보였으며, 콘돔을 제외한 그 이외의 방법은 1% 이하의 낮은 비율이었음.

□ 費用負擔

-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자비부담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난관수술수용자의 자비부담은 1991년 4.6%에서 2000년 38.5%로, 정관수술수용자는 1991년 1.9%에서 2000년 33.1%로 증가하였음.

- 자궁내장치수용자의 自費負擔率은 1991년 6.0%에서 2000년 85.1%로 나타났음.

□ 不妊手術 受容時까지 所要期間

- 불임수술수용부인의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5.3년으로 나타났음.
 - 난관수술의 경우 평균 5.1년, 정관수술은 평균 5.6년으로 두 방법간에는 0.5년의 차이를 보여 난관수술수용이 정관수술수용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3. 避妊非實踐實態

- 2000년 조사당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의 비율은 20.7%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10.1%,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0.6%이었음.

□ 避妊中斷 및 無經驗 理由

-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적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경우가 60.0%, 피임이 영구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인 경우가 10.0%,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하기 때문이 9.1%, 실패임신 때문이 7.9%, 부작용은 4.6%, 사용상 불편은 2.9% 등이었음.
-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 중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피임을 중단한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7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인 경우가 11.6%, 그리고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은 6.9%이었음.

□ 避妊實踐 意向 및 選好 避妊方法

-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 중 45.0%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37.2%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8%이었음.
-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이 3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궁내장치 18.0%, 콘돔 15.6%, 월경주기법 7.6%, 난관수술 6.1%의 순이었음.

4. 現在 妊娠露出狀態 및 子女希望與否別 避妊實態

□ 現在 妊娠露出狀態

- 15~44세 부인 중 妊娠不可能狀態에 있는 부인은 35.4%, 妊娠可能狀態에 있는 부인은 64.5%로 나타났음.
 - 임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11.0%이나, 실제로 피임을 필요로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방임부인층은 더 낮았음.
- 現在 避妊非實踐狀態에 있는 부인 중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5.7%, 자연불임인 부인이 2.7%,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2.4%,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1.4%, 기타 이유가 8.7% 등이었음.
 - 임신위험에 노출된 부인인 11.1% 중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

하지 않는 경우인 8.7%의 부인을 피임보급 대상자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子女希望與否別 避妊實態

-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2.9%이었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추가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68.5%,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3.3%이었음.
 -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5.3%의 부인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第 5 章 人工妊娠中絶 實態

1.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 人工妊娠中絶實態

-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개시 년도인 1962년이래 인공임신중절은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0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96년의 79에서 1999년에는 53으로 감소하였음.
 - 25~29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30세 이상 부인은 현저한 저하를 보였음.
 - 30~3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은 1996년의 49에서 1999년에

는 33으로, 35~39세 연령층에서는 16에서 12로 감소하였음.

2. 人工妊娠中絶經驗 實態

□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 15~44세 유배우부인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は 1980~1990년대 초반에는 52~54%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에는 39%이었음.
 -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1%)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39%)보다 높았음.

□ 人工妊娠中絶 終結率

- 15~44세 유배우부인의 平均 妊娠數는 2.70회, 消耗된 妊娠은 0.92회, 人工임신중절은 0.65회로 전체 임신 중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이었으며, 임신소모 대비 人工임신중절비율은 70.7%로 1997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음.
 -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임신 중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임신은 약 1/4에 달하고 있음.

□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

- 人工임신중절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인은 60.8%로 1997년 55.8%보다는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였음.
 -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 중에서도 2회 이상 反復經驗한 부인도 1997년 19.3%에서 2000년 1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人工妊娠中絶 平均 経験回數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0.6회,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은 0.7회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 人工妊娠中絶經驗 回數는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부인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妊娠歷 期間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임신노출 또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됨.

□ 人工妊娠中絶受容時의 妊娠順位 및 婦人年齡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1.9%,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8.6%, 세 번째 이상의 妊娠順位인 경우가 39.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음.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았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妊娠順位를 살펴보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人工妊娠中絶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10.0%,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2.8%, 세 번째 이상의 妊娠順位인 경우가 67.2%를 차지하였음.
 - 따라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당시 부인의 平均年齡은 28.3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6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3. 人工妊娠中絶受容婦人の 避妊實態

- 1998년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이 당시에 피임실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52.3%가 실패임신이었음.
 - 이는 1997년 조사결과(38.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불임에 의한 피임실패율이 낮았고, 콘돔 및 월경주기법 등 효과가 낮은 避妊方法에 의한 實踐率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의 실패임신이 높았으며, 특히 전체 농촌부인의 32.3%가 월경주기법에 의한, 16.1%가 콘돔에 의한 피임중에 실패임신한 것이었음.
 - 월경주기법에 의한 실패임신은 연령이 높을수록, 콘돔에 의한 실패임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경주기법에 의한 실패임신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에서 높았으며, 콘돔에 의한 실패임신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음.

4.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

- 부인의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는 子女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5.9%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터울조절 20.5%, 임부의 건강과 혼전임신이 각각 9.5%, 경제적 곤란 6.6%, 태아이상 4.8%, 성 선택적인 경우 1.8%, 그리고 가정문제 1.5% 등이었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수용이유 역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와 마찬가지로 子女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즉, 가장 최근의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 중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는 2000년 48.4%로 1997년 49.7%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주된 理由였음.
- 다음의 主要 理由는 자녀의 터울조절로 1997년 11.0%에서 다소 증가한 13.1%로 나타났음.

5.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 전체 부인의 78.6%가 性鑑別後의 人工妊娠中絶行爲를 반대하였으며, 3.7%만이 찬성하였음. 이는 1997년의 반대 73.5%, 찬성 8.3%와 비교하여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15~24세 연령층에서는 불과 0.5%만이 찬성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찬성률이 높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4.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음.
 - 아들이 없는 부인의 3.1%만이 性 選擇的 人工임신중절을 찬성하였으며, 오히려 아들이 1명 있는 부인은 4.2%의 찬성률을 보였고, 2명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3.1%, 그리고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2.3%의 찬성률을 보였음. 그러나 딸의 수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딸이 많을 수록 성 선택적 人工임신중절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음.

第 6 章 母子保健實態

1. 産前 및 産後管理

□ 産前受診率

- 산전수진율은 1985년 82.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 99.6%

그리고 2000년에는 100%로 나타났음.

- 1985년 산전수진율은 동부지역 86.7%, 읍·면부지역 70.9%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점차 좁혀져 2000년에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모두 100%이었음.
- 이는 전반적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으로 임신부들의 個別的 母性健康管理水準이 매우 높아졌으며, 의료시설이 빈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모자보건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이용이 용이해졌기 때문임.

□ 母子保健手帖(健康手帖)

-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부인의 비율은 1997년 92.5%에서 2000년에는 99.3%로 크게 높아졌음.
 - 이는 최근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이외에서도 각종 건강수첩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건강수첩의 소지가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함.

□ 産後管理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아 출산후 産後受診率은 1988년 52.3%에서 1997년 81.0%, 그리고 2000년에는 85.0%로 높아졌음.
 -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産後受診率(85.6%)이 읍·면부지역(78.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産後調理院 利用實態

- 최종출생아의 출생년도별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1998년

에 0.7%, 1999년 7.3%, 2000년 1~6월에 10.0%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음.

- 최종출생아 출산 시 부인의 年齡別로는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고연령층 부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저연령층 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저연령층 부인에 비해 고연령층 부인이 출산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출산 후 건강상 이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산후조리원 이용을 보다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부인 중,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健康問題를 경험한 부인의 비율은 5.4%이었음.
 - 최종출생아의 출산년도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경험률은 1999년에 3.3%, 그리고 2000년(1~6월)에 8.1%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아울러 追加出産을 希望하는 부인(44명) 중 향후 출산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63.1%로 높게 나타났음.

2. 分娩實態

□ 分娩場所

- 15~44세 유배우부인의 施設分娩率は 의료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 시설분만율은 1985년 75.2%에서 1997년 99.7% 그리고 2000년에는 99.9%로 거의 시설에서 분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分娩形態

-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분만형태를 보면,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비율이 1997년 35.9%에서 더욱 높아져 2000년에는 37.7%이었음.
 - 1997년에는 동부 36.1% 읍·면부 34.8%로 농촌에 비해 도시에 제왕절개율이 높았으나, 2000년에는 농촌(46.8%)에서의 제왕절개율이 도시(36.9%)에 비해 오히려 높았음.
 - 분만형태별 출생후 1개월 시 모유수유율은 자연분만인 경우 37.6%로 제왕절개 32.5%보다 높았음.
- 제왕절개분만은 난산 등 문제를 가진 임산부 및 주산기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지만 의학적으로 正常分娩에 비해 많은 합병症을 초래하고, 母乳授乳實踐을 阻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어 우려됨.

□ 出生兒 體重

-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태어난 최종출생아 중 정상체중(2,500g~4,000g 미만) 출생아 비율은 92.2%, 저체중(2,500g 미만) 출생아 비율은 3.9%, 과체중(4,000g 이상) 출생아 비율은 3.9%로 男兒(4.9%)가 女兒(2.8%)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체중이 2,500g 미만인 저체중아의 이유는 早期分娩 54.7%, 기타 사유 26.7%이었음.

3. 授乳樣相

□ 最終出生兒 授乳方法

- 1998년~2000년 6월까지 출생한 最終出生兒의 母乳授乳率은

10.2%, 混合授乳率은 65.0%이었으며, 人工授乳率은 24.8%, 母乳授乳 또는 混合授乳의 비율은 75.2%이었음.

-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母乳授乳率과 人工授乳率은 낮아졌으나, 混合授乳率은 크게 높아졌음.
-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年齡別 母乳授乳率은 30세 이상 부인에서 1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4세 이하 부인의 경우 10.0%이며, 25~29세 부인은 8.9%로 가장 낮아 모유수유율과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간 正(+)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율이 14.3%로 가장 높았고, 첫째아와 둘째아인 경우에는 10.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母乳非授乳 理由

- ‘모유가 부족하거나 만나와서’가 49.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젖을 땄 시기가 되어서(13.4%)’, ‘엄마의 건강상 이유(9.3%)’, ‘아기의 건강상 이유(8.6%)’ 등의 순이었음.

4. 先天性代謝異狀檢査 實態

- 1991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비율은 1994년 35.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92.5%로 증가하였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은 과거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읍·면부지역(95.2%)이 동부지역(92.3%)보다 높게 나타났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費用支拂 形態는 자비부담 81.0%, 정부에 의한 무료 13.5%, 무료와 자비부담이 2.8%로 나타났음

5. 豫防接種 實態

- 정부는 영유아에게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여 전염병을 예방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집단예방접종 일시의 홍보, 접종누락자에 대한 접종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음.
 - BCG 예방접종률은 99.6%,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폴리오 등을 예방하기 위한 DTaP 1차 접종률은 98.7%, 2차 접종률은 98.0%, 그리고 3차 접종률은 95.3%로 각각 나타났음. 그러나, DTaP 추가접종률은 75.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MMR 예방접종률은 90.2%, 간염 1차 예방접종률은 98.3%, 2차 94.8% 그리고 3차 80.4%로 각각 나타났음.

第7章 結婚樣相 및 家族週期

1. 結婚樣相

結婚狀態

- 15~64세 기혼부인(10,715명)의 結婚狀態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89.8%)에 있으며, 사별(7.0%)과 이혼·별거(3.2%)는 매우 낮았음.
 - 結婚經歷別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8.2%)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재혼부인의 비율이 동부지역보다는 다소 높았음.

男女 特性別 結合形態

- 男便과 婦人の 平均 初婚年齡은 남편 26.96세, 부인은 23.15세로

남녀간에 3.81세의 차이를 보였음.

- 부인과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를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났음.
 -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은 55.9%,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42.8%,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은 64.9%, 그리고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91.2%이었음.
- 부부간의 婚前 最長 居住地別 결합비율을 보면, 남녀 모두 혼전 최장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 결합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합률 보다 월등히 높았음.
 - 남녀 모두 대도시에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의 결합률은 82.3%이었으며, 중·소도시인 경우는 72.4%, 읍·면소재지는 69.6%, 그리고 기타 농·어촌은 76.6%로, 이는 혼전 최장 거주지에서도 동질혼의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2. 解婚實態

□ 解婚時期

- 解婚狀態別 解婚當時 年齡分布를 살펴보면, 부인, 남편 모두 死別當時 年齡은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離婚·別居當時 年齡은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해혼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4.27세, 이혼·별거는 36.15세이었으며,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9.20세, 이혼·별거는 40.49세이었음.

□ 解婚理由

- 離婚·別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解婚理由는 性格差異가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의 外道(25.7%), 경제문제(17.2%), 그리고 학대 및 폭력(9.4%)의 順이었음.
 - 地域別로는 성격차이와 외도에 의한 해혼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경제문제와 학대·폭력으로 인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많았음.
 - 結婚年度別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각각 46.2%와 35.3%로 다른 결혼년도에 비해 높았으며, 1970년대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離婚·別居 提議者

- 이혼 또는 별거를 먼저 제의한 사람은 남편보다는 부인인 경우가 많아 전체 이혼·별거한 부인 중 70.7%에 달하였음.
 - 年齡別로는 이혼·별거 당시 30대이었던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教育水準別로는 고등학교 학력인 부인의 경우, 그리고 結婚期間別로는 20년 미만인 경우에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음.
-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이혼·별거 제의율은 78.2%인데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 보다 다소 낮아(1명: 67.6%, 2명: 69.7%) 자녀의 양육이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에 있어 주요한 영향변수가 됨을 짐작케 함.

□ 離婚·別居婦人の 子女養育

-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同居者別 養育費 提供者를 보면 전체의 1.1%는 양육비 제공자가 없는 상태이었으며, 대부분 동거자가 아동의 양육비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음.
 - 자녀가 父와 동거할 경우 父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96.4%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자녀가 母와 동거하는 경우 양육비 제공자는 母 73.1%, 비동거자인 父는 16.9%에 불과하였음.

3. 家族週期の 變化

□ 家族週期の 段階別 始作 및 終了時點의 變化

-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初婚年齡은 최근의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上昇하는 추세를 보임.
 - 초혼연령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이 18.8세,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4.8세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家族形成期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었음.
-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졌음.
 -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이 21.1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6.0세이었음.
-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이 32.0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8.3세로 나타나 최근에 결혼한

부인의 출산완료시 연령이 젊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46.8세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3.7세로 추정되었음.
 -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子女結婚完了時 婦人年齡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이 57.7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6.0세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겠음.
- 解體期의 시작시점인 男便死亡時 婦人年齡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이 58.8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68.7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婦人死亡時 年齡은 결혼코호트에 따라 각각 67.3세에서 80.9세로 나타났음.
 -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家族週期の 全體期間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延長趨勢는 持續될 것으로

로 보임.

第 8 章 家族價値觀의 變化

1. 結婚·離婚·再婚에 관한 態度

□ 結婚에 관한 態度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부인은 43.6%이었고,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55.6%로 나타났음.
 - 젊은 연령층의 부인은 결혼을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음.
 - 부인이 기타 종교와 불교를 믿는 경우, 취업부인이 전업주부보다, 그리고 사별한 부인이 이혼·별거부인보다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 및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離婚에 관한 態度

- 부인들의 이혼에 관한 생각은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2.8%이었고,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45.7%나 되었음.
 - 이혼에 대해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부인들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 및 별거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유배우부인이나 사별부인 보다 허용적이어서 70.7%가 이혼에 긍정적이었음.

□ 再婚에 관한 態度

- 전체 부인의 46.5%가 재혼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보였으며, 16.8%는 찬성을, 그리고 30.3%는 반대를 하고 있었음.
 - 50대 중반 이후 연령층 부인은 재혼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음.
 - 저학력층일수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높았음.
 - 종교가 있는 부인들이 없는 부인들보다, 취업부인(33.5%)이 미취업부인(40.7%)보다, 그리고 사별한 부인이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음.

2. 子女價値觀 및 男兒選好價値觀

□ 子女價値觀

- 한 夫婦가 結婚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부인은 58.1%를 보인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41.5%로 나타났음.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10.0%의 비율을 보였음.

□ 理想子女數

- 理想子女數는 1994년 2.2명에서 1997년 2.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0년의 이상자녀수는 2.2명으로 다시 저하하였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증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教育水準이 높고 젊은 年齡層의 婦人이 많이 살고 있는 洞部地域이 邑·面部地域 보다 少子女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男兒選好價值觀

- 15~44歲 有配偶婦人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6.2%,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39.5%를 보인 반면,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는 43.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인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들 選好度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비율이었음.
-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心理的 滿足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家庭幸福이 43.3%로 높았음.
 - 따라서 단순히 정신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었음.
- 性 區分없이 자녀를 원하는 부인은 57.3%, 구별해서 원하는 경우는 42.1%로 성 선호적 태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음.
 - 性 選好的 價值觀을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중학교 교육수준의 부인,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 家族關係 價值觀

□ 結婚價值觀

-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라

는 의견에 대하여 응답부인의 74.9%가 동의하고 17.2%가 반대하고 있었음.

- 많은 부인이 결혼은 개인당사자의 관계보다는 가족과 가족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음.

□ 夫婦關係

- 부부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89.5%가 (매우)동의하여, (절대)반대 4.7%보다 絕對的 優位를 차지하였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부부간의 獨立性和 自律性を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임.

- 부부관계 중심의 핵가족상이 부부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가장 우선시하는 서구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부인의 27.1%가 이에 대하여 (매우)동의를, 48.3%가 (절대)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아직까지 부부간의 성생활만족 여부가 결혼관계 지속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음.

□ 父母와 子女關係

-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전체 응답부인의 40.0%가 찬성을, 53.0%가 반대를 하여 자녀의 성취를 통한 부모의 代理滿足에 대해서는 否定

的 態度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자녀관계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부인의 96.3%가 (매우)동의하였으며, (절대) 반대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부모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 子女養育態度

- 性 役割에 기초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보여주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69.8%가 찬성을, 25.2%가 반대의사를 나타냈음.
 - 따라서 性 役割에 있어서는 여전히 傳統的 價値觀이 우세함을 보여주었으나 반대의견도 많았음.

□ 老後生活에 대한 態度

-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77.0%가 (절대) 반대를, 14.4%가 (매우)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近代的이고 個人主義的 性向이 강한 부인일수록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독립의식이 작용하였음.
-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71.4%가 (매우)

동의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4%이었음.

- 많은 부인이 남편이 자녀보다 본인에게 더 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 하겠음.

4. 戶主相續 및 祭禮,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 戶主相續에 대한 態度

- 15~64세 기혼부인들의 戶主相續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중심의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었음.
 - ‘아들, 딸 누구든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부인이 49.5%로 가장 높았고, ‘되도록 아들이어야 한다’는 부인은 21.7%,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비율은 18.7%, 그리고 ‘딸, 아들 중 더 나은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라는 부인은 7.3%로 나타났음.

□ 祭禮에 대한 態度

- 祖上의 祭禮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인이 집안 제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 부인의 75.2%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10.7%는 ‘가끔 참여’하였고,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음’도 7.2%,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6.9%로 나타났음.
 - 향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어떠한 儀禮形態로서 64.1%가 ‘전통에 맞추어 지낸다’고 하였으며, ‘기도회나 추모식 형태로 지낸다’가 22.3%, 그리고 ‘특별한 의례가 필요치 않다’는 11.8%이었음.

□ 夫婦間の 性役割에 대한 態度

-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를 맡는다’는 傳統的 態度를 지지한 부인은 23.0%에 불과한 반면,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가사를 맡되, 남편이 돕는다’ 및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가사를 반반씩 맡는다’는 61.1%가 지지하였음.
 - ‘누가 돈을 버는가는 상관없다’는 부인은 15.9%로 나타났음.

□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 家事에 국한하여 보다 상세하게 남편과 부인간의 役割分擔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가사는 ‘남편과 부인이 절반을 나누어 맡는다’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인이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돕는다’는 43.4%이었음.
 - 그러나 ‘부인이 전적으로 맡는다’는 3.3%, ‘남편이 절반 이상을 맡는다’는 0.6%에 불과하였음.

第 9 章 家族生活과 福祉

1. 家族의 經濟生活

□ 住居 關聯 事項

- 조사대상가구의 54.2%가 단독주택에, 32.9%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所有形態는 51.3%가 自家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IMF 경제위기의 영향, 특히 건설업의 불황 및 평균 가계소득의 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주택공급사정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財産保有實態

－ 不動産 保有實態

- 보유 부동산이 전혀 없는 가구가 전체의 42.5%이었음.
-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일 때 平均 不動産 保有額은 4370만원에 불과함. 즉, 2인 이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대부분 미혼독신 또는 가족형성 초기의 젊은 부부가구이거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老人夫婦家口 또는 老人獨身家口일 가능성이 많음.
- 부동산 보유규모는 남성가구주 가구(7270만원)보다 여성가구주 가구(3100만원)에서 훨씬 낮았음. 이는 대부분의 偏母家族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動産 保有實態

- 저축, 증권, 채권, 적금, 가치가 높은 물건 등 보유 동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34.7%이었는데, 부동산이 없는 가구가 42.5%인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조사대상가구가 基本的인 生計維持 외에는 저축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짐작됨.
- 平均 動産保有額은 월소득에 비례하였으며,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2129만원)와 남자가구주 가구(1932만원)가 가장 많은 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自家用 保有實態

- 1999년 현재 登録 自動車數는 1116만대이며 이 중 승용차는 784만대로 인구 6명당 1대, '1가구 1자가용 시대'로 자가용 소유가 보편화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

가구주가 4배 이상, 30~40대에서 自家用 保有率이 높았음.

□ 家口の 所得 및 消費 實態

- 전체가구의 51.8%가 월 14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貧富隔差를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높았으며, 월 49만원 이하인 경우도 30.4%로 평균가구원 수가 2.77명임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이어서 都·農間 소득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 소비규모는 월 14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가 전국 69.4%, 동부 지역 67.5%, 읍·면부지역 82.6%로 나타났음.
 -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감과 실직으로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됨에 따른 가계의 一次的 對應戰略인 支出減少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됨.
-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보다는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아 소득소비수준의 격차가 큼.

2. 婦人 및 男便의 就業實態

□ 既婚婦人の 就業實態 變化

-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5.5%이며, 전체 부인의 결혼전·후의 취업률 차이는 25.6포인트(결혼전 71.1%, 현재 45.5%)로 현저하였으며,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음.
 - 이는 농촌지역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도시지역 여성은 결혼 및 자녀양육을 목적

으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임.

- 초등학교 이하 학력, 고연령층, 저소득층, 농촌지역 거주자인 기혼 부인은 결혼 전·후에 경제활동상태의 큰 변화가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성 증가로 해석됨.
 - 高所得 家口 婦人의 취업동기는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 부인의 自我成就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임.
 - 특히, 離婚·別居婦人의 未就業率은 33.7%나 되어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가족원이 없을 경우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임금수준, 고용지위 등이 낮은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기능직, 준전문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혼부인의 직업지위 저하를 엿볼 수 있음.

□ 婦人의 就業 및 未就業 理由

- 15~49세 기혼부인들의 就業理由는 75.2%가 생활비 보조를 위한 것으로 최근 우리 나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음.
- 未就業 理由로는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미취업이 전체의 49.0%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가사전념’ 및 ‘본인건강’ 등이 있었음.
 -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미취업은 부인연령이 30대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높아서였음.
 -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최근의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저학력 또는 고연령층 여성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임.

3. 子女의 養育實態

□ 嬰幼兒의 養育實態

-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인의 연령은 30~34세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는 76.5%, 미취업모는 82.4%이었음.
 -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母와 떨어져 사는 아동의 비율은 0.4%이고, 아동연령별로는 영아의 0.6%, 유아의 0.3%이었음. 취업모의 아동이 미취업모의 아동보다 2배나 많이 떨어져 살고 있어 母의 就業에 기인되는 것으로 짐작됨.
- 가장 核心的인 嬰幼兒 養育形態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 영유아의 53.5%를 차지하였음.
 -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양육형태는 취업모의 경우 16.4%, 미취업모는 42.2%이었음. 취업모의 경우는 ‘보육시설에만 의존’하는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의존’하는 형태였음.
 -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주위에 자녀를 돌봐 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여겨짐.
 - 放任의 위험에 노출된 5세 이하의 아동 중 혼자 있는 아동도 6.7%나 되어 아동의 발달과 안전한 아동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며,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 0~5세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로는 민간보육시설이 45.8%로 가장 높았음. 취업모 자녀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미취업모 자녀는 법인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 대부분 평일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나, 평일 야간시간 이용

에 대한 潛在的 需要도 적지 않아 시간제 보육시설 및 야간보육시설이 널리 분포되어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임.

-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은 월평균 27만 5천원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자녀양육비를 근소하나마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子女教育이 專門化됨에 따라 유치원,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음.

□ 保育施設을 利用하지 않는 理由

-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 ‘보육시간이 맞지 않음’과 ‘가까운 곳에 돌봐 줄 곳이 없음’은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의 불균형적 배치와 운영시간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었음.

□ 向後 兒童 保育 및 教育機關 利用與否

- 전체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의 36.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利用希望時間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대부분이 평일주간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兒童養育機能을 代理해주는 역할 이상의 보편적 서비스로서 기대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就學子女의 養育實態

-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母와 떨어져 사는 低學年 兒童은 0.6%이었

으며, 高學年의 경우는 0.2%이었음.

- 미취업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저학년의 경우 0.3%, 고학년의 경우는 0.5%나 되었음.
 - 미취업모가 고학년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이혼 및 별거 등 가족해체의 결과이거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 4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저학년의 자녀 분포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으로 인해 자녀출산과 양육시기가 지연된 결과로 판단됨.

□ 就學兒童의 養育實態

- － 초등학교 자녀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장 핵심적인 영유아 양육형태와는 달리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35.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음.
-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는 취업모가 25.5%, 미취업모가 28.9%로 미취업모가 더 높았음.
 -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취업모의 초등학교 학령의 자녀양육은 저학년의 경우가 40.2%, 고학년이 39.6%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母의 就業으로 인해 전문화된 기관으로 자녀양육의 기능을 移讓한 것으로 판단됨.

4. 家族의 情報生活

□ 家族 情報化 實態

- －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47.7%, 보유뿐 아니라 실제 활용

까지 하고 있는 가구는 49.9%로 나타났음.

- 컴퓨터의 보유율 및 실제활용률이 지역간 차이가 현저하여 都·農間 情報不平等의 측면을 나타내었음.
 - 컴퓨터 사용빈도는 동부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가구 규모가 크며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주 사용하고 있었음.
- －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구는 62.4%이었으며, 그 중 63.0%가 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음.

□ 情報化에 따른 個人 및 家族生活 變化

- －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가구원(들)은 타매체접촉 시간과 수면시간은 감소하고 취미활동 및 사회적 교제시간은 증가하였음.
- 컴퓨터 활용은 가족공유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족원간 갈등을 감소시키며 가사분담의 정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家族生活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자원이 많고 또 가구원 개인이 다양한 생활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컴퓨터 활용의 주관적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중간소득층에는 한정되어 있던 생활기회를 넓혀주는 情報化의 效果가 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5. 家庭暴力 實態

□ 全般的 家庭暴力實態

- 15~64세 기혼부인들이 있는 가구 중 30.0%의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家庭暴力을 경험하고 있었음.
 - 家庭暴力 類型別로는 부부폭력은 7.4%, 아동학대 24.7%,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0.1%,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은 1.0%이었음(중복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 것임).

□ 婦人虐待 및 暴力

-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 모두 4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그리고 50대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教育水準別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高學歷의 婦人—低學歷의 男便」간의 폭력이 7.1%나 되어 경제적 및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이 부족한 자원의 보충을 위해 또는 자원의 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資源理論을 뒷받침하고 있음.
-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類型중에서 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이 상당히 높은 비율(54.9%)이었음.
-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は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 1회로 22.0%이었음.
 -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모두 2~3개월에 1회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대는 51.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로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男便虐待 및 暴力

-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年齡別 구성 비율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教育水準別로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과 같이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가해자: 53.6%, 피해자: 48.3%).

- 「低學力の 婦人—高學力の 男便」간의 폭력은 29.1%로 資源理論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

-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類型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는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큰 발생이유는 부부의 성격차이가 35.7%를 차지하였음.

□ 兒童虐待 및 暴力

-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대부분(98.7%)이 부모이었으며, 이 중 85.6%가 어머니이었음.

- 이는 子女의 教育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

으로 많기 때문에 사료됨.

- 兒童虐待 類型을 보면, 신체적 학대·폭력이 정서적 학대보다는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임.
 - 身體的 虐待·暴力은 남아 보다 여아가 다소 높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남아가 약간 더 높은 편이었음.
 - 身體的 虐待·暴力 중에서는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情緒的 虐待는 남녀 아동 모두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남아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음.
-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는 월 1회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발생이유는 아동들의 버릇 고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상 문제가 그 다음 순이었음.
 - 이는 아동의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로 다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社會·文化的인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 중 신체적 폭력은 30.9%, 정서적 학대는 65.1%, 그리고 방임은 4.0%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신체적 폭력은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정서적 학대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위가 가장 많았음.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는 월 1회 정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가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버릇고친다’ 27.8%, ‘자녀교육상 문제’ 27.2%, ‘순종하지 않아서’가 18.5%이었음.

第 10 章 政策的 含意 및 提言

□ 出産 및 避妊關聯 政策方案

- 適正出産率을 算出하고 이를 達成 및 維持하기 위한 長·短期 社會政策이 汎政府的 次元에서 體系的으로 추진되어야 함.
 - 西歐化, 個人主義化되고 있는 미혼남녀의 結婚價値觀을 변화시켜 家族의 重要性을 인식시키고 家族形成에 대한 觀心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保育政策의 內實化, 出産休暇期間의 擴大, 育兒休職의 活性化 對策 등이 강구되어야 함.
 -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家事役割이 性 平等次元에서 分擔되어야 하며, 男便의 態度變化가 필요함.
- 效率的 避妊實踐을 위하여 避妊普及 및 管理의 死角地帶와 非效率的 避妊方法 利用者에 대한 철저한 事後管理가 필요함.
 -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避妊實踐率이 증가되고 있어 피임방법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겠음.
 - 부부의 性生活 行態에 따라서는 영구피임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失敗妊娠을 豫防하고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킴.
 - 追加子女를 원하지 않는 高年齡層 婦人에 대한 持續的 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콘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병 및 에이즈의 예방하는 측면에서 接近

- 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이 강화되고, 性平等的 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함.
 - 男兒選好價値觀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胎兒 性鑑別과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不法的 醫療行爲인 성감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相關단체의 자율적인 自淨努力 및 監視活動이 강화되어야 함.
 - 불법의료행위를 요청하는 依頼人에 대한 處罰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사료됨.
 - 妊娠消耗를 감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性教育 및 制限的 避妊普及, 임신부의 體系的 및 效率的 産前管理가 이루어져야 함.
 - 여성의 흡연, 음주의 危害性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
 - 避妊使用의 效果的 方法, 性暴力 豫防 및 對處方法 등을 포함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에 대한 制限的 形態의 避妊普及이 필요함.
 - 人口資質向上을 위해서 母子保健事業의 內實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녀를 원하는 부인에 대하여는 임신전후의 ‘行動準則’의 제공이, 妊産婦에 대하여는 産前受診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는 등 質的 管理를 증대시켜야 함.
 - 증가하고 있는 帝王切開에 의한 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왕절개의 分娩基準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低體重兒의 출생으로 인한 新生兒 및 嬰幼兒期의 死亡과 疾病罹患率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高危險婦人群을 집중 대상으로 저체중아 출생의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
 -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30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自然流産이나 畸形兒 發生을 예방하기 위하여 畸形兒 檢査,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영유아의 건강 및 지능발달을 위해서 母乳授乳率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호협조, 出産休暇期間의 延長 및 育兒休職制度의 內實化를 통한 社會的 環境造成이 필요함.
- 低出産觀의 定着, 平均壽命의 延長 등으로 인한 家族週期의 전체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을 적극 고려한 家族福祉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가족주기에서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져 夫婦關係의 重要性은 크므로 平等的, 協力的 夫婦關係 定立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부 및 여성노인단독가구를 위한 老後所得保障策 擴充, 노인성질환관리를 위한 地域保健事業 活性化 및 在家福祉서비스의 擴大 實施 등이 요구됨.
- 既婚女性의 就業希望은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를 活性化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家庭 및 職場生活의 兩立을 위한 支援政策이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취업직종의 개발, 직급별 할당제 실시, 연령제한 철폐 등을 통하여 就業의 門을 넓히고, 직업훈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교육수준에 알맞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와 채용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기혼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保育施設의 地域的 均衡設置를 기하고, 運營의 內實化를 도모하며,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함.
 - 育兒休職制度와 家庭看護休職制度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活用度가 매우 낮으므로 制度의 補完 및 改善을 통한 內實化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民間領域에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誘導하고 稅制惠澤이 병행되어야 함.
- －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家族葛藤이 증가하여 가정폭력 등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어 家族關係의 質을 低下시키고 있음.
- 부부간 對話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원만한 對話를 위한 技術에 관한 내용이 教育課程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父母—子女間은 평등한 인격체의 관계로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홍보·계몽이 필요함.
 - 자녀를 부모의 所有物로 여기거나 代理成就를 위한 道具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관념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調查背景 및 目的

일반적으로 人口變遷이나 出產力 變動은 諸般 社會經濟的 變化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人口變動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은 1960년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과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貧困의 惡循環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온 家族計劃事業에 중점을 둔 人口增加抑制政策이 그 효시였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연평균 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의 향상은 물론, 교육수준의 향상, 전국민의료보험을 포함한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등 社會經濟分野 全般에 걸쳐 현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그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 부인 1인당 合計出產率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7년에 1.6명으로 저하되었고, 1993년 1.75명, 1996년에는 1.71명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저하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났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出產力 轉換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어 왔다.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국민연금을 포

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현재의 低出生率 水準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出生率 低下는 단기간에 이룩되었기 때문에 人口構造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少家族化와 核家族化의 가속화로 인하여 가족내의 老人扶養機能이 弱화됨으로서 老人福祉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7%인 高齡化 社會에서 14%의 高齡社會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22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사전준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勞動力 不足과 老齡人口比率의 急增에 따른 福祉負擔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出生性比의 不均衡, 靑少年 性問題, 人工妊娠中絶의 蔓延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향후의 人口政策은 단순한 人口增加抑制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1994년 1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人口政策發展委員會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6년 6월 그간 추진되어온 人口增加抑制政策을 철폐하고 人口資質 및 福祉增進政策으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新人口政策의 基本構想은 종래의 인구증가억제에 역점을 두어온 가족계획사업을 母子保健의 增進, 性比不均衡의 是正, 靑少年 性問題의 豫防, 性病 및 AIDS의 豫防, 人工妊娠中絶의 豫防 등에 의한 人口資質의 向上과 더불어 女性, 老人 등을 위한 家族福祉側面으로 전환하

여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저출산 유지는 물론이고 家族福祉의 增進과 人口資質의 向上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식도 民間主導型으로 전환하되 사업초기부터 답습되어온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피임보급은 저소득주민 등의 脆弱階層에 局限하고 일반대상자는 醫療保險 및 商業網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少子女 規範과 避妊實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各種 規制 및 補償制度는 폐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서 사회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 즉, 우리 나라의 出産力 轉換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사회·문화적 발전에 보조를 맞춘 장기간에 걸쳐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종래에 이룩한 避妊實踐率은 저하하고 出産率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출산력 저하는 전적으로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만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그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에 따른 사업 외적 요인과 인구억제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성과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合計出産率이 1.6~1.7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국민사이에 少子女 規範이나 低出産行態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약화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도 出産行爲의 속성상 인구대치수준 이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변화된 이후 부인의 出産 및 避妊行態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분야에 직·간접으로 관련하고 있는 많은 학계와 정부관계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출산율의 저하에 의하여 추진된 인구의 資質向上 및 福祉增進에 중점을 둔 新人口政策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즉, 子女性選好와 이로 인한 性比不均衡, 높은 수준의 人工妊娠中絶 등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1964년이래 18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첫째 정부의 인구정책이 人口增加抑制에서 人口資質向上 및 福祉增進 側面으로 전환된 1996년 이후, 우리 나라 부인의 出産 및 避妊行態變化에 대한 時系列的인 分析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전환에 따른 對應戰略을 재조명하고, 둘째 出産行態의 變化가 家族構造 및 家族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의 家族福祉 增進方案을 모색하며, 셋째 자녀의 性選好와 性比不均衡, 人工妊娠中絶, 母子保健, 子女養育 및 情報化 關聯 家族生活, 家族關係 및 家族價値觀 등 현안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焦點을 두고 있다.

第 2 節 調查方法 및 內容

1. 調查方法

본 조사는 본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원은 사전에 표본추출¹⁾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直接面接調査」의 형태를 취하였다.

조사는 家口調査와 個人調査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개인조사는 가구내에 살고 있는 15~64세 既婚婦人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구

1)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20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함.

조사의 응답자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가족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가능한 家口主 또는 既婚婦人 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조사의 응답자는 既婚婦人 當事者이며, 가구 내 기혼부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인을 만날 수 없어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가구 내 다른 기혼부인 등을 대리응답자로 하여 조사되었다.²⁾ 이 경우 價値觀에 관한 제 내용은 응답자 개인의 가치관으로 별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調査內容

本 調査에서는 여성의 出産行態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出産力과 관련된 避妊行態, 人工妊娠中絶, 家族 및 子女價値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家族保健領域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母子保健에 관련된 주요 내용도 과거 조사결과와의 時系列的分析을 위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관련 제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出産力 轉換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對應方案과 家族福祉의 변화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家口調査

1) 家口員의 特性

-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줄

2) 극히 일부 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응답자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 넘으로써 조사불가 또는 무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

업여부, 결혼상태 등

2) 出生에 관한 사항

- 1998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년월일, 성, 출생시 母의 年齡,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現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

3) 家口에 관한 사항

- 집의 유형, 집의 소유, 자가용 소유여부, 컴퓨터 소유여부 및 사용 횟수, 동산 및 부동산, 가구소득 등

나. 婦人調査

1) 婦人 및 男便의 一般特性

- 부부의 생년월일, 혼전최장거주지, 종교 및 참석횟수 등

2) 結婚에 관한 事項

- 부부의 결혼연령 및 상태, 해혼연령 및 상태, 이혼 및 별거이유, 이혼·별거 제의자,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자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3) 妊娠·出産에 관한 事項

- 현존자녀수, 임신횟수, 정상출생횟수, 사망자녀수, 자연유산 및 사산횟수, 인공임신중절 횟수 및 수용이유, 現 임신여부, 1998년 이후의 임신 및 출산기록표, 향후 출산계획 등

4) 家族計劃實態

- 피임실천여부 및 목적, 피임수용방법 및 이유, 피임방법의 만

족여부, 현 피임방법의 계속사용여부 및 원하는 변경방법, 현 방법의 사용시기, 비용부담 또는 구입처, 과거 사용한 피임방법 및 중단이유, 피임무경험 이유 및 향후 계획 등

5) 母子保健 및 授乳에 관한 事項

- 1998년 이후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산전진찰여부 및 횟수, 모자보건수첩발급, 출산장소, 분만 형태, 산후진찰여부 및 횟수, 산후조리원 이용경험,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여부 및 비용부담, 수유양상,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예방접종 종류, 시기 및 장소 등

6) 家族福祉에 관한 事項

- 家族週期에 관한 내용으로 가족주기 단계, 첫째아 및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 자녀의 결혼여부, 자녀결혼 시작 및 완료시 부인연령 등
- 就業에 관한 내용으로 부인의 혼전취업여부 및 직종, 부부의 취업여부, 직업, 종사상의 지위, 직장의 종업원수, 평균근무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부인의 취업 이유, 취업 계속 여부, 미취업 이유 등
- 兒童保育에 관한 내용으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 및 보육시설 유형, 이용하는 보육시간, 보육시설의 계속 이용 여부, 이용할 시설유형, 이용시간 및 적정 보육료
- 情報化 關聯 가족생활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컴퓨터 주 이용 가구원과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의 변화 등
- 가족관계 관련 사항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폭력유형, 폭력횟수 및 이유 등

7) 家族價値觀에 관한 事項

- 結婚, 離婚, 再婚의 態度에 관한 사항으로 결혼, 이혼 및 재혼의 필요성
- 子女價値觀 및 男兒選好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및 성구분, 아들의 필요성 및 필요 이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한 태도
- 家族關係別 價値觀에 관한 내용으로는 결혼 및 부부관계에 관한 가치관과 부모 자녀관계에 관한 가치관
- 戶主相續, 祭祀 및 家事役割 分擔에 관한 사항으로 호주상속에 관한 의견, 집안제사의 참여, 부부간의 역할분담, 남편·부인간의 가사 행위분담 등

3. 調査對象

가. 調査對象地域

본 조사에서는 各 市·道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였다. 각 市·道의 섬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에서 標本調査區가 추출되면 실제적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제외된 섬지역의 가구수는 전국 가구수의 0.6% 미만이므로 이들 섬지역을 제외시켜도 조사결과의 추정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나. 調査對象家口 및 家口員

조사대상가구에는 一般家口, 1인 가구, 5인 이하의 非血緣家口를 포함하였으며, 조사대상 가구원은 가구에서 통상적으로 생활을 같이하

는 사람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인조사 부문에서는 第1章 II. 출생에 관한 사항, 第3章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과 第4章 모자보건 부문은 15~49세 기혼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가구원 중 15~64세의 기혼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一般家口라 함은 원칙적으로 血緣關係가 있는 2명 이상이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구의 개념이며, 非血緣 家口員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1인 가구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경우와 다방, 상점, 음식점, 미장원 등에서 종업원 1명이 숙식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非血緣家口는 혈연관계가 없는 5명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경우³⁾를 말한다.

一般家口 내에 혈연관계의 가구원 외에 非血緣關係의 사람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3명까지는 一般家口의 가구원으로 취급하고 4~5명인 경우에는 별도의 非血緣家口로 분리시키기로 하였다.

〈表 1-1〉 調査結果 家口數

구분	조사대상	조사완료		표본가중치 적용후
		완료수	완료율(%)	분석대상수
가구수	13,416	11,388	84.9	13,429
부인수	9,131	8,935	97.9	10,715

第 3 節 出産力 關聯調査의 沿革

出産力 및 避妊, 家族保健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이번엔 앞서 이미 17회나 이루어졌다. 최초의 調査는 1964년에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年 週期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조사는

3)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 경우, 또는 다방, 음식점, 기숙사가 아닌 공장 내의 방에서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5명 이하의 종업원이 함께 숙식을 하는 경우 등

人口增加抑制政策의 일환으로 실시된 家族計劃事業의 발전과 함께 그 특징이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1960년대 전반에 실시된 조사(1964~1967년)에서는 가족계획의 知識, 態度 및 實踐(KAP)과 出産行態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事業成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1967년 조사부터는 「출산기록표」에 의한 出産歷과 피임수용실태 및 그 부작용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1970년대 조사의 특징은 그간의 인구증가억제정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事業方向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부인의 就業, 母乳授乳 및 出産計劃 등의 조사내용이 추가·보완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1980년대 조사는 1982년부터 3년 간격으로 3회가 실시되었는데,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와 함께 종래의 조사에 少子女規範形成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規制 및 報償制度에 대한 認知度, 弘報·啓蒙, 그리고 母子保健事業 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3회 실시된 조사는 그간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低出産率과 높은 避妊實踐率이 유지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전의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출산력 저하가 우리 社會와 家族 및 個人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혼부인의 就業과 役割變化, 家族 및 老人問題 등 家族福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家族計劃事業의 영향으로 인한 出産水準 및 行態 變化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母子保健 內容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出産力 轉換과 人口增加抑制政策의 廢止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表 1-2〉 韓國에서의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 關聯調査의 沿革

연대	조사년도	조사명칭
1960년대 (5회)	1964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5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6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7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1968	전국 출산력조사
1970년대 (6회)	197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1974	한국 출산력 조사
	19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1980년대 (3회)	1982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0년대 (3회)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第 4 節 標本設計 概要

1. 標本調査區의 抽出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998개의 조사구(일반조사구 및 섬조사구)와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1,336,330가구분의 신축 아파트를 6개 층으로 층화하여 200개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200개 조사구의 평균 표본추출률은 1/1,025이었다.

〈表 1-3〉 標本調査區 抽出 結果

자료	층	모집단 MOS	표본			추출률 ²⁾
			조사구수	MOS	가구수 ¹⁾	
인구주택 총조사	(1) 7대 시의 동	1,256,890	72	989	4,953	1/1,271
	(2) 기타 시의 동	772,303	44	615	3,082	1/1,256
	(3) 읍·면	566,022	65	934	4,671	1/ 606
	계	2,595,215	181	2,538	12,706	1/1,023
신축 아파트	(4) 7대 시의 동	114,767	7	96	482	1/1,195
	(5) 기타 시의 동	107,865	7	92	462	1/1,172
	(6) 읍·면	44,667	5	68	341	1/ 657
	계	267,299	19	256	1,285	1/1,044
동지역		2,251,825	130	1,734	1,792	1/1,257
읍·면지역		610,689	70	939	1,002	1/ 609
계		2,862,514	200	2,794	13,991	1/1,025

註: 1)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 가구수

2) 1/(모집단 MOS÷표본 MOS)

표본조사구를 추출할 때에는 가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부여하고, 각 층별로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표본조사구를 계통 추출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의 층별 내역은 <表 1-3>과 같다.

가. 推定方法

동 조사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加重標本合計値와 이를 기초로 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單純標本合計値가 아닌 加重표본합계치를 사용한 이유는 각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 가구조사의 조사미착수 및 조사 미완료 비율이 상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加重標本合計値는 조사결과의 조사완료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

고 총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관한 가구수와 가중표본가구수의 차이는 <表 1-4>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가구수의 경우에만 일치하고, 지역별로는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4> 調査對象 家口數와 加重標本家口數의 比較

지역	조사구 수	조사대상 가구수					가중 표본 가구수
		계	조사 착수 가구수			조사 미착수	
			소계	조사 완료	조사 미완		
동부	130	8,712	8,638	7,232	1,406	11	11,807
읍·면부	70	4,704	4,646	4,156	490	134	1,622
계	200	13,416	13,284	11,388	1,896	145	13,429

第 5 節 現地調査 및 調査資料處理

1. 現地調査의 準備 및 指導·監督

가. 調査準備節次

1) 調査員 募集

조사원은 당 연구원에 의해 PC통신과 게시공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또한 종전에 수 차례 연구원의 조사를 수행해온 조사원을 대상으로 개별통보도 활용되었다. 접수된 조사원의 이력서는 연구진들이 접수하여 검토하였으며, 조사원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調査員에 대한 面接은 엄격한 심사와 배점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연구진은 당초 본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계

획이었으나 전문조사원의 부족, 저렴한 인건비와 장기간의 지방출장, 그리고 본 조사의 어려움을 인식한 일부 조사원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최종 선발된 인원은 지도원 13명과 조사원 39명으로 전체 52명이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조사인력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조사완료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2) 調査員 訓練

조사원에 대한 훈련은 당 연구원 대강당에서 당 연구진에 의해 2000년 6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원 훈련을 위해 調査指針書, 陽·陰曆 換算表, 家口名簿, 調査地域 要圖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3) 調査팀 構成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52명의 調査人力은 13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팀은 指導員 1명과 調査員 3명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조사에서도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지만 특히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調査地域은 60~70가구이기 때문에 1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약 5~6가구를 조사 완료한다고 예상할 때 조사팀을 4명으로 할 경우 한 지역을 완료하는 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일은 한 조사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조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調査過程에서 가구원이 不在中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사원은 몇 차례까지도 再訪問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조사지역에 최소한 3일 정도는 체류를 하여야 調査未完率을 낮추고 조사의 效率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약 13,000가구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조사기간이 2개월 이상 長期間 所要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하다.

셋째, 각 조사팀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 많은 지도원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따라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誤謬를 해당 조사지역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과 조사원간의 役割分擔이 중요하며, 지도원이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이다.

나. 現地調査의 運營 및 指導·監督

現地調査는 2000. 6. 19~8. 31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특히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기 설정된 調査地域의 確認 및 조사지역 내 家口의 增減狀態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점적 확인사항이었다. 또한 指導員과 調査員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行政機關 및 住民과의 協助體制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婦人들이 晝間에 不在中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조사원들이 晝間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의 소재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 夜間에 再訪問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調査資料處理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誤謬修正過程을 거쳤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완벽한 작업을 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2개월간 誤謬修正作業과 符號化 作業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人力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지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誤謬修正作業과 符號化 作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人力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人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 작업은 사전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符號化 指針書』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부호화 작업은 25명의 人員에 의해 약 40일간 실시되었다.

부호화 작업이 완료된 자료는 즉시 외부의 專門用役機關에 의뢰되어 電算化 作業이 실시되었다. 자료의 전산화 작업은 9월말에 완료되어 연구진에게 인계되었다.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자료의 正確度가 檢査되었는데, 符號化 作業과 電算化 作業過程에서의 많은 誤謬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4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되었다. 본 작업은 10월 중순에 완료되었다. 研究陣은 각자의 專攻을 감안하여 결정된 보고서 작성을 위한 業務分掌에 따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와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이었다.

第 6 節 調査統計上の留意事項

본 연구의 분석에서의 한계점과 또한 보고서에 나타나는 統計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필상의 편의를 위해 敷衍說明을 생략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64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妊娠·出産·避妊, 母子保健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家口事項 應答婦人 및 男便特性, 結婚様相 그리고 家族福祉 및 家族價値觀에 관한 분석은 全體 家口 또는 15~64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조사의 응답은 기혼부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인이 부재중이고 남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나 부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응답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價値觀에 관한 내용은 부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응답자인 남편의 가치관이므로 분석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都市와 農村이 아닌 洞部와 邑·面部地域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行政區域改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洞部는 도시지역으로, 邑·面部는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合計出産率, 年齡別出産率, 有配偶出産率, 그리고 人工妊娠中絶率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洞部와 邑·面部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洞部地域(都市)은 확대되고, 邑·面部地域(農村)은 더욱 축소되었

으며, 또한 본 조사는 전국의 약 13,000가구를 標本抽出하여 실시되었던 관계로 邑·面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出生兒 한 명 또는 人工임신중절 한 件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각 통계표에는 응답을 거부한 부인의 數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즉, 각 통계표의 應答者數와 第2章의 第3節에 나타나는 응답부인의 특성별 婦人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하지 않은 부인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第 2 章 調査對象家口 및 應答婦人の 特性

第 1 節 家口の 特性

家口는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집단이며, 家族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生活共同體이다. 本 調査에서는 주거단위를 기초로 동거형태를 이루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를 가구로 분류하였다.⁴⁾

가구는 인구변천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直接的으로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家族規模, 家口構成, 家族形態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間接적으로는 人口變動이나 都市化에 따라 家族의 形成과 解體, 家族生活의 類型, 家族形態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태환 외, 1995). 이러한 점에서 本 節에서는 그간의 人口變遷과 社會變動의 결과로써 나타난 家口の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家口の 規模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진전은 가구수의 증가현상과 함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윤종주, 1994).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5명

4) 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규정하는 家口概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통계청, 1997).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 36.0%, 1995년 81.7%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87.5%로 나타나 持續적으로 増加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5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에 64.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95년에는 18.3%, 그리고 2000년 본 조사에서는 12.5%에 불과하였다. 결국 약 30년 동안의 産業化 過程에서 51.5%포인트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2-1〉 年度別 家口員數別 分布(1966~2000年)

(單位: %)

가구원수	1966 ¹⁾	1975 ²⁾	1985 ³⁾	1995 ⁴⁾	2000 ⁵⁾
1명	2.8	4.2	6.9	12.7	14.9
2명	7.7	8.3	12.3	16.9	19.4
3명	11.5	12.3	16.5	20.4	21.9
4명	14.0	16.1	25.3	31.7	31.3
5명 이상	64.0	59.1	39.0	18.3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2000년은 조사완료된 13,429가구를 분석한 것임.

- 資料: 1)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1권, 전국편, 1977.
 3) _____, 『1985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제1권, 전국편, 1987.
 4)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7.
 5) 본 조사결과

가구원수 분포의 변화는 평균 가구원수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나라 가구의 平均 家口員數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오다가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본 조사에서는 3.1명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地域別 平均 家口員數는 동부지역이 1966년 5.1명, 1985년에 4.0명, 1995년 3.4명,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3.2명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읍·면부지역은 1966년 5.7명, 1985년에 4.2명, 1995년 3.1명, 그리고 본 조사에서 2.8명으로 큰 폭의 저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966~2000년 기간의 가구원수는 동부지역이 37.8%의 감소에 그친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은 51.4%나 감소되어 읍·면부지역의 가구원수 감소 속도가 동부지역의 가구원수 감소 속도보다 현저함을 알 수 있다(表 2-2 參照).

〈表 2-2〉 年度別 平均 家口員數(1966~2000年)

(單位: 명)

지역	1966	1975	1985	1995	2000
전국	5.5	5.0	4.1	3.3	3.12
동부	5.1	4.8	4.0	3.4	3.17
읍·면부	5.7	5.3	4.2	3.1	2.77

資料: 〈表 2-1〉 과 동일.

2. 家口主의 特性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家口를 代表하는 사람으로 가족의 經濟的 扶養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노부모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관계로 가구의 부양책임은 성인자녀가 담당하더라도 서류상에는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성인자녀를 家口主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는 남자 82.7%, 여자 17.3%로 나타나 여자가구주 비율은 1997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인 14.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가구주의 性別 構成比率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여자가구주 비율은

邑·面部地域(19.7%)이 洞部地域(16.9%)보다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邑·面部에는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평균수명의 성별 차이에 의하여 邑·面部地域에 여성노인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2-3 參照).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有配偶가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死別은 10.2%, 離婚·別居는 4.7%, 그리고 未婚은 9.7%였다. 이를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有配偶는 洞部地域이 邑·面部地域보다 높았고(동부 75.7%, 읍·면부 73.2%), 死別은 동부지역(9.0%)보다는 읍·면부지역(19.2%)이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離婚·別居는 동부지역(4.9%)이 읍·면부지역(3.2%)보다 높았다. 또한 가구주가 未婚인 경우는 교육,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젊은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10.4%)이 읍·면부지역(4.4%)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미혼가구와 이혼·별거가구의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고, 사별가구는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교육이나 취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邑·面部地域보다 洞部地域에 많으며, 둘째, 이혼·별거 후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別途家口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邑·面部地域보다 洞部地域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셋째, 洞部地域보다 邑·面部地域에 고령층의 인구가 많아 사별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동일한 수준인 26.5%를 차지하여 이들 연령층의 가구주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53.0%에 달하였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저하되었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책임을 질 수 없어 경제능력이 있는 기혼자녀가 가구주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2-3〉 家口主의 一般特性

(單位: %, 세)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82.7	83.1	80.3
여자	17.3	16.9	19.7
결혼상태 ¹⁾			
미혼	9.7	10.4	4.4
유배우	75.4	75.7	73.2
사별	10.2	9.0	19.2
이혼·별거	4.7	4.9	3.2
연령			
15~19세	0.6	0.6	0.3
20~29세	10.2	10.9	4.8
30~39세	26.5	27.8	17.0
40~49세	26.5	27.2	21.2
50~59세	17.4	17.2	18.4
60~69세	12.4	11.1	22.8
70세 이상	6.4	5.2	15.5
계	100.0	100.0	100.0
(수)	(13,429)	(11,807)	(1,622)
평균연령	45.8	44.8	53.0

註: 1)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구주의 연령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가구주는 洞部地域의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邑·面部地域의 비율이 높았으며, 동부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주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읍·면부 지역에서는 60대 가구주의 비율이 22.8%로 50대의 18.4% 보다 높았으며, 70세 이상의 가구주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즉, 고령층에서의 가구주비율은 邑·面部地域(60대 22.8%, 70대 15.5%)이 洞部地域(60대 11.1%, 70대 5.2%)보다 현저하게 높아 젊은 층의 지속적인 離農으로 邑·面部地域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연령의 지역별 차이는 家口主 平均年齡의 지역별 차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4.8세, 읍·면부지역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3.0세로 邑·面部地域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약 8세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1997년의 동일한 조사결과(洞部地域 43.6세, 邑·面部地域 51.6세)와 비교하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동부지역 1.2세, 읍·면부지역 1.4세 상승한 것이다.

3. 家口員의 特性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은 41,884명으로 洞部地域에 89.3%, 邑·面部에는 10.7%가 거주하고 있었다. 남자는 동부지역에 89.5%, 읍·면부지역에 10.5%가 거주하고 있었고, 여자는 동부지역에 89.1%, 읍·면부지역에 10.9%가 거주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미미하게나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表 2-4〉 性別 家口員의 居住地域 分布

(單位: %)

성	동부	읍·면부	계(수)
전체	89.3	10.7	100.0(41,884)
남자	89.5	10.5	100.0(20,465)
여자	89.1	10.9	100.0(21,419)

가구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여자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자 48.9%, 여자 51.1%), 특히 邑·面部地域이 洞部地域보다 여자가구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表 2-5 參照). 이는 젊은 연령층의 도시로의 이동 후에 농촌인구는 점차 노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성별격차에 따라 농촌지역에 사별한 여자노인이 많

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附表 12 參照).

〈表 2-5〉 地域別 家口員의 性 分布

(單位: %)

지역	남자	여자	계(수)
전국	48.9	51.1	100.0(41,884)
동부	49.0	51.0	100.0(37,391)
읍·면부	48.1	51.9	100.0(4,493)

第 2 節 家族構造의 變化

本節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 등의 영향에 의한 인구 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사대상 가족이 갖는 世代別 및 形態別 特性은 최근 低出產觀의 定着에 따른 여성취업의 증대,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社會環境的 變化와 맞물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家族福祉政策을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1. 世代別 家族類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규모의 축소는 가족의 世代構成에도 많은 영향을 1세대 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비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족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2세대 가족에 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核家族化 現象이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2-6〉 年度別 世代別 構成 比率(1966~2000年)

(單位: %)

세대구성 ¹⁾	1966	1975	1985	1995	2000 ²⁾
전국					
1세대	8.1	10.9	16.8	25.7	30.2
2세대	67.8	68.9	68.1	64.2	60.4
3세대 이상	24.1	20.2	15.1	10.1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부					
1세대	10.9	12.8	16.5	22.7	27.8
2세대	73.4	72.9	71.2	68.0	63.0
3세대 이상	15.7	14.3	12.3	9.3	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읍·면부					
1세대	6.5	9.1	17.3	35.9	47.2
2세대	64.7	64.9	62.1	51.2	41.8
3세대 이상	28.8	26.0	20.6	12.9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1세대에 1인 가구를 포함하였으며, 1975년을 제외한 전체 연도에서 비혈연가구는 제외하였음.

2) 2000년은 전국 13,307가구, 동부 11,690가구, 읍·면부 1,617가구를 분석한 것임.

資料: 〈表 2-1〉 과 동일

가족의 世代別 構成比率을 살펴보면, 1966년에 8.1%이던 1세대 가족은 1985년에 16.8%에서 1995년에는 25.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본 조사에서는 30.2%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1966년 24.1%에서 1995년 10.1%, 2000년 본 조사에서는 9.4%로 감소하였다. 또한 2세대 가족은 1975년 68.9%에서 2000년에는 60.4%로 꾸준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가족의 世代別 構成은 2세대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1세대 가족은 증가하고 있고, 2~3세대 가족은 그 폭은 다를지라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부

지역에서의 1세대 가족의 증가는 완만한데 비해 읍·면부지역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農村地域의 老人에 대한 특별한 關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形態別 家族類型

가족형태의 분류는 세대별 가족유형과의 複合的인 關係에서 구분된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親族家口는 84.6%,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非親族家口는 15.4%였다. 全體 親族家口 중 핵가족 비율은 82.8%, 확대가족은 11.5%, 기타 친족가구는 5.7%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非親族家口는 1인 가구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非血緣家口는 5.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가족형태를 地域別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親族家口는 동부지역 85.3%, 읍·면부지역 80.0%이었으며, 非親族家口는 동부지역 14.7%, 읍·면부지역 20.0%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비친족가구가 많았다. 둘째, 친족가구 중 核家族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83.2%로 읍·면부지역의 78.3%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擴大家族은 읍·면부지역이 15.2%로 동부지역의 1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친족가구 중 1人 家口는 읍·면부지역이 98.5%로 동부지역의 93.3%보다 높았고, 반대로 非血緣家口는 동부지역이 6.7%로 읍·면부지역의 1.5%보다 높았다.

〈表 2-7〉 地域別 親族家口 및 非親族家口의 類型別 分布
(單位: %, 가구)

지역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계(수)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수)
전국	82.8	11.5	5.7	100.0(11,365)	94.1	5.9	100.0(2,064)
동부	83.2	11.1	5.7	100.0(10,068)	93.3	6.7	100.0(1,739)
읍·면부	78.3	15.2	5.5	100.0(1,297)	98.5	1.5	100.0(325)

다음은 비친족가구인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친족가구만을 대상으로 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친족가구 중 核家族은 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 2세대인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편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典型的인 핵가족은 72.8%,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19.3%, 그리고 편부모가족은 7.9%로 나타났다. 이들 핵가족의 형태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는 동부지역(75.4%)이 읍·면부지역(52.0%)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부부가족은 읍·면부지역(41.7%)이 동부지역(16.5%)보다 높았다(表 2-8 參照). 이는 농촌에 노인부부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2-8〉 核家族의 形態別 分布
(單位: %)

지역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계(수)
전국	19.3	72.8	7.9	100.0(9,406)
동부	16.5	75.4	8.1	100.0(8,378)
읍·면부	41.7	52.0	6.3	100.0(1,028)

擴大家族은 부부와 부모, 부부와 편친 등과 같이 2세대로 구성되어

거나 부부와 자녀 및 부모나 편친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5) 본 조사에서 파악된 확대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5,053명으로 이들의 年齡分布는 19세 이하가 28.2%, 기혼자녀라고 볼 수 있는 30~40대가 27.9%였으며, 60대와 70대 연령층이 각각 10.4%, 14.1%로 나타나 젊은 미혼 손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表 2-9 參照). 이러한 경향은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農村地域에는 확대가족과 노인부부 또는 노인독신가가 混在하여 있음을 시사한다.

〈表 2-9〉 擴大家族 構成員의 年齡分布

(單位: %)

연령	전국	동부	읍·면부
0~19세	28.2	28.2	27.8
20~29세	9.8	10.4	6.4
30~39세	13.4	13.8	11.4
40~49세	14.5	14.5	14.7
50~59세	9.6	9.4	10.6
60~69세	10.4	9.9	13.4
70세 이상	14.1	13.8	15.7
계	100.0	100.0	100.0
(수)	(5,053)	(4,319)	(734)

第 3 節 應答婦人의 特性

응답부인의 特性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부인의 특성에 따라서 출산수준 및 가족보건실태가 다르고 가족을 둘러싼 제반 環境的 要素가 相異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

5) 부부라 함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 쪽이 사망한 편부 또는 편모의 경우를 포함한 개념임.

한 行態를 살펴볼 때 부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만 전반적인 응답부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本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 응답한 부인은 15~64세 기혼부인 10,715명으로 洞部地域 89.1%(9,546명), 읍·面部地域 10.9%(1,169명)가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 부인 중 15~44세의 기혼부인은 62.4%였으며, 45~49세 기혼부인은 12.0%, 그리고 종전의 조사와는 달리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한 연령층인 50~64세 기혼부인은 25.6%로 나타났다. 응답부인의 年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洞部地域에는 젊은 연령층이, 읍·面部地域에는 50세 이상의 장년 및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부인의 89.8%는 유배우부인이었으며, 사별부인 7.0%, 이혼 및 별거중인 부인 3.2%로 나타났다. 응답부인 중 유배우부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혼 및 별거중인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유배우 90.0%, 이혼 및 별거 3.5%)이 읍·면부지역(유배우 87.7%, 이혼 및 별거 1.3%)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사별한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11.0%)이 동부지역(6.5%)보다 높았다.

教育水準別 응답부인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가장 높은 40.8%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이 19.4%로 나타나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을 가진 부인이 전체 응답부인의 60.2%나 되었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응답부인의 교육수준이 읍·면부지역의 응답부인보다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에서는 36.9%인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에서는 63.4%나 되었고,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63.1%, 읍·면부지역 36.6%로 큰 學歷隔差를 보였다.

전체 응답부인의 37.0%가 宗教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佛敎信者는

32.0%, 기독교신자는 21.3%, 천주교 신자 9.0%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지 않은 부인은 읍·면부지역(37.8%)과 동부지역(36.9%)간에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佛敎信者는 읍·면부지역(34.7%)이 동부지역(31.6%)보다 많은 반면 改新敎 및 天主敎 信者는 동부지역(각각 21.4%, 9.4%)이 읍·면부지역(20.3%, 6.3%)보다 상당히 많았다.

응답부인의 45.5%가 현재 就業을 하고 있으며, 취업부인은 읍·면부지역(67.9%)이 동부지역(42.8%)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는 읍·면부지역의 부인은 農業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는 결혼상태에서 유배우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6.2%로 높았으며, 응답부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10.4%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 10.2%, 읍·면부지역 11.6%로 지역간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응답부인의 40.6%가 結婚 前 最長居住地는 大都市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中·小都市에 많이 거주한 부인은 25.7%,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였던 부인 17.2%, 그리고 其他 農·漁村에는 16.5%로 나타나 전체 부인의 66.3%가 결혼 전 최장거주지는 도시지역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응답부인의 現 居住地別 結婚 前 最長居住地를 살펴보면, 현재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70.1%가 도시지역이었으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64.9%가 농촌지역이었다.

부인의 56.1%가 2명의 자녀를 갖고 있으며,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1.2%,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5.1%로 나타났고,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부인은 7.6%이었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1~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78.5%, 읍·면부지역 65.2%였던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13.8%, 읍·면부지역 28.6%로 농촌지역이 높았다.

〈表 2-10〉 15~64歲 應答婦人の 地域別 一般特性

(單位: %)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15~24세	2.0	2.1	1.8
25~29세	11.5	11.9	8.1
30~34세	15.1	15.7	10.9
35~39세	17.4	17.8	14.0
40~44세	16.4	16.6	13.8
45~49세	12.0	12.0	12.0
50~54세	9.1	8.9	10.7
55~59세	8.8	8.2	13.2
60~64세	7.7	6.8	15.5
결혼상태			
유배우	89.8	90.0	87.7
사별	7.0	6.5	11.0
이혼	2.3	2.5	0.9
별거	0.9	1.0	0.4
교육수준			
무학	4.4	3.4	12.6
초등학교	18.5	16.5	35.1
중학교	16.9	17.0	15.7
고등학교	40.8	42.2	29.4
대학 이상	19.4	20.9	7.2
종교			
없음	37.0	36.9	37.8
불교	32.0	31.6	34.7
개신교	21.3	21.4	20.3
천주교	9.0	9.4	6.3
기타	0.7	0.7	0.9
현취업여부			
취업	45.5	42.8	67.9
미취업	54.5	57.2	32.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0.4	10.2	11.6
배우자	86.2	86.5	83.7
며느리	1.1	1.1	1.5
기타	2.3	2.2	3.2

〈表 2-10〉 계속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혼전 최장 거주지			
대도시	40.6	43.4	17.2
중·소도시	25.7	26.7	17.9
읍·면사무소 소재지	17.2	15.1	34.1
기타 농·어촌	16.5	14.8	30.8
현존자녀수			
0명	7.6	7.7	6.2
1명	21.2	21.8	15.6
2명	56.1	56.7	49.6
3명 이상	15.1	13.8	28.6
계	100.0	100.0	100.0
(수)	(10,715)	(9,546)	(1,169)

응답부인의 특성을 年齡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다 자세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附表 14〉에서 잘 나타난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아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임을 보여주었으나, 반면에 40대 후반의 연령층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60대 부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일수록 宗教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교신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개신교 신자는 젊은층일수록, 그리고 천주교 신자는 중년층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現在就業을 하고 있는 부인은 40~44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아 56.0%를 보였으며, 다음은 45~49세 연령층으로 53.1%, 50~54세 연령층은 50.8%로 나타나서 出産 및 子女養育의 負擔을 갖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부인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

에서 여성의 結婚과 子女養育이 부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決定的인 要因이기 때문에 이해된다.

응답부인의 대부분은 가구주의 配偶者이나 부인의 年齡이 상승함에 따라 家口主 本人인 경우가 증가하여 40대 후반부터는 女性家口主 비율이 급증하였다.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結婚 前 最長居住地는 농촌지역이 많았으며, 또한 현존자녀수도 많았다.

第 3 章 出産行態의 變化

한 사회의 出産行態는 많은 요인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 TFR)이다. 이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可妊期 年齡인 15~49세 여성을 산출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合計出産率을 기본으로 하고, 결혼한 부인의 출산수준 검토에 유용한 有配偶出産率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인의 妊娠經驗回數를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한 임신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들이 출산한 子女數와 그들의 性比를 분석하고, 理想子女數 및 現存子女數의 規模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부인의 出産間隔의 變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분석을 時系列的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서 出産行態가 어떠한 變化推移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變化를 展望할 수 있을 것이다.

第 1 節 出産力의 變動推移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合計出産率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合計出産率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함께 비교한다. 이어서 유배우 부인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有配偶出産率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유배우 출산율은 우리 나라와 같이 결혼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출산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1. 합계출산율의 변화

우리 나라의 출산율 變遷은 1960년 이후 약 3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구학적 근대화를 달성함으로써 이룩한 성과로 판단된다. 1960~1999년 기간의 약 40년간 한 여성의 평생을 통한 예상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少子女 規範의 形成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정책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강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19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일 수준의 저출산이 유지되어 왔다. 비록 1993년에는 1.75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저하된 1989년 이후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一時的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96년 6월에 정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993년 1.75명에서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으로 감소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출산율 變遷이 종료되고 低出產 行態가 定着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6) 그러나 점차 未婚率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有配偶出產率에 의한 전체 여성의 출산수준 파악은 매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고 보겠다.

특히 1997년 이후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격감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김승권 외, 1998). 그러나 경기회복과 함께 연기된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져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되지만, 1.5~1.6 수준의 낮은 출산율 수준은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3-1〉 合計出産率의 變化(1960~1999年)

(單位: 명/여자 1,000명당)

연도	1960 ¹⁾	1966 ¹⁾	1974 ¹⁾	1982 ²⁾	1984 ³⁾	1987 ⁴⁾	1990 ⁵⁾	1993 ⁶⁾	1996 ⁷⁾	1999 ⁸⁾
합계 출산율	6.0	5.3	3.6	2.7	2.1	1.6	1.6	1.75	1.71	1.425

- 資料: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_____,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본 조사결과

合計出産率의 지역별 차이, 즉, 洞部地域과 邑·面部地域의 차이는 과거에 실시된 출산력 관련 조사에서는 제시되었지만, 1997년 조사부

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설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첫째, 종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都市와 農村에 의해 지역구분을 하여 왔으며, 또한 농촌지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도시와 농촌에 의한 지역구분은 洞部와 邑·面部에 의한 구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洞部地域은 확대되고, 邑·面部地域은 더욱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地域別 出産率 資料는 과거와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고, 교통이 발달된 현 상황 하에서 邑·面部를 별도로 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전국의 13,429가구만을 標本抽出하여 실시된 조사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사가구 중 邑·面部地域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指標인 『出産率』의 지역별 산출 결과는 出生兒 한 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數値를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며, 아울러 현지조사의 완벽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合計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그리고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등의 지표에서 지역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

出産率의 低下는 1960년 이후 전체 再生産年齡層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가진다. 첫째, 전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연령별 출산율이 合計출산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合計出産率이 6.0이던 1960년에는 25~29세 연령층이 27.6%이었으며, 合計출산율이 人口代置水準인 2.1이었던 1984년에는 44.8%를 점하였다. 이러한 25~29세 연령층의 合計출산율에 대한 기여율은 合計出産

률이 1.6으로 가장 낮았던 1990년에는 6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合計出産率의 소폭 상승과 함께 다소 변화를 보였는데, 전체 합계출산율에서 25~29세 연령층의 기여율은 1993년 55.9%, 1996년 52.8%, 그리고 1999년에는 49.8%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出産年齡層에서 25~29세 연령층의 기여율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高出産層임을 잘 보여준다.

둘째, 가장 두드러진 特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出産率의 급격한 低下이다. 즉, 1960~1999년 기간중 여자 1,000명당 出産數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283에서 50으로, 35~39세 연령층에서는 196에서 13으로 큰 低下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나 20~24세 연령층의 出産率 減少는 女性의 教育水準의 向上과 雇傭機會의 擴大, 結婚年齡의 上昇에 기인하며, 35~39세 연령층에서의 出産率 減少는 少子女觀의 形成에 따른 避妊實踐率의 增加, 人工妊娠中絶, 그리고 既婚女性의 就業率 增加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96년 10에서 1999년 13으로 미미하나마 상승하였는데, 이는 만혼과 늦등이 출산의 영향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최근 出産率 變化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30~34세 연령층의 出産率 上昇이라 하겠다. 1960년 동 연령층에서의 出産率은 257이었으나 점차 低下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最低點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를 보여주었으며, 1999년 75로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 30~34세 연령층의 出産率(75)은 <表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4세 연령층의 出産率(50)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1996년에 이어 다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出産率 低下要因인 結婚年齡 上昇으로 인한 配偶효과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出産率 變動의 특징은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다소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出産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40~44세 연령층의 出産率은 1960년 80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2년에는 3이었으며, 1984년 이후에는 그 이하인 1에 달하였으나, 1996년에는 4, 1999년에는 3 수준으로 상승하여 늦둥이 出産이 다소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出産率이나 人口構造의 變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人口政策 次元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母子保健 側面에서 産前 및 産後管理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表 3-2〉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1960~1999年)
(單位: 명/여자 1,000명당)

연령	1960	1966	1974	1982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15~19세	37	15	11	12	7	3	3	3	3	2
20~24세	283	205	159	161	162	104	62	71	62	50
25~29세	330	380	276	245	187	168	188	195	181	142
30~34세	257	242	164	94	52	39	50	64	83	75
35~39세	196	150	74	23	8	6	7	15	10	13
40~44세	80	58	29	3	1	3	1	1	4	3
45~49세	14	7	3	-	-	-	-	-	-	-

資料: 〈表 3-1〉과 동일

3. 出産率의 國際比較

전 세계의 合計出産率은 전반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나 현재 약 3.0 수준으로 지속적 人口增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국가별 出生수준은 그 사회의 文化的 差異, 經濟發展의 程度, 그리고 出産率을 저하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政府정책의 강도 및 효과에 따

라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出産水準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선진국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어 주목된다. <表 3-3>에 의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1.15)이었으며, 체코(1.16), 이탈리아(1.19) 등도 1.1대에 속하는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다음은 출산율이 1.3대에 속하는 국가군으로 그리스(1.30), 헝가리(1.33), 독일(1.34), 러시아(1.34), 오스트리아(1.34), 일본(1.34) 등이 있으며, 1.4대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1.425)과 스위스(1.44)로 나타났다.

<表 3-3> 世界 主要國의 合計出産率 水準

(單位: 명/여자 1,000명당)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그리스	1.30 (1998)	스페인	1.15 (1998)
네덜란드	1.62 (1998)	영국	1.72 (1998)
노르웨이	1.81 (1998)	오스트리아	1.34 (1998)
뉴질랜드	2.04 (1995)	이탈리아	1.19 (1998)
덴마크	1.72 (1998)	일본	1.34 (1999)
독일	1.34 (1998)	체코	1.16 (1998)
러시아	1.34 (1995)	캐나다	1.66 (1996)
미국	2.06 (1998)	프랑스	1.75 (1998)
벨기에	1.53 (1998)	핀란드	1.70 (1998)
스웨덴	1.51 (1998)	헝가리	1.33 (1998)
스위스	1.44 (1998)	호주	1.76 (1998)

資料: 일본 후생성, 『인구동태통계』, 2000.

미국 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2000.

U. 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97.

EC, Demographic Statistics, 1999.

다만 일부 유럽국가와 호주, 미주국가 등은 우리의 출산수준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호주 및 미국 등 多文化 國家의 출산율은 아시아인

및 히스패닉 등 高出産國 出身의 移民者들의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의 직접비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출산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2 節 有配偶出産率의 變化

한 사회의 出産行態 및 그 水準의 變化는 全齡層의 合計出産率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既婚婦人(ever-married women)에 의한 配偶出産率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配偶出産率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즉, 有配偶婦人, 死別, 離婚 및 別居婦人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出産率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실제 家庭을 이루었거나 또는 현재 이루고 있는 여성의 出産行態를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配偶出産率에 의한 출산수준 측정은 서구 국가에 비하여 결혼율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분석에서는 기혼부인 중 결혼상태가 이혼 및 별거이거나 사별인 경우는 제외하고 有配偶婦人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既存의 出産力 관련 조사 및 분석이 既婚婦人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有配偶婦人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時系列 分析이 가능하고 그 變化推移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시도되었다. 여기서 남편이 없는 이혼 및 별거상태의 부인과 사별부인은 출산경험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 有配偶出産率 變化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수는 1990년을 최저점으로 1996년까지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에는 다시 저하하였다. 이는 <表 3-2>의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둘째, 年齡別 出産率과는 달리 年齡別 有配偶出産率은 低年齡層일

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9년 20~24세 연령층에서의 有配偶出産率은 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연령층은 224, 30~34세 연령층은 86이었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4, 40~44세 연령층에서는 4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 婦人이 결혼 후 즉시 子女를 出産하는 行態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表 3-4〉 年齡別 有配偶出産率의 變動推移(1960~1999年)
(單位: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²⁾	1993 ³⁾	1996 ⁴⁾	1999 ⁵⁾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40~44세	117	53	7	1	1	4	4
45~49세	22	8	1	-	-	-	-

- 資料: 1)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재인용
 2)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3)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4)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5) 본 조사결과

셋째, 年齡別 有配偶出産率은 29세 이하에서는 年齡別 出産率과 큰

7) 다만 1994년 조사결과인 199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다른 연도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이러한 변화추이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함.

차이를 보이거나 30세 이상에서는 年齡別 出産率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즉,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20~24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50, 386, 25~29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142, 2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비율은 30~34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75, 86으로 크게 근접하였으며, 35~39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13, 14, 40~44세 연령층에서는 각각 3, 4로 거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結婚率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第 3 節 妊娠回數 및 終結形態

1. 妊娠回數

부인들의 임신횟수에 관한 분포는 큰 변화를 보였는데, 본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종전까지 조사대상부인의 임신경험은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1991년 44.9%,⁸⁾ 1994년 31.7%, 1997년 29.2%), 2000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도 조사대상부인 중 3회 이상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은 50.2%로 1994년보다는 6.6%포인트, 1997년보다는 3.9%포인트가 감소되었다. 반면에 2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은 1994년보다는 3.9%포인트, 1997년보다는 1.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1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은 15.6%로 1994년보다는 2.4%포인트, 1997년보다는 2.0%포인트 증가하였다.

8)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분석된 1994년, 1997년, 2000년의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변화추이는 짐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임신횟수 분포비율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부인의 평균임신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00년 조사대상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2.7회로 1994년보다는 0.3회, 1997년보다는 0.1회 감소한 결과이다.

〈表 3-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總妊娠回數의 變化(1991~2000年)
(單位: %, 회)

연도	총 임신횟수					계(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991 ¹⁾	3.1	10.8	19.1	22.1	44.9	100.0(7,462)	3.5
1994 ²⁾	4.5	13.2	25.6	25.1	31.7	100.0(5,183)	3.0
1997 ³⁾	4.7	13.6	27.6	24.9	29.2	100.0(5,418)	2.8
2000 ⁴⁾	4.7	15.6	29.5	23.7	26.5	100.0(6,408)	2.7

註: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함.

- 資料: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본 조사결과

임신횟수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表 3-6>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영향이 있었으며, 그리고 연령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居住地域에 따른 평균 임신경험횟수를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 2.7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2.9회로 젊은 高學歷層이 많은 도시지역의 부인들의 임신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年齡과 教育水準에 따른 妊娠回數分布에서 잘 보여준다. 먼저 부인연령별 임

신희수분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 연령층의 부인은 1회의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은 2회의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평균임신희수는 15~24세 부인이 1.3회로 가장 낮았고, 연령상승에 따라 임신경험은 증가하여 40~44세 부인은 3.3회로 높아 결국 연령과 임신경험희수는 正比例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 3-6〉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總妊娠回數 分布
(單位: %, 회)

특성	총 임신희수						계(수)	평균 임신희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지역								
동부	4.8	15.9	29.7	23.4	15.8	10.3	100.0(5,857)	2.7
읍·면부	3.3	11.4	28.1	26.6	16.5	14.1	100.0(545)	2.9
연령								
15~24세	24.4	38.5	26.3	6.6	2.8	1.4	100.0(213)	1.3
25~29세	13.4	38.6	28.4	14.1	4.1	1.5	100.0(1,220)	1.6
30~34세	3.6	15.5	33.6	25.3	15.1	6.9	100.0(1,572)	2.6
35~39세	1.4	6.6	27.9	27.9	21.7	14.4	100.0(1,786)	3.1
40~44세	0.3	5.2	28.7	27.0	20.9	18.0	100.0(1,610)	3.3
교육수준								
초교 이하	1.8	4.5	25.4	29.3	19.1	20.0	100.0(335)	3.4
중학교	0.6	6.1	26.5	27.4	19.5	20.0	100.0(807)	3.4
고등학교	4.7	14.2	30.5	24.2	16.6	9.7	100.0(3,441)	2.7
대학 이상	6.9	24.5	29.8	20.1	12.3	6.4	100.0(1,814)	2.3
취업여부								
취업	7.2	12.5	28.1	23.7	16.3	12.2	100.0(2,722)	2.8
미취업	2.9	17.8	30.6	23.8	15.6	9.4	100.0(3,678)	2.7

그리고 教育水準別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3회의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2회의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임신경험희수는 反比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 이상의 학

력을 가진 부인의 54.3%가 1~2회의 임신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경험은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經濟水準의 向上 및 醫學技術의 發達에 따른 嬰兒死亡率의 減少, 避妊實踐의 生活化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출산관의 정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2. 妊娠終結形態

모든 임신은 願한 임신과 願치 않은 임신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임신을 했을 경우 이의 終結形態는 본인의 意圖대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願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出産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을 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妊娠消耗로 연결되기도 하겠으나 出産하기도 할 것이다.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正常出生과 死産, 自然流産, 人工妊娠中絶 등의 妊娠消耗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신의 결과는 그 사회의 經濟水準, 文化的 背景, 保健醫療水準, 性平等의 程度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부인이 경험하는 임신규모와 이들 임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는지를 시계열적 분석에 의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終結形態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구자질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政策方案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부인의 임신종결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5~44세 有配偶婦人들이 경험한 모든 임신의 종결형태를 현재 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1994년, 1997년, 그리고 2000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횟수 중 正常出生이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로 감소하였다.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人工妊娠中絶은 1994년 조사에서는

0.84회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0.65회로 감소하였으며, 死産과 自然流産은 1994년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4회에서 2000년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6회로 변화하였다. 결국 정상출생과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연유산은 소폭 상승한 후, 199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산은 1994년 이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7〉 15~44歲 有配偶婦人의 妊娠終結形態別 平均回數(1994~2000年)

(單位: 회)

연도	총임신	출생	사산	자연유산	임신중절	현임신
1994 ¹⁾	2.96	1.80	0.01	0.24	0.84	0.06
1997 ²⁾	2.83	1.78	0.01	0.26	0.74	0.04
2000 ³⁾	2.69	1.72	0.01	0.26	0.65	0.06

資料: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妊娠終結形態別 經驗回數의 변화를 전체 임신경험횟수를 감안하여 살펴보는 것은 임신중절형태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 결과는 <表 3-8>에서 잘 보여준다.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로 최근 조사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바람직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소모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임신 중 死産으

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에서는 0.4%, 1997년과 2000년 조사에서는 0.3%로 동일한 수준에 있었으며, 人工妊娠中絶은 1994년 조사의 28.3%에서 2000년 조사에서는 24.1%로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自然流産은 1994년 조사의 8.2%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9.1%, 그리고 2000년 조사에서는 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부인의 임신종결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임신 중 妊娠消耗로 終結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을 유지하여 왔고, 특히 이러한 피임실천율은 피임효과가 매우 높은 불임수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소모는 아직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消耗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임신소모의 약 71%가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으로 보아 피임실천율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아직까지 불원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死産과 自然流産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것이나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부인의 건강상태가 임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임신소모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홍보계몽에 의하여 임산부의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한 경우에 자연유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 피임사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결국 부인의 임신경험횟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들 임신이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임신소모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연유산에 의한 임신소모는 증가하고 있어 人口資質 및 社會倫理的 側面에서 임신부 관리에 많은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表 3-8〉 15~44歲 有配偶婦人의 妊娠終結形態(1994~2000年)
(單位: %)

임신종결형태	1994 ¹⁾	1997 ²⁾	2000 ³⁾
정상출생	61.0	62.9	63.8
임신소모	36.9	35.5	34.0
(사산)	(0.4)	(0.3)	(0.3)
(자연유산)	(8.2)	(9.1)	(9.7)
(인공임신중절)	(28.3)	(26.1)	(24.1)
현 임신	2.1	1.6	2.1
계	100.0	100.0	100.0
(수)	(15,316)	(15,311)	(17,241)

資料: 〈表 3-7〉과 동일

2000년 조사에서 나타난 妊娠終結形態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正常出生으로 종결된 임신은 洞部地域 거주부인이 63.5%, 邑·面部地域 거주부인이 66.1%, 妊娠消耗는 洞部地域 거주부인이 34.4%, 邑·面部地域 거주부인이 3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⁹⁾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별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임신소모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9) 1997년 조사에서는 正常出生으로 종결된 임신이 동부지역 61.9%, 읍·면부지역 68.0%, 妊娠消耗는 동부지역 36.5%, 읍·면부지역 30.4%로 나타났다.

경우보다 높은 것은 주로 자연유산에 의한 것이다. 즉, 동부지역 부인의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의 비율은 9.9%이었으며, 읍·면부지역 부인은 7.7%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대한 철저한 임신부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都市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한 母性健康의 管理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3-9〉 15~44歲 有配偶婦人の 地域別 妊娠終結形態(2000年)
(單位: %)

임신결과	전국	동부	읍·면부
정상출생	63.8	63.5	66.1
임신소모	34.0	34.4	31.9
(사산)	(0.3)	(0.3)	(0.4)
(자연유산)	(9.7)	(9.9)	(7.7)
(인공임신중절)	(24.0)	(24.2)	(23.8)
현 임신	2.1	2.1	2.0
계	100.0	100.0	100.0
(수)	(17,241)	(15,620)	(1,621)

第 4 節 出生兒의 數 및 性比

한 사회의 出産水準은 出産率 외에도 한 부인이 출산한 總 出生兒數(children ever-born)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조사대상 부인의 出生兒 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출생아의 性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出生性比 不均衡이 社會問題로 대두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出生兒數

출생아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말한다. 즉,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혼외 출산이든, 혼인중의 출산이든, 재혼 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서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재 夫婦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데리고 온 아이는 제외되며, 入養된 아이도 제외된다. 간단히 말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리고 아이의 生死與否에 관계없이 부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아이는 出生兒의 概念에 포함되는 것이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有配偶婦人의 平均 出生兒數는 1.7명으로 1994년 및 1997년 보다 0.1명 감소하였다. 地域別로 살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은 평균 2.0명을 출산하였으나 동부에 거주하는 婦人은 1.7명을 出産하고 있다.¹⁰⁾ 따라서 동부와 읍·면부 거주부인의 平均 出生兒數는 약 0.3~0.4명 수준에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0 參照).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 거주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으로 구성되어 少子女 規模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婦人의 平均 出生兒數는 教育水準과 反比例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조사결과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출

10) 지역별 부인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97년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국 통계는 0.1명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사오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1994년과 1997년의 전국 결과는 외관상 1.8명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약간(0.5 미만 수준) 감소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2000년 조사에서도 약간(0.5 수준) 감소한 것임.

생아가 2.2명,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2.1명, 고등학교 학력부인은 1.7명,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1.5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低學歷 수준의 부인 중에 고연령층 부인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이러한 양상은 1994년과 1997년 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表 3-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平均 出生兒數

(單位: 명)

특성	1994 ¹⁾	1997 ²⁾	2000 ³⁾
전체	1.8	1.8	1.7
지역			
동부	1.7	1.7	1.7
읍·면부	2.1	2.0	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	2.5	2.2
중학교	2.1	2.1	2.1
고등학교	1.6	1.7	1.7
대학 이상	1.4	1.5	1.5

資料: 〈表 3-7〉과 동일

그러나 부인의 교육수준간 평균 출생아수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과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出生兒數의 差異는 1994년 1.2명에서 1997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더욱 감소되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한 文化生活圈에서 살고 있고 少子女觀이 全 階層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가장 많은 5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23.2%,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

인이 8.5%로 전체 부인의 88.7%가 2명 이하의 出産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지역별로는 2명 이하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인이 洞部 89.8%, 邑·面部 77.2%로 지역간 격차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1명 이하의 出生兒를 가진 부인이 洞部地域 32.4%, 邑·面部地域 24.2%로 지역간 8.2%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 동부지역은 10.2%, 읍·면부지역 22.7%로 지역간 차이가 무려 12.5%포인트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에 따른 부인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다음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출생아수 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부인의 出生兒數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의 부인은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45.3%, 출생아를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도 39.7%나 되어 1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무려 85.0%나 되었으며, 결국 이 연령층의 부인은 평균 0.8명만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연령층 부인은 24세 이하 연령층 부인보다는 출생아수가 약간 많았는데, 1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45.1%,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26.3%로 이 연령층 부인의 71.4%가 1~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생아를 가지지 않은 부인도 26.0%나 되는데 이는 결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령층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1명이라는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29세 이하 연령층의 부인과는 대조적으로 30세 이상의 부인의 출생아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들 부인들은 대부분 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었으며,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현저하게

11)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부인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57.3%, 1명을 가진 부인 20.9%,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 8.4%로 전체 부인의 86.6%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하되고, 2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인연령이 높아질 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30~34세 연령층의 부인은 0.6%, 35~39세 연령층 1.5%,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3.5%로 극히 낮았다.¹²⁾ 이와 같은 영향에 의하여 30~34세 연령층 부인의 平均 出生兒數는 1.7명인 반면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2.0명과 2.1명으로 부인연령과 출생아수는 比例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 중 출생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즉, 30~34세 부인의 5.6%, 35~39세 부인의 2.0%, 그리고 40~44세 부인의 1.1%가 출생아가 없었다. 이는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晩婚에 의하여 첫 출산이 늦어진 경우일 수도 있으며,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혼부인이 전처의 자녀를 고려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意圖的인 경우가 아니라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늦어지거나, 자연불임이 된 경우, 그리고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등의 非意圖的인 경우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婦人の 教育水準과 出生兒數는 反比例한다. 물론 모든 교육수준에서 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가장 많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출생아수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명의 출생아수를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43.6%나 되어 高學歷層의 부인은

12)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0~34세 연령층 0.8%, 35~39세 연령층 3.1%,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5.8%로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자녀수도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低學歷 水準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高年齡層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아수의 분포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平均 出生兒數도 취업중인 부인 1.8명, 취업하지 않은 부인 1.7명이었다.¹³⁾ 이는 우리 나라 부인들이 결혼 후 就業을 中斷하고 子女養育後 再就業하는 등 대체적으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연령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를 갖지 않은 부인의 비율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취업부인의 10.4%, 미취업부인의 7.1%가 출생아가 없었는데¹⁴⁾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젊은 취업부인이 出産을 遲延시키고 있는 경우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출생아수는 취업중인 부인 1.9명,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 1.7명이었음.

14)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9.0%, 미취업부인의 7.9%가 출생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취업중인 부인은 1.4%포인트 증가, 미취업부인은 0.8%포인트 감소한 것임.

〈表 3-1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出生兒數 分布

(單位: %)

특성	출생아수					계(수)	평균 출생아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8.5	23.2	57.0	9.8	1.5	100.0(6,401)	1.7
지역							
동부	8.7	23.7	57.4	9.0	1.2	100.0(5,857)	1.7
읍·면부	6.6	17.6	53.0	18.5	4.2	100.0(545)	2.0
연령							
15~24세	39.7	45.3	14.5	0.5	-	100.0(214)	0.8
25~29세	26.0	45.1	26.3	2.5	-	100.0(1,221)	1.1
30~34세	5.6	24.7	61.3	7.8	0.6	100.0(1,573)	1.7
35~39세	2.0	12.8	70.3	13.3	1.5	100.0(1,784)	2.0
40~44세	1.1	13.8	67.0	14.6	3.5	100.0(1,610)	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7	12.8	54.0	22.1	8.4	100.0(335)	2.2
중학교	1.5	13.8	66.0	14.8	3.8	100.0(809)	2.1
고등학교	8.4	22.5	58.8	9.5	0.8	100.0(3,440)	1.7
대학 이상	12.9	30.7	50.2	5.8	0.3	100.0(1,814)	1.5
취업여부							
취업	10.4	18.9	58.1	10.6	2.1	100.0(2,720)	1.8
미취업	7.1	26.5	56.3	9.2	1.0	100.0(3,678)	1.7

2. 出生兒의 性比

특정년도의 출생남아 100명당 출생여아의 수를 나타내는 出生性比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출생성비의 시계열적 자료는 남아선호수준, 남녀 결혼대상자 규모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출생성비는 이 자료 외에도 부인의 全體 出生兒의 性比와 現存子女數의 性比에 의하여도 파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생성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우리 나라 부인의 전체 출생아의 성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累積 出生性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사망률이 저하되어 출생아 성비와 현존자녀수 성비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3명이었는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0.91명, 여아 0.82명으로 부인의 누적된 출생아 성비는 111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7년의 출생아 성비 113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106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여전히 性比不均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12 參照).

전체 출생아 성비를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향후의 출생성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地域別로 출생아 성비를 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평균 출생아 1.71명중 남자는 0.90명, 여자는 0.81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11을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출생아 1.96명중 남자는 1.02명, 여자는 0.94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09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邑·面部地域에 거주하는 부인이 洞部地域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男兒를 많이 출산하지만 동시에 女兒도 많이 출산하기 때문에 출생아 性比는 洞部地域이 邑·面部地域보다 不均衡을 이루고 있었다.

부인연령과 출생아 성비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 젊은 연령층인 15~24세 부인이 전체 평균 출생아 0.75명 중 남아가 0.45명, 여아 0.30명으로 150이라는 높은 출생아 성비를 보여주었다. 이는 胎兒性鑑別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추론이 가능하겠으나 분석대상이 적어 나타난 오류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출생아 성비가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35~39세의 119이며, 반대로 낮은 출생아 성

비는 비교적 많은 출생아를 가진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 부인들로 각각 102, 104이었다.

〈表 3-12〉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出生兒 性比

(單位: 명, %)

특성	출생아수			출생아 성비 (A/B)
	소계	남아수(A)	여아수(B)	
전체	1.73	0.91	0.82	111
지역				
동부	1.71	0.90	0.81	111
읍·면부	1.96	1.02	0.94	109
연령				
15~24세	0.75	0.45	0.30	150
25~29세	1.05	0.53	0.52	102
30~34세	1.73	0.88	0.85	104
35~39세	2.00	1.08	0.91	119
40~44세	2.06	1.08	0.99	109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3	1.12	1.10	102
중학교	2.06	1.08	0.99	109
고등학교	1.72	0.91	0.81	112
대학 이상	1.50	0.78	0.72	108

부인의 연령에서 보여주던 양상과 마찬가지로 教育水準에 따라서도 출생아 성비는 일정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가장 높은 112, 중학교 및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여성은 각각 109, 108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 성비는 102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낮은 고연령층의 여성은 多子女를 가졌기 때문에 特定 性を 원하고 있지는 않았던 出産行態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第 5 節 現存子女數 및 性比

본 조사에서 사용된 현존자녀수에 대한 概念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現存子女는 本章의 第4節에서 설명된 出生兒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이든, 入養하였든 상관없이 현재 두 부부사이에 생존하고 있는 자녀는 모두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전처의 자식, 전남편의 자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出嫁하였더라도 포함된다. 물론 부부의 자녀이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되지 않는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조사대상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자녀의 性構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 결과를 出生兒의 數 및 性比와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 現存子女數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과거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15.1%에서 1997년 12.4%,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10.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0~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31.6%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직후의 조사인 1997년에는 29.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다시 31.7%로 증가하였다(表 3-13 參照).

이와 같은 現存子女數 分布의 變化는 평균 현존자녀수의 時系列的 變化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0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명으로 1994년 및 1997년의 1.8명보다는 0.1명이 감소하였다.

〈表 3-1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現存子女數 分布(1994~2000年)
(單位: %)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 ¹⁾	31.6	53.3	15.1	100.0(5,183)	1.8
1997 ²⁾	29.3	58.3	12.4	100.0(5,419)	1.8
2000 ³⁾	31.7	57.4	10.9	100.0(6,404)	1.7

資料: 〈表 3-5〉 와 동일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有配偶婦人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邑·面部가 22.5%로 洞部의 9.8%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0~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洞部가 32.3%로 邑·面部의 24.4% 보다 높았다. 따라서 평균 현존자녀수는 동부 거주부인이 1.7명, 읍·면부 거주부인 2.0명으로 0.3명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앞의 <表 3-11>의 출생아수의 지역별 차이(동부 1.7명, 읍·면부 2.0명)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洞部 居住婦人이 邑·面部 居住婦人보다 少子女 規模를 선호하는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 부인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에 正比例하고 교육정도에 反比例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와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각각 84.2%, 70.7%로 높았고, 30세 이상의 연령층 부인의 동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30.8%,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43.3%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더 낮아질 수록 다수의 자녀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低學歷 수준의 부인이 高年齡層의 부인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表 3-14〉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現存子女數 分布
(單位: %, 명)

특성	현존자녀수					계(수)	평균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8.5	23.2	57.4	9.6	1.3	100.0(6,404)	1.7
지역							
동부	8.6	23.7	57.8	8.7	1.1	100.0(5,858)	1.7
읍·면부	7.0	17.4	53.1	19.6	2.9	100.0(546)	2.0
연령							
15~24세	39.3	44.9	15.0	0.9	-	100.0(214)	0.8
25~29세	26.1	44.6	26.5	2.7	-	100.0(1,221)	1.1
30~34세	5.5	24.8	61.7	7.6	0.4	100.0(1,573)	1.7
35~39세	2.1	12.9	70.7	12.9	1.5	100.0(1,787)	2.0
40~44세	1.1	14.0	67.6	14.3	3.0	100.0(1,609)	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	13.1	54.6	22.1	8.1	100.0(335)	2.2
중학교	1.7	14.6	66.5	14.3	2.8	100.0(809)	2.0
고등학교	8.4	22.4	59.2	9.3	0.7	100.0(3,442)	1.7
대학 이상	12.9	30.4	50.7	5.6	0.4	100.0(1,814)	1.5
취업여부							
취업	10.2	19.0	58.7	10.4	1.7	100.0(2,720)	1.8
미취업	7.2	26.3	56.5	9.0	0.9	100.0(3,679)	1.7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인의 연령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높기 때문에 취업부인의 현존자녀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出生兒數의 분포 및 平均出生兒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수는 이들 부인의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율과 재혼율이 높지 않고 영아사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이혼 및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

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 現存子女의 性比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3명이었으며, 남아 0.91명, 여아 0.82명으로 부인의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1로 나타났다(表 3-15 參照). 이는 평균 출생아수와 출생아의 累積性比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혼모, 재혼 등의 사회현상은 자녀규모 및 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表 3-1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現存子女의 性比(2000年)
(單位: %)

특성	現存자녀수			現存자녀 성비 (A/B)
	계	남아수(A)	여아수(B)	
전체	1.73	0.91	0.82	111
지역				
동부	1.71	0.90	0.81	111
읍·면부	1.94	1.01	0.93	109
연령				
15~24세	0.75	0.45	0.30	150
25~29세	1.05	0.53	0.52	102
30~34세	1.72	0.88	0.84	105
35~39세	1.99	1.08	0.91	119
40~44세	2.07	1.08	0.99	109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1	1.12	1.09	103
중학교	2.03	1.06	0.97	109
고등학교	1.72	0.91	0.81	112
대학 이상	1.50	0.78	0.72	108

第 6 節 出産間隔의 變化

일반적으로 첫 자녀 출산에서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부인의 出産期間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은 우리 나라 부인의 출산과 관련된 지표들은 결혼연령과 함께 한 부부가 결혼하여 첫 자녀와 막내자녀를 낳아 出産을 終了하는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결혼,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에 의하여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을 산출하고자 한다.¹⁵⁾

우리 나라의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7세이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24.9세, 막내아(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출산하거나 斷産한 연령은 27.6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2년,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7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3.9년이였다. 결국 결혼 후 약 4년만에 출산을 완료하며, 가족의 子女規模는 決定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2000년 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1997년 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결혼연령은 0.5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4세가 연장되었고,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첫째아 출산시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1.3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1.2년으로 0.1년이 단축되었고, 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3.1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2.7년으로 0.4년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15) 再婚婦人은 結婚年齡, 첫째아 및 막내아의 出産이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 등의 여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우리 나라 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혼여성의 출산간격 분석에 오류를 줄 우려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997년 조사에서는 4.4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3.9년으로 0.5년이 단축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 나라 부인의 結婚年齡의 上昇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녀의 빠른 출산과 저출산관의 정착으로 인하여 막내아 출산시의 부인연령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을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 나라 女性의 出産行態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의 출산행태도 豫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부인의 특성에 따라 약 0.3~1.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대체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코호트가 빠를수록 긴 것으로 나타났다(表 3-16 參照).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과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 중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세 미만 부인의 결혼~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0.5년 이하로 나타나 婚前妊娠에 의한 첫 자녀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30세 미만 부인의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불과 0.8~1.5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적은 자녀수를 갖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들은 결혼 후 약 2년 내에 出産이 終了될 것으로 추정된다.

16) 여기서 첫 자녀의 출산이 결혼 후 10개월 미만(약 0.8년 미만)인 경우는 早産 또는 婚前妊娠에 의한 출산으로 이해됨.

〈表 3-16〉 15~49歲 初婚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結婚年齡과 첫째 및 막내아 出産時 年齡

(單位: 세, 년)

특성	결혼연령 ¹⁾	첫째아 출산시 연령 ¹⁾	막내아 출산시 연령 ²⁾	결혼-막내아 출산까지의 기간
1997년 ¹⁾	23.2	24.5	27.6	4.4
2000년 ²⁾	23.7	24.9	27.6	3.9
지역				
동부	23.8	24.9	27.6	3.8
읍·면부	23.0	24.1	27.4	4.4
연령				
15~24세	20.8	21.1	21.6	0.8
25~29세	24.0	24.5	25.5	1.5
30~34세	24.6	25.7	27.9	3.3
35~39세	23.9	25.2	28.4	4.5
40~44세	23.5	24.8	27.9	4.4
45~49세	22.7	24.1	28.0	5.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6	22.9	27.0	5.4
중학교	22.1	23.5	26.8	4.7
고등학교	23.7	24.8	27.4	3.7
대학 이상	25.4	26.6	28.7	3.3
결혼코호트				
1964~74년	19.9	21.4	26.3	6.4
1975~84년	22.6	23.9	27.3	4.7
1985~94년	24.3	25.6	28.4	4.1
1995~97년	25.4	26.2	26.9	1.5

註: 1)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은 제외함.

2)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과 경험이 있어도 추가자녀를 원하는 부인은 제외함.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第 7 節 出產行態 變化의 示唆點

本章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妊娠 및 出產에 관한 여러 指標로서 出產率, 妊娠經驗回數, 妊娠終結形態, 出生兒數 및 現存子女數 등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家族計劃事業, 産業化에 따른 社會·經濟發展,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 우리 나라 여성의 출산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물론 최근의 出產率 低下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하나는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 실업 등에 기인하여 나타난 불투명한 미래와 가족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지연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즉, 1997년 조사결과인 1996년의 합계출산율에 비하여 2000년 조사결과인 1999년의 합계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 이를 증명하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과 함께 출산율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견해는 ‘뉴 밀레니엄 베이비’를 출산하기 위하여 1999년의 출산을 연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2000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의 出產率은 피임보급 등의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에 의해서도 저하되지만 이는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저출산관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이 보다는 社會·經濟的 發展, 文化的 背景, 價値觀의 變化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즉,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少子女觀 規範이 무너지거나 出產率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출산율이 상승하거나 저하되는 폭은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임신경험횟수의 저하,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의 저하 등이 이를 나타낸다. 더군다나 第7章과 第8章에서 논의하겠지만 우리 나라 여성의 결혼연령 상승은 낮은 결혼율, 높은 미혼율을 초래하여 出産率 低下에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출산율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人口代替水準(합계출산율 2.1) 이하에서 15년간을 유지하고 있는 現 基調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의 인구전환은 약 100년에 걸쳐 낮은 속도로 이루어졌으나 우리 나라는 약 30년간의 단기간에 성취하였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측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인구의 구조측면에서 심각한 歪曲現象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다른 측면에서 30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 증가와 미미하나마 40대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늦등이 出産은 母子保健 및 人口資質 측면에서 계속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인의 전체 임신 중 자연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消耗된 妊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避妊實踐의 死角地帶와 남아선호에 의한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유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妊娠에 대한 事前知識의 不足, 産前 및 産後管理의 不徹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향후 人口政策은 長期的으로는 적정 출산율의 산출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며, 短期的으로는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對應方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家族計劃事業,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體系化 및 內實化를 통하여 人口의 資質向上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倍加되어야겠다.

第 4 章 避妊受容實態

1961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可妊期の 婦人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出産力을 低下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少子女의 利點과 避妊使用方法 등을 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피임보급 물량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극히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不願妊娠을 증가시켜 인공임신중절을 높이거나 出産率을 上昇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 6,408명을 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2000년의 避妊實踐狀態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별 및 피임방법별 避妊實踐率, 避妊實踐目的, 避妊方法에 대한 滿足度 및 不滿足理由, 비용부담, 결혼부터 불임수술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避妊非實踐 婦人을 대상으로 피임중단 및 무경험이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파악하고, 네 번째는 현재 避妊露出 狀態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第 1 節 避妊實踐狀態의 變動推移

避妊이란 임신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방법은 수용자의 성별, 피임효과의 영구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먼저 受容者의 性別에 따라서는 정관수술, 콘돔¹⁷⁾, 질외사정법 등의 남성피임방법과 난관수술, 자궁내장치¹⁸⁾, 먹는 피임약¹⁹⁾, 살정제²⁰⁾ 등의 여성피임방법이 있다. 避妊效果의 永久性和 관련하여서는 불임수술인 정관수술, 난관수술과 비영구적인 효과를 갖는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그리고 피임효과의 持續性에 따라서는 피임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같은 불임수술과 이 보다는 효과가 낮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非效果的인 피임방법이라 분류되는 콘돔,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이 있다. 이러한 피임방법들은 수용자의 특성, 피임목적, 접근의 용이성, 비용 및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선택이 결정된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은 피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정 시점에서 볼 때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와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과거에 피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피임실천의 양상을 4가지 유형 즉, 實踐婦人, 非實踐婦人으로 나누고, 비실천부인은 다시 避妊經驗婦人, 避妊無經驗婦人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검토한 후, 부인특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7) 수정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상태를 저지시키는 방법임.

18)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機轉임.

19) 배란 자체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함.

20) 정자의 활동력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임.

1. 避妊實踐率의 變化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6년에는 피임실천율이 44.2%로 대상부인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5년부터 대상부인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79.4%에 이르렀으나, 1994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아진 77.4%로 저하되었고 1997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80.5%라는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79.3%로 1991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고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避妊實踐이 安定化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피임실천 수준은 가임기에 있는 대부분의 유배우부인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로 피임실천이 상당히 普遍化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避妊非實踐率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76년 55.8%에서 1991년에는 20.6%까지 감소하였고, 1994년에는 22.6%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다시 19.5%로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20.7%로 증가하였다. 이를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1976년 18.7%에서 2000년에는 10.1%로 감소하였고, 피임무경험부인은 37.1%에서

10.6%로 감소하여,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 빠른 속도로 저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4-1〉 15~44歲 有配偶婦人의 避妊實態 變化(1976~2000年)
(單位: %)

연도	실천	비실천			계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976 ¹⁾	44.2	55.8	18.7	37.1	100.0
1979 ²⁾	54.5	45.5	21.5	24.0	100.0
1982 ³⁾	57.7	42.3	23.0	19.3	100.0
1985 ⁴⁾	70.4	29.6	13.3	16.3	100.0
1988 ⁵⁾	77.1	22.9	11.4	11.5	100.0
1991 ⁶⁾	79.4	20.6	9.6	11.0	100.0
1994 ⁷⁾	77.4	22.6	11.1	11.5	100.0
1997 ⁸⁾	80.5	19.5	9.7	9.8	100.0
2000 ⁹⁾	79.3	20.7	10.1	10.6	100.0

- 資料: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회, 1978.
 2) 고갑석 외, 『1979년 한국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회, 1980.
 3)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4)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5)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6)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7)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8)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9) 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80.5%로 頂點을 이루던 避妊實踐率이 2000년에 79.3%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合計出産率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²²⁾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1999년에는 1.425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 가운데 임신을 출산보다는 人工妊娠中絶로 終結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婦人特性別 避妊實踐率의 變化

유배우부인들의 특성 즉, 지역, 연령, 교육수준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避妊實踐 水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域別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79.2%, 80.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7년의 피임실천율이 읍·면부지역이 80.7%로 동부지역의 80.5%보다 0.2%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 감소가 읍·면부지역 보다 빠른 경향을 보였다(表 4-2 參照).

避妊非實踐婦人 중 과거경험이 있었던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의 증가가 읍·면부지역의 감소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7년에는 두 지역간에 0.3%포인트 차이로써 동부지역이 더 높았으나, 2000년에는 동부지역이 10.2%, 읍·면부지역이 9.2%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그리고 無經驗婦人은 두 지역간에

21) 최근 각국의 조사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UN, 1996).

22) 1989년 이후 출산수준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1.6이었으나 1993년의 합계출산율은 1.75로 0.15가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96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71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1993년의 출산율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

동일한 수준을 보였는데(동부 10.6%, 읍·면부 10.6%), 이는 1997년보다 0.7~0.8%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두 지역 모두 같은 수준으로 상승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동부지역은 약간 상승하였고, 읍·면부지역은 저하되었으며, 무경험부인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政府支援에 의한 不妊施術 普及 量の 減少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婦人年齡에 따른 避妊實踐 樣相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차 증가하나, 40세 이후에서는 약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령층의 경우 폐경이나 자궁적출 또는 나팔관 제거 등으로 인해 피임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연령층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30대 연령층까지 계속 감소하던 과거경험부인의 비율이 40세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의 증가 때문으로 40세 이후 연령층의 과거경험비율이 35~39세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나, 40세 이후 피임실천율의 저하는 과거경험부인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教育水準別 避妊實踐率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平均年齡을 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연령은 40.1세,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38.6세, 고등학교는 34.0세, 대학교 출신의 부인은 33.3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表 4-2〉 15~44歲 有配偶婦人的 特性別 避妊實態

(單位: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전체	79.3	20.7	10.1	10.6	100.0(6,408)
지역					
동부	79.2	20.8	10.2	10.6	100.0(5,862)
읍·면부	80.2	19.8	9.2	10.6	100.0(546)
연령					
15~24세	43.5	56.5	19.6	36.9	100.0(214)
25~29세	57.0	43.0	21.9	21.1	100.0(1,221)
30~34세	81.3	18.7	9.4	9.3	100.0(1,573)
35~39세	89.3	10.7	5.0	5.7	100.0(1,788)
40~44세	87.7	12.3	6.3	6.0	100.0(1,612)
교육수준					
초교 이하	85.3	14.7	7.5	7.2	100.0(335)
중학교	88.9	11.1	3.6	7.5	100.0(810)
고등학교	78.4	21.6	10.5	11.1	100.0(3,445)
대학 이상	75.4	24.6	12.8	11.8	100.0(1,815)
현존자녀수					
0명	29.3	70.7	22.2	48.5	100.0(544)
1명	58.7	41.3	20.6	20.7	100.0(1,486)
2명	92.7	7.3	4.8	2.5	100.0(3,678)
3명	90.7	9.3	7.2	2.1	100.0(615)
4명 이상	92.7	7.3	6.1	1.2	100.0(82)

일반적으로 子女數는 부인의 年齡과 正比例의 關係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現존 子女數는 많았으며, 또한 現존자녀數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58.7%,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2.7%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부터는 비슷한 피임실천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少子女 價値觀의 정착으로 두 자녀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 피임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教育水準別 避妊實踐率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연령별로 나누어 교육 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表 4-3>은 이를 잘 제시하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의 결혼연령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5~29세 연령층에 크게 증가하였음에서 잘 알 수 있다.

부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할 경우,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子女出産이 終了되는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고학력 여성의 結婚年齡 上昇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地域別로 보면 1976년 이후 1988년까지 동부지역이 계속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1991년 이후부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아지면서, 地域間 差異도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실천율이 과거에는 동부지역이 높았으나 최근 읍·면부지역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동부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地域間 隔差가 없어졌다는 점과 젊은 출산기의 부인이 동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表 4-3〉 15~44歲 有配偶婦人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避妊實態
(單位: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5~24세					
초교 이하	-	-	-	-	-
중학교	50.0	50.0	-	50.0	100.0(*)
고등학교	44.2	55.8	19.4	36.4	100.0(165)
대학 이상	37.5	62.5	25.0	37.5	100.0(40)
25~29세					
초교 이하	25.0	75.0	25.0	50.0	100.0(*)
중학교	68.0	32.0	4.0	28.0	100.0(25)
고등학교	58.6	41.4	21.2	20.2	100.0(722)
대학 이상	54.0	46.0	24.3	21.7	100.0(470)
30~34세					
초교 이하	66.7	33.3	19.0	14.3	100.0(21)
중학교	93.5	6.6	3.3	3.3	100.0(92)
고등학교	81.9	18.1	8.8	9.3	100.0(908)
대학 이상	78.8	21.3	11.3	10.0	100.0(551)
35~39세					
초교 이하	86.7	13.3	3.3	10.0	100.0(89)
중학교	90.6	9.4	3.7	5.7	100.0(298)
고등학교	88.9	11.2	5.7	5.5	100.0(917)
대학 이상	89.5	10.6	5.2	5.4	100.0(484)
40~44세					
초교 이하	86.9	13.1	8.6	4.5	100.0(221)
중학교	88.6	11.4	3.6	7.8	100.0(387)
고등학교	88.0	12.0	6.4	5.6	100.0(733)
대학 이상	85.6	14.4	8.5	5.9	100.0(271)

註: *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인의 年齡 및 現存子女數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던 피임실천율은 가족계획사업이 축소되던 시기인 1991년을 기점으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1년의 경우 25~34세 연령층은 계속 저하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인 15~24세, 35~44세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1994년에는 40~44세 연령층은 상승하였으나, 이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7년에는 다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다소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現存子女數別 避妊實踐率 역시 계속 상승하다가 1991년부터 자녀수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저하되다가, 1997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시 증가되었고, 2000년에는 자녀수가 1명과 3~4명인 경우에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에서 避妊施術 普及量을 크게 縮小하기 시작한 시점인 1989년 이후의 변화로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教育水準別 避妊實踐率은 연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여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997년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初期段階에서는 高學歷層을 중심으로 피임실천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피임이 普遍化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함으로써 高學歷層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表 4-4〉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避妊實踐率(1976~2000年)
(單位: %)

특성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전체	44.2	54.5	57.7	70.4	77.1	79.4	77.4	80.5	79.3
지역									
동부	48.0	55.1	58.7	71.5	77.7	79.3	77.1	80.5	79.2
읍·면부	40.2	53.6	55.7	67.7	75.5	80.0	78.4	80.7	80.2
연령									
15~24세	15.4	18.3	22.5	35.8	44.4	45.6	40.6	45.2	43.5
25~29세	31.9	40.9	44.6	60.8	65.4	61.4	60.1	60.6	57.0
30~34세	55.8	68.5	71.7	84.2	86.8	84.4	81.3	82.5	81.3
35~39세	61.5	71.9	79.9	87.2	89.6	93.7	89.6	91.1	89.3
40~44세	45.1	53.3	62.3	69.6	81.6	87.2	87.4	89.6	87.7
교육수준									
무학	39.3	50.9	57.6	70.2	78.8	-	88.0	-	68.8
초등학교	42.8	54.2	60.3	74.1	80.9	86.4	84.9	88.4	86.2
중학교	44.2	52.9	55.5	69.0	79.6	84.7	81.7	86.3	88.9
고등학교	50.9	58.0	54.6	66.8	74.0	75.3	74.8	78.2	78.4
대학 이상	51.8	61.1	64.6	78.2	73.5	72.8	74.2	78.6	75.4
현존자녀수									
0명	4.6	7.0	11.0	13.8	21.0	20.4	23.0	26.1	29.3
1명	18.2	20.7	24.3	44.7	58.1	61.8	58.7	62.0	58.7
2명	44.0	58.2	66.7	82.5	89.3	91.4	90.2	92.5	92.7
3명	59.0	69.0	76.4	84.5	90.5	92.8	91.4	91.4	90.7
4명	60.4	68.9	70.8	80.1	87.6	88.0 ¹⁾	88.4 ¹⁾	94.2 ¹⁾	93.8
5명 이상	47.2	58.5	64.2	76.3	83.8	-	-	-	94.1

註: 1) 현존자녀수 5명 이상 포함
資料: 〈表 4-1〉과 동일

避妊方法別 避妊實踐率의 特徵은 1991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변화양상이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난관수술은 1988년까지 큰 폭의 증가를 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7년보다 5.8%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먹는避妊藥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에는

2.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편 精管手術 實踐率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0년에 13.0%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6.5%로 1997년에 비해 1.4%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子宮內裝置와 기타 방법 등은 198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1991년부터 난관수술과 먹는 피임약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각각 13.7%와 15.7%의 실천율을 보였다.

〈表 4-5〉 15~44歲 有配偶婦人의 避妊方法別 避妊實踐率(1976~2000年)

(單位: %)

피임방법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난관수술	4.1	14.5	23.0	31.6	37.2	35.3	28.6	24.1	18.3
정관수술	4.2	5.9	5.1	8.9	11.0	12.0	11.6	12.7	13.0
자궁내장치	10.5	9.6	6.7	7.4	6.7	9.0	10.5	13.2	13.7
먹는 피임약	7.8	7.2	5.4	4.3	2.8	3.0	1.8	1.8	2.1
콘돔	6.3	5.2	7.2	7.2	10.2	10.2	14.3	15.1	16.5
기타	11.3	12.1	10.3	11.0	9.2	9.9	10.6	13.6	15.7

資料: 〈表 4-1〉 과 동일

결과적으로 家族計劃事業의 活性化 時期에는 정부정책의 초점이 여성에게 있었던 만큼 여성을 위한 피임방법인 난관수술이 主導를 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에의 의존도는 감소되었으며, 오히려 男性避妊法인 정관수술과 콘돔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注目할 만한 현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첫째, 피임방법이 女性避妊方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男性避妊方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性 平等的인 現象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의 증

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永久的인 避妊方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및 기타 피임방법 등 一時的인 避妊方法으로 점차적으로 轉換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의 사용증가로 원치 않는 임신에 露出될 可能性을 높이고 있다.

第 2 節 避妊實踐樣相

本節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有配偶婦人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婦人特性別로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비용부담 등을 분석하고, 그 다음은 불임수술을 받은 부인을 대상으로 결혼부터 불임수술시까지 所要期間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婦人の 特性別 避妊方法別 避妊實踐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에 따른 避妊實踐率의 差異를 地域別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기타방법 등의 피임방법에서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월경주기법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洞部地域에서는 남성용 피임방법이, 邑·面部地域에서는 여성용 피임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피임방법의 사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政府의 避妊普及量의 減少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

라서 동부지역의 경우는 一時的 避妊方法의 普及方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반면, 읍·면부지역은 不妊手術의 自費受容 擴大方案이 요구되며, 아울러 피임시술 보급량의 감소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인연령에 따른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永久的 避妊方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였고, 半永久的 避妊方法인 자궁내장치는 30~34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一時的 避妊方法에 의한 실천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35세 이상의 연령층은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 수용을 원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며, 자궁내장치는 터울조절을 위하여 자녀를 1명 정도 둔 부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피임방법이어서 24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부인은 아직 자녀를 모두 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피임방법의 使用 可能性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의 피임대상자 관리는 이와 같은 부인의 出産關聯 特性에 따라 差別化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부인의 教育水準에 따른 피임방법별 실천율을 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일시적 피임방법인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았으며,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연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력과 피임방법의 관계만을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表 4-6〉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 및 方法別 避妊實踐率
(單位: %)

특성	실 천										
	소계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 방법	비실천	계(수)
전체	79.3	18.3	13.0	13.7	2.1	16.5	0.6	11.8	3.3	20.7	100.0(6,408)
지역											
동부	79.2	17.8	13.3	13.5	2.0	16.9	0.5	11.7	3.5	20.8	100.0(5,862)
읍·면부	80.2	24.3	8.7	16.0	2.4	12.3	1.3	13.2	2.0	19.8	100.0(546)
연령											
15~24세	43.5	0.5	1.4	2.4	6.6	21.3	-	9.9	1.4	56.5	100.0(214)
25~29세	57.0	2.4	2.9	10.4	2.3	22.2	0.2	11.5	5.1	43.0	100.0(1,221)
30~34세	81.3	8.6	11.6	17.8	2.9	21.2	0.2	14.4	4.6	18.7	100.0(1,573)
35~39세	89.3	21.1	17.6	17.6	1.6	15.5	0.8	12.2	2.9	10.7	100.0(1,788)
40~44세	87.7	39.2	18.4	9.4	0.9	8.0	0.8	9.4	1.6	12.3	100.0(1,612)
교육수준											
초교이하	85.3	50.0	11.9	10.2	2.4	3.6	0.3	5.4	1.5	14.7	100.0(335)
중학교	88.9	39.2	14.0	14.9	2.1	8.0	1.6	6.3	2.8	11.1	100.0(810)
고등학교	78.4	16.2	13.3	15.6	2.6	15.1	0.4	11.8	3.4	21.6	100.0(3,445)
대학이상	75.4	7.5	12.0	10.1	1.1	25.0	0.4	15.5	3.8	24.6	100.0(1,815)
현존자녀수											
0명	29.3	0.2	0.2	3.7	3.7	13.5	0.4	6.3	1.3	70.7	100.0(544)
1명	58.7	6.0	5.6	7.3	2.3	20.0	0.4	12.9	4.2	41.3	100.0(1,486)
2명	92.7	24.1	17.5	16.8	1.7	16.6	0.6	12.1	3.3	7.3	100.0(3,678)
3명	90.7	27.9	14.6	18.3	2.3	11.5	0.8	12.2	3.1	9.3	100.0(615)
4명 이상	92.7	30.5	10.9	24.5	3.7	2.4	2.4	15.9	2.4	7.3	100.0(82)

現存子女數別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연령에 따른 피임방법 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난관수술과 정관수술같은 永久避妊方法과 자궁내장치 같은 半永久避妊方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一時的 避妊方法에 의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就業與否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으나, 출산 및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임실천은 취업여부에 따라 間接的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부인

의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을 살펴본 결과는 <表 4-7>에 잘 나타난다. 就業을 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3.9%로 未就業常態에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인 75.7%보다 8.2%포인트가 높았다. 지역별 피임실천율은 就業婦人의 경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未就業婦人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4-7> 15~44歲 有配偶婦人의 地域, 年齡別 就業與否別 避妊實踐率
(單位: %)

취업여부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취업	83.9	47.3	66.4	83.7	89.7	88.2	16.1	100.0(2,723)
미취업	75.7	42.0	52.7	79.9	88.8	87.2	24.3	100.0(3,682)
동부								
취업	83.6	47.1	66.3	83.0	89.7	88.1	16.4	100.0(2,408)
미취업	76.1	42.6	53.2	79.6	88.9	87.6	23.9	100.0(3,451)
읍·면부								
취업	86.9	40.0	69.7	90.2	90.4	89.2	13.1	100.0(315)
미취업	71.3	37.5	46.7	85.0	87.3	79.5	28.7	100.0(231)

年齡別 就業與否別 避妊實踐率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취업부인이 미취업부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부인과 미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25~29세 연령층이 13.7%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차이의 폭이 좁아져,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0.9~1.0%포인트의 차이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취업부인과 미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읍·면부지역은 취업부인과 미취업부인간의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부인의 年齡別, 現存子女數別로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을

살펴보면 <表 4-8>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9.2% 이고, 불임수술실천율은 0.4%로,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31.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1997년도 조사결과인 15~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최근 여성의 教育水準의 向上과 經濟活動의 增加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不妊에 의한 영향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出產計劃보다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녀를 1명 가진 부인들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2명인 부인의 경우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 비하여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年齡別로는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불임수술실천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의 경우 62.0%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3명인 부인의 피임실천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과 비교할 때 15~24세 연령층은 피임실천율이 상당히 낮았으나, 이 연령층의 불임수술실천율과 25~29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높았다.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을 보였다. 한편 4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과 비교할 때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30~34세 연령층에서는 100.0%의 가장 높은 피임실천율과 42.9%의 불임수술실천율을 보였으며, 35세 이상에서는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은 상승하였으나, 불임수술실천율은 다소 낮아졌다.

〈表 4-8〉 15~44歲 有配偶婦人의 年齡, 現存子女數別 避妊實踐率 및 不妊手術實踐率

(單位: %)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0명						
피임실천율	28.6	31.0	31.4	13.9	22.2	29.2
불임수술실천율	-	-	-	2.7	5.6	0.4
1명						
피임실천율	43.2	54.8	58.2	66.8	67.6	58.7
불임수술실천율	-	0.2	6.9	22.1	42.6	11.8
2명						
피임실천율	84.4	83.0	93.3	94.8	92.9	92.7
불임수술실천율	12.5	15.8	25.9	43.8	62.0	41.7
3명						
피임실천율	33.3	84.8	93.3	93.1	88.3	90.7
불임수술실천율	33.3	34.4	29.4	34.8	57.8	42.6
4명						
피임실천율	-	-	100.0	96.2	91.7	93.8
불임수술실천율	0.9	-	42.9	26.9	52.1	42.0
전체						
피임실천율	43.5	56.9	81.3	89.3	87.7	79.3
불임수술실천율	1.9	5.3	20.1	38.8	57.7	31.3

2. 婦人의 特性別 避妊實踐 目的

우리 나라 부인의 피임실천목적을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통하여 부인들의 出産行態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대상인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68.8%가 斷産을 目的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고,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7.4%, 그리고 건강이나 취업 또는 經濟的인 理由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表 4-9 參照). 따라서 피임실천부인의 약 87%가 斷産目的으로 피임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약 13%는 터울조절 및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으로 妊娠을 遲延시키기 위한 피임실천이었다.

地域別로는 斷産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3.7%포인트 높은 반면, 터울조절 및 건강, 취업, 경제적인 이유로 피임을 하는 경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각각 0.7%포인트, 2.0%포인트가 더 높았다. 따라서 지역간에 피임실천의 목적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읍·면부지역의 경우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이 斷産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젊은 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은 터울조절과 健康이나 就業 또는 經濟的인 理由 등으로 피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多樣的 避妊行態를 보여주었다.

婦人年齡別로는 15~24세, 25~29세 연령층에서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실천율은 각각 25.7%, 22.0%로 1997년의 28.5%, 22.7%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반면, 30~34세 연령층은 8.3%로 1997년의 5.4%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늦어지는데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15~29세 연령층에서는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실천이 많았으며, 35세 이상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斷産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教育水準別 피임실천목적도 교육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低年齡層에 속해있는 高學歷 수준의 부인일수록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은 반면, 高年齡層의 低學歷 부인은 斷産目的의 피임실천이 많았다. 즉,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11.8%는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84.7%는 斷産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表 4-9〉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避妊目的에 따른 避妊實態
(單位: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터울조절	단산	기타 ¹⁾		
전체	79.3	7.4	68.8	3.1	20.7	100.0(6,408)
지역						
동부	79.2	7.4	68.5	3.3	20.8	100.0(5,862)
읍·면부	80.2	6.7	72.2	1.3	19.8	100.0(546)
연령						
15~24세	43.5	25.7	13.6	4.2	56.5	100.0(214)
25~29세	57.0	22.0	28.2	6.8	43.0	100.0(1,221)
30~34세	81.3	8.3	68.0	5.0	18.7	100.0(1,573)
35~39세	89.3	0.8	87.5	1.0	10.7	100.0(1,788)
40~44세	87.7	0.1	86.9	0.7	12.3	100.0(1,612)
교육수준						
초교 이하	85.3	0.3	84.7	0.3	14.7	100.0(335)
중학교	88.9	0.7	87.6	0.6	11.1	100.0(810)
고등학교	78.4	7.2	67.7	3.5	21.6	100.0(3,445)
대학 이상	75.4	11.8	59.5	4.1	24.6	100.0(1,815)
현존자녀수						
0명	29.3	20.1	2.4	6.8	70.7	100.0(544)
1명	58.7	19.5	33.3	5.9	41.3	100.0(1,486)
2명	92.7	1.8	89.0	1.9	7.3	100.0(3,678)
3명	90.7	0.8	89.1	0.8	9.3	100.0(615)
4명 이상	92.7	-	92.7	-	7.3	100.0(82)

註: 1)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現存子女數는 부인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실천목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인은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터울조절과 斷産의 두 가지 목적이 混在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斷産爲主의 피임실천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임실천부인만을 대상으로 避妊目的을 보면 부인의 86.8%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고, 9.3%만이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0 參照).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은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후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그 목적이 斷産인지 또는 터울조절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터울조절 뿐만 아니라 斷産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避妊失敗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 계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별 피임실천 목적의 차이는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9.4%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8.2%보다 1.2%포인트가 높았다. 避妊方法別로는 동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19.5%), 콘돔(18.8%), 월경주기법(17.9%), 기타방법(20.6%)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15.4%), 콘돔(21.2%), 월경주기법(13.9%), 살정제(12.5%)등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0〉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の 避妊方法別 避妊目的
(單位: %)

피임방법	터울조절	단산	기타이유	계(수)
전국	9.3	86.8	3.9	100.0(5,075)
난관수술	-	99.9	0.1	100.0(1,178)
정관수술	0.2	99.2	0.6	100.0(830)
자궁내장치	7.3	87.4	5.3	100.0(875)
먹는 피임약	19.1	74.8	6.1	100.0(131)
콘돔	19.0	73.3	7.7	100.0(1,052)
살정제	8.8	91.2	-	100.0(35)
월경주기법	17.5	76.9	5.5	100.0(759)
기타	20.0	73.5	6.5	100.0(215)
동부	9.4	86.5	4.1	100.0(4,638)
난관수술	-	99.9	0.1	100.0(1,045)
정관수술	0.3	99.1	0.6	100.0(783)
자궁내장치	7.1	87.3	5.6	100.0(788)
먹는 피임약	19.5	74.6	5.9	100.0(118)
콘돔	18.8	73.4	7.8	100.0(986)
살정제	11.1	88.9	-	100.0(27)
월경주기법	17.9	76.0	6.1	100.0(687)
기타	20.6	72.5	6.9	100.0(204)
읍·면부	8.2	90.2	1.6	100.0(437)
난관수술	-	99.2	0.8	100.0(133)
정관수술	-	100.0	-	100.0(47)
자궁내장치	9.2	89.7	1.1	100.0(87)
먹는 피임약	15.4	76.9	7.7	100.0(13)
콘돔	21.2	74.2	4.5	100.0(66)
살정제	12.5	87.5	-	100.0(8)
월경주기법	13.9	84.7	1.4	100.0(72)
기타	9.1	90.9	-	100.0(11)

3. 現 使用避妊方法에 대한 滿足與否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의 78.1%가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률은 9.2%,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부인은 12.7%이었다(表 4-11 參照). 滿足度を 1997년과 비교하면 만족하는 경우가 4.9%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경우와 불만족하는 경우는 감소하여 만족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현 사용피임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반면, 동부지역의 경우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부인과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읍·면부지역보다 더 많았다.

滿足度は 避妊方法別로 差異를 보이는데 불임수술 중 정관수술이 93.6%로 가장 높고, 난관수술이 87.9%, 자궁내장치 83.0% 순이었으며, 기타방법이 58.6%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즉, 永久的避妊方法인 불임수술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半永久的 避妊方法인 자궁내장치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一時的 避妊方法의 만족도는 불임수술이나 자궁내장치 보다 낮아서, 우리 나라 부인의 경우 불임수술이나 자궁내장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不滿足度は 살정제 사용자가 20.6%로 가장 높았고, 기타방법이 20.0%,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먹는 피임약으로 16.0%의 不滿足率을 보였다.

地域別 피임방법에 대한 滿足度は 다르게 나타났다. 즉, 洞部地域의 경우 읍·면부지역보다 높은 만족률을 보인 피임방법은 난관수술, 콘돔 등이었고, 邑·面部地域의 경우는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월경주기법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기타방법은 두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表 4-11〉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의 避妊方法別 滿足度 및 不滿足 理由

(單位: %)

피임방법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계(수)
			소계	부작용	임신 염려	기타	
전국	78.1	12.7	9.2	2.5	5.1	1.6	100.0(5,075)
난관수술	87.9	6.5	5.5	4.3	-	1.2	100.0(1,178)
정관수술	93.6	4.0	2.4	1.2	-	1.2	100.0(830)
자궁내장치	83.0	9.0	8.0	6.2	0.8	1.0	100.0(875)
먹는 피임약	66.4	17.6	16.0	8.0	1.6	6.4	100.0(131)
콘돔	67.0	21.8	11.2	0.1	8.3	2.8	100.0(1,052)
살정제	67.6	11.8	20.6	-	14.7	5.9	100.0(35)
월경주기법	63.8	20.1	16.1	0.3	15.7	0.1	100.0(759)
기타	58.6	21.4	20.0	-	18.6	1.4	100.0(215)
동부	78.0	12.7	9.3	2.5	5.2	1.6	100.0(4,638)
난관수술	88.2	6.5	5.3	4.1	-	1.2	100.0(1,045)
정관수술	93.5	4.0	2.6	1.3	-	1.3	100.0(783)
자궁내장치	82.9	9.1	8.0	6.3	0.8	0.9	100.0(788)
먹는 피임약	64.7	18.5	16.8	8.4	1.7	6.7	100.0(118)
콘돔	67.2	21.2	11.6	0.2	8.4	3.0	100.0(986)
살정제	66.7	11.1	22.2	-	14.8	7.4	100.0(27)
월경주기법	63.0	20.7	16.3	0.1	16.1	0.1	100.0(687)
기타	58.3	21.6	20.1	-	19.1	1.0	100.0(204)
읍·면부	79.6	12.1	8.3	3.4	3.4	1.5	100.0(437)
난관수술	85.0	6.8	8.2	6.0	-	2.2	100.0(133)
정관수술	97.8	2.2	-	-	-	-	100.0(47)
자궁내장치	84.1	8.0	7.9	5.2	-	2.7	100.0(87)
먹는 피임약	84.6	7.7	7.7	7.7	-	-	100.0(13)
콘돔	62.7	31.3	6.0	-	6.0	-	100.0(66)
살정제	71.4	14.3	14.3	-	14.3	-	100.0(8)
월경주기법	71.8	14.1	14.1	2.6	11.5	-	100.0(72)
기타	58.3	25.0	16.7	-	8.4	8.3	100.0(11)

不滿足한 理由로는 임신염려가 5.1%로 가장 높았고, 부작용 2.5% 그리고 기타 이유를 응답한 경우가 1.6%이었다. 避妊方法別 不滿足

理由로는 기타방법, 월경주기법, 살정제, 콘돔 등은 妊娠念慮로 인한 불만족률이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자궁내장치, 난관수술 등은 副作用을 우려한 불만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는 임신을 우려한 불만족률이 높았고, 난관수술이나 자궁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작용을 우려한 불만족이 높았으며, 그리고 정관수술의 경우 영구불임이면서도 불만족률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表 4-11 參照).

4. 現使用 避妊方法에 대한 繼續 使用意向 및 選好避妊方法

非永久的 避妊方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向後 使用意向 및 앞으로 피임방법을 바꾸려는 부인이 選好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의 사용상의 不便, 不滿足, 副作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임방법 별 향후 需要를 把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 피임방법을 繼續 使用할 意向을 가진 부인은 71.3%이었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22.3%,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6.4%이었다. 避妊方法別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86.2%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기타 피임방법의 사용부인은 48.1%만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表 4-12 參照).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은 기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인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사용부인 26.5%, 콘돔 및 월경주기법 사용부인도 각각 25.8%, 25.5%로 나타났다, 반면에 살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인은 8.8%만이 변경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

방법은 정관수술이 6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 15.8%, 난관수술 8.3%, 콘돔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방법은 낮은 비율을 보여 향후 피임방법을 바꾸고자 하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使用上의 不便 및 失敗妊娠의 위험이 낮은 영구피임방법 및 자궁내장치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表 4-12〉 15~44歲 有配偶婦人 中 非永久的 避妊實踐婦人의 方法別 繼續 使用意向 및 變更希望 避妊方法

(單位: %)

구 분	현 사용 피임방법						전체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향후 계속사용 의향							
계속 사용하겠음	86.2	64.4	67.2	82.4	67.0	48.1	71.3
그저 그렇음	3.2	9.1	7.0	8.8	7.5	10.7	6.4
바꾸겠음	10.6	26.5	25.8	8.8	25.5	41.2	2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75)	(131)	(1,052)	(35)	(759)	(215)	(3,067)
변경희망 피임방법 ¹⁾							
난관수술	13.0	17.1	6.2	25.0	6.8	9.0	8.3
정관수술	68.5	57.1	64.8	-	60.9	64.0	63.4
자궁내장치	1.1	20.0	16.5	75.0	18.2	19.1	15.8
먹는 피임약	2.2	-	1.1	-	-	-	0.7
콘돔	2.2	2.9	-	-	4.7	2.2	2.0
살정제	-	-	-	-	-	-	-
월경주기법	-	-	0.4	-	-	-	0.1
기타	-	-	-	-	-	-	-
미결정	12.0	2.9	9.9	-	7.8	5.6	8.6
난관 또는 정관	1.1	-	1.1	-	1.6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2)	(35)	(271)	(*)	(194)	(89)	(685)

註: 1)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별 향후 사용희망 피임방법을 보면 현재 살

정제를 사용하는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임방법사용부인들은 정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자궁내장치를 사용중인 부인은 68.5%, 먹는 피임약 57.1, 콘돔 64.8%, 월경주기법 60.9%, 기타 방법 사용부인은 64.0%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살정제를 사용하는 부인은 자궁내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75.0%이었으며 그 다음은 난관수술로 25.0%이었다.

5. 使用避妊方法의 費用負擔

정부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엄청난 물량으로 피임보급을 하였다. 그러나 自費에 의한 피임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의료보험을 통하여 피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制度化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피임보급 물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自費에 의한 실천을 유도하여 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피임방법에는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그리고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²³⁾ 따라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수용자, 醫療保險에 의한 피임수용자, 그리고 自費에 의한 피임수용자 등이다.

2000년 현재 卵管手術에 의하여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50.6%가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실천을 하고 있었으며, 자비부담에 의한 수용자는 38.5%, 의료보험에 의한 실천자는 10.7%이었다. 이와 같이 난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은 政府依存度가 높았는데, 이는 과거에 정부지원에 의하여 난관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累積되어 있기 때문이다(表 4-13 參照).

23) 2000년 현재 정부에서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일부계층에만 정부지원으로 보급하고, 대부분에게는 自費로 誘導하고 있으며, 자궁내장치는 약 1/3인 2,000원을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콘돔과 먹는 피임약은 허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급 수수료로써 각각 200원과 230원을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表 4-13〉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の 避妊方法別 費用負擔實態
(單位: %)

피임방법	정부지원	의료보험	자비부담	기타	계(수)
전국					
난관수술	50.6	10.7	38.5	0.2	100.0(1,178)
정관수술	58.7	8.2	33.1	-	100.0(830)
자궁내장치	9.1	5.7	85.1	0.1	100.0(875)
콘돔	1.5	-	91.4	7.1	100.0(1,052)
먹는 피임약	-	-	100.0	-	100.0(131)
동부					
난관수술	49.2	11.1	39.6	0.2	100.0(1045)
정관수술	58.5	8.0	33.6	-	100.0(783)
자궁내장치	9.3	5.4	85.3	-	100.0(788)
콘돔	1.6	-	91.1	7.4	100.0(986)
먹는 피임약	-	-	100.0	-	100.0(118)
읍·면부					
난관수술	62.0	8.5	29.5	-	100.0(133)
정관수술	60.5	14.0	25.6	-	100.0(47)
자궁내장치	6.9	9.2	82.8	1.1	100.0(87)
콘돔	1.6	-	95.3	3.1	100.0(66)
먹는 피임약	-	-	100.0	-	100.0(13)

精管手術에 의한 피임실천자 중 政府支援에 의한 수용자는 58.7%이었고, 자비부담 33.1%, 의료보험 8.2%로 정부의존도가 높았다. 자궁내장치는 정부지원에 의한 수용자가 9.1%로 불임수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비부담에 의한 수용자는 85.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자궁내장치는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한 수용자가 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며, 정부지원에 의한 수용자의 비율은 1997년의 13.2%에 비해 4.1%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리고 콘돔사용자의 91.4%, 먹는 피임약 사용자의 100.0%가 약국 등에서 自費로 購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임실천을 하고 있는 부인의 사용피임방법별 費用負擔狀態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불임수술 수용자의 경우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

이 동부지역의 거주부인에 비하여 政府依存度가 높았다. 즉, 난관수술의 경우 읍·면부지역 피임실천부인이 동부지역 피임실천부인보다 12.8%포인트나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정관수술은 2.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費用負擔形態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던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에 따라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減少하는 반면, 自費負擔率이 上昇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주요 피임방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卵管手術에 의한 피임실천부인의 비용부담 분포는 정부지원에 의한 실천자가 1991년 82.2%에서 2000년 50.6%로 31.6%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대조적으로 자비부담에 의한 피임실천은 1991년 4.6%에서 2000년 33.9%포인트가 상승한 38.5%로 크게 증가하였다(表 4-14 參照).

精管手術受容者 중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1991년 87.7%에서 2000년 58.7%로 29.0%포인트가 감소하였고, 자비부담은 1991년 1.9%에서 2000년 33.1%로 31.2%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난관수술수용자에 비해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子宮內裝置受容者의 비용부담 형태는 불임수술수용자의 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政府支援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1991년 47.5%에서 2000년 9.1%로 38.4%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自費負擔率은 1991년 6.0%에서 2000년 85.1%로 79.1%포인트가 증가하여 자궁내장치에 의한 피임실천자는 자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보급물량의 감소에 따라 인근 병·의원에서 자궁내장치시술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14〉 15~44歲 有配偶 避妊實踐婦人의 避妊方法別 費用負擔 實態의 年度別 推移

(單位: %)

피임방법 및 연도	정부지원	의료보험	자비부담	기타	계
난관수술					
1991 ¹⁾	82.2	5.7	4.6	2.4	100.0
1994 ²⁾	74.9	10.8	17.2	2.1	100.0
1997 ³⁾	57.5	14.0	25.9	2.6	100.0
2000 ⁴⁾	50.6	10.7	38.5	0.2	100.0
정관수술					
1991	87.7	8.7	1.9	1.7	100.0
1994	76.7	4.0	11.9	7.4	100.0
1997	68.5	8.3	18.7	4.5	100.0
2000	58.7	8.2	33.1	-	100.0
자궁내장치					
1991	47.5	45.2	6.0	1.3	100.0
1994	32.6	6.0	60.6	0.8	100.0
1997	13.2	8.9	76.8	1.1	100.0
2000	9.1	5.7	85.1	0.1	100.0

- 資料: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본 조사결과

6. 結婚에서 不妊手術 受容時까지의 所要期間

결혼후 不妊手術 受容時까지의 기간분포 차이는 平均 所要期間에서 잘 보여준다. 불임수술수용부인의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5.3년이었다. 期間別로 보면 불임수술수용 부인 중 47.9%가 5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39.2%는 5~9년 사이에, 8.6%는 10~

14년 사이에, 15년 이상이 소요된 부인은 1.7%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자의 대부분이 결혼 후 10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表 4-15 參照).

不妊手術 方法別 결혼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所要期間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간에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난관수술을 수용한 부인은 결혼후 5.1년이, 정관수술을 수용한 경우는 결혼후 5.6년이 소요되어 0.5년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期間別로 보면 난관수술의 경우 결혼 후 5년 이내인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8%, 5~9년이 38.8%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관수술은 5년 이내가 43.8%, 5~9년이 39.7%로 나타났다. 이를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 후 5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실천한 비율이 난관수술의 경우 45.1%, 정관수술은 46.5%이어서 난관수술의 경우는 결혼 후 受容時期가 빨라진 반면, 정관수술 수용자는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地域別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후 5년 이내에 난관수술을 받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50.8%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50.4%보다 높았다. 그러나 결혼후 5년 이내에 정관수술을 받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43.7%인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44.7%로 나타나 읍·면부지역이 1.0%포인트 높았다. 이를 과거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1997년에는 5년 이내에 난관수술을 받은 비율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46.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40.7%이었고, 5년 이내에 정관수술을 수용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43.7%,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54.2%이었다. 따라서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卵管手術의 受容時期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 精管手術은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15〉 15~44歲 有配偶 不妊手術 實踐婦人の 結婚에서 不妊手術 受容時까지의 所要期間別 分布¹⁾

(單位: %, 년)

현 사용 피임방법	5년 이내	5~9년	10~14년	15년 이상	모르겠음	계(수)	평균 소요기간
전국	47.9	39.2	8.6	1.7	2.6	100.0(2,008)	5.3
난관수술	50.8	38.8	7.7	1.3	1.4	100.0(1,178)	5.1
정관수술	43.8	39.7	9.8	2.3	4.4	100.0(830)	5.6
동부	47.7	39.6	8.3	1.8	2.5	100.0(1,828)	5.1
난관수술	50.8	39.3	7.2	1.4	1.4	100.0(1,045)	5.1
정관수술	43.7	39.9	9.9	2.4	4.1	100.0(783)	5.3
읍·면부	48.9	35.4	11.2	1.1	3.4	100.0(180)	5.6
난관수술	50.4	35.1	12.2	0.8	1.5	100.0(133)	5.6
정관수술	44.7	36.2	8.5	2.1	8.5	100.0(47)	5.4

註: 1) 불임시술년도가 결혼년도보다 빠른 경우는 제외함.

地域別로 보면 불임수술 수용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동부지역 거주 부인은 5.1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6년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0.5년 빠르게 수용하였다. 그리고 卵管手術의 수용시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5.1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6년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다소 수용시기가 빨랐다. 한편 精管手術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3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4년으로 지역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第 3 節 避妊非實踐實態

本節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부인을 중심으로 避妊非實踐 樣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피임중단 및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避妊中斷時 使用했던 避妊方法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 사용한 피임방법을 보면, 콘돔이 3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5.2%, 자궁내장치 19.6%의 順이었다. 그 이외에도 먹는 피임약 9.6%, 기타 방법은 8.8%, 살정제 및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를 1997년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피임방법은 月經週期法(20.2%)과 其他 方法(3.3%)으로 각각 5.0%포인트, 5.5%포인트가 上昇하였으며, 콘돔을 제외한 그 외의 피임방법은 다소 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地域別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일시적 피임방법인 먹는 피임약, 기타 방법 및 정관수술 등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콘돔, 자궁내장치, 월경주기법 및 난관수술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年齡別로는 15~2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을 사용했던 부인이 53.7%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월경주기법은 26.8%로, 콘돔과 월경주기법을 사용했던 부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相對的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다(表 4-16 參照). 25~29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40.1%로 가장 많았고, 월경주기법 26.4%, 기타 방법 13.8%, 자궁내장치 11.2%의 順으로, 기타 방법 사용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3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35.8%, 월경주기법이 24.3%로 平均水準을 보였고, 자궁내장치는 25.7%로 平均 以上 水準이었다.

〈表 4-16〉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過

去使用 最終 避妊方法

(單位: %)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계(수)
전체 지역	1.2	0.5	19.6	9.6	33.7	1.4	25.2	8.8	100.0(647)
동부 읍·면부	1.2	0.5	18.9	9.7	33.6	1.7	25.1	9.3	100.0(597)
연령									
15~24세	-	-	4.9	7.3	53.7	2.4	26.8	4.9	100.0(41)
25~29세	-	-	11.2	8.2	40.1	0.4	26.4	13.8	100.0(269)
30~34세	0.7	-	25.7	4.7	35.8	1.4	24.3	7.4	100.0(148)
35~39세	4.6	-	27.6	13.8	20.7	1.1	25.3	6.9	100.0(87)
40~44세	2.9	2.9	32.4	17.6	16.7	3.9	22.5	1.0	100.0(102)

35~39세 연령층은 자궁내장치가 27.6%로 가장 높았고, 월경주기법 25.3%, 콘돔 20.7%, 먹는 피임약은 13.8% 順이었으며, 난관수술은 4.6%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40~44세 연령층은 자궁내장치와 먹는 피임약, 살정제는 각각 32.4%, 17.6%, 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고, 콘돔은 16.7%, 월경주기법은 22.5%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2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콘돔과 월경주기법에 偏重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轉換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자궁내장치,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을 사용했던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避妊中斷 및 無經驗의 理由

2000년 조사결과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20.7%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10.1%,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0.6%이었다.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경우가 60.0%로 피임을 중단한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다. 다음은 피임의 永久的 不必要 10.0%, 피임의 一時的 不必要 9.1%, 失敗妊娠 7.9%, 副作用 4.6%, 그리고 使用上 不便 2.9%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62.6%, 부작용은 9.3%, 피임이 영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는 각각 6.7%, 7.3%, 실패임신 6.5%, 사용상 불편 4.5%로 임신을 원하거나 부작용,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은 減少한 반면, 피임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및 실패임신 등은 增加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妊娠希望, 避妊의 永久的 不必要, 使用上 不便 등의 이유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失敗妊娠, 避妊의 一時的 不必要, 副作用 등으로 중단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읍·면부지역 부인이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피임효과가 不確實한 一時的 避妊方法으로 나타난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다.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避妊 無經驗理由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7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自然不妊인 경우가 11.6%, 그리고 피임이 一時的으로 不必要하기 때문에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인은 6.9%이었다. 이를 1997년과 비교하면 자녀를 원

하거나 피임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감소하는 대신에,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자연불임인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하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自然不妊, 避妊 不必要, 避妊知識 不足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表 4-17〉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中斷 및 無經驗婦人의 比率과 理由

(單位: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부인 중 피임중단 부인의 비율(수)	10.1 (650)	10.2 (600)	9.2 (50)
피임중단 이유			
임신 원함	60.0	60.5	54.0
실패 임신	7.9	7.4	14.0
자연 배출	1.3	1.2	2.0
사용상 불편	2.9	3.2	-
피임 영구 불필요	10.0	10.4	6.0
피임 일시 불필요	9.1	9.0	10.0
부작용	4.6	4.3	8.0
기타	4.2	4.0	6.0
계	100.0	100.0	100.0
전체부인중 피임 무경험 부인의 비율(수)	10.6 (682)	10.6 (624)	10.6 (58)
피임무경험 이유			
자연 불임	11.6	10.8	19.3
자녀 원함	77.9	78.7	70.1
피임 일시 불필요	6.9	6.9	7.0
피임지식 부족	0.9	0.8	1.8
기타	2.7	2.8	1.8
계	100.0	100.0	100.0

3. 向後 避妊實踐 意向 및 選好 避妊方法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들의 向後 避妊實踐 意向을 살펴 보면, 45.0%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37.2%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7.8%이었다.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4.9%로 9.9%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26.3%로 10.9%포인트가 증가하였다(表 4-18 參照).

이를 과거에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과 경험이 없는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中斷婦人이 55.5%, 無經驗婦人이 34.7%로 중단부인이 무경험부인보다 20.8%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중단부인이 31.4%, 무경험부인이 42.8%로 무경험부인이 11.4%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여서,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향후 實踐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실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인의 비율은 중단부인의 경우 13.1%, 무경험부인은 22.5%로 피임실천에 있어서 과거 피임경험자보다는 피임무경험자가 消極的인 態度를 보였다.

地域別로 보면,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동부지역이 44.9%, 읍·면부지역이 46.3%로 읍·면부지역이 약간 높았다. 과거 피임경험이 있는 중단부인과 경험이 없는 미실천부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단부인의 경우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60.0%로 동부지역보다 4.8%포인트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무경험부인은 동부지역의 경우 34.9%의 부인이 실천 할 의향을 보여 읍·면부지역보다 0.4%포인트가 높았다.

〈表 4-18〉 15~44歲 現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非實踐婦人の 向後 實踐意向

(單位: %)

향후 피임실천의 향	전국			동부			읍·면부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실천할 예정	55.5	34.7	45.0	55.2	34.9	44.9	60.0	34.5	46.3
모르겠음	13.1	22.5	17.8	12.8	21.9	17.4	16.0	27.6	22.2
실천하지 않겠음	31.4	42.8	37.2	32.0	43.2	37.7	24.0	37.9	3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50)	(682)	(1,332)	(600)	(624)	(1,224)	(50)	(58)	(108)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 중 향후 실천하겠다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效果的인 避妊管理를 위하여 중요하다. 이는 피임실천자의 계속 사용여부 또는 변경희망 피임방법으로도 알 수 있으나, 피임비실천부인 중 향후 실천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사용희망 피임방법을 파악함으로써 效率的인 接近方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나 向後 實踐할 意向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이 31.1%로 가장 높아서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관수술 수용률이 향후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示唆한다. 다음으로 사용희망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로 18.0%가 선호하고 있었고, 콘돔 15.6%, 월경주기법 7.6%, 난관수술 6.1% 등의 順이었다. 또한 향후 피임실천의 의향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2.6%나 있었다(表 4-19 參照).

選好하는 避妊方法은 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피임방법의 실천율은 다소 相異한 양상을 보였다. 즉, 두 지역 모두 가장 選好하는 피임방법은 男性避妊方法인 정관수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女性避妊方法인 자궁내장치와 난관수술이었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현재 정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3.0%에 불과하나 피임비실천자의 정관수술 이용희망률이 31.2%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이의 需要가 急増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정관수술 31.0%, 자궁내장치 18.2%, 콘돔 15.8% 등의 順으로 선호하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정관수술 31.2%, 난관수술 14.6%, 자궁내장치 14.6%, 콘돔 12.5% 등의 順으로 선호하였다. 地域間에 選好度의 差異를 보이는 피임방법으로는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콘돔 등이었는데, 난관수술의 경우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의 희망률이 9.2%포인트 높았으며, 자궁내장치와 콘돔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각각 3.6%포인트, 3.3%포인트나 높은 利用希望率을 보였다.

〈表 4-19〉 15~44歲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希望婦人의 選好 避妊方法

(單位: %)

선호피임방법	전국	동부	읍·면부
난관수술	6.1	5.4	14.6
정관수술	31.1	31.0	31.2
난관 혹은 정관	3.1	3.0	4.2
자궁내장치	18.0	18.2	14.6
먹는 피임약	2.7	2.8	2.1
콘돔	15.6	15.8	12.5
살정제	0.5	0.6	-
월경주기법	7.6	7.8	6.2
기타	2.7	2.8	2.1
방법미결정	12.6	12.6	12.5
계	100.0	100.0	100.0
(수)	(594)	(5,441)	(5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 등 효과적인 피임방법이 높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避妊失敗의 憂慮가 있는 콘돔,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을 이용하겠다는 부인도 상당히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들 부인과 아직 피임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부인들에 대하여 안전한 피임법 사용에 대한 弘報 및 啓蒙이 強化되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효과적 피임방법으로 誘導하기 위한 政策的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임을 實踐할 意向이 없는 부인들이 피임을 하지 않으려는 理由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37.9%로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자연불임이 36.3%,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17.7%, 그리고 기타 사유로 피임을 하지 않겠다는 부인도 8.1%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체 避妊非實踐婦人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37.2%)의 54.0%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20 參照).

〈表 4-20〉 15~44歲 避妊非實踐 有配偶婦人 中 避妊不願婦人의 理由
(單位: %)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피임 불필요 ¹⁾	17.7	17.9	14.7
자연불임 ²⁾	36.3	34.8	55.9
자녀 원함	37.9	39.6	14.7
기타	8.1	7.7	14.7
계	100.0	100.0	100.0
(수)	(491)	(457)	(34)

註: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궁적출이나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동부지역과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17.9%, 14.7%로 3.2%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自然不妊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5.9%)이 동부지역 거주부인(34.8%)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第 4 節 妊娠露出狀態 및 子女希望與否別 避妊實態

1. 妊娠露出狀態

가임능력이 있는 유배우부인들의 妊娠可能與否를 일정 시점에서 살펴보면, 妊娠不可能 부인과 妊娠可能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은 불임수술에 의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자연불임상태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현재 임신중인 부인, 현재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중인 부인, 그리고 임신은 가능하나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妊娠露出狀態를 살펴보면 妊娠不可能狀態에 있는 부인은 35.4%,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4.6%이었다. 妊娠不可能한 婦人에는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 31.3%, 자연불임인 부인 2.7%,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 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妊娠可能婦人에는 일시피임실천중에 있는 부인 47.9%, 피임비실천중인 부인 11.0%, 현재 임신 중인 부인 5.7%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현재 妊娠危險에 露出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11.0%로 이는 현재 임신이 가능하면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다(表 4-21 參

照). 그러나 이들 부인 가운데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放任常態에 있는 부인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 피임비실천 부인 중 약 69.0%²⁴⁾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중단하거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도 약 8.0%²⁵⁾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임을 필요로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放任婦人集團’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신노출상태를 1997년과 비교하면, 임신불가능한 부인은 1997년에 비하여 4.9%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는 政府의 不妊手術 普及量의 減少에 따라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감소한 반면 一時的 避妊方法에 의한 實踐率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不妊手術 受容의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3.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1.8%포인트가 높은 반면, 一時的 避妊方法을 사용하거나 避妊非實踐中인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각각 0.6%포인트,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表 4-21 參照).

年齡別 妊娠露出狀態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불가능한 상태의 부인이 증가하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15~24세 연령층에서는 일시적 방법에 의한 피임실천부인이 41.8%, 피임비실천 부인이 31.4%,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이 24.4%로 임신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97.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5~29세 연령층에서 妊娠可能한 狀態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94.7%로 나타

24) 피임중단부인의 60.0%가, 피임무경험부인의 77.9%가 자녀를 위하여 피임을 하지 않고 있었음.

25) 피임중단부인의 9.1%가, 피임무경험부인의 6.9%가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었음.

났으며, 35~39세 연령층에서는 불임수술수용 부인이 38.7%, 임신불가능이 1.2%, 자연불임이 4.0%로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이 43.9%로 임신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그리고 40~44세 연령층에서는 妊娠不可能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이 66.6%로 훨씬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妊娠露出狀態

(單位: %)

특성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수)
	불임수술 수용	임신 ¹⁾ 불가능	자연 ²⁾ 불임	현재 임신중	피임 실천중	피임 비실천	
전체	31.3	1.4	2.7	5.7	47.9	11.0	100.0(6,408)
지역							
동부	31.2	1.4	2.7	5.6	47.9	11.2	100.0(5,862)
읍·면부	33.0	0.9	3.5	6.0	47.3	9.3	100.0(546)
연령							
15~24세	1.9	-	0.5	24.4	41.8	31.4	100.0(214)
25~29세	5.2	0.1	-	17.8	51.7	25.2	100.0(1,221)
30~34세	20.1	0.4	1.2	5.0	61.1	12.2	100.0(1,573)
35~39세	38.7	1.2	4.0	0.6	50.5	5.0	100.0(1,788)
40~44세	57.7	3.6	5.3	0.2	30.0	3.2	100.0(1,612)
현존자녀수							
0명	0.4	0.6	4.0	30.3	28.7	36.0	100.0(544)
1명	11.7	1.6	6.3	11.2	47.0	22.2	100.0(1,486)
2명	41.7	1.3	1.3	0.8	51.0	3.9	100.0(3,678)
3명	42.5	2.0	2.4	0.2	48.4	4.5	100.0(615)
4명 이상	42.7	-	1.2	-	50.0	6.1	100.0(82)

註: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現存子女數別 妊娠露出狀態도 연령과 同一한 현상을 보였다. 즉,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불가능한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부인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수가 적고, 높아질수록 자녀가 많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피임보급대상부인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피임보급 및 관련 홍보계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임 실천상태를 避妊實踐과 避妊非實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避妊非實踐常態에 있는 부인 중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5.7%, 자연불임인 부인이 2.7%,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2.4%,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1.4%, 기타이유가 8.7% 등이었다. 따라서 현재 妊娠露出常態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자녀를 원하거나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로 11.1%에 해당된다(表 4-22 參照).

〈表 4-22〉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避妊普及對象者 (單位: %)

특성	피임실천		피임비실천 : 이유					계(수)
	불임수술 수용	일시적 피임방법 수용	임신 ¹⁾ 불가능	자연 ²⁾ 불임	현재 임신중	자녀 희망	기타	
전체	31.3	47.8	1.4	2.7	5.7	2.4	8.7	100.0(6,408)
지역								
동부	31.2	47.9	1.4	2.7	5.6	2.6	8.6	100.0(5,862)
읍·면부	33.0	47.3	0.9	3.5	6.0	0.7	8.6	100.0(546)
연령								
15~24세	1.9	41.8	-	0.5	24.4	9.0	22.4	100.0(214)
25~29세	5.2	51.7	0.1	-	17.8	4.5	20.7	100.0(1,221)
30~34세	20.1	61.1	0.4	1.2	5.0	2.9	9.3	100.0(1,573)
35~39세	38.7	50.5	1.2	4.0	0.6	1.6	3.4	100.0(1,788)
40~44세	57.7	30.0	3.6	5.3	0.2	0.2	3.0	100.0(1,612)
현존자녀수								
0명	0.4	28.7	0.6	4.0	30.3	11.0	25.0	100.0(544)
1명	11.7	47.0	1.6	6.3	11.2	5.4	16.8	100.0(1,486)
2명	41.7	51.0	1.3	1.3	0.8	0.3	3.6	100.0(3,678)
3명	42.5	48.4	2.0	2.4	0.2	0.3	4.2	100.0(615)
4명 이상	42.7	50.0	-	1.2	-	1.2	4.9	100.0(82)

註: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그런데 이 중 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타 이유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8.7%의 부인을 피임보급 대상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중에는 産後無月經期間으로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남편의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임신이 불필요한 부인을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8.7%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2. 子女希望與否別 避妊實踐與否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에서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妊娠의 危險에 露出된 대상은 <表 4-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임수술수용(31.3%), 임신불가능(1.4%), 자연불임(2.7%), 현재 임신중(5.7%)인 부인 등을 제외한 부인(58.9%)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追加子女 希望與否에 따른 피임실천여부를 파악코자하기 때문이다.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圖 4-1] 과 같이 요약된다. 여기서 앞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2.9%였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68.5%,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3.3%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集中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圖 4-1] 15~44歲 有配偶婦人 中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의 追加子女 希望與否別 避妊實踐狀態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 실천 여부	실천(+)	A(13.3%)	B(68.5%)	81.8%
	비실천(-)	C(12.9%)	D(5.3%)	18.2%
		26.2%	73.8%	100.0%

이와 같은 A, B, C, 그리고 D 집단을 부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로 살펴보면 <表 4-23>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²⁶⁾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避妊普及對象인 자녀를 원치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5.4%)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7%)보다 약간 많았다.

年齡別로는 15~24세 연령층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층이 집중되어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원치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25~2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6.7%), 40~44세 연령층(6.3%)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었다. 따라서 25~29세, 40~44세 연령층에 대한 特別한 管理가 뒤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現存子女數別로는 연령과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피임보급대상층은

26) 이들 부인은 자녀의 터울조절하기 위하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여,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7.0%,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8.7%나 되어 危險集團임을 나타냈다.

〈表 4-23〉 15~44歲 有配偶婦人¹⁾의 特性別 子女追加 希望與否 및 避妊實踐

(單位: %)

특성	자녀희망 피임실천 (A)	자녀비희망 피임실천 (B)	자녀희망 피임비실천 (C)	자녀비희망 피임비실천 (D)	계(수)
전체	13.3	68.5	12.9	5.3	100.0(3,538)
지역					
동부	13.4	68.1	13.0	5.4	100.0(3,242)
읍·면부	11.1	72.3	11.8	4.7	100.0(296)
연령					
15~24세	40.8	17.0	36.1	6.1	100.0(147)
25~29세	32.9	33.1	27.3	6.7	100.0(847)
30~34세	11.2	72.3	11.8	4.7	100.0(1,048)
35~39세	1.0	90.8	3.8	4.3	100.0(968)
40~44세	0.8	90.9	2.1	6.3	100.0(528)
현존자녀수					
0명	41.3	2.6	53.8	2.3	100.0(344)
1명	30.4	36.8	27.3	5.5	100.0(894)
2명	2.7	90.5	1.3	5.4	100.0(1,939)
3명	0.6	91.7	0.6	7.0	100.0(315)
4명 이상	-	89.1	2.2	8.7	100.0(46)
교육수준					
초교이하	-	83.0	5.3	11.7	100.0(94)
중학교	1.3	89.2	4.8	4.8	100.0(314)
고등학교	12.8	68.0	13.0	6.1	100.0(1,972)
대학이상	18.3	62.5	15.6	3.6	100.0(1,156)

註: 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불임상태(4.1%),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31.3%) 및 현재 임신 중인 경우(5.7%) 등을 제외한 부인, 즉,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58.9%)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教育水準別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희

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였다. 이는 高學歷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出産期間이 遲延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危險集團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第 5 節 避妊受容實態 變化의 示唆點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避妊實踐率은 79.3%로 1997년보다 1.2%포인트가 감소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임신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避妊實踐率의 限界를 약 80% 전후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 人口增加抑制政策이 廢止되어 人口資質政策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避妊實踐이 普遍化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本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임실태와 관련된 特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하나는 女性避妊方法인 난관수술에서 男性避妊方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轉換되는 추세인데, 이는 性平等的인 價値觀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다. 다른 하나는 永久的인 피임방법에서 一時的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다 할 수 있으나 斷産을 한 부인들도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避妊失敗의 可能性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특징은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 가운데 不滿足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不滿足의 主要 理由로 나타나는 것은 피임의 부작용, 임신염려 등이었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質的인 측면이 보다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피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임을 適時에 사용할 수 있도록 情報提供 및 避妊서비스의 接近性を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弘報啓蒙, 相談 등을 強化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의 특징은 피임수용 費用負擔으로 1989년 이후 정부지원이 크게 감소되면서 정부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自費負擔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에 의한 보급으로 그 동안 우리 나라 부인들이 선호해온 불임수술은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반면에 콘돔, 자궁내장치, 월경주기법 등의 실천율이 높아져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인들은 避妊脆弱階層으로 脫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 부인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효과적 피임방법 사용자에게 대한 效果的 避妊方法 사용으로의 誘導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피임취약계층에 대한 政府支援 避妊普及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 5 章 人工妊娠中絶實態

人工妊娠中絶은 ‘胎兒가 母體 밖에서 生命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胎兒와 그 附屬物을 人工的으로 母體 밖으로 排出시키는 행위’로서 人工流産이라고도 한다. 특히 人工임신중절은 自然流産, 死産 등과 함께 妊娠消耗의 한 形態로서의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自然유산 및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임에 반하여 人工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人爲的으로 결정되는 임신중절의 형태라는 점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人口 및 開發에 관한 國際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는 女性의 出産權 및 出産健康(Reproductive Health)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出産間隔, 出産時期 및 子女數의 決定, 출산조절을 위한 家族計劃 情報의 接觸과 避妊方法의 자유로운 選擇 등을 女性의 出産權으로 보는 것을 전체 참석국가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胎兒는 생성중에 있는 존중되어야 할 生命體이기 때문에 人工妊娠中絶은 女性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단체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人工妊娠中絶은 낮은 피임접근성, 비효과적 피임방법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피임실패임신 또는 불원임신의 事後手段이 人工임신중절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難題라고 하겠다.

1953년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의하여 人工임신중절행위를 不法化하였으나, 많은 여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에 의하여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死文化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당사자와 의료인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母子保健法을 制定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셋째, 強姦 또는 準強姦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血族 또는 親戚間에 임신된 경우; 마지막으로, 妊娠의 지속이 保健學的 理由로 母體의 健康을 심히 害하고 있거나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刑法 및 母子保健法에 의하면 社會·經濟的 理由에 의한 人工妊娠中絶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된 1962년이래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한 수단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부인에게 월경조절술(Menstruation Regulation, MR)이라는 이름아래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크게 성행하게 되어 피임실천율 증가, 초혼연령 상승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우리 사회에 유입됨으로써 未婚女性의 인공임신중절이 널리 성행되고 있어 전체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그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少子女觀의 정착과 함께 胎兒의 性鑑別을 통한 選別的 人工妊娠中絶이 자행되고 있어 人工妊娠中絶 자체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性比不均衡이라는 또 하나의 社會問題를 惹起하기도 한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 수용이유, 그리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등을 부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第 1 節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人工妊娠中絶率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人工妊娠中絶을 하는 횟수를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既婚婦人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과거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0~44세 유배우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表 5-1>은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최근 우리 나라 婦人의 人工妊娠中絶은 다행스럽게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즉,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차원의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0년을 정점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의 人工妊娠中絶率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表 5-1>의 인공임신중절률의 변동추이에서 잘 보여 준다.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주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의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6년 79, 1999년 53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동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여전히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4세 연령층의 避妊實踐率이 다른 연령층 보다 훨씬 낮은 약 50%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동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避妊方法은 콘돔과 月經週期法으로 이 연령층의 부인은 다른 연령층의 부인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表 5-1〉 20~44歲 有配偶婦人の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 變動推移 (1975~1999年)

(單位: 회)

연령	1975 ¹⁾	1984 ²⁾	1987 ³⁾	1990 ⁴⁾	1993 ⁵⁾	1996 ⁶⁾	1999 ⁷⁾
20~24세	63	91	102	186	105	79	53
25~29세	86	146	103	112	94	51	33
30~34세	158	115	71	60	63	49	33
35~39세	153	40	29	21	25	16	12
40~44세	75	20	7	6	1	3	1

- 資料: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회, 1978.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회, 1985.
 3)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회,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본 조사결과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

하하여 1987년 103에서 1990년에는 1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80년대 초반부터 30~34세 연령층보다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주던 것이 이제는 동일한 수준으로 저하된 것이다.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1996년 49, 1999년 33으로 현저한 저하추세를 보였다. 또한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975년 153에서 1999년 12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에 40~44세 연령층은 75에서 1로 저하하였다.

第 2 節 人工妊娠中絶經驗 實態

1. 人工妊娠中絶 經驗率

우리 나라 부인이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유배우 인공임신중절률과 함께 人工妊娠中絶經驗率, 人工妊娠中絶回數 分布 및 平均 人工妊娠中絶回數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人工妊娠中絶經驗率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1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을 의미하며,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指標이다. 따라서 前者는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여부를 중요시하고 반복경험은 감안하지 않으며, 後者는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부인의 경우 실제 경험횟수를 감안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을 얼마나 자주 수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은 1980~1990년대 초반에는 52~54%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에는 39%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4년 자료 이외에는 洞部地域 居住婦人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이 邑·面部地域 居住婦人보다 높았으나 2000년 자료에서는 역전되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1%)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연령에 따른 연도별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의 차이는 전체 연령층에서 저하하였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저하폭이 크게 나타났다. 즉, 15~24세 연령층에서는 1994년과 1997년이 동일한 21%이었으나 2000년에는 13%로 저하하였으며, 25~29세 연령층에서는 1994년 36%, 1997년 27%, 2000년 17%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저하추세는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나타났는데, 30~34세 연령층은 1994년 51%, 1997년 45%, 2000년 35%로 비교적 큰 폭으로 저하되었으며, 35~39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994년의 58%, 60%에서 1997년에는 52%, 53%로 낮아졌고, 이어서 2000년에도 50%, 52%로 다소 낮아졌다.

〈表 5-2〉 15~44歲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 變動推移 (1976~2000年)

		(單位: %)						
특성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전체	39	53	52	54	49	44	39	
지역								
동부	46	55	54	55	49	45	39	
읍·면부	29	48	47	49	49	39	41	
연령								
15~24세	16	22	27	29	21	21	13	
25~29세	27	42	41	40	36	27	17	
30~34세	46	61	57	55	51	45	35	
35~39세	50	63	63	60	58	52	50	
40~44세	45	67	62	65	60	53	52	

註: 1) 1991년은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함.

資料: 〈表 5-1〉 과 동일

2. 人工妊娠中絶 終結率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와 임신소모로 종결된 횟수,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로 종결된 횟수를 살펴본다. 1994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妊娠數는 2.96회였으며, 이 중 妊娠消耗로 종결된 임신은 1.09회,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0.84회로 나타나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8.4%였으며,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7.1%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도 조사에서는 동일한 대상의 평균 妊娠數는 2.83회로 감소되었고, 消耗된 妊娠은 1.01회, 인공임신중절은 0.74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6.1%였으며,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3.3%로 1994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도에도 계속되어 동일한 대상의 평균 妊娠數는 2.70회로 감소되었고, 消耗된 妊娠은 0.92회, 인공임신중절은 0.65회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였으며,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7%로 1997년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表 5-3 參照).

〈表 5-3〉 15~44歲 有配偶婦人の 總妊娠 및 妊娠消耗 對比
人工妊娠中絶終結率의 變化(1994~2000年)

(單位: %, 회)

연도	총임신 (A)	임신 소모 (B)	인공임신 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B)
1994 ¹⁾	2.96	1.09	0.84	28.4	77.1
1997 ²⁾	2.83	1.01	0.74	26.1	73.3
2000 ³⁾	2.70	0.92	0.65	24.1	70.7

資料: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본 조사결과

전술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절경험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인공임신중절이 성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부인의 전체 임신 중 人工妊娠中絶로 종결된 비율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임신은 약 1/4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50.8%이었으나 1997년 조사에서는 55.8%, 2000년 조사에서는 60.8%로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 중에서도 2회 이상 反復經驗한 부인도 1994년의 20.9%에서 1997년에는 19.3%, 2000년 1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表 5-4〉 15~44歲 有配偶婦人の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 分布 (1994~2000年)

(單位: %, 회)

연도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1994 ¹⁾	50.8	49.2	28.3	20.9	100.0(5,183)	0.8
1997 ²⁾	55.8	44.2	24.9	19.3	100.0(5,420)	0.7
2000 ³⁾	60.8	39.2	22.1	17.1	100.0(6,408)	0.7

資料: 〈表 5-3〉 과 동일.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부인뿐만 아니라 2회 이상 反復經驗한 부인이 감소한 결과는, 한 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의 平均回

數에도 영향을 미쳐, 15~44세 유배우부인 1인당 平均 人工妊娠中絶回數는 1994년의 0.8회에서 1997년과 2000년 0.7회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는 0.7회로 나타났지만 이는 四死五入한 결과이며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0.05 미만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分布와 平均 經驗回數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60.9%)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9.3%)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1회 또는 2회 이상 反復經驗을 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2.5%, 18.2%)이 동부지역 거주부인(22.1%, 1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지역별 平均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도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0.6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0.7회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⁷⁾ 따라서 농촌지역 부인에 대한 철저한 피임관리 및 홍보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表 5-5 參照).

人工妊娠中絶經驗 回數는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 및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87.3%, 83.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2회 이상 反復經驗도 각각 2.8%, 3.9%로 낮았다. 따라서 이들 연령층의 平均 人工妊娠中絶回數도 0.2회로 타 연령층의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30세 이상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큰 폭으로 증가

27) 이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 0.8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는 0.6회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농촌지역의 거주부인보다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1997년 조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임.

하였다. 즉, 30~34세 연령층의 부인은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64.7%이었으며, 2회 이상의 反復經驗은 13.1%로 20대 부인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평균 人工임신중절경험횟수는 0.5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더욱 심해져 35~39세,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4%, 48.3%로 감소한 반면,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은 각각 22.5%, 27.0%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人工임신중절경험횟수는 각각 0.8회, 1.0회로 증가하였다.²⁸⁾

이처럼 人工妊娠中絶經驗이 부인연령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妊娠歷(pregnant history) 期間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임신노출 또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성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低年齡層 婦人の 효과적인 避妊普及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대부분 人工妊娠中絶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이 종료된 高年齡層 婦人이 피임법 사용에 대한 弘報·教育 및 효과적 피임방법의 유도 등을 통한 피임실천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을 인구자질향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教育水準과 現存子女數는 부인의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관계로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의 分布와 平均 回數는 앞서 살펴본 부인연령에서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이 낮은 부인과 자녀를 많이 가진 부인이 人工임신중절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28) 이를 1997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5~24세, 25~29세, 35~39세 연령층의 부인은 모두 1997년의 평균 人工임신중절횟수보다 0.1회 감소, 30~34세 부인층은 0.2회 감소한 것임. 그러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동일한 수준임.

을 가진 부인의 경우보다 인공임신중절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를 두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表 5-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人工妊娠中絶 回數 分布
(單位: %,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지역						
동부	60.9	39.1	22.1	17.0	100.0(5,862)	0.6
읍·면부	59.3	40.7	22.5	18.2	100.0(546)	0.7
연령						
15~24세	87.3	12.7	9.9	2.8	100.0(213)	0.2
25~29세	83.0	17.0	13.1	3.9	100.0(1,221)	0.2
30~34세	64.7	35.3	22.2	13.1	100.0(1,573)	0.5
35~39세	50.4	49.6	27.1	22.5	100.0(1,788)	0.8
40~44세	48.3	51.7	24.7	27.0	100.0(1,613)	1.0
교육수준						
초교 이하	51.9	48.1	25.4	22.7	100.0(335)	0.9
중학교	50.3	49.7	23.7	26.0	100.0(811)	1.0
고등학교	59.5	40.5	23.0	17.5	100.0(3,445)	0.7
대학 이상	69.7	30.3	18.9	11.4	100.0(1,816)	0.5
현존자녀수						
0명	92.5	7.5	4.6	2.9	100.0(544)	0.1
1명	74.8	25.2	16.0	9.2	100.0(1,486)	0.4
2명	52.3	47.7	26.7	21.0	100.0(3,678)	0.8
3명	50.4	49.6	25.2	24.4	100.0(615)	0.9
4명 이상	53.1	46.9	18.5	28.4	100.0(81)	0.9

부인특성별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7.5%나 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反復經驗을 한 부인도 2.9%나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부인의 平均 人工妊娠中絶 經驗回數는 0.1회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1997년의 결과²⁹⁾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결혼후 가족이 經濟的 基盤을 잡을 때까지 출산의 부담없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출산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부부만의 新婚生活을 보다 오래 즐기기 위해서 아이 갖는 것을 가능한 한 늦추려는 젊은 세대의 世態이기도 하다. 넷째,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임신 전·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임신결과를 염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혼전임신을 감추기 위한 방안일수도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이유에 의하여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서도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나,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DINK(Double Income, No Kids) 또는 SINK (Single Income, No Kids) 가족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사료된다.

4. 人工妊娠中絶受容時의 妊娠順位 및 婦人年齡

우리 나라 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임신순위에서 몇 번째인지, 그리고 당시의 부인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危害性이 이러한 특징에 따라 상이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1.9%,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8.6%, 세 번째 이상의 妊娠順位인 경우가 39.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

29) 199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11.3%나 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反復經驗을 한 부인도 4.9%나 되어 이들 부인들의 평균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0.2회를 나타냈음.

인의 평균연령은 26.7세로 나타났다(表 5-6 參照). 이들 임신의 상당수는 婚前妊娠일 수도 있겠고 부부 사이의 어떤 이유에서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일 수 있다. 人工妊娠中絶은 당연히 女性의 健康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특히 첫 임신이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그 어느 妊娠順位에서 행해진 人工임신중절 보다 女性健康에 害惡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豫防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未婚女性에 대한 性教育과 新婚夫婦를 위한 家族計劃教育, 妊娠婦 管理 등의 강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表 5-6〉 15~44歲 有配偶婦人の 첫 번째¹⁾ 人工妊娠中絶의 妊娠順位別 分布와 當時 婦人年齡

(單位: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첫 人工임신 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전체	21.9	38.6	39.6	100.0(2,510)	26.7
지역					
동부	22.1	39.1	38.8	100.0(2,286)	26.7
읍·면부	18.9	32.9	48.2	100.0(222)	26.4
연령					
15~24세	66.7	33.3	-	100.0(27)	20.0
25~29세	44.2	40.9	14.9	100.0(208)	24.1
30~34세	24.6	39.0	36.4	100.0(557)	26.5
35~39세	19.3	40.1	40.6	100.0(885)	27.1
40~44세	15.6	36.3	48.1	100.0(833)	27.2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2	24.1	53.7	100.0(162)	25.4
중학교	21.8	30.3	47.9	100.0(403)	26.0
고등학교	22.6	42.0	35.3	100.0(1,392)	26.4
대학 이상	19.5	40.4	40.2	100.0(550)	28.4

註: 1) 첫 번째 人工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人工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妊娠順位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대체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2.1%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8.9%보다 높았다. 15~24세 부인은 66.7%이었으나 연령이 상승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5.6%에 불과하여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들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연령, 학력수준, 결혼연령 등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 婚前妊娠의 可能性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妊娠順位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인공임신중절의 반복경험이 있는 부인의 최근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감안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人工妊娠中絶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10.0%,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2.8%, 세 번째 이상의 妊娠順位인 경우가 67.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8.3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6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5-7 參照).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셋째 이상 임신의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3.9%)이 동부지역 거주부인(66.5%)보다

높았고,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동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64.5%)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表 5-7〉 15~44歲 有配遇婦人의 마지막¹⁾ 人工妊娠中絶의 妊娠順位別 分布와 當時 婦人年齡

(單位: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전체	10.0	22.8	67.2	100.0(2,502)	28.3
지역					
동부	10.1	23.3	66.5	100.0(2,280)	28.4
읍·면부	9.0	17.1	73.9	100.0(222)	28.2
연령					
15~24세	44.4	44.4	11.1	100.0(27)	20.3
25~29세	29.2	39.7	31.1	100.0(209)	24.6
30~34세	13.3	26.8	59.9	100.0(556)	27.5
35~39세	8.0	21.8	70.3	100.0(878)	28.9
40~44세	4.1	16.2	79.7	100.0(831)	29.5
교육수준					
초교 이하	8.1	12.5	79.4	100.0(160)	26.9
중학교	7.8	14.5	77.8	100.0(400)	28.3
고등학교	10.3	25.7	64.0	100.0(1,386)	28.0
대학 이상	10.9	24.5	64.5	100.0(550)	29.7

註: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第 3 節 人工妊娠中絶受容婦人의 避妊實態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부인들은 人工妊娠中絶이 避妊의 한 방편으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은 피임실천이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 인공

임신중절은 피임의 한 수단이 아니며, 이는 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폐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결코 적지 않아 우려된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피임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어떠한 피임방법이 실패가 많은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피임방법 보급과 비효율적 피임방법의 수용부인에 대한 홍보계몽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998년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이 당시에 피임실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신의 52.3%가 실패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조사결과(38.7%)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불임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낮고, 콘돔 및 월경주기법 등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避妊方法에 의한 實踐率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不安全한 避妊方法을 사용하는 부인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임비실천임에도 임신의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실패임신을 초래한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의 25.0%가 월경주기법에 의한 피임실천중에 임신이 되었으며, 콘돔을 사용 중이었던 경우는 13.4%으로 나타나 실패임신이 높은 피임방법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 중 먹는 피임약과 살(질)정제에 의한 실패임신은 1.1%로 낮았던 반면, 매우 높은 피임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불임수술과 자궁내장치 수용의 경우도 각각 4.0%, 3.7%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먹는 피임약과 살(질)정제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낮았고,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높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낮더라도 실패임신 건수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避妊方法으로의 轉換을 誘導함과 동시에 안전한 피임방법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지속적인 事後管理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失敗妊娠의 경우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細分化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이 실패임신이 높았으며, 특히 전체 농촌부인의 32.3%가 월경주기법에 의한, 16.1%가 콘돔에 의한 피임실천 중에 실패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婦人の 年齡에 따른 실패임신 당시의 피임방법을 보면, 월경주기법에 의한 실패임신은 연령이 높을수록, 콘돔에 의한 실패임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실패임신 당시의 피임방법을 보면, 월경주기법에 의한 실패임신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에서 높았으며, 콘돔에 의한 실패임신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별 실패임신 당시 수용하고 있던 피임방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교육수준 및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피임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8.9%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34.6%로 가장 낮았다. 특히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실패임신 당시 사용한 피임방법은 월경주기법이 가장 많았으며, 콘돔, 자궁내장치, 불임수술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이 원한 임신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무려 38.7%나 되었으며, 실패임신은 61.3%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을 수용

한 不願妊娠 당시에 사용한 피임방법은 월경주기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콘돔, 불임수술, 자궁내장치 등의 順으로 높았다(表 5-8 參照).

〈表 5-8〉 15~44歲 有配偶婦人 中 1998年 以後 人工妊娠中絶 受容 婦人의 特性別 妊娠當時 避妊實踐與否

(單位: %)

특성	비실천	실천							계(수)
		소계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살(질)정제	콘돔	월경 주기법	기타	
전체 ²⁾	47.7	52.3	4.0	3.7	1.1	13.4	25.0	5.1	100.0(353)
지역									
동부	48.0	52.0	4.0	4.0	1.2	13.1	24.3	5.3	100.0(321)
읍·면부	45.2	54.8	3.2	-	-	16.1	32.3	3.2	100.0(31)
연령									
15~29세	49.5	50.5	4.1	2.1	1.0	16.5	20.6	6.2	100.0(97)
30~34세	49.0	51.0	2.0	5.4	0.7	13.6	25.9	3.4	100.0(147)
35~44세	45.0	55.0	6.4	2.8	1.8	10.1	27.5	6.4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4	63.6	3.0	6.1	3.0	12.1	30.3	9.1	100.0(33)
고등학교	46.7	53.3	6.1	5.2	0.9	10.8	24.5	5.7	100.0(212)
대학 이상	54.3	45.7	-	-	-	18.1	24.8	2.9	100.0(105)
당시 자녀수									
0명	65.4	34.6	3.8	-	3.8	15.4	11.5	-	100.0(26)
1명	57.0	43.0	3.5	-	-	20.9	12.8	5.8	100.0(86)
2명	41.1	58.9	4.6	6.6	-	11.2	30.5	6.1	100.0(197)
3명 이상	50.0	50.0	-	-	6.8	6.8	34.1	2.3	100.0(44)
원한임신여부									
원함	96.4	3.6	-	-	-	1.8	1.8	-	100.0(55)
불원	38.7	61.3	4.7	4.4	1.3	15.2	29.6	6.1	100.0(297)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第 4 節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

本 節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첫 번째 및 마지막 人

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에 의하여 本章의 처음 설명에서 보여준 모자보건법상의 이유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의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는 子女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20.5%, 임부의 건강과 혼전임신이 각각 9.5%, 경제적 곤란 6.6%, 태아이상 4.8%, 성 선택적인 경우 1.8%, 그리고 가정문제 1.5% 등이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合法的 人工妊娠中絶은 14.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不法的 人工妊娠中絶로 사료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8.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35.7%)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터울조절에 의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20.6%)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9.0%)보다 높았다. 그리고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6.8%)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4.0%)보다 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농촌부인의 임신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婚前妊娠에 의한 첫 번째 人工妊娠中絶은 9.5%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9.7%,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7.2%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의 강화와 避妊普及이 制限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이 1.8%이었으며, 이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1.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0.9%로 나타났다.

〈表 5-9〉 15~44歲 有配偶婦人の 첫 人工妊娠中絶 受容理由

(單位: %)

인공임신중절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5.9	35.7	38.0
터울조절	20.5	20.6	19.0
임부의 건강상	9.5	9.4	10.0
태아이상	4.8	4.6	6.8
혼전임신	9.5	9.7	7.2
가정문제	1.5	1.5	1.4
경제적 곤란	6.6	6.6	6.8
태아가 딸이므로	1.8	1.9	0.9
기 타	9.9	9.9	10.0
계	100.0	100.0	100.0
(수)	(2,507)	(2,286)	(221)

註: 기타에는 취업중,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있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 같아서(추측) 등이 포함됨.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수용이유 역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와 마찬가지로 子女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2000년 48.4%로 1994년 58.4%, 1997년 49.7%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主된 理由였다. 그 다음의 主要 理由는 자녀의 터울조절로 1994년 11.1%, 1997년 11.0%에서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한 13.1%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妊婦의 건강상(10.0%), 경제적 곤란(6.5%), 혼전임신(5.1%), 태아이상(4.7%), 태아가 딸이므로(2.3%), 가정문제(1.1%)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子女不願에

의하여 최종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4.5%)이 동부지역 거주부인(47.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터울조절에 의한 최종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은 동부지역 거주부인(13.5%)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용이유 외에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임부의 건강상(동부 10.1%, 읍·면부 8.1%), 태아가 딸이므로(동부 2.4%, 읍·면부 0.5%) 등이었으며, 반대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태아이상(동부 4.7%, 읍·면부 5.4%)이었고, 동부와 읍·면부간에 유사한 수준에 있었던 이유는 혼전임신(동부 5.1%, 읍·면부 5.0%), 가정문제(동부 1.1%, 읍·면부 0.9%), 경제적 곤란(동부 6.5%, 읍·면부 6.3%) 등이었다.

보다 特徴的인 變化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인 婚前妊娠에 의한 最終 人工妊娠中絶의 受容은 1994년에는 3.3%, 1997년 4.0%, 2000년 5.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혼전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未婚女性에 대한 충분한 성교육과 민간차원의 응급피임보급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性鑑別에 의해 胎兒가 딸인 것이 확인되어 최종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1994년의 1.7%에서 1997년에는 2.6%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2.3%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현재 實定法上 胎兒 性鑑別을 防止하고 있고 이를 행하는 醫師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男女差別을 撤廢하는 社會制度的인 改善과 함께 이의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위한 弘報教育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10〉 15~44歳 有配偶婦人の 最終 人工妊娠中絶 受容理由 (1997~2000年)

(單位: %)

인공임신중절 이유	1994	1997	2000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58.4	49.7	48.4	47.9	54.5
터울조절	11.1	11.0	13.1	13.5	9.0
임부의 건강상	9.7	10.6	10.0	10.1	8.1
태아이상	5.1	3.6	4.7	4.7	5.4
혼전임신	3.3	4.0	5.1	5.1	5.0
가정문제	1.7	1.9	1.1	1.1	0.9
경제적 곤란	3.7	7.3	6.5	6.5	6.3
태아가 딸이므로	1.7	2.6	2.3	2.4	0.5
기 타	5.3	9.3	8.9	8.7	1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41)	(2,394)	(2,508)	(2,286)	(222)

註: 기타에는 취업중, 약물 및 식품부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있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 같아서(추측) 등이 포함됨.

資料: 〈表 5-3〉 과 동일

第 5 節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本節에서는 胎兒의 性鑑別後 女兒인 경우 人工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에 대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법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부인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이 실제 그들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行爲가 價値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性 선택적 人工임신중절의 발생정도를 間接的으로 推定할 資料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전체 부인의 78.6%가 性鑑別後의 人工妊娠中絶行爲를 반

대하였으며, 3.7%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의 동일한 질문에서 보여준 부인의 태도인 반대 73.5%, 찬성 8.3%와 비교하여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表 5-11 參照).

〈表 5-1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選別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적극 반대	반대	중립	찬성	적극 찬성	계(수)
1997년 ¹⁾	32.1	41.4	18.2	8.1	0.2	100.0(5,163)
2000년 ²⁾	28.2	50.4	17.7	3.5	0.2	100.0(6,070)
지역						
동부	28.1	50.3	17.8	3.4	0.3	100.0(5,549)
읍·면부	29.4	50.9	15.9	3.8	-	100.0(521)
연령						
15~24세	32.8	55.9	10.8	0.5	-	100.0(195)
25~29세	31.2	50.0	15.9	2.4	0.5	100.0(1,169)
30~34세	28.3	49.2	19.0	3.3	0.2	100.0(1,500)
35~39세	26.4	50.9	18.9	3.6	0.2	100.0(1,687)
40~44세	27.3	50.6	17.2	4.8	0.1	100.0(1,519)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3	56.7	12.2	4.7	-	100.0(319)
중학교	22.0	56.5	16.1	5.3	0.1	100.0(751)
고등학교	26.5	51.6	18.3	3.4	0.2	100.0(3,257)
대학 이상	34.5	44.3	18.2	2.5	0.4	100.0(1,740)
아들수						
0명	31.1	48.0	17.8	2.9	0.2	100.0(1,783)
1명	27.0	50.1	18.6	3.9	0.3	100.0(3,116)
2명	26.9	54.8	15.2	3.1	-	100.0(1,127)
3명 이상	34.9	55.8	7.0	2.3	-	100.0(43)
딸수						
0명	31.8	51.9	13.9	2.3	0.2	100.0(2,315)
1명	26.8	50.8	18.5	3.6	0.3	100.0(2,686)
2명	24.4	45.6	24.4	5.6	0.1	100.0(932)
3명 이상	22.6	50.4	19.7	6.6	0.7	100.0(137)

註: 모르겠음 또는 생각해보지 않음은 제외
 資料: 〈表 5-8〉 과 동일

性選好에 기반한 선별적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대한 부인들의 찬성하는 비율을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15~24세 연령층에서는 불과 0.5%만이 찬성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찬성률이 높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4.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젊은 부인 층의 찬성률이 낮은 것은 教育水準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부인의 현존 아들수에 따라서는 일관된 특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즉, 아들이 없는 부인의 3.1%만이 性選擇的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였으며, 오히려 아들이 1명 있는 부인은 4.2%의 찬성률을 보였고, 2명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3.1%, 그리고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2.3%의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딸의 수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딸이 많을수록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딸이 한 명도 없는 부인은 2.5%의 찬성률만을 보였던 반면, 1명의 딸을 가진 부인은 3.9%, 2명의 딸을 가진 부인은 5.7%, 그리고 3명 이상의 딸을 가진 부인은 무려 7.3%의 찬성률을 보였다.

결국 우리 나라 부인의 대다수는 男兒에 대한 性選好에 기인하는 인공임신중절행위를 否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가 개별 부인들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과 함께 性平等的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특히 少子女觀이 정착된 관계로 2명 이상의 딸을 가진 부인은 현행법상 不法일지라도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해 否定的인 견해가 다소 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직접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第 6 節 人工妊娠中絶實態 變化의 示唆點

避妊은 妊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避妊普及의 확산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족계획사업의 초기부터 실시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되었을 경우 인구증가억제를 위하여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로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즉, 人工妊娠中絶은 원치 않는 임신의 出産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최근 後者의 경우는 인구증가억제정책에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胎兒도 生命體라는 人命重視 次元과 부인의 건강에 미치는 否定的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녀관의 정착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였을 경우 많은 부인이 이를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키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避妊實踐의 生活化로 인공임신중절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人口資質 次元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不願妊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임실천의 內實化를 위한 홍보계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저출산관의 정착으로 출산율이 매우 낮아져 정부차원의 피임보급 및 홍보계몽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피임이 출산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피임은 원하는 자녀규모를 원하는 시기에 갖기 위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부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決定的인 壽興를 한다는 사실을 看過한 것이다. 따라서 피임방법의 선택을 위한 접근도를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계몽하는 등 적극적인 피임보급 및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性平等的 價値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스컴을 통한 국민계몽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性差別的 社會制度의 改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第 6 章 母子保健實態

第 1 節 産前 및 産後管理

1. 産前管理實態

인간의 전 생애동안 건강은 임신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 임신기간 중 태아 및 임부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태아 임신은 자연유산이나 사산 등 비정상적인 결과로 종결되며 출생시에도 미숙아, 장애아 등으로 이어져 출생아 개인적으로도 평생동안 불행을 겪게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된다. 임신기간 중 발생하는 임부의 이상도 後天性不妊의 원인이 되는 등 임부의 생식보건을 포함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기간 중 임부 및 태아에 대한 産前管理는 태아의 정상출산과 정상성장 및 임부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産前管理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의 조기진단, 임부의 지속적인 진찰 및 교육, 임부에 대한 각종 검사, 즉, 뇨검사를 통한 당, 단백 등 검사, 혈액검사를 통한 빈혈, 간염, 성병, 에이즈 검사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00).

본 분석은 1998년부터 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최종출생아의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유배우부인의 産前受診率은 부인의 특성(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인(100.0%)이 산전

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전수진율은 1994년 조사 결과에서 전국 평균이 99%를 상회하였으며, 1997년 조사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도 99% 이상이었다.

〈表 6-1〉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産前受診率(1985~2000年)
(單位: %)

지역	1985 ¹⁾	1988 ²⁾	1991 ³⁾	1994 ⁴⁾	1997 ⁵⁾	2000 ⁶⁾
전국	82.4	88.5	94.4	99.2	99.6	100.0
동부	86.7	92.1	95.3	99.5	99.6	100.0
읍·면부	70.9	78.1	90.5	97.6	99.3	100.0

註: 1985년 자료는 1980~1985년, 1988년 자료는 1983~1988년, 1991년 자료는 1987. 5~1991년, 1994년 자료는 1990~1994년, 1997년 자료는 1995~1997년, 2000년 자료는 1998~2000년의 조사시점까지의 최종출생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 資料: 1)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3)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4)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본 조사결과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유배우부인이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시기로는 임신 후 5~8주가 46.2%로 가장 높고 임신 후 4주 이내가 41.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부인의 약 88%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初診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수진을 받은 부인전체의 平均 初診時期는 임신 후 6.1주였다(表 6-2 參照).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시기는 부인의 특성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임신 후 5~8주, 1~4주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인의 거주지별로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산전관리를 위한 초진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즉,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11.3%가 임신 9주 이후에 초진을 받는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18.9%가 임신 9주 이후에 초진을 받았으며, 평균 초진시기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임신 후 6.0주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에는 임신 후 7.2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모자보건 관련정보 및 보건의료기관에의 接近性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인의 教育水準別 平均 初診時期를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이 임신 후 7.5주에 초진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이 임신 후 6.2주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이 임신 후 5.8주에 초진을 받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빠른 기간에 초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産前 初診時期와 教育水準間에 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에 비해 妊娠 및 産前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낮거나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부인이 취업에 따른 시간 부족 및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초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最終出生兒 出産時 부인의 연령별 평균 초진시기는 24세 이하 연령층에서 임신 후 7.2주, 그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 6주로 나타났다. 이는 低年齡層 부인일수록 취업 또는 임신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거나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表 6-2〉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初診時期
(單位: %, 周)

구분	임신후 초진시기(임신 후)					계(수)	평균 초진 시기
	4주 이하	5~8 주	9~12 주	13~16 주	17주 이상		
전체	41.9	46.2	7.8	1.6	2.5	100.0(1,345)	6.10
지역							
동부	42.2	46.5	7.7	1.4	2.2	100.0(1,237)	5.97
읍·면부	38.2	42.9	8.1	4.5	6.3	100.0(108)	7.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8	35.6	14.1	-	9.5	100.0(53)	7.46
고등학교	42.0	45.4	7.4	2.3	2.9	100.0(764)	6.23
대학 이상	41.8	48.5	7.7	0.9	1.1	100.0(528)	5.7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4.3	45.9	13.1	1.8	4.9	100.0(201)	7.20
25~29세	43.9	45.7	6.8	1.7	1.9	100.0(691)	5.87
30세 이상	42.1	47.1	6.8	1.5	2.5	100.0(453)	5.99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43.6	44.7	8.8	0.9	2.0	100.0(664)	5.92
둘째아	40.6	48.5	6.5	2.0	2.4	100.0(548)	6.12
셋째아 이상	37.9	44.6	8.2	3.9	5.4	100.0(133)	6.84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별 平均初診時期는 첫째아인 경우 임신 후 5.9주, 둘째아인 경우 임신 후 6.1주, 그리고 셋째아 이상인 경우 임신 후 6.8주로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産前管理를 위한 초진시기가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임신을 원하였거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속하게 초진을 받았으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출산경험이 풍부하여 또는 원치 않은 偶發的 妊娠으로 인해 임신사실에 대한 認知가 늦어 初診時期가 늦어진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表 6-3〉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産前受珍 回數

(單位: %, 회)

구분	산전수진 횟수					계(수)	평균 횟수
	1~6 회	7~9 회	10~14 회	15~19 회	20회 이상		
전체	6.8	9.1	56.5	22.6	5.0	100.0(1,341)	12.3
지역							
동부	6.6	8.5	56.3	23.5	5.1	100.0(1,234)	12.4
읍·면부	9.9	15.9	59.1	11.6	3.5	100.0(107)	1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1	13.8	49.4	19.1	2.6	100.0(52)	11.0
고등학교	8.1	9.8	57.9	18.4	5.8	100.0(763)	12.2
대학 이상	4.1	7.6	55.3	28.9	4.1	100.0(526)	12.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9.6	9.0	57.0	16.2	8.2	100.0(200)	12.2
25~29세	6.0	8.8	55.9	24.9	4.4	100.0(689)	12.4
30세 이상	6.8	9.6	57.2	21.8	4.6	100.0(452)	12.3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3.1	6.8	58.7	25.2	6.2	100.0(661)	13.0
둘째아	8.2	10.3	55.6	21.3	4.6	100.0(548)	12.1
셋째아 이상	19.9	15.2	49.4	14.5	1.0	100.0(132)	10.2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유배우부인이 최종 출생아 임신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던 산전수진의 횟수를 살펴보면, 10~14회가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19회가 22.6%이었으며, 정부권장 산전관리 횟수³⁰⁾인 7회보다 적은 횟수는 6.8%로 나타났다. 전체 부인의 平均 産前檢診回數는 12.3 회였다.

부인의 특성별로 7회 미만 산전검진을 받았던 비율은 동부지역에

30)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기간 중 최소한 7회 이상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0년).

거주하는 부인(6.6%)에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9.9%)에게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학교 이하 15.1%, 고등학교 8.1%, 대학교 이상 4.1%),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24세 이하 9.6%, 25~29세 6.0%), 그리고 최종출생아의 출산순위가 높을수록(첫째아 3.1%, 둘째아 8.2%, 셋째아 이상 19.9%) 높게 나타났다.

2. 母子保健手帖(健康手帖) 受取實態

母子保健法 第9條에 의하면 신고된 임신부 또는 영유아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모자보건수첩은 모자보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시작하여 출산, 영유아 양육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록들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³¹⁾. 즉, 모자보건수첩은 母子保健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예상되는 健康上の 問題點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진료기관에서 임신부를 위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부가 산후진찰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방문할 때 항상 이를 지참토록 하고 있다. 특히, 學校保健法에서는 출생아가 초등학교 입학시 해당 모자보건수첩을 제출토록 규정하는 등 모자보건수첩 발급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정부(보건소)에서 방문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외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산모수첩, 아기수첩, 예방접종카드 등 여러 종류의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 이용

31) 1987년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모자보건수첩의 세부내용에는 ① 임신부 및 영유아의 인적 사항, ② 산전·산후 관리 사항, ③ 임신중의 주의 사항, ④ 임신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종합검진, ⑤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⑥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임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고 있는 각종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 중 최종출생아 임신과 관련하여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모자보건수첩을 포함하여 적어도 1종류 이상 수첩을 받은 부인의 비율을 분석하였다(表 6-4 參照).

최종출생아의 産前·産後管理를 위해 건강수첩을 수취한 부인의 비율은 1997년 92.5%에서 2000년에는 99.3%로 높아졌다. 특히,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건강수첩 수취율은 100%로 健康手帖 受取가 普遍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6-4〉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妊娠期間中 健康手帖 (母子保健手帖) 受取與否

(單位: %)

수취 여부	1997 ¹⁾			2000 ²⁾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받았음	92.5	92.4	93.1	99.3	99.3	100.0
받지 않았음	7.5	7.6	6.9	0.7	0.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59)	(961)	(198)	(1,341)	(1,234)	(107)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부인이 수취한 건강수첩의 종류를 살펴보면, 2종류 건강수첩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비율이 57.2%, 3종류 이상 건강수첩을 수취한 부인의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³²⁾. 지역별

32) 산모수첩과 아기수첩 2종류를 가지고 있는 부인의 비율이 전체의 4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기수첩만을 가진 경우가 23.7%, 모자보건수첩+아기수첩+산모수첩의 3종류를 가진 경우가 6.5%로 나타났다. 모자보건수첩만을 수취한 부인의 비율은 전체부인의 2.5%에 불과하였다. 한편, 건강수첩 종류별로 수취비율을 보면,

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중 2종류 이상 건강수첩을 수취한 부인의 비율(69.9%)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61.3%)보다 높게 나타났다(表 6-5 參照).

〈表 6-5〉 15~44歲 有配偶婦人이 受取한 健康手帖 種類

(單位: %)

구분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이상	계(수)
전국	30.9	57.2	10.3	1.6	100.0(1,338)
동부	30.1	58.9	9.3	1.7	100.0(1,231)
읍·면부	38.7	38.2	21.9	1.2	100.0(107)

부인의 健康手帖 受取時期를 건강수첩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수첩을 産後에 수취한 비율이 57.0%로 分娩 前에 수취한 비율(4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모수첩의 경우에는 부인의 96.4%가 産前에 수취한 반면, 다른 건강수첩은 대부분 부인이 分娩 後에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아기수첩 93.4%, 예방접종카드 99.3%)(表 6-6 參照).

〈表 6-6〉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前後 健康手帖 受取時期

(單位: %)

수첩유형	전국			동부			읍·면부		
	산전	산후	계	산전	산후	계	산전	산후	계
모자보건수첩	43.0	57.0	100.0	47.1	52.9	100.0	17.5	82.5	100.0
산모수첩	96.4	3.2	100.0	96.7	3.3	100.0	93.1	6.9	100.0
아기수첩	6.6	93.4	100.0	6.6	93.4	100.0	6.8	93.2	100.0
예방접종카드	0.7	99.3	100.0	-	100.0	100.0	4.0	96.0	100.0
기타	11.5	88.5	100.0	-	100.0	100.0	56.3	-	100.0

모자보건수첩 18.8%, 산모수첩 67.0%, 아기수첩 89.7%, 예방접종카드 7.0% 기타 0.9% 등으로 나타났다.

3. 産後管理

산후관리는 분만 후에 임부 및 출생아에 대해 건강이상 검진 등을 실시하여 산후 발생빈도가 높은 産科的 問題(출혈, 감염 등) 및 精神的 障礙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아와 산모의 평생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비율, 즉, 産後受診率은 1988년 52.3%에서 1997년 81.0% 그리고 2000년에 85.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산후수진율은 둘째아인 경우에서 87.6%로 가장 높고 첫째아인 경우(84.2%)와 그리고 셋째아 이상인 경우(78.6%)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부인은 주로 高年齡層으로서 산후 부인 및 출생아의 健康危險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부인층의 산후수진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表 6-7 參照).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후수진율이 85.6%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후수진율 78.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에 비해 産後受診率이 낮게 나타났다(중학교 이하 79.5%, 고등학교 82.3%, 대학이상 89.6%). 최종출생아 출산시 婦人의 年齡別로는 24세 이하 저연령층 부인의 산후수진율이 77.0%로 25세 이상 부인의 산후수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表 6-7〉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後 産後受診率
(單位: %)

특성	1988 ¹⁾	1997 ²⁾	2000 ³⁾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체	52.3	81.0	85.0	84.2	87.6	78.6
지역						
동부	57.5	81.7	85.6	84.8	87.3	88.3
읍·면부	37.3	77.8	78.4	76.4	91.7	8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8	74.3	79.5	83.6	83.1	72.8
고등학교	64.0	80.0	82.3	80.7	85.4	75.9
대학 이상	75.3	84.2	89.6	88.3	91.7	89.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8.7	78.7	77.0	77.3	77.8	*
25~29세	54.1	81.6	86.8	87.3	87.7	70.9
30세 이상	52.4	81.1	85.9	82.8	89.6	81.5

註: * 실수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함.

資料: 1)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본 조사결과

최종출생아 출산 후 검진을 받았던 부인의 産後管理期間은 생후 1개월까지가 76.4%, 2개월까지 17.0% 등으로 2개월까지가 93.4%로 나타났다. 한편, 平均 産後管理期間은 1.4개월이었다(表 6-8 參照). 부인의 특성별 산후관리기간과 평균 산후관리기간은 특성간에 큰 차이가 없이 대체적으로 전체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6-8〉 15~44歲 有配偶婦人的 最終出生兒 產後管理期間

(單位: %, 개월)

특성	산후관리기간(출산후 개월수)					계(수)	평균 기간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전체	76.4	17.0	3.1	1.0	2.5	100.0(1,142)	1.4
지역							
동부	76.1	17.1	3.2	0.9	2.7	100.0(1,057)	1.4
읍·면부	80.8	15.3	1.6	1.5	0.8	100.0(85)	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0	20.0	8.5	3.5	-	100.0(72)	1.5
고등학교	78.3	14.7	3.4	0.9	2.7	100.0(628)	1.4
대학 이상	74.6	19.7	2.3	0.8	2.6	100.0(472)	1.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83.3	14.7	1.0	-	1.0	100.0(155)	1.2
25~29세	75.4	17.0	2.9	1.4	3.3	100.0(597)	1.4
30세 이상	75.3	17.9	4.2	0.7	1.9	100.0(390)	1.4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75.2	19.7	2.1	0.5	2.5	100.0(557)	1.4
둘째아	77.2	15.0	4.0	1.0	2.8	100.0(481)	1.4
셋째아 이상	79.3	11.9	4.6	2.8	1.4	100.0(104)	1.4

4. 產後調理院 利用實態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과거 가족 내에서 해결하여 왔던 산후조리가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다가 산후 1개월 기간동안에는 產後助力者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하여야 한다는 文化的 信念 등으로 인해 生理·心理的 回復의 조력을 위한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이 발생하였다(정현, 1999). 의료기관마다 다소 다르나, 보통 정상분만으로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2박 3일 그리고 제왕절개인 경우에는 약 7일간 병·의원에 입원을 하나, 이 후 퇴원하면 추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산후조리원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산후조리원은 1998년에 극소수가 설치되었으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産後調理院 利用率을 최종출생아의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 0.7%에 불과하나 1999년 7.3% 그리고 2000년 1월~6월에 10.0%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6-9 參照).

〈表 6-9〉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兒出生 出産後 産後調理院 利用率

(單位: %)

특성	최종출생아 출생년도		
	1998	1999	2000. 1~6
전체(수)	0.7(473)	7.3(533)	10.0(344)
지역			
동부	0.7	7.5	10.7
읍·면부	-	3.7	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
고등학교	-	6.1	10.5
대학 이상	1.9	9.6	10.3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1.9	3.4
25~29세	1.3	6.6	10.6
30세 이상	-	10.8	11.5
최종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0.8	8.2	12.6
둘째아	0.8	5.0	6.4
셋째아 이상	-	11.1	11.0

註: 괄호 안의 숫자는 분석대상자 수임.

부인의 특성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核家族 比率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需要가 높으며,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산후조리원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利用希望者의 接近性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부인의 教育水準別로는 대체적으로 教育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高學歷 부인이 低學歷 부인에 비해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年齡別로는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고연령층 부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저연령층 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층 부인에 비해 고연령층 부인이 출산시 어려움을 겪었거나 출산 후 건강이상을 겪었을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원 이용을 보다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별로는 1999년의 경우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부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11.1%로 가장 높고, 첫째아인 경우 8.2% 그리고 둘째아인 경우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0년 1월~6월 동안 최종출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부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1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셋째아 이상인 경우 11.0% 그리고 둘째아인 경우 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주로 初産이나 셋째아 이상 多出産인 경우에 출산시 어려움 또는 산후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부인 중,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健康問題를 經驗한 부인의 비율은 5.4%로 나타났다(表 6-10 參照). 최종출생아의 출산년도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경험률을 비교하여 보면, 1999년에 3.3%, 그리고 2000년(1월~6월)에 8.1%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6-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兒出生 出産 後 産後調理院 利用時 健康問題 經驗率

(單位: %)

구분	최종출생아 출생년도			전체
	1998	1999	2000. 1~6월	
경험률	-	3.3	8.1	5.6
(수)	(*)	(38)	(35)	(76)

註: *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아울러 追加出産을 希望하는 부인(44명) 중 향후 출산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63.1%로 나타났다(表 6-11 參照).

〈表 6-11〉 追加出産을 願하는 15~44歲 有配偶婦人의 向後 産後調理院 利用計劃

(單位: %)

특성	산후조리원 이용계획		
	있음	없음	계(수)
전체	63.1	36.9	100.0(44)
지역			
동부	63.1	36.9	100.0(44)
읍·면부	-	-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
고등학교	50.5	49.5	100.0(20)
대학 이상	73.2	26.8	100.0(2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57.0	47.0	100.0(*)
25~29세	81.7	18.3	100.0(19)
30세 이상	47.2	52.8	100.0(22)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73.8	26.2	100.0(35)
둘째아	34.2	65.8	100.0(*)
셋째아 이상	0.0	100.0	100.0(*)

註: *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인의 특성별로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중에는 향후 출산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에는 63.1%로 높게 나타났다. 教育水準이 높은 부인일수록 향후 출산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50.5%, 대학 이상 73.2%). 최종출생아 출산시 연령이 25~29세로서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부인 중 81.7%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다른 연령층 부인의 산후조리원 이용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종아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73.8%가 향후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둘째아인 경우는 34.2%, 그리고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分娩實態

1. 分娩場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분만은 임신부의 골반염증 및 이로 인한 후천성불임 등의 원인이 되며(Sherris & Fox, 1983; Sciarra, 1991), 출생아의 세균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安全分娩을 誘導하기 위해 施設分娩이 중요하다.

최종출생아의 施設分娩率은 1997년 99.7%에서 2000년 99.9%로 더욱 증가하여 대부분의 부인이 시설에서 분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6-12 參照). 이와 같은 施設分娩의 普遍化 현상은 안전분만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진 동시에 1989년이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分娩場所 類型別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은 1988년

23.6%, 1994년 31.8%, 1997년 39.0%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00년에는 31.5%로 낮아졌다. 의원에서의 분만비율은 1994년 43.1%, 1997년 31.1%, 그리고 2000년 24.6%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반 병원에서 분만비율은 1994년 21.3%, 1997년 28.2%에서 2000년 43.1%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 조산소와 보건소에서 분만 부인의 비율은 2000년 0.3%, 0.4%로 각각 나타났다.

〈表 6-12〉 15~49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施設分娩率 및 分娩場所(1985~2000年)

(單位: %)

분만장소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비시설분만	24.8	12.3	1.9	1.2	0.3	0.1
시설분만	75.2	87.8	98.1	98.8	99.7	99.9
종합병원	17.8	23.6	-	31.8	39.0	31.5
병원	45.8 ¹⁾	53.4 ¹⁾	91.0 ²⁾	21.3	28.2	43.1
의원	-	-	-	43.1	31.1	24.6
조산소	9.1	7.4	5.1	2.0	1.1	0.3
보건소 ³⁾	2.5	3.4	2.0	0.7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541)	(2,843)	(2,151)	(1,932)	(1,163)	(1,338)

註: 1) 의원 포함
 2) 종합병원, 의원 포함
 3) 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
 資料: 〈表 6-1〉 과 동일

따라서 대부분의 분만이 綜合病院을 포함한 病·醫院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1997년까지만 해도 분만이 종합병원 등의 大型醫療機關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에는 일반병원으로 集中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간에 분만시설 및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종합병원 이용이 번거롭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利用分娩施設 類型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31.7%)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29.1%)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의원에서 분만한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26.8%)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2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表 6-13 參照). 이는 醫療機關 種類別로 接近性에서 差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 분만장소로서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한 비율보다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병원 이용비율이 종합병원 이용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表 6-1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 分娩場所
(單位: %)

특성	시설분만					비시설 분만	계(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소		
전국	31.5	43.1	24.6	0.3	0.4	0.1	100.0(1,338)
지역							
동부	31.7	43.1	24.4	0.3	0.4	0.1	100.0(1,231)
읍·면부	29.1	44.1	26.8	-	-	-	100.0(1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8	23.4	35.2	2.6	-	-	100.0(53)
고등학교	27.4	45.4	26.2	0.3	0.5	0.2	100.0(759)
대학 이상	36.5	42.0	21.2	-	0.3	-	100.0(52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8.8	47.0	32.2	0.7	0.7	0.6	100.0(198)
25~29세	32.0	44.3	22.8	0.4	0.5	-	100.0(688)
30세 이상	36.2	39.7	24.1	-	-	-	100.0(452)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32.6	44.0	22.2	0.4	0.6	0.2	100.0(659)
둘째아	28.5	43.3	27.8	0.2	0.2	-	100.0(548)
셋째아 이상	38.5	38.2	23.3	-	-	-	100.0(131)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별로는 高年齡層 婦人일수록 분만장소로서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이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이 36.2%로 15~24세 연령층 부인의 18.8%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높았다. 最終出生兒의 出生順位別로도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종합병원에서의 분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등의 이유로 분만장소로서 종합병원을 선호하며, 출생순위가 높은 부인이 高危險群으로 안전분만을 위해 綜合病院을 選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分娩形態

분만과정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으로 출발하나, 산모 또는 태아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의 分娩介助가 요구된다(윤성도, 1997). 제왕절개의 적응증으로는 아두골반 불균형, 둔위를 위시한 태아이상, 태아절박증, 태반의 이상, 난산 등으로 분만과정에서 胎兒 및 產母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출생아를 제왕절개에 의해 분만한 비율은 1988년 11.9%, 1991년 17.3%, 1994년 31.5%, 1997년 35.9%, 2000년 37.7%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³³⁾. 부인의 거주지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1997년 36.1%에서 2000년 36.9%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1997년 34.8%에서 2000년 46.8%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表 6-14 參照). 그런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제왕절개분만율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정확하

33) 미국의 제왕절개분만 비율은 1970년대 5.5%에서 1980년대에 16.5~24.7%로 높아졌으나, 1988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1993년에 22.8% 수준을 나타냄.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함(윤성도, 1997, p.13).

게 규명되지 않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表 6-14〉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帝王切開分娩 比率
(1982~2000年)

(單位: %)

지역	1982 ¹⁾	1988 ²⁾	1991 ²⁾	1994 ²⁾	1997 ²⁾	2000 ²⁾
전국	4.4	11.9	17.3	31.5	35.9	37.7
동부	5.8	13.4	17.9	31.9	36.1	36.9
읍·면부	2.1	7.7	14.8	29.2	34.8	46.8

資料: 1)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2) 〈表 6-1〉 과 동일

有配偶 婦人의 特性別로 최종출생아의 제왕절개분만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부인의 경우 56.5%, 고등학교인 부인의 경우 38.1%, 대학 이상인 부인의 경우 35.1% 등으로 帝王切開率과 教育水準間 負(-)의 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없었으나 분석대상이 53명에 불과한데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연령별 제왕절개분만비율은 24세 이하 연령층 부인의 경우 34.8%이나 25~29세 부인의 경우 36.7%, 그리고 30세 이상 부인의 경우 40.4%로 제왕절개분만비율이 연령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종출생아의 出生順位別로는 출생순위가 둘째아인 경우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表 6-15 參照).

〈表 6-15〉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 出産時 分娩 形態

(單位: %)

특성	자연분만 ¹⁾	제왕절개	계(수)
전체	62.3	37.7	100.0(1,351)
지역			
동부	63.1	36.9	100.0(1,242)
읍·면부	53.2	46.8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5	56.5	100.0(53)
고등학교	61.9	38.1	100.0(768)
대학 이상	64.9	35.1	100.0(530)
출산시 부인의 연령			
15~24세	65.2	34.8	100.0(201)
25~29세	63.3	36.7	100.0(695)
30세 이상	59.6	40.4	100.0(455)
최종출생아출생순위			
첫째아	62.5	37.5	100.0(667)
둘째아	60.6	39.4	100.0(551)
셋째아 이상	68.5	31.5	100.0(133)

註: 1) 유도분만 포함

帝王切開分娩의 原因을 간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제왕절개 권유자를 살펴보면, 75%가 醫師이고 나머지 25%가 本人 意思나 家族의 勸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地域別로 제왕절개 권유자를 살펴보면, 의사가 권유한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77.3%로 동부지역의 74.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읍·면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本人 意思나 家族의 勸誘에 의해 제왕절개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았다(表 6-16 參照).

帝王切開의 主된 理由로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인 관계가 25.1%, 산모이상 23.1%, 태아이상 20.2%, 산모의 건강상 이유 10.8%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³⁴⁾. 특히,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의 心理的인 理由가

1997년 3.4%에서 2000년 7.3%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非醫學的 理由에 의한 제왕절개가 증가하고 있었다.

〈表 6-16〉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帝王切開分娩 勸誘者 및 理由

(單位: %)

권유자 및 이유	1997 ¹⁾	2000 ²⁾		
		전체	동부	읍·면부
권유자				
본인	21.9 ¹⁾	20.7	20.9	18.8
가족	-	4.1	4.1	3.9
의사	78.1	75.0	74.7	77.3
기타	-	0.2	0.3	-
이유				
산모이상	24.5	23.1	22.9	25.4
태아이상	13.1	20.2	20.5	16.9
양수조기파열	6.8	5.5	5.7	4.0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3.4	7.3	7.0	9.7
첫 출산이 제왕절개	23.4	25.1	23.9	35.9
산모의 건강상	16.7	10.8	11.6	4.1
기타	12.1	8.0	8.4	4.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417)	(508)	(458)	(51)

註: 1) 가족, 기타 포함.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勸誘者別 帝王切開 理由를 살펴보면, 本人 意思에 의해 제왕절개를 한 경우는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하였기 때문으로가 36.8%로 가장 높

34) 윤성도(1997)에 의하면, 제왕절개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행경험 및 반복의 증가, 의사의 제왕절개분만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 완화, 반복 제왕절개시 소자녀관에 기인되어 난관수술에 의한 피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

고, 다음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26.9%, 산모의 건강이 19.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醫師의 勸誘에 의해 제왕절개를 한 경우의 주된 이유로는 산모이상 28.5%, 태아이상 24.8% 그리고 첫 출산을 제왕절개로 하였기 때문으로가 22.8% 등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제왕절개 수용은 心理的 影響이 강하며,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제왕절개를 수용한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 이상 등 醫學的 理由가 지배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表 6-17 參照).

〈表 6-17〉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帝王切開分娩 勸誘者別 勸誘理由

(單位: %)

권유자 및 이유	전체	본인	가족	의사	기타
산모이상	23.1	5.5	15.3	28.5	-
태아이상	20.1	6.3	7.3	24.8	-
양수조기 파열	5.6	2.0	11.8	6.2	-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7.3	26.9	18.3	1.3	-
첫출산이 제왕절개	25.1	36.8	6.6	22.8	-
산모의 건강상	10.8	19.2	27.2	7.4	100.0
기타	8.0	3.3	13.5	9.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07)	(105)	(21)	(380)	(*)

註: *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시설분만을 증가와 함께 帝王切開의 頻度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윤성도, 1997). 최종출생아의 분만장소별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비율을 살펴보면, 病院에서 최종출생아를 분만한 부인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비율이 39.9%로 전체 부인의 3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綜合病院이나 醫院에서 최종출생아를 분만한 부인의 경우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유사하였다(表 6-18 參照).

〈表 6-18〉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分娩場所別 分娩形態

(單位: %)

분만장소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전체	62.3	37.7	100.0(1,351)
종합병원	63.8	36.2	100.0(425)
병원	60.1	39.9	100.0(585)
의원	63.7	36.3	100.0(331)
조산소	100.0	-	100.0(*)
보건소	77.6	22.4	100.0(*)
비시설	100.0	-	100.0(*)

註: * 실수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함.

3. 出生兒 體重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15~44세 유배우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出生時 體重을 살펴보면, 1,000g 미만의 극저체중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極低體重兒로서 조사이전에 사망한 출생아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⁵⁾. 최종출생아 중 출생시 체중이 1,000g~1,500g 미만인 비율은 0.35%로, 男兒인 경우가 0.41%로 女兒인 경우 0.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 중 출생시 체중이 1,500~2,000g 미만인 비율은 0.63%로 남아의 경우 0.53%, 여아의 경우 0.74%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³⁶⁾. 그리고 최종출생아 중 출생시 체중이 2,000~2,500g 미만인 비율은 2.88%(남자 2.67%, 3.12%)로 나타났다(表 6-19 參照).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를 低體重, 2,500g~4,000g 미만인

35) 일본(1995)의 경우 출생시 1,000g 미만 극저체중아 비율은 0.23%(남자 0.22%, 여자 0.23%)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96년 0.12%(남자 0.11%, 여자 0.14%)로 나타남(한영자 외, 1999).

36) 일본(1995)과 한영자 외(1999)에 의한 1996년 추정치를 보면, 1,000~1,500g 미만과 1,500~2,000g 미만의 성별 비교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경우를 正常體重, 4,000g 이상인 경우를 過體重³⁷⁾으로 분류할 경우(한영자 외, 1999; 이무식 외, 1999), 최종출생자 중 정상체중 출생아 비율은 92.2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 중 출산시 체중이 저체중인 비율은 3.86%³⁸⁾로 남아(3.61%)에 비해 여아(4.15%)가 높았으며,³⁹⁾ 과체중 출생아 비율⁴⁰⁾은 3.94%로 남아(4.93%)가 여아(2.8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表 6-19〉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出産時 體重

(單位: %)

체중	남아	여아	전체
500g 미만	-	-	-
500~1,000g 미만	-	-	-
1,000~1,500g 미만	0.41	0.29	0.35
1,500~2,000g 미만	0.53	0.74	0.63
2,000~2,500g 미만	2.67	3.12	2.88
2,500~4,000g 미만	91.46	93.03	92.20
4,000g 이상	4.93	2.81	3.94
계	100.0	100.0	100.0
(수)	(717)	(631)	(1,348)

부인의 거주지별로는 동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읍·면부

37) 과체중의 일부 국제기준은 4,500g임.

38) 출생 체중이 신생아 및 영유아기의 사망, 질병이환 등을 포함한 영아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한영자 외, 1999; 이무식 외, 1999).

39) 외국의 2,500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비율을 보면, 1994~1997년에 핀란드 4.4%, 캐나다 6.0%, 미국 7.0%, 영국 7.2%, 일본 7.1% 등으로 나타남(WHO, 1999).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3.9%는 아주 낮은 수준이나, 저체중 등으로 인한 사망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준은 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됨. 한편, 한영자 외(1999)에 의하면 1996년 우리 나라 저체중 발생비율은 전국이 3.39%였음.

40) 출생시 과체중아의 경우에는 아동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음(Binkin et al., 1988; 이무식, 1999에서 재인용).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출산시 체중이 低體重 및 過體重인 비율이 각각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저체중 비율이 높았던 반면, 과체중 비율은 낮아졌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저체중 비율은 10.4%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3~4%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종출생아의 과체중 비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의 出生順位별로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저체중 및 과체중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表 6-20 參照).

〈表 6-20〉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의 體重¹⁾
(單位: %)

특성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전체	3.9	92.2	3.9	100.0(1,348)
지역				
동부	3.8	92.3	3.9	100.0(1,240)
읍·면부	4.5	91.2	4.3	100.0(10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1	93.5	4.4	100.0(53)
25~29세	3.1	93.0	3.9	100.0(765)
30세 이상	5.7	90.4	3.9	100.0(5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4	82.8	6.8	100.0(53)
고등학교	3.4	93.6	3.0	100.0(765)
대학 이상	3.9	91.1	5.0	100.0(530)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3.2	93.0	3.8	100.0(665)
둘째아	4.0	92.0	4.0	100.0(550)
셋째아 이상	6.7	89.1	4.2	100.0(133)

註: 1) 저체중은 2,500g 이하, 정상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

최종출생아의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저체중인 경우, 부인이 의사 등을 통해 들은 低體重 事由⁴¹⁾를 살펴본 결과, 54.7%가 早期分娩이었으며, 기타 사유가 26.7%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조기분만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52.3%)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77.9%)의 경우 더 높았으며, 기타 사유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24.5%)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13.6%)보다 더 높았다(表 6-21 參照).

〈表 6-21〉 15~44歲 有配偶婦人の 最終出生兒 低體重(2,500g 未滿) 時 理由¹⁾

(單位: %)				
지역	조기분만	기타	모름	계(수)
전국	54.7	26.7	18.6	100.0(52)
동부	52.3	24.5	19.6	100.0(47)
읍·면부	77.9	13.6	8.5	100.0(5)

註: 1) 읍주, 흡연, 약물복용 등에 의한 저체중 여부도 조사되었으나 나타나지 않았음.

第 3 節 授乳樣相

母乳은 영아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강뿐만 아니라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고, 경제적이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간편성 등의 長點이 있어 이상적인 수유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Hamson & Winberg, 1972;

41) 출생아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성의 연령, 출생순위, 출산 또는 임신 간격, 임신시간, 사회경제적 수준 및 산전관리 등으로 알려져 왔음(Kramer, 1987; Wang et al., 1984; Yudkin et al., 1983; 이무식 외, 1999에서 재인용).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체중증가, 식생활 등도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Niswander & Jackson, 1974; 이무식 외, 1999에서 재인용).

Lawrence, 1980: 박정환 외, 1999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WHO, UNICEF 등 국제보건기구, 정부, 민간단체 등에서는 母乳授乳率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모유수유의 장점 및 중요성을 홍보하여 왔다. 母子同室制를 실시하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허가시 모자동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병원에 대해서도 모자동실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분만급여 기간 중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母子同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일정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여성단체 등 각급 사회단체도 母乳授乳勸獎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출생한 最終出生兒의 授乳方法을 살펴보면, 모유수유율⁴²⁾이 10.2%로 1997년의 14.1%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유와 인공유(분유 포함)를 함께 먹인 混合授乳率은 1997년 52.5%에서 2000년 65.0%로 크게 높아졌으며, 人工授乳率은 1997년 33.4%에서 2000년 24.8%로 낮아졌다. 모유수유 또는 혼합수유의 비율은 1997년 66.6%에서 2000년 75.2%로 높아졌다(表 6-22 參照).

〈表 6-22〉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授乳樣相(1985~2000. 6)
(單位: %)

연도	모유수유	혼합수유	인공수유/분유	계(수)
1985	59.0	25.3	15.6	100.0(3,538)
1988	48.1	33.9	18.0	100.0(2,843)
1994	11.4	60.7	27.9	100.0(1,930)
1997	14.1	52.5	33.4	100.0(1,163)
2000	10.2	65.0	24.8	100.0(1,355)

資料: 〈表 6-1〉 과 동일

42) 모유수유에는 모유와 보충식을 먹이는 경우를 포함하였음.

부인의 특성에 따른 수유양상은 <表 6-23>에 제시하였다. 母乳授乳率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10.1%)에 비해 읍·면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11.3%)에게서 다소 높았으며, 混合授乳率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母乳授乳率은 教育水準이 높은 부인일수록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였는데,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모유수유율은 19.8%로 비교적 높았으나,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1.3%,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에는 7.7%로 나타나 중학교 이하 학력 부인과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의 모유수유율은 약 3배의 큰 차이가 있었다. 반면 混合授乳率은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68.3%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 62.9%,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 61.5%보다 높게 나타났다(表 6-23 參照).

<表 6-23>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最終出生兒 授乳樣相 (單位: %)

특성	모유수유	혼합수유	인공수유	계(수)
전체 지역	10.2	65.0	24.8	100.0(1,355)
동부	10.1	65.8	24.1	100.0(1,246)
읍·면부	11.3	56.0	32.7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8	61.5	18.7	100.0(53)
고등학교	11.3	62.9	25.8	100.0(770)
대학 이상	7.7	68.3	24.0	100.0(532)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0.0	66.3	23.7	100.0(203)
25~29세	8.9	66.8	24.3	100.0(697)
30세 이상	12.2	61.7	26.1	100.0(455)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9.7	67.6	22.7	100.0(670)
둘째아	9.8	63.8	26.4	100.0(552)
셋째아이상	14.3	56.3	29.4	100.0(133)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별 모유수유율은 30세 이상 부인에게서 1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4세 이하 부인의 경우 10.0%이며, 25~29세 부인에게서 8.9%로 가장 낮았다. 모유수유율과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간 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율이 14.3%로 가장 높고, 첫째아와 둘째아인 경우에는 약 1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表 6-24 參照).

〈表 6-24〉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生後 6個月時의 授乳樣相

(單位: %)

특성	모유수유	혼합수유	인공수유	기타	계(수)
전체	19.0	7.7	72.6	0.7	100.0(1,014)
지역					
동부	18.6	7.8	72.8	0.8	100.0(931)
읍·면부	22.6	6.7	70.7	-	100.0(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5	1.7	57.8	-	100.0(42)
고등학교	21.4	7.2	70.3	1.1	100.0(575)
대학 이상	13.1	9.0	77.7	0.2	100.0(39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9.3	7.3	69.6	3.7	100.0(159)
25~29세	16.5	7.9	75.6	-	100.0(516)
30세 이상	22.5	7.6	69.5	0.4	100.0(339)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15.8	7.9	76.2	0.2	100.0(480)
둘째아	19.9	7.7	70.9	1.5	100.0(430)
셋째아 이상	29.6	6.8	63.6	-	100.0(104)

최종출생아의 출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을 보면, 모유수유율이 19.0%, 혼합수유율 7.7%, 인공수유율이 72.6% 그리고 기타(이유식 등) 0.7%로 각각 나타났다. 1997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母乳授

乳率(1997년 22.1%)과 混合授乳率(1997년 10.5%)은 낮아진 반면, 인공수유율(1997년 67.3%)은 높아졌다.

지역별 최종출생아의 출생후 6개월시 모유수유율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별로는 연령계층간 모유수유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表 6-25〉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月齡別 授乳樣相 (單位: %)

최종출생아 월령	모유 만	모유 +보충식	혼합유	혼합유 +보충식	인공 수유만	인공유 +보충식	보충식	계(수)
생후 1주	43.9	0.3	25.5	5.4	22.6	2.3	-	100.0(1,350)
생후 2주	46.1	0.1	23.7	0.4	29.7	-	-	100.0(1,343)
생후 3주	43.9	0.1	21.9	0.4	33.7	-	-	100.0(1,335)
생후 4주	40.7	0.1	22.7	0.4	36.1	-	-	100.0(1,325)
1~2월 미만	35.2	0.5	19.0	0.6	44.2	0.5	-	100.0(1,300)
2~3월 미만	29.3	1.7	13.5	2.4	47.9	5.2	-	100.0(1,247)
3~4월 미만	22.1	4.4	9.6	4.2	40.3	19.4	-	100.0(1,180)
4~5월 미만	14.9	8.4	4.9	6.3	25.8	39.6	0.1	100.0(1,118)
5~6월 미만	9.5	11.2	2.8	8.2	16.3	51.7	0.3	100.0(1,065)
6~7월 미만	7.3	11.6	1.2	6.6	12.3	60.3	0.7	100.0(1,014)
7~8월 미만	6.1	9.8	1.2	6.7	9.6	65.4	1.2	100.0(958)
8~9월 미만	5.0	9.0	1.0	5.1	8.5	69.9	1.5	100.0(905)
9~10월 미만	3.9	8.6	1.1	5.1	7.0	72.5	1.8	100.0(855)
10~11월 미만	2.5	7.8	1.0	4.3	7.1	74.7	2.6	100.0(813)
11~12월 미만	1.9	7.5	0.8	4.6	6.4	75.6	3.2	100.0(777)
12~13월 미만	1.0	5.4	0.7	4.9	5.0	75.7	7.3	100.0(735)
13~14월 미만	1.0	5.1	0.7	4.0	3.6	75.9	9.7	100.0(685)
14~15월 미만	0.7	5.0	0.6	3.5	2.7	77.8	9.7	100.0(652)

19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기간동안 출생한 최종출생아의 수유양상을 최종출생아의 月齡別로 살펴보면 <表 6-25>와 같다. 모유수유율은 생후 2주에 46.2%로 높으나, 생후 1개월째에 35.7%로 낮아지고, 생후 2개월째에 31.0%, 생후 3개월째에 26.5%, 생후 6개월째에 20% 미만, 생후 10개월째에 10%대로 낮아지는 등 월령 증가와 함께 급속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당시 1세 이상 최종출생아의 1년간 授乳樣相을 살펴보면 <表 6-26>과 같다. 모유를 수유한 평균기간은 3.03개월로 부인의 居住地域

<表 6-26>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調査當時 1歲 以上)의 生後 1年間 母乳授乳 樣相¹⁾

(單位: %, 개월)

기간	전체	거주지		출산시 부인연령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15~24세	25~29세	30세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생후 1주	47.26	46.75	52.41	47.17	45.96	49.29	70.43	47.77	43.79
생후 2주	50.49	50.26	52.87	54.35	48.08	52.15	70.43	51.60	46.42
생후 3주	48.98	48.81	50.75	51.42	47.52	49.93	70.43	50.32	44.37
생후 4주	45.45	45.15	48.44	48.97	45.00	44.27	65.90	47.89	39.18
1~ 2월 미만	40.14	40.01	41.44	45.82	39.91	37.49	65.90	43.12	32.38
2~ 3월 미만	35.44	35.15	38.37	38.17	34.19	35.90	65.90	38.59	26.87
3~ 4월 미만	30.51	30.30	32.60	28.33	30.24	32.07	58.76	33.44	22.55
4~ 5월 미만	27.56	26.95	33.72	28.27	26.35	29.04	54.13	31.32	18.48
5~ 6월 미만	24.85	24.08	32.74	27.19	21.31	29.04	54.13	28.50	15.64
6~ 7월 미만	22.18	21.61	27.95	23.39	17.77	28.27	51.64	24.99	14.29
7~ 8월 미만	18.07	17.44	24.43	20.77	13.56	23.53	46.79	19.47	12.52
8~ 9월 미만	16.04	15.21	24.43	17.51	12.68	20.38	42.90	17.36	10.83
9~10월 미만	13.61	12.83	21.47	14.84	10.41	17.85	34.20	14.55	9.74
10~11월 미만	10.57	9.80	18.32	12.49	7.95	13.55	34.20	10.63	7.76
11~12월 미만	9.88	9.23	16.40	11.54	7.42	12.76	34.20	9.46	7.76
12~13월 미만	6.33	5.83	11.45	8.20	4.15	8.69	29.47	6.18	3.93
평균	3.03	2.96	3.74	3.27	2.73	3.37	6.42	3.27	2.26
모유수유기간									

註: 1) 부인 720명을 대상으로 함.

別로 보면, 동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의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2.96개월로 읍·면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의 모유수유기간인 3.74개월에 비해 0.78개월이 짧았다.

出産時 婦人の 年齢別로는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모유수유기간이 3.37개월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15~24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3.27개월 그리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2.7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부인의 教育水準別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모유수유기간이 6.4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 3.27개월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 2.26개월로 高學歷 부인일수록 平均 母乳授乳期間이 짧았다.

최종출생아에게 모유를 전혀 수유하지 않거나, 수유하다가 중단한 부인의 조사당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理由로는 ‘모유가 부족하거나 만나와서’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表 6-27 參照).

〈表 6-27〉 15~44歲 有配偶婦人の 母乳授乳 無經驗 및 中斷 理由 (單位: %)

모유 비수유 이유	1997	2000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만나와서	43.3	49.3	50.1	39.8
엄마의 건강상 이유로	12.8	9.3	9.0	13.2
아기의 건강상 이유로	7.3	8.7	8.6	9.7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안빨아서	8.7	6.6	6.6	7.3
취업때문에	6.1	8.1	8.3	6.3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2.4	1.4	1.4	0.8
젖을 땀 시기가 되어서	16.4	13.4	13.0	17.4
유두 함몰	1.2	1.8	1.8	2.2
기타	1.8	1.4	1.2	3.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979)	(1,125)	(1,032)	(93)

資料: 〈表 6-4〉와 동일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동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의 50.1%가 위 이유로 조사당시 모유를 수유하지 않았으며, 이는 1997년 조사결과(43.3%)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로는 ‘젖을 땀 시기가 되어서(13.4%)’, ‘엄마의 건강상 이유(9.3%)’, ‘아기의 건강상 이유(8.6%)’등 순이었다. 특히, ‘취업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는 1997년 6.1%에서 2000년 8.1%로 높아졌다.

제왕절개는 모유수유율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박정환 외, 1999). 따라서 분만형태와 출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表 6-28>과 같다.

〈表 6-28〉 15~44歲 有配偶婦人 中 最終兒 出產時 帝王切開分娩과 授乳樣相(出生後 1個月時)과의 關係

(單位: %)

분만형태	수유양상			계(수)
	모유수유	혼합수유	인공수유	
전체	35.7	19.6	44.7	100.0(1,300)
자연분만	37.6	21.0	41.4	100.0(812)
제왕절개	32.5	17.4	50.1	100.0(488)
동부	35.9	20.0	44.1	100.0(1,196)
자연분만	37.7	21.4	40.9	100.0(758)
제왕절개	32.8	17.4	49.8	100.0(438)
읍·면부	33.9	15.7	50.4	100.0(104)
자연분만	37.1	14.7	48.2	100.0(55)
제왕절개	30.3	16.7	53.0	100.0(49)

自然分娩인 경우 母乳授乳率은 37.6%로 帝王切開인 경우 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합수유를 포함한 모유를 먹인 비율도 자연분만의 경우 58.6%로 제왕절개의 경우 49.9%보다 약 10%

포인트가 높았다. 부인의 거주지별로는 전국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자연분만시 모유수유율은 37.7%로 제왕절개시 모유수유율 3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에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시 모유수유율은 37.1%, 30.3%로 각각 나타났다.

第 4 節 先天性代謝異常檢查 實態

先天性代謝異常檢查는 신생아를 조기에 검사하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高危險 女性(또는 부부)에 대한 義務的 檢查는 1991년부터 도입되었다. 1995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분만하거나 보건소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신생아, 모자보건 진료기관에서 분만한 저소득층 신생아 그리고 市長·郡守·區廳長이 무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 등에 대해 無料檢查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다⁴³⁾(表 6-29 參照).

검사기관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병·의원으로서 先天性代謝異常檢查 이론 및 기술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가 확보된 의료기관과 검사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民間分婭醫療機關의 自律的 參與를 유도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검사의

4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이상자(환아)로 판명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무료검사 실시 이전 이상자로 보고된 자 포함)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함. 그리고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검사결과 이상자로 판명된 경우 정밀검사를 위한 2차 검사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0).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表 6-29〉 母子保健事業에 의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種類 및 支援費用(1991~2000年)

(單位: 원)

연도	검사비	사후관리항목
1998~2000	9,50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1997	8,64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1996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5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4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1993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2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1	8,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註: 1) 1995년과 1996년 검사항목은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임.
資料: 보건복지부, 『가족보건사업지침』, 연도별 자료.

1998년부터 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최종출생아 중 先天性代謝異常檢査를 받은 비율은 88.8%로 1994년 35.7%, 1997년 7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居住地別로는 읍·면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先天性代謝異常檢査比率(93.0%)이 동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8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1994년부터 나타났으나, 최근에 들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農村地域에서는 보건(지)소 등에서 母子保健事業의 一環으로 보건요원이 부인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에 대한 수검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유한 반면, 都市地域에서는 현실적으로 개별적 홍보 및 권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表 6-30 參照).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수검률은 부인의 교육수준과 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高學歷 婦人이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接近도가 높고, 출생아의 健康에 대한 關心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연령과 선천성대사이상 수검률간의 관계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25~29세 부인의 경우 수검률이 90.9%로 가장 높고,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경우 87.9%인데 반하여, 24세 이하 저연령층 부인의 수검률은 8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表 6-30〉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受檢 與否

(單位: %)

특성	1994 검사율	1997 검사율	2000			계(수)
			하였음	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35.7	73.6	88.8	7.1	4.1	100.0(1,351)
지역						
동부	35.7	73.4	88.4	7.3	4.3	100.0(1,242)
읍·면부	35.8	74.4	93.0	4.7	2.3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2	65.7	81.5	8.6	9.9	100.0(53)
고등학교	33.5	71.6	86.7	7.9	5.4	100.0(768)
대학 이상	43.2	79.0	92.5	5.8	1.7	100.0(53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6.6	70.2	83.3	10.0	6.7	100.0(201)
25~29세	33.9	72.7	90.9	5.5	3.6	100.0(695)
30세 이상	39.3	77.3	87.9	8.2	3.9	100.0(455)

資料: 〈表 6-1〉 과 동일

先天性代謝異常檢査의 費用支拂 形態는 自費負擔⁴⁴⁾인 경우가 81.0%

44) 정보보조에 의한 검사항목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노증 2종이며, 민간병원에서 자비부담으로 추가검사하는 항목은 이형 고페닐알라딘혈증, 단풍당뇨

이며, 정부에 의한 무료는 13.5% 그리고 정부에 의한 무료에다가 자비를 지불한 경우는 2.8%로 나타났다(表 6-31 參照). 1997년(자비부담률 88.3%, 무료(정부) 11.2%)에 비해 2000년에 자비부담에 의한 검사 비율은 낮게, 그리고 무료검사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료검사에 대한 政府의 持續的인 弘報事業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表 6-31〉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 檢査 費用支拂形態

(單位: %)

특성	자비	무료	자비+정부	기타	계(수)
전국	81.0	13.5	2.8	2.7	100.0(1,020)
동부	81.6	12.6	2.9	2.9	100.0(947)
읍·면부	72.3	25.0	2.7	-	100.0(7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4.6	12.4	3.7	9.3	100.0(32)
고등학교	78.2	15.5	3.7	2.6	100.0(569)
대학 이상	85.2	11.0	1.5	2.3	100.0(41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9.1	24.1	5.2	1.6	100.0(144)
25~29세	84.2	11.1	3.2	1.5	100.0(539)
30세 이상	80.9	12.8	1.3	5.0	100.0(337)

地域別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先天性代謝異常檢査 자비부담 비율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보다 높고, 정부에 의한 무료 비율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중,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이상증 등으로 검사항목수 및 병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教育水準別로는 고학력 부인일수록 자비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출생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부인에게서 자비부담률이 저연령층 부인에게서 보다 높았다.

先天性代謝異常檢査 비용이 자비부담인 경우 그 금액은 4~5만원 미만이 2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만원 미만이 23.6%, 5~6만원 미만이 19.7%로 나타났다. 정부보조 및 자비부담에 의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의 부담금액은 8~9만원 미만이 82.5%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이 17.5%로 나타났다(表 6-32 參照).

〈表 6-32〉 15~44歲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에 대한 先天性代謝異常檢査 費用負擔

(單位: %)

구분	1~3	3~4	4~5	5~6	6~7	7~8	8~9	9~10	10만원 이상	계(수)
	만원 미만									
자비	11.6	23.6	29.3	19.7	3.6	3.3	4.2	0.9	3.9	100.0(454)
자비+정부	-	-	-	-	-	-	82.5	-	17.5	100.0(474)

第 5 節 豫防接種 實態

정부는 영유아에게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여 전염병을 예방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基礎豫防接種事業을 실시하여 왔다. 이를 위해 반사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 집단예방접종 일시 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접종누락자에 대해서는 보건요원의 방문, 우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기초예방접종의 종류별로 標準接種時期 및 豫防接種率을 <表 6-33>에 제시하였다. 예방접종률은 1998년~2000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최

중출생아로서 표준접종시기를 초과한 출생아 중 예방접종을 한 출생아의 비율로 구하였다. 한편, 간염예방접종 1차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2차는 1차 간염예방접종을 한 출생아 그리고 3차 간염예방접종은 2차 접종을 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률을 구하였다.

BCG의 예방접종률은 99.6%로 거의 모든 출생아가 예방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폴리오 등을 예방하기 위한 DTaP 1차 접종률은 98.7%, 2차 접종률은 98.0%, 그리고 3차 접종률은 95.3%이었다. 그러나 생후 18개월시 접종하는 DTaP 추가접종률은 75.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접종하는 MMR의 예방접종률은 90.2%이었다. 간염 예방접종률은 1차 98.3%, 2차 94.8% 그리고 3차 80.4%로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6-33〉 15~44세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 豫防接種率(1998~2000. 6月 出生兒)

(單位: %)

구분	표준 접종시기	집계대상	예방접종률		
			전체	동부	읍·면부
BCG	1개월이내	1개월 이상	99.6	99.6	99.2
DTaP					
1차	2개월	3개월 이상	98.7	98.7	99.2
2차	4개월	5개월 이상	98.0	97.9	98.4
3차	6개월	7개월 이상	95.3	95.2	96.5
MMR	12~15개월	16개월 이상	90.2	89.9	92.8
DTaP(추가)	18개월	19개월 이상	75.8	74.5	89.9
간염 ¹⁾					
1차	-	전체	98.3	98.1	100.0
2차	-	1차 기접종	94.8	95.0	92.2
3차	-	2차 기접종	80.4	80.2	82.6

註: 1) 간염2차의 접종대상자는 1차 기 접종자로 국한하였으며, 간염3차 접종대상자는 2차 기 접종자로 국한하였음.

예방접종유형별 豫防接種場所를 살펴보면, 民間病·醫院에 예방접종을 한 비율이 保健所에서 예방접종을 한 비율보다 매우 높았다. 즉, BCG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비율은 2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DTaP 1~3차는 약 30%가 보건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약 70%는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MMR과 DTaP 추가 접종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비율이 33.6%와 38.0%로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염의 경우 1차접종은 주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였으나,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의 접종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表 6-34 參照).

〈表 6-34〉 15~44세 有配偶婦人의 最終出生兒의 豫防接種 種類別 接種場所

(單位: %)

구분	(종합)병원·의원	보건소 (지소 등)	기타	계(수)
BCG	78.4	21.6	-	100.0(1,269)
DTaP				
1차	70.0	30.0	-	100.0(1,191)
2차	68.4	31.6	-	100.0(1,066)
3차	67.8	32.2	-	100.0(940)
MMR	66.4	33.6	-	100.0(531)
DTaP(추가)	62.0	38.0	-	100.0(348)
간염				
1차	87.4	12.6	-	100.0(1,310)
2차	72.0	27.9	0.1	100.0(1,230)
3차	70.2	29.7	0.1	100.0(991)

第 6 節 母子保健實態 變化의 示唆點

2000년 산전수진율은 100%로 모든 부인이 産前管理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보겠다. 즉, 정부에서 오랜 기간동안 地域社會 中心으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弘報 및 教育活動을 꾸준히 전개하는 동시에 부인의 産前受診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각종 관련 정보제공, 무료검사, 주기적 전화 상담, 방문 권유,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한 성과로 보인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빈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母子保健을 集中的으로 實施하여 왔으며, 全國民醫療保險을 實施하는 등 보건의료시설의 접근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부터는 임부의 산전관리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임신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영향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산전수진율이 100%에 달하고 있을지라도 산전관리의 시기가 늦을수록 태아 및 임부의 이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고 또한 이상 발견시 치료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전관리를 위한 수진횟수도 태아 및 임부 이상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전관리를 위한 초진의 시기가 늦고 산전수진 횟수가 비교적 적은(특히, 정부 권장횟수 7회에 비해 적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 저연령층 부인, 그리고 다출산 부인을 대상으로 妊娠認知方法, 早期 産前受診 및 충분한 産前受診回數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수첩을 포함한 健康手帖의 受取率이 99.3%로 대부분 임부가 건강수첩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모자보건수첩 이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각종 건강수첩을 발급해주고 있어 2종류 이상의 건강수첩을 수취한 부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었으며, 세 종류 이상의 건강수첩을 수취한 부인

의 비율도 약 12%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모자보건수첩을 수취한 부인이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소 발급 모자보건수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건강수첩을 발급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산후관리를 하는 경우 검진 등의 연속성이 상실되어 費用浪費 및 산전·산후 관리의 非效率性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수첩의 標準化 및 單一化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 産後受診率은 85.0%로 1997년에 81.0%에 비해 높아졌으나, 산전수진율이 10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산후수진율의 제고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노력은 산후수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低學歷, 低年齡 및 읍·면부지역 부인에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산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接近性 提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1998~2000년 6월 기간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유배우부인의 비율은 5.7%이며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洞部地域에서 그리고 高學歷 및 高年齡層 부인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부인 중 건강문제가 발생한 비율은 5.4%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내에서의 산후조력이 더욱 어려워져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健康問題의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연구평가가 실시되어야겠다.

帝王切開에 의한 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왕절개술이 신생아 사망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있는 한

편, 다른 한편으로는 산모의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否定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윤성도, 1997). 특히 제왕절개술은 醫學的으로 정상분만에 비해 많은 合併症을 초래하고(조남훈 외, 1997), 母乳授乳實踐率을 감소시키는(박정환 외, 1999) 등 모자보건 증진에 阻害要因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초래하는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非産婦人科的 要因에 의한 제왕절개를 最小化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에서와 같이, 분만을 의료수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非醫學的인 이유에 의한 제왕절개에 대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체중출생으로 인한 신생아 및 영유아기의 사망과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高危險 婦人群을 집중 대상으로 저체중출생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산전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이 매우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진료행위와 관련된 의료보험수가가 없어 신생아치료를 기피하고 있으며, 집중치료자원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한영자 외, 1996), 신생아 집중치료 酬價의 現實化가 필요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母乳授乳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며, 母와 유대를 긴밀하게 가짐으로써 모자보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美國의 경우 모유수유율이 1970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1984년에는 61.0%까지 육박한 사례(박정환 외, 1999)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모유수유율 저하는 女性的 經濟活動 增加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제왕절개의 증가와도 깊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母子同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각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유수유율이 생후 2주시 46%로 아주 높았으나 이후 큰 폭으로 낮아지는 점을 보아, 병·의원에서 각종 노력도 중요하나 퇴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유 수유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지도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여성을 위해 職場內 保育施設을 확충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애아의 출생은 일생동안 그 본인은 물론 가족과 국가에게 精神的, 經濟的, 社會的으로 큰 부담과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발생 고위험 신생아에 대해 發生可能 要因을 除去하며 早期發見 및 早期治療를 통해 장애정도를 最小化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을 100% 수준까지 상승시킬 수 있도록 產前 및 產後管理를 위한 홍보와 교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분만한 부인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아의 檢査義務를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第 7 章 結婚樣相 및 家族週期

전통사회는 早婚과 함께 높은 死亡率에 의해 多産이 추구되었으나 근대사회는 사망력의 저하와 婚前役割의 다양화로 晩婚 및 小産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子女의 價値는 노동력 제공과 노후의존, 가계계승 등에 있었으나 점차 자녀에 대한 의존도나 가계계승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어 결혼과 출산이 시대적 여건과 생활양식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공세권 외, 1992).

일반적으로 결혼여부는 再生産(reproduction)가능성을 결정하고, 재생산기간은 결혼연령과 사별·이혼·별거 등에 의한 解婚時期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結婚과 出産力과는 밀접한 關聯性을 갖는다. 또한 가족이 결혼, 자녀출생, 자녀의 출가, 배우자의 사망 등 일련의 家族生涯事件(family life events)을 段階的으로 經驗하는 過程을 의미(정기선, 1997)하는 家族週期에 있어서도 結婚은 가족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解婚은 가족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해체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결혼 및 해혼시기는 가족주기의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本 章에서는 결혼성립시기, 지속기간, 해혼시기 및 그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이혼율의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와 관련하여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혼·별거가족의 子女의 養育 및 扶養責任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家族週期 樣相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혼 및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에 따른 家族福祉政策의 方向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第 1 節 結婚樣相

1. 結婚狀態

15~64세 기혼부인(10,715명)의 結婚狀態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89.8%)에 있으며, 사별(7.0%)과 이혼·별거(3.2%)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地域別로는 유배우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90.0%)이 읍·면부지역(87.7%)보다 높은 반면, 사별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6.5%)보다 읍·면부지역(11.0%)이 높고, 이혼·별거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3.5%)이 읍·면부지역(1.3%)보다 높았다(表 7-1 參照).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동부지역의 경우 젊은 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읍·면부지역보다 높고, 반대로 읍·면부지역은 高齡層 婦人들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表 2-10 參照).

〈表 7-1〉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結婚經歷別 分布

(單位: %)

결혼경력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결혼			
초혼	98.2	98.3	97.2
재혼	1.8	1.7	2.8
계	100.0	100.0	100.0
(수)	(10,675)	(9,508)	(1,167)
남편결혼			
초혼	97.6	97.8	96.7
재혼	2.4	2.2	3.3
계	100.0	100.0	100.0
(수)	(10,700)	(9,531)	(1,169)

結婚經歷別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初婚(98.2%)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地域別로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재혼부인의 비율이 동부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동부: 1.7%,

읍·면부: 2.8%). 이를 기혼부인 남편의 결혼경력과 비교해 보면, 초혼인 남편들의 비율은 97.6%로 부인들의 초혼비율 보다는 낮았고, 재혼비율은 2.4%로 부인들(1.8%)보다 높았다.

夫婦의 結婚經歷別 結合形態를 살펴보면, 男女 모두 初婚인 경우가 97.3%로 대부분이며, 남녀 모두 재혼 1.5%, 여자 초혼·남자 재혼 0.9%, 그리고 여자 재혼·남자 초혼은 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재혼을 禁忌視 해온 우리 나라의 社會·文化的인 背景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表 7-2> 15~64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結婚經歷

(單位: %)

부인결혼	남편결혼		계(수)
	초혼	재혼	
초혼	97.3	0.9	98.2(10,505)
재혼	0.3	1.5	1.8(195)
전체	97.6	2.4	100.0(10,700)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간의 결혼관의 변화로 차츰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본 조사와 1997년 조사의 15~49세 기혼부인⁴⁵⁾만을 대상으로 부부간 結婚 經歷別 結合形態를 살펴 본 <表 7-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97년의 경우 여자의 재혼비율은 1.1%이었으나 2000년에는 1.4%로, 그리고 남자의 재혼비율은 1.3%에서 1.6%로 증가하였으며, 여자 초혼·남자 재혼비율은 1997년 0.5%에서 2000년에는 0.6%로, 여자 재혼·남자 초혼비율은 같은 기간에 0.3%에서 0.4%로 증가하였다⁴⁶⁾. 全體적으로 볼 때,

45) 15~49세 부인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것은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의 대상이 15~49세 부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男女 모두 初婚인 結合形態의 비율은 減少하고 있으며, 再婚인 結合形態의 비율은 增加趨勢임을 알 수 있다.

〈表 7-3〉 15~49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結婚經歷(1997, 2000年)
(單位: %)

부인결혼	남편결혼		계(수)
	초혼	재혼	
1997			
초혼	98.4	0.5	98.9(6,381)
재혼	0.3	0.8	1.1(69)
전체	98.7	1.3	100.0(6,450)
2000			
초혼	98.0	0.6	98.6(7,852)
재혼	0.4	1.0	1.4(109)
전체	98.4	1.6	100.0(7,961)

註: 1997년과의 비교를 위해 2000년 자료 중 15~49세 기혼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男女 特性別 結合形態

가. 初婚年齡別 結合

初婚年齡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교육기회 및 취업률의 증가에 따른 혼전역할의 다양화에 의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自律婚의 증가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家外 就業率의 增加 등으로 부모의

46) 이러한 남녀 결혼경력별 결합형태의 변화양상은 통계청의 연도별 자료에서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음.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1990년에 89.3%에서 1999년 82.5%로,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같은 연도에 3.6%에서 3.5%로 감소하였으나, 남자 초혼·여자 재혼 비율은 2.3%에서 4.7%로, 그리고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9.3%로 증가하여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00).

影響力이 弱化됨으로써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주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인과 남편의 初婚年齡別 分布를 보면, 19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47.4%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4.8%로 대부분(82.2%)이 20대의 남성과 결혼하였다.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은 25~29세의 남성(65.4%)과 결혼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25.1%)이 높았다. 이에 비해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8.6%이었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59.8%,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80.6%에 달했다(表 7-4 參照).

全體的으로 보면 24세 이하의 여성은 한 年齡階層 위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높았고, 25세 이상의 여성은 同一한 年齡層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은 같은 연령층인 35세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남녀 모두 結婚適齡期⁴⁷⁾가 지난 상태에서 배우자의 선택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연령상의 同質婚⁴⁸⁾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7) 결혼적령기는 규범적인 결혼연령으로, 우리 나라 15~49세 기혼부인의 상당수는 남자 28~29세, 여자 24~25세를 결혼적령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공세권 외, 1992).

48) 결혼에 있어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同質婚과 異質婚을 들 수 있음. 이 중 同質婚은 배우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특성 등이 유사한 경우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異質婚은 그 반대의 경우 결혼하게 되는 것을 말함.

〈表 7-4〉 15~64歲 既婚婦人과 男便의 初婚年齡別 分布

(單位: %)

부인	남편					계(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9세 이하	13.7	47.4	34.8	3.9	0.2	100.0(1,368)
20~24세	1.0	25.1	65.4	7.9	0.6	100.0(5,675)
25~29세	0.1	2.9	68.6	26.0	2.4	100.0(3,022)
30~34세	-	1.1	14.7	59.8	24.4	100.0(266)
35세 이상	-	-	-	19.4	80.6	100.0(31)
전체	2.4	20.9	60.8	14.0	1.9	100.0(10,362)

남녀간의 초혼연령별 분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特徵은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하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20~24세에 결혼한 부인의 경우 19세 이하의 年下男性과 결혼한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25~29세에 결혼한 부인이 24세 이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0%, 30~34세에 결혼한 부인이 29세 이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15.8%,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부인이 34세 이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19.4%로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統計廳의 男女의 結婚年齡 構成上의 變化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 연상의 여자와의 결혼비율은 8.8%이었으나 1995년에는 8.7%로, 그리고 1999년에는 10.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00).

男便과 婦人의 平均 初婚年齡은 남편 26.96세, 부인은 23.15세⁴⁹⁾로

49) 이러한 실제 조사에 의한 남녀의 초혼연령은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초혼연령 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추정방법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조사결과에 의한 平均 初婚年齡은 조사대상부인 및 그 배우자의 실제 결혼연령의 평균값으로서 통계청에 의한 초혼연령과는 차이를 보임. 통계청 자료는 Hajnal 방법에 의해 추정된 초혼연령(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SMAM)으로써 이는 어떤 한 시점의 혼인상태에 관한 정태적인 자료인 연령별 미혼인구 구성비에서 계산되는 間接的인 測定值로서 실제 결혼연령 보다는 높게 추정됨(조남훈 외, 1997). 통계청자료에 의한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을 보면, 1966년

남녀간에 3.81세의 차이를 보였다(表 7-5 參照).

〈表 7-5〉 男便 및 婦人의 特性別 平均 初婚年齡¹⁾

(單位: 세)

특성	남편	부인	차이(남편-부인)
전체	26.96	23.15	3.81
지역			
동부	27.09	23.29	3.80
읍·면부	25.88	21.98	3.90
연령			
15~24세	20.98	20.84	0.14
25~29세	25.55	23.97	1.58
30~34세	27.21	24.56	2.65
35~39세	27.41	23.89	3.52
40~44세	26.87	23.49	3.38
45~49세	26.72	22.64	4.08
50~54세	26.60	22.05	4.55
55~59세	26.23	22.07	4.16
60~64세	25.69	20.48	5.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5.44	20.96	4.48
중학교	26.13	22.18	3.95
고등학교	26.66	23.66	3.00
대학 이상	27.73	25.38	2.35
초혼년도			
1959년 이전	23.02	18.75	4.27
1960~1969년	25.96	21.30	4.66
1970~1979년	26.48	22.25	4.23
1980~1989년	26.91	23.57	3.34
1990~2000년	28.11	25.01	3.10

註: 1)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만 대상으로 함.

남자의 초혼연령은 26.7세, 여자는 22.8세이었으며, 1987년에는 남자 27.3세, 여자 24.5세로, 그리고 1999년에는 남자 29.1세, 여자 26.3세(통계청, 1999)로, 초혼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본 조사결과의 남녀 초혼연령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地域別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男便의 初婚年齡을 보면, 동부지역에 거주자는 27.09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5.88세로 1.21세의 차이를 보였으나, 婦人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23.29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1.98세로 부인의 초혼연령의 지역간 차이는 1.31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지역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 初婚年齡은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남편과 부인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0.14세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초혼연령간의 차이도 많아져 35~39세는 3.52세, 60세 이상의 경우 5.21세까지 차이가 났다.

教育水準別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高學歷일수록 減少하였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편의 초혼연령은 25.44세, 동일한 교육수준의 부인 초혼연령은 20.96세이었으며, 중학교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은 26.13세, 부인은 22.18세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졌다. 특히 대학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남편의 초혼연령은 27.73세, 부인은 25.38세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간 차이는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4.48세에서 대학이상의 경우 2.35세로 감소하였다. 또한 初婚年度別로는 최근에 결혼한 남녀일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남녀별 초혼연령간의 차이는 감소하여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남편의 초혼연령은 23.02세, 부인의 초혼연령은 18.75세로 남녀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4.27세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남편은 28.11세, 부인은 25.01세

로 그 차이는 3.10세로 감소하였다.

나. 教育水準別 結合

配偶者 選擇條件에 있어 교육수준은 결혼당사자들의 社會·經濟的 水準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指標로서 배우자선택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教育水準 一致度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55.9%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과의 결합률(47.0%)이 같은 학력의 남성과의 결합률(42.8%)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동일한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64.9%이었으며, 대학이상의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91.2%에 이른다(表 7-6 參照).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教育水準에 따른 同質婚의 경향이 뚜렷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7-6〉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教育水準別 分布

(單位: %)

부인	남편				계(수)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초등학교 이하	55.9	25.4	17.1	1.6	100.0(1,829)
중학교	4.4	42.8	47.0	5.8	100.0(1,554)
고등학교	0.8	3.6	64.9	30.7	100.0(4,068)
대학 이상	0.2	0.5	8.1	91.2	100.0(1,991)
전체	12.0	13.6	40.7	33.7	100.0(9,442)

다. 婚前 最長居住地別 結合

케르코프와 데이비스(Kerkoff & Davis)의 配偶者 選擇理論⁵⁰⁾에 의하면 모든 대상자 중 일차적으로 현실적, 지리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와의 결합, 즉, 地理的인 近接性的의 濾過網을 통해 결혼상대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되어 점차 결혼상대자로서의 범위가 좁혀져 한 사람을 배우자로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본 조사의 부부간의 婚前 最長 居住地別 結合비율을 통해서도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혼전 최장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 결합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합률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大都市에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의 결합률은 82.3%이었으며, 中·小都市인 경우는 72.4%, 邑·面所在地는 69.6%, 그리고 기타 農·漁村은 76.6%로, 이는 혼전 최장 거주지에서도 同質婚의 傾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7-7〉 15~64歲 既婚婦人 및 男便의 婚前 最長居住地別 分布 (單位: %)

부인	남편				계(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소재지	기타 농·어촌	
대도시	82.3	9.9	4.1	3.7	100.0(4,331)
중·소도시	14.3	72.4	7.9	5.4	100.0(2,744)
읍·면소재지	12.3	11.3	69.6	6.8	100.0(1,833)
기타 농·어촌	9.0	8.1	6.3	76.6	100.0(1,770)
전체	40.7	25.9	16.7	16.7	100.0(10,678)

50) 이는 여과이론으로 처음 이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6개의 여과망을 거쳐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으로, 모든 가능한 대상자 중 근접성 여과망, 매력의 여과망,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의견일치의 여과망, 상호보완성의 여과망, 그리고 결혼준비상태의 여과망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임(김명자, 1986).

3. 結婚持續期間

본 조사에서 부인의 평균 초혼기간은 19.04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8.5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23.57년으로 結婚持續期間이 약 5년 정도 더 길게 나타났다.

〈表 7-8〉 15~64歲 既婚婦人の 特性別 平均 結婚持續期間¹⁾

(單位: 年)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19.04	18.50	23.57
연령			
15~24세	1.98	2.01	1.70
25~29세	3.50	3.47	3.93
30~34세	7.52	7.42	8.65
35~39세	13.62	13.54	14.48
40~44세	18.94	18.94	19.01
45~49세	24.70	24.65	25.09
50~54세	30.24	30.11	31.14
55~59세	36.29	36.24	36.54
60~64세	41.85	41.70	42.39
교육수준			
초교 이하	33.14	33.02	33.55
중학교	23.95	24.17	22.01
고등학교	13.63	13.76	12.08
대학 이상	9.89	9.93	9.05
초혼년도			
1959년 이전	43.37	43.35	43.41
1960~1969년	35.13	35.05	35.57
1970~1979년	25.16	25.15	25.27
1980~1989년	15.44	15.43	15.63
1990~2000년	5.25	5.23	5.40

註: 1) 초혼부인만 대상으로 함.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

이 높을수록, 低學歷일수록, 그리고 初婚年度가 빠를수록 결혼지속기간은 길었다. 또한 결혼지속기간은 모두 동부지역 거주부인들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들이 더욱 길었다. 이는 동부지역은 低年齡層의 婦人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高齡層의 婦人들의 거주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第 2 節 解婚實態

1. 解婚婦人⁵¹⁾의 一般特性

최근 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함께 이혼·별거로 인한 解婚家族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家族解體가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사별한 부인이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7.0%, 이혼·별거 부인은 3.2%로 전체의 10.2%가 解婚婦人이었다. 年齡別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해혼부인의 62.6%로 동부지역(60.4%)보다 읍·면부지역(77.1%)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이하의 부인들은 12.8%로서 읍·면부지역(6.9%)보다는 동부지역(13.6%)에서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들 젊은 층 부인들의 해혼은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表 7-9 參照).

教育水準別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低學歷層에서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27.5%포인트나 높았다. 宗教別로 보면 동부지역은 종교가 없는 부인들의 비율(36.3%)이 가장 높았고, 읍·면부지역의 경우는 불교를 믿는 부인들의 비율(41.8%)이 가장 높았다.

51) 본 연구에서의 해혼부인이란 기혼부인 중 배우자와의 사별·이혼·별거 등으로 결혼관계가 해소된 부인들을 일컬으며, 여기서의 별거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취업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는 제외함.

〈表 7-9〉 15~64歲 既婚婦人中 死別·離婚·別居婦人の 一般特性

(單位: %)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29세 이하	1.3	1.5	-
30~39세	11.5	12.1	6.9
40~49세	24.6	26.0	16.0
50~59세	34.2	33.8	36.8
60세 이상	28.4	26.6	40.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4.9	51.3	78.8
중학교	19.9	21.4	9.6
고등학교	20.5	22.1	10.3
대학 이상	4.7	5.2	1.3
종교			
없음	36.1	36.3	34.9
불교	35.7	34.8	41.8
기독교	19.3	19.3	19.2
천주교	8.4	9.0	4.1
기타	0.5	0.6	-
취업여부			
취업	59.1	57.1	72.4
미취업	40.9	42.9	27.6
혼전 최장 거주지			
대도시	27.8	30.3	11.1
중·소도시	20.9	22.5	10.4
읍·면소재지	24.0	22.9	31.3
기타 농어촌	27.3	24.3	47.2
계	100.0	100.0	100.0
(수)	(1,099)	(955)	(144)

解婚婦人 중 就業婦人은 59.1%⁵²⁾로서 읍·면부지역 해혼 부인들의 취업률(72.4%)이 동부지역 해혼 부인들의 취업률(57.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해혼 부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대부분 생계책임

52)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부인들 중의 취업부인 비율인 45.5%(第9章 第2節 參照)보다 높음.

자이던 배우자와 사별·이혼·별거함에 따라 가구원의 생계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게 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婚前 最長居住地는 현 거주지와 관련성을 보여 현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경우 혼전 거주지도 도시지역이었던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경우 결혼전에 읍·면소재지 및 기타 농촌에 거주했던 비율이 높았다.

2. 解婚時期

解婚狀態別 解婚當時 年齡分布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死別當時 40대였던 경우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로서 28.7%이었다. 그러나 離婚·別居 婦人의 경우는 30대가 44.1%, 40대가 26.0%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대 이하에서 해혼한 경우도 24.3%나 되어 낮은 연령층에서도 이혼·별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解婚當時 平均年齡은 사별부인은 44.27세, 이혼·별거 부인은 36.15세이었다.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1.3%)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74.7%)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解婚當時 男便의 平均年齡은 사별은 49.20세, 이혼·별거는 40.49세이었다(表 7-10 參照). 전체적으로 사별의 경우 부인은 40대 중반에서, 남편은 40대 후반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부인은 30대 중반에서, 그리고 남편은 40대 초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男女 結婚年齡上의 差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表 7-10〉 解婚狀態別 解婚當時 婦人 및 男便의 年齡分布
(單位: %, 세)

해혼당시 연령	사별	이혼·별거	전체
부인			
15~29세	8.2	24.3	13.2
30~39세	24.5	44.1	30.6
40~49세	33.2	26.0	30.9
50~59세	28.7	5.3	21.5
60세 이상	5.5	0.3	3.9
계	100.0	100.0	100.0
(수)	(748)	(338)	(1,086)
평균연령(세)	44.27	36.15	41.74
남편			
15~29세	3.0	8.6	4.7
30~39세	17.3	41.2	24.4
40~49세	30.6	33.5	31.5
50~59세	30.7	14.4	25.8
60세 이상	18.5	2.2	13.6
계	100.0	100.0	100.0
(수)	(736)	(313)	(1,049)
평균연령(세)	49.20	40.49	46.61

3. 解婚理由

離婚·別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解婚理由는 性格差異가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의 外道(25.7%), 경제문제(17.2%), 그리고 학대 및 폭력(9.4%)의 順이었다. 地域別로는 성격차이와 외도에 의한 해혼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경제문제와 학대·폭력으로 인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年齡別 解婚理由를 보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가 주 요인이었으나 30대는 성격차이 보다 외도로 인한 해혼비율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성격차이 외에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다.

婦人の 教育水準別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남편의 외도(28.0%)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性格差異(26.9%), 男便의 虐待 및 暴力(14.0%)의 順이었으나,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성격차이로 인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거가 각각 38.9%와 36.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表 7-11〉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特性別 離婚·別居 理由 (單位: %)

특성	외도	학대·폭력	성격차이	경제문제	기타 ¹⁾	계(수)
전체	25.7	9.4	32.3	17.2	15.4	100.0(331)
지역						
동부	25.8	9.2	32.5	17.2	15.3	100.0(314)
읍·면부	23.5	11.8	29.4	17.6	17.6	100.0(17)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8.6	1.2	39.3	10.7	20.2	100.0(84)
30~39세	27.0	12.2	26.4	17.6	16.9	100.0(148)
40~49세	23.1	16.7	30.8	20.5	9.0	100.0(78)
50세 이상	16.7	5.6	44.4	22.2	11.1	100.0(1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0	14.0	26.9	11.8	19.4	100.0(93)
중학교	26.2	8.6	27.1	21.4	11.4	100.0(70)
고등학교	23.7	7.6	38.9	16.0	13.7	100.0(131)
대학 이상	13.9	5.6	36.1	25.0	19.4	100.0(36)
결혼기간						
10년 미만	20.0	5.0	33.3	19.2	22.5	100.0(120)
10~19년	32.5	12.3	28.9	14.9	11.4	100.0(114)
20년 이상	28.6	14.3	28.6	18.6	10.0	100.0(70)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없었음	19.7	9.8	44.3	14.8	11.5	100.0(61)
있었음	27.2	9.3	29.9	17.5	16.0	100.0(268)

註: 1)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및 기타 등이 포함됨.

夫婦의 結婚期間에 따른 離婚·別居의 理由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결혼기간이 10~19년인 부인은 성격차이 보다는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고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의 부인은 성격차이와 외도로 인한 해혼비율이 28.6%로 동일한 수준이었다(表 7-11 參照).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의 子女有無에 따라 해혼이유도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없었을 경우에는 성격차이에 의한 비율이 44.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격차이 못지 않게 配偶者의 外道로 인한 해혼비율이 높았다.

離婚·別居 理由는 부부의 結婚年度別로도 차이를 보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각각 46.2%와 35.3%로 다른 결혼년도에 비해 높았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가 각각 34.2%와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외도(1970년대: 27.9%, 1980년대: 21.2%)의 順이었다.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성격차이(36.5%)와 경제문제(23.1%)의 順으로 이혼·별거 이유에 있어 결혼년도별 차이를 보였다(表 7-12 參照).

이는 傳統的으로 가문의 계승과 父子關係가 중요시되던 制度的 結婚에서 友愛的 結婚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 가족에서는 남성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남성의 부정행위도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다른 결혼년도에 비해 이혼·별거 이유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의 IMF 사태와 관련하여 家長의 失職 등 經濟的 不安定性이 離婚·別居의 要因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表 7-12〉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結婚年度別 離婚·別居 理由

(單位: %)

結婚年度	외도	학대·폭력	성격차이	경제문제	기타 ¹⁾	계(수)
1959년 이전	46.2	15.4	15.4	15.4	7.7	100.0(13)
1960~1969년	35.3	15.7	27.5	5.9	15.7	100.0(51)
1970~1979년	27.9	11.7	34.2	16.2	9.9	100.0(111)
1980~1989년	21.2	5.1	31.3	19.2	19.2	100.0(99)
1990~2000년	13.5	7.7	36.5	23.1	23.1	100.0(52)
전체	25.5	9.8	31.9	17.2	15.6	100.0(326)

註: 1)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및 기타 등이 포함됨.

4. 解婚婦人의 平均 結婚持續期間

이들 해혼부인들의 平均 結婚持續期間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1.77세에 결혼을 하여 41.73세에 해혼함으로써 19.96년의 결혼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年度別로는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18.67세에 결혼하여 48.04세에 해혼함으로써 29.37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1960~69년에 결혼한 부인은 결혼은 21.18세에, 그리고 45.05세에 해혼함으로써 평균 23.87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평균 27.28세에 결혼하고, 31.33세에 해혼하여 결혼기간이 4.05년에 불과하였다(表 7-13 參照). 따라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결혼연령은 높는데 비해 해혼연령은 낮아 결혼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며, 사별보다는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⁵³⁾

53) 해혼부인의 연령별 이혼·별거율을 보면, 24세 이하의 부인들은 모두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이었으며, 25~29세 부인은 72.7%, 30~34세 부인은 64.6%, 35~39세 부인은 71.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별거율은 낮아지는 추세로 60세 이상의 부인들 중에서는 8.7%만이 이혼·별거에 의해 해혼한 경우이었음.

〈表 7-13〉 15~64歲 既婚婦人 中 解婚婦人의 平均 結婚期間
(單位: 세, 년)

결혼년도	결혼연령 (a)	해혼연령 (b)	결혼기간 (b-a)
1959년 이전	18.67	48.04	29.37
1960~1969년	21.18	45.05	23.87
1970~1979년	22.48	39.31	16.83
1980~1989년	23.79	34.39	10.60
1990~2000년	27.28	31.33	4.05
전체	21.77	41.73	19.96

5. 離婚·別居 提議者

이혼 또는 별거를 먼저 提議한 사람은 남편보다는 부인인 경우가 많아 전체 이혼·별거한 부인 중 70.7%에 이른다.⁵⁴⁾ 年齡別로는 이혼·별거 당시 30대이었던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부인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져 50대 이상에서 약 30% 수준을 보였다. 고등학교 학력인 부인의 경우 이혼·별거 제의비율이 가장 높았고(79.2%),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일 경우 이혼·별거 제의비율이 가장 낮았다(58.1%). 結婚期間別로는 20년 미만인 경우에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다. 남편이 이혼을 제의한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2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된 경우 남편이 이혼·별거를 제의한 비율이 30.3%정도 되었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에 차이를 보여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혼·별거 제의율은 78.2%인데 비해,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67.6%,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69.7%로 子女의 養育이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에 있어 主要한 影響變數

54) 최근에 이루어진 재판상의 이혼 중 약 57%가 여성의 소송제기에 의한 것임(김상용, 1996).

가 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夫婦間의 年齡差異에 의해서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남녀간 연령이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이 가장 높아 89.5%나 되었다(表 7-14 參照).

〈表 7-14〉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特性別 離婚·別居 提議者

(單位: %)

특성	이혼·별거 제의자			계(수)
	남편	부인	기타 ¹⁾	
전체	21.8	70.7	7.5	100.0(321)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18.5	69.1	12.3	100.0(81)
30~39세	21.1	74.6	4.2	100.0(142)
40~49세	26.0	66.2	7.8	100.0(77)
50세 이상	29.4	64.7	5.9	100.0(1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2.6	58.1	9.3	100.0(86)
중학교	19.4	74.6	6.0	100.0(67)
고등학교	13.8	79.2	6.9	100.0(130)
대학 이상	27.0	64.9	8.1	100.0(37)
결혼기간				
10년 미만	19.5	72.0	8.5	100.0(118)
10~19년	21.6	72.1	6.3	100.0(111)
20년 이상	30.3	65.2	4.5	100.0(66)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없음	14.5	78.2	7.3	100.0(55)
1명	20.6	67.6	11.8	100.0(102)
2명 이상	25.2	69.7	5.2	100.0(155)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25.0	66.7	8.3	100.0(36)
1~2세	23.0	73.0	4.1	100.0(74)
3~4세	18.1	76.4	5.6	100.0(72)
5~9세	26.7	67.8	5.6	100.0(90)
10세 이상	-	89.5	10.5	100.0(19)

註: 1) 시부모·친정부모 및 기타 가족원

6. 離婚의 成立形態

이혼의 성립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며, 이 중 協議離婚은 당사자간에 이혼에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며, 裁判離婚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는 형태이다. 調整離婚은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 적용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이소희 외, 1998). 최근 우리 나라 부부들의 이혼의 경우 대부분이 협의에 의한 이혼으로, 이는 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이혼부인 중 협의에 의해 이혼한 부인은 86.5%이었다. 離婚當時 年齡別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협의이혼 비율이 높아 20대 이하에 이혼한 부인은 94.2%에 이른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協議離婚率이 높았다. 이외 교육수준이나 이혼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로도 모두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教育水準別, 子女數別로 협의이혼율의 一貫性을 보이지는 않았다.

〈表 7-15〉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 婦人의 特性別 離婚의 成立形態
(單位: %)

특성	협의이혼	재판이혼 및 기타	계(수)
전체	86.5	13.5	100.0(237)
이혼당시 연령			
29세 이하	94.2	5.8	100.0(69)
30~39세	84.5	15.5	100.0(97)
40~49세	81.0	19.0	100.0(58)
50세 이상	66.7	33.3	100.0(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1.4	18.6	100.0(59)
중학교	86.0	14.0	100.0(58)
고등학교	90.1	9.9	100.0(101)
대학 이상	85.2	14.8	100.0(27)
결혼기간			
10년 미만	90.1	9.9	100.0(91)
10~19년	84.6	15.4	100.0(78)
20년 이상	73.8	26.2	100.0(42)
이혼당시 18세미만 자녀수			
없음	81.6	18.4	100.0(49)
1명	88.1	11.9	100.0(67)
2명 이상	87.6	12.4	100.0(121)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88.5	11.5	100.0(26)
1~2세	87.3	12.7	100.0(55)
3~4세	86.8	13.2	100.0(53)
5~9세	84.4	15.6	100.0(64)
10세 이상	73.3	26.7	100.0(15)

7. 離婚·別居婦人의 子女養育

가. 離婚·別居當時 18歲 未滿 子女數

死別이 非意圖的인 가족해체에 비해 離婚·別居는 意圖的인 가족해체로,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과가 자녀세대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⁵⁵⁾ 이혼·별거당시 부인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는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5.9%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39.0%는 1명, 45.1%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상태이었다.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89.2%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76.7%이었다. 그러나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대부분의 자녀가 성장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30.0% 밖에 되지 않았다.

〈表 7-16〉 15~64歲 既婚婦人 中 離婚·別居 婦人의 離婚·別居當時 年齡別 18歲 未滿 子女數

(單位: %, 명)

이혼·별거당시 연령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평균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29세 이하	15.9	39.0	45.1	100.0(82)	1.29
30~39세	10.8	24.3	64.9	100.0(148)	1.54
40~49세	23.3	43.0	33.7	100.0(86)	1.10
50세 이상	70.0	15.0	15.0	100.0(20)	0.45
전체	18.8	32.1	49.1	100.0(336)	1.30

平均 子女數는 가족주기 상 확대기에 해당하는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의 경우 가장 많아 1.54명이었고, 50대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의 경우는 자녀들이 거의 결혼을 완료하였거나 취업 등으로 집을 떠난 상태로 0.5명에 불과하였다(表 7-16 參照). 이들 이혼·별거부인 중 子女養育期에 있는 비교적 젊은 부인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미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모두 떠난 中年期 以

55)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세대까지 전이되어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보다 이혼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이혼율이 높다고 함(Mueller & Pope, 1977; 정기선, 1997 재인용).

後 이혼·별거부인들은 배우자와도 이혼·별거로 헤어지게 됨으로써 노후를 혼자 보내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나. 子女와의 同居者別 養育費 提供者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子女와의 同居者는 75.3%가 子女의 母, 그리고 21.0%는 子女의 父로서 대부분이 부모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7%만이 祖父母 등 其他 親戚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同居者別 養育費 提供者를 보면 전체의 1.1%는 양육비 제공자가 없는 상태이었으며, 대부분 동거자가 아동의 양육비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子女의 父가 동거할 경우 동거자인 父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96.4%로 대부분이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子女의 母와 동거하는 경우 양육비 제공자는 子女의 母가 73.1%이며, 子女의 父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은 16.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조부모 및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이들 동거자들이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은 20.0%에 그쳤으며, 子女의 父 30.0%, 子女의 母 50.0%로 子女의 母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表 7-17〉 子女와의 同居者別 養育費 提供者

(單位: %)

자녀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계(수)
	없음	자녀의 부	자녀의 모	조부모 및 기타친척	기타	
자녀의 부	0.0	96.4	3.6	0.0	0.0	100.0(56)
자녀의 모	1.5	16.9	73.1	6.5	2.0	100.0(201)
조부모 및 기타	0.0	30.0	50.0	20.0	0.0	100.0(10)
전체	1.1	34.1	57.7	5.6	1.5	100.0(267)

따라서 이혼시 자녀양육은 주로 子女의 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子女養育費는 주로 자녀와 동거하는 父 또는 母가 부담하고 있어 자녀 양육비 역시 母에 의해 負擔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저임금, 열악한 작업조건, 취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양상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이혼여성의 자녀양육은 더욱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子女養育 負擔을 緩和해 줄 政策代案이 要求되며, 이혼가정의 子女 非養育 父母에 대해서도 자녀양육 책임을 부과하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이 요구된다.

第 3 節 家族週期の 變化

家族週期는 전형적인 가족이 일생동안 거치게 되는 家族生涯事件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들 각 사건들이 가족주기 단계를 구분하는 轉換點이 된다(Hill & Rogers, 1964; 정기선 1997 재인용).

본 연구의 가족주기 단계는 世界保健機構(WHO)의 2世代 核家族의 기본 가족주기 모형에 따라 6段階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가족 중 2세대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67.3%(통계청, 1996)로 전체 가족의 약 2/3를 차지함으로써 2세대 핵가족의 기본 모형을 따르는 것이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추정에 있어 전형적인 가족만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家族生涯事件을 살펴보면, 첫단계인 形成期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그리고 제2단계인 擴大期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이다. 제3단계인 擴大完了期는 막내아 출산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시점까지, 제4단계에 속하는 縮小期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

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즉, 모든 자녀가 결혼을 마친 때까지, 제5 단계인 縮小完了期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解體期는 배우자 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 家族週期の 변화양상은 결혼연령의 상승과 出産力低下 등에 의해 가족형성기는 늦어지고 있으나 子女出産期는 단축되는 추세이며, 平均壽命의 延長에 따라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부부만이 남는 축소완료기는 점차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해체기는 여자의 경우 더욱 길어지고 있어 高齡化趨勢에 따른 노인문제와 더불어 여성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에서는 15~64세 기혼부인의 결혼년도를 중심으로 가족생애사건 발생시 부인연령과 그에 따른 各 週期段階別 期間의 變化樣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家族週期 分析對象의 特性

가족주기에 있어서 자녀의 출산과 결혼이 각 단계구분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대상은 자녀 出産經驗이 있는 初婚婦人 9,872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년도별로는 198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들 중 약 99%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83.2%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다.

56) WHO에서는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 및 종료시점, 그리고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은 자녀의 집 떠남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자녀가 결혼을 함으로서 분가 또는 분거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녀의 결혼으로 대체하였음.

〈表 7-18〉 15~64歲 初婚婦人의 初婚年度別 出生兒 有無

(單位: %)

출생아 유무	초혼년도					전체
	1959년 이전	1960~69년	1970~79년	1980~89년	1990~2000년	
없음	1.4	0.7	0.8	1.4	16.8	5.9
있음	98.6	99.3	99.2	98.6	83.2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0)	(1,484)	(2,210)	(3,033)	(3,191)	(10,488)

이들의 結婚年度別 平均年齡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이 61.9세로 고령층에 속하였으며, 1960~6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56.3세, 1970~7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7.2세,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8.8세,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30.6세이었다. 이들의 平均 出生兒 數는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적어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4.68명, 1970~7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51명, 그리고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으로 오면서 平均출생아 수의 감소양상을 보이는 것은 1960년대의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少子女 規範이 定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現存子女數는 출산자녀수에서 사망자녀수를 제외한 수로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4.38명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62명이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와 평균 현존자녀수와의 차이는 그 간의 사망률 개선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追加希望子女數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된 197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出產完了率이 낮아 그에 따른 추가희망자녀수는 1990년이후 결혼한 부인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년도가 과거일수록 비율이 높아 1970~79년에 결혼한 부인은 19.0%에 불과한데 비해, 1960~69년에 결혼한 부인은 90.1%, 그리고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99.2%에 달하였다. 平均 結婚子女數 역시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이 가장 많아 3.64명이었다(表 7-19 參照).

〈表 7-19〉 15~64歲 初婚 出產經驗 婦人의 結婚年度別 特性

특성	초혼년도				
	'59년이전	1960~69년	1970~79년	1980~89년	1990~2000년
평균 연령(세)	61.94	56.29	47.23	38.82	30.58
평균 출생아수(명)	4.68	3.48	2.51	2.04	1.63
평균 현존자녀수(명)	4.38	3.33	2.45	2.02	1.62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	-	0.03	0.02	0.25
출산완료율(%)	100.0	100.0	99.7	97.8	69.4
결혼자녀 둔 비율(%)	99.2	90.1	19.0	-	-
평균 결혼자녀수(명)	3.64	2.23	1.22	-	-
(수)	(562)	(1,473)	(2,193)	(2,990)	(2,654)

2. 家族週期の 變化

가. 家族週期 段階別 始作 및 終了時點의 變化

家族週期の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初婚年齡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上昇하는 추세를 보여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8.8세에 결혼하였으나, 1970~79년 결혼한 부인은 22.2세에, 그리고 199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4.8세에 결혼하여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家族形成期の 시작시점이 늦어짐을 보여주었다.

擴大期の 始作時點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

은 21.1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나 1960~69년 결혼한 부인은 23.0세에, 1970~79년 결혼한 부인은 23.6세,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24.8세,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6.0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出産時 婦人年齡⁵⁷⁾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32.0세, 1960~6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8세, 1970~79년 결혼한 부인은 27.6세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결혼한 부인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은 28.0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8.3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表 7-20〉 家族週期 各 段階의 始作 및 終結當時 婦人¹⁾의 平均年齡
(單位: 세)

결혼년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59년 이전	18.77	21.14	32.04	46.84	57.74	58.75	67.31
1960~1969년	21.30	23.01	29.81	49.41	56.21	57.38	69.84
1970~1979년	22.19	23.63	27.58	51.33	55.28	60.26	72.57
1980~1989년	23.50	24.83	28.04	52.53	55.74	63.70	76.51
1990~2000년	24.77	25.99	28.34	53.69	56.04	68.69	80.93

註: 1) 15~64세 기혼부인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子女結婚 始作時 婦人年齡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5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46.8세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7) 막내아 출산시 부인의 연령은 결혼년도별 출산완료율에 따라 출산완료율이 99% 이상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의 경우는 조사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출산완료율이 이보다 낮은 198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의 경우는 기 출생아수에 추가희망자녀수를 더하여 총 자녀수를 구한 후 그에 따른 최종출생간격을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최종아 출산시 부인연령을 추정하였음.

53.7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子女結婚完了時 부인연령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7.7세,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6.0세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解體期의 시작시점인 男便死亡時 婦人年齡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8.8세로,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68.7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67.3세에서 80.9세로 추정되었다(表 7-20 參照).⁵⁹⁾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58) 결혼자녀를 둔 부인의 비율은 결혼년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表 7-19 參照), 또한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부인은 자녀의 결혼이 시작된 부인 비율이 99.2%인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 중 48.8%에 지나지 않아 조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녀의 결혼시작 및 완료시 부인연령의 추정은 부인보다 한 세대 젊은 층의 초혼연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즉, 자녀의 결혼시작시 부인연령은 한 세대 젊은 층의 초혼연령을 적용하여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을 추정 후 첫째아의 출생시 부인연령에 더하여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을 산출하였으며, 자녀결혼 완료시의 부인연령은 막내아의 출생시 부인연령에 더하여 산출하였음(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통계청의 1980년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한 초혼연령을 적용하였으며, 1960~1969년 결혼한 부인들은 1990년 초혼연령을, 그리고 197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999년 초혼연령을 적용하였음. 이때 자녀의 결혼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생순위별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임).

59) 남편의 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의 사망시 연령을 1969년까지의 결혼한 부인들은 권태환의 1955~1960년 생명표, 1970~1979년 결혼한 부인들은 통계청의 1975년 생명표, 1980~1989년 결혼한 부인들은 1985년 생명표,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995년 생명표에 기반, 남녀 각각의 初婚當時 期待餘命을 활용하여 추정함.

나. 家族週期 段階別 期間의 變化

1) 家族形成期

家族形成期는 젊은 부부만의 생활기간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4년이 소요되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2년이 소요되었다(表 7-21 參照). 이는 최근 우리 나라 여성들은 결혼은 늦게 하지만 첫 자녀의 출산시기는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家族擴大期

擴大期는 한 가족의 全體 出産期間을 의미하는 것으로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약 11년이 소요되었으나 1960~69년 결혼한 부인들은 6.8년, 1970~79년 결혼한 부인들은 4.0년, 1980~89년 결혼한 부인들은 3.2년,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4년이 소요되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子女出産期는 짧아지고 있다. 이는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出産間隔의 短縮으로 출산완료시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表 7-21〉 家族週期 各 段階別 期間¹⁾

(單位: 年)

결혼년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해체기	전체
1959년 이전	2.37	10.90	14.80	10.90	9.51	8.56	57.04
1960~1969	1.71	6.80	19.60	6.80	10.49	12.46	57.86
1970~1979	1.44	3.95	23.75	3.95	13.56	12.31	58.96
1980~1989	1.33	3.21	24.49	3.21	14.78	12.81	59.83
1990~2000	1.22	2.35	25.35	2.35	19.33	12.24	62.84

註: 1) 15~64세 기혼부인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家族擴大完了期

자녀출산 완료시기부터 자녀결혼 시작까지의 擴大完了期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4.8년이었으나 1960~1969년 결혼한 부인들은 19.6년, 1970~1979년 결혼한 부인들은 23.8년, 1980~1989년 결혼한 부인들은 24.5년,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5.4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出生兒 數의 減少 및 出產 間隔 短縮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부모의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家族縮小期

縮小期는 자녀의 첫 결혼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축소기는 확대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짧아져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0.9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4년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모든 자녀가 결혼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 것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결혼한 부인들의 짧은 家族縮小期는 한 자녀 가정의 一般化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家族縮小完了期

縮小完了期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 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9.5년에 불과하였으나 1960~1969년 결혼

한 부인들은 10.5년, 1970~1979년 결혼한 부인들은 13.6년, 1980~1989년 결혼한 부인들은 14.8년,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9.3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平均壽命의 延長과 함께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부만의 가구가 더욱 증가⁶⁰⁾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 家族解體期

解體期는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8.6년이었으나 1960~1969년 결혼한 부인들은 12.5년으로 3.9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1979년 결혼한 부인들은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되어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보다는 3.8년이 크나, 1960~1969년 결혼한 부인들보다는 더 작다. 그리고 1980~1989년 결혼한 부인들은 동 기간이 12.8년으로 길어지다가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2.2년으로 약간 짧아지고 있다. 해체기는 結婚年度別로 볼 때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과 비교해볼 때, 全般的으로 길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平均壽命의 延長 및 男女間 平均壽命의 差異⁶¹⁾에 의한 것이다. 즉,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후 홀로 남은 생애를 보낼 확률은 여자가 더 높고, 또 평균수명의 연장은 홀로 남은 여자의 생활기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을 위한 福祉서비스 需要가 앞으로 더욱 增大될 전망이다.

60) 1997년 조사결과(조남훈 외, 1997)에 의하면 15~29세 젊은 부인 중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약 14~15%(처음부터의 동거희망: 4~5%, 노후에만 동거희망 약 10%)에 불과하여 노인부부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1) 남녀별 평균수명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0년에 남자는 51.1세, 여자는 53.7세이었으나 1980년에는 남녀 각각 62.7세와 69.1세로, 그리고 2000년에는 71.0세와 78.6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성별 차이 또한 점차 커지고 있음(통계청, 199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家族週期の 全體期間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7.0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62.8년으로 추정되어 40여 년 동안 5.8년 정도 더 延長될 展望이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延長趨勢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家族週期 段階別 期間變化의 特徵

최근의 가족주기는 결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 수의 감소, 자녀태울의 단축,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혼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짧아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 노인부부 또는 여자노인 혼자 남는 시기는 점차 길어지는 特徵을 보이고 있다.

결혼후 첫째아 출산 전까지의 젊은 부부만의 기간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4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2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配偶者 死亡時까지 노인부부만의 기간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9.5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9.3년으로 약 10년 정도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表 7-22 參照).

全體的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사망시까지의 부부 결혼기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夫婦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平等的한 夫婦關係像 定立 등 夫婦關係의 質 向上을 위한 다양한 對策이 要求된다.

또한 자녀수 감소에 따른 子女養育期間의 短縮은 기혼부인들의 就業率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래 부인들이 전담하던 자녀

양육과 노인부양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부인들의 역할변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는 家族扶養機能을 강화할 수 있는 社會的 支援對策이 요구된다.

〈表 7-22〉 家族週期 中 夫婦만의 期間, 子女養育期間, 女子老人만의 生活期間

(單位: 年)

결혼 년도	신혼부부 생활기간	자녀 양육기간	노인생활기간		
			소계	노인부부만 의 생활기간	여자노인만의 생활기간
1959년 이전	2.37	36.60	18.07	9.51	8.56
1960~1969	1.71	33.20	22.95	10.49	12.46
1970~1979	1.44	31.65	25.87	13.56	12.31
1980~1989	1.33	30.91	27.59	14.78	12.81
1990~2000	1.22	30.05	31.57	19.33	12.24

註: 1) 15~64세 기혼부인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第 4 節 結婚樣相 및 家族週期 變化의 示唆點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연령, 교육수준, 결혼전 최장 거주지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 同質婚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혼연령에 따른 男女別 結合形態에서 볼 수 있듯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연하 남성의 비율도 증가추세이며, 이혼율의 상승과 함께 남녀 재혼비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結婚樣相이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解體家族과 再婚家族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가 새로운 社會問題로 浮刻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離婚家庭의 경우 자녀양육을 母가 담당하고 있어 기혼여성 취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低賃金, 就業의 不安定性 등으로 인한 이들 가구의 經濟的 貧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子女養育負擔을 輕減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子女를 직접 養育않은 父母에 대하여 자녀양육 책임을 부과하는 法的·制度的 裝置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結婚必要性에 대한 意識弱化和 함께 婚前役割의 多樣化로 남녀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의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족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家族週期는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것으로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各 段階別 期間의 變化樣相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家族週期の 變化는 결혼부터 자녀출산 완료시점인 형성기 및 확대기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력 저하에 의한 소자녀규모의 정착으로 短縮되고 있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擴大完了期는 자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차 延長되고 있다.

또한 初婚年齡의 持續的인 上昇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시작 시기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시기인 縮小期는 점차 短縮되는 경향이며, 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 부부만의 시기인 縮小完了期는 젊은 층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혼자 남게되는 解體期는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가족형성기와 확대기의 단축과 확대완료기의 연장 및 축소기의 단축은 婦人들의 役割變化를 초래하여 기혼여성의 就業率을 높이는 要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는 종래 부인들이 전담하던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의 연장은 人口의 老齡化 現象과 함께 性別 平均壽命의 差異로 인해 노인부부가구 및 여성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을 보여 이들을 위한 社會的 次元에서의 支援策이 要求된다.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의 변화양상은 家族週期 段階別 福祉對策 또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가족주기의 변화는 각 단계별 가족생활의 여건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家族福祉政策은 각 단계별 가족들의 특수한 복지욕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第 8 章 家族價値觀의 變化

第 1 節 結婚·離婚·再婚에 관한 態度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普遍婚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絶對的 價値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相對的 價値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하였던 離婚이나 再婚에 관한 否定的 價値觀도 많이 변화하여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再婚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結婚, 離婚, 再婚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結婚에 관한 態度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15~64세 기혼부인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결혼에 대하여 消極的인 態度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肯定的 態度인 ‘하는 편이 좋음’은 29.4%이었고, 積極的 態度인 ‘반드시 해야 함’은 26.2%, 그리고 否定的 態度인 ‘하지 않는 것이 좋음’은 5.4%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消極的 및 否定的 態度를 보이는 부인은 43.6%이었고, 積極的 또는 肯定的 態도를 보이는 경우는 55.6%로 나타났다(表 8-1 參照).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 기혼부인은 결혼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지만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미혼여성은 이들 기혼부인에 비하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여성의 結婚觀은 상당히 變化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부인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8.7%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2.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에 대한 消極的 態度를 보이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상대적으로 결혼을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結婚에 대한 강한 否定的 態度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 부인은 연령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40~44세 연령층이 6.7%로 가장 높았고, 25~29세의 젊은 연령층이 3.8%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중년여성은 가사부담, 자녀양육부담, 시댁과의 복잡한 관계, 자아성취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結婚生活에 대한 懷疑가 表出된 것이라 판단된다.

〈表 8-1〉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結婚의 必要性에 關한 態度
(單位: %)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전체	26.2	29.4	38.2	5.4	0.8	100.0(10,601)
연령						
15~24세	18.7	33.2	42.5	4.7	0.9	100.0(214)
25~29세	13.8	30.6	51.2	3.8	0.6	100.0(1,224)
30~34세	13.9	31.1	49.9	4.8	0.2	100.0(1,614)
35~39세	17.6	29.4	46.1	5.8	1.0	100.0(1,855)
40~44세	21.3	30.4	40.6	6.7	0.9	100.0(1,728)
45~49세	30.8	30.9	32.1	5.1	1.1	100.0(1,263)
50~54세	41.0	27.6	25.0	5.6	0.8	100.0(957)
55~59세	47.9	26.4	19.4	5.5	0.9	100.0(929)
60~64세	52.1	24.6	17.4	5.3	0.6	100.0(817)
교육수준						
초교 이하	43.6	26.4	22.7	6.3	1.1	100.0(2,427)
중학교	29.6	30.2	31.6	7.6	1.0	100.0(1,782)
고등학교	19.0	29.5	45.6	5.2	0.7	100.0(4,328)
대학 이상	18.0	32.0	46.6	2.9	0.4	100.0(2,061)
종교						
없음	22.7	29.2	41.6	5.6	1.0	100.0(3,919)
불교	31.1	29.3	33.1	6.0	0.4	100.0(3,395)
개신교	27.4	29.0	38.2	4.4	1.0	100.0(2,259)
천주교	19.6	32.0	42.6	5.2	0.6	100.0(954)
기타	38.7	24.0	34.7	-	2.7	100.0(75)
현 취업여부						
취업	27.6	28.8	37.2	5.7	0.7	100.0(4,828)
미취업	25.1	29.9	39.0	5.1	0.9	100.0(5,774)
결혼상태						
유배우	25.1	29.9	39.3	4.9	0.8	100.0(9,520)
사별	47.0	26.5	19.5	5.9	1.1	100.0(743)
이혼·별거	11.7	21.9	47.4	18.1	0.9	100.0(342)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은 43.6%, 대학 이상의 부인들은 18.0%만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高年齡層이

傳統的 價値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한테,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젊은 연령층인 경우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젊고, 대체로 高學歷의 부인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에서 높았는데, 이는 低學歷層 婦人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結果論的인 態度인 것으로 짐작된다.

부인의 宗教別로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 및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로 보면, 기타 종교와 불교를 믿는 부인들이 각각 62.7%, 60.4%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개신교를 믿는 부인은 56.4%, 천주교를 믿는 부인은 51.6%,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부인은 51.9%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인은 불교 신자가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가 없는 부인 5.6%, 천주교 신자 5.2%, 개신교 신자 4.4%의 순이었다.

부인의 就業與否에 따른 結婚價値觀을 보면, 취업부인이 전업주부보다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 및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취업부인이 약간 높았다. 그리고 결혼상태별로는 死別한 부인은 매우 적극적(47.0%)이고 긍정적(26.5%)인 결혼관을 보였으며, 離婚 및 別居婦人은 소극적(47.4%)이고 부정적(18.1%)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2. 離婚에 관한 態度

부인들의 離婚에 관한 생각은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2.8%이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부인이 30.2%,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

는 부인은 각각 3.3%와 12.2%로, 積極的인 態度를 보인 경우도 있어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45.7%나 되었다.

〈表 8-2〉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離婚의 必要性에 관한 態度 (單位: %)

특성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전체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연령							
15~24세	6.1	16.4	41.8	28.2	6.1	1.4	100.0(213)
25~29세	4.6	19.8	39.1	28.4	6.5	1.6	100.0(1,225)
30~34세	4.1	14.1	36.9	35.7	8.3	0.8	100.0(1,614)
35~39세	2.9	12.3	32.6	40.4	10.2	1.6	100.0(1,855)
40~44세	3.4	12.5	32.4	38.0	12.4	1.2	100.0(1,727)
45~49세	2.1	11.1	27.7	42.7	15.1	1.3	100.0(1,263)
50~54세	3.2	10.6	23.3	39.1	22.3	1.4	100.0(958)
55~59세	2.8	7.0	18.0	42.0	28.3	1.9	100.0(927)
60~64세	2.1	4.9	16.9	40.9	32.9	2.3	100.0(817)
교육수준							
초교 이하	2.3	7.0	20.7	39.9	27.9	2.1	100.0(2,426)
중학교	3.1	10.2	29.1	40.1	15.6	1.9	100.0(1,779)
고등학교	3.4	13.6	34.2	37.5	10.2	1.2	100.0(4,327)
대학 이상	4.2	17.4	34.2	35.2	8.2	0.8	100.0(2,060)
종교							
없음	3.6	14.1	32.8	35.6	12.3	1.7	100.0(3,917)
불교	3.1	10.5	29.8	39.3	16.0	1.3	100.0(3,395)
개신교	3.4	12.1	26.1	40.7	16.3	1.4	100.0(2,257)
천주교	2.4	11.8	31.7	37.5	15.5	1.0	100.0(955)
기타	2.7	8.1	20.3	32.4	35.1	1.4	100.0(74)
현 취업여부							
취업	3.2	12.2	29.2	38.0	16.1	1.3	100.0(4,826)
미취업	3.4	12.3	31.1	38.0	13.7	1.5	100.0(5,774)
결혼상태							
유배우	3.0	12.3	30.9	38.2	14.2	1.4	100.0(9,518)
사별	2.2	7.0	18.8	42.0	27.4	2.6	100.0(740)
이혼·별거	14.4	20.8	35.5	24.6	3.5	1.2	100.0(341)

年齡別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도 높아 20대 이하에서는 63.5~64.3%이며, 30~40대는 40.9~55.1%, 그리고 50대 이상은 23.9~37.1%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高齡層으로 갈수록 높아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4.3%로 낮으나 60~64세 부인은 73.8%나 되었다.

教育水準別로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종교가 있는 부인들의 경우 종교가 없는 부인들 보다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就業婦人(54.1%)이 未就業 婦人(51.7%)보다 이혼을 否定的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부인의 특성 중에서 結婚狀態에 따른 이혼태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 및 별거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유배우부인이나 사별부인 보다 許容的이어서 70.7%가 이혼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혼 및 별거부인의 14.4%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20.8%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인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각각 24.6%, 3.5%였다.

3. 再婚에 관한 態度

再婚의 必要性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46.5%가 재혼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보였으며, 16.8%는 찬성을, 그리고 30.3%는 반대를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부인이 55~59세가 19.5%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는 19.2%로 그 다음으로 높아, 50대 중반 이후 연령층 부인의 재혼에 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았다.

〈表 8-3〉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再婚의 必要性에 關한 態度
(單位: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됨	모르겠음	계(수)
전체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연령							
15~24세	-	14.1	54.9	16.9	3.8	10.3	100.0(213)
25~29세	0.3	17.4	58.1	14.3	3.1	6.7	100.0(1,223)
30~34세	0.6	17.5	54.3	17.5	3.4	6.8	100.0(1,614)
35~39세	0.5	14.7	49.9	23.7	5.2	5.9	100.0(1,852)
40~44세	0.6	15.3	46.1	25.6	6.3	6.1	100.0(1,727)
45~49세	0.8	14.3	42.7	28.9	7.9	5.5	100.0(1,261)
50~54세	0.9	15.9	36.8	27.0	11.9	7.5	100.0(957)
55~59세	1.7	17.8	36.3	29.4	9.7	5.1	100.0(928)
60~64세	1.2	18.0	33.6	29.8	11.0	6.3	100.0(815)
교육수준							
초교 이하	1.0	16.8	33.2	31.2	11.8	6.0	100.0(2,422)
중학교	0.7	16.0	41.7	26.3	8.2	7.1	100.0(1,777)
고등학교	0.7	16.0	50.5	21.6	4.4	6.8	100.0(4,327)
대학 이상	0.6	15.8	58.0	17.1	3.7	4.9	100.0(2,062)
종교							
없음	0.5	15.0	49.8	21.3	6.5	7.0	100.0(3,918)
불교	0.9	16.9	42.3	26.2	7.2	6.5	100.0(3,395)
개신교	0.8	17.1	46.3	23.8	6.2	5.8	100.0(2,248)
천주교	0.7	15.5	49.2	24.2	6.0	4.4	100.0(954)
기타	1.3	18.7	41.3	30.7	2.7	5.3	100.0(75)
현 취업여부							
취업	0.7	15.7	44.1	25.9	7.6	6.1	100.0(4,822)
미취업	0.8	16.5	48.5	21.9	5.8	6.5	100.0(5,770)
결혼상태							
유배우	0.7	16.3	47.3	23.0	6.2	6.4	100.0(9,512)
사별	1.5	14.7	37.0	29.5	11.2	6.1	100.0(740)
이혼·별거	1.2	13.8	43.5	30.9	6.8	3.8	100.0(340)

教育水準別로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高學歷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低學歷層일수록 높았다. 종교가 없는 부인들보다 종교가 있는 부인들의 재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불교와 기타 종교를 믿는 부인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就業與否別로는 취업부인(33.5%)이 미취업부인(27.7%)보다, 그리고 結婚狀態別로는 사별한 부인(40.7%)이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사별부인들의 재혼반대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들보다 高齡層으로 구성⁶²⁾되어 있어, 一夫從死 해야 한다는 傳統的인 觀念과 再婚을 하기 위한 배우자 선택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第 2 節 子女價値觀 및 男兒選好價値觀

子女의 價値는 社會變化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家系繼承, 勞動力의 創出, 老後扶養期待 등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數의 子女가 夫婦의 子女扶養負擔을 증가시키고, 부부중심 가족생활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少子女觀이 형성되고 子女價値는 상대적으로 弱化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서 부인의 자녀가치관을 ‘子女의 必要性’에 의하여 살펴보고,⁶³⁾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잔존하고 있고 出生性比 不均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男兒選好 價値觀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夫婦의 價値觀이 반드시

62) 결혼상태별 부인들의 평균 현 연령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40.7세, 사별부인 54.9세, 그리고 이혼·별거부인은 44.9세로 사별부인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63) 이는 출산력과 관련된 과거 조사에서 유사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時系列的인 比較分析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子女의 規模 및 性 構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1. 子女價値觀

한 夫婦가 結婚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부인은 1991년 90.3%⁶⁴⁾에서 1997년에는 73.7%로, 2000년에는 58.1%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에서 1997년에는 26.0%, 2000년 41.5%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로 판단된다(表 8-4 參照).

〈表 8-4〉 15~44歲 有配偶婦人의 子女必要性(1991~2000年)

(單位: %)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¹⁾	90.3	8.5	-	-	1.2	100.0(7,448)
1997 ²⁾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³⁾	58.1	41.5	31.5	10.0	0.5	100.0(6,363)

註: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資料: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본 조사결과

64)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겠음.

결국 결혼하면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가치관은 퇴색되고 있으며, 점차 子女必要性은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子女必要性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表 8-5>와 같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7.6%,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2.6%이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1.6%,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0.4%이었으며,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한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0.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8%로 나타나 全般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子女의 必要性이 弱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子女의 必要性에 대한 부인의 태도는 年齡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부인은 35~39세 연령층이 5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 연령층으로 58.6%이었으며, 15~24세 연령층은 50.0%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이 12.8%이었으며,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8.8%~9.3%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30대 이상의 연령층 부인에 비하여 자녀의 필요성이 약함을 보여 주었다.

부인의 教育水準에 따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59.1%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6.3%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1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으로 10.8%이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低學歷層 부인은 6.3%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부인의 연령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高

學歷層의 부인은 젊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부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이 자녀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8-5〉 15~44歲 有配偶婦人의 子女必要性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58.1	31.5	10.0	0.5	100.0(6,363)
지역					
동부	57.6	31.6	10.3	0.5	100.0(5,820)
읍·면부	62.6	30.4	6.8	0.2	100.0(543)
연령					
15~24세	50.0	32.9	17.1	-	100.0(210)
25~29세	58.0	29.2	12.8	0.1	100.0(1,214)
30~34세	57.8	33.1	8.9	0.2	100.0(1,568)
35~39세	58.8	31.4	8.8	1.0	100.0(1,776)
40~44세	58.6	31.6	9.3	0.5	100.0(1,595)
교육수준					
초교 이하	56.6	35.5	6.3	1.5	100.0(332)
중학교	58.2	29.9	11.3	0.6	100.0(806)
고등학교	59.1	31.1	9.6	0.3	100.0(3,419)
대학 이상	56.3	32.3	10.8	0.6	100.0(1,804)
취업여부					
취업	58.3	30.9	10.2	0.5	100.0(2,705)
미취업	57.9	31.9	9.8	0.4	100.0(3,656)
현존자녀수					
0명	49.0	34.5	16.3	0.2	100.0(533)
1명	57.6	30.4	11.5	0.5	100.0(1,475)
2명	58.3	32.0	9.2	0.5	100.0(3,662)
3명	66.3	27.2	6.4	0.2	100.0(611)
4명 이상	54.9	41.5	2.4	1.2	100.0(82)

就業與否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즉,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8.3%, 미취업부인

57.9%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0.2%, 미취업부인 9.8%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6.3%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9.0%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자녀가 적을수록 높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16.3%나 되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4%에 불과하였다. 이는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연령 및 교육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2. 理想子女數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술한 자녀가치관 외에도 理想子女數가 있다. 사실 이상자녀수는 子女價値觀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변수로서 ‘응답자가 가장 理想的이라고 생각하는 子女의 數’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응답자가 실제 두고 있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를 묻는 主觀的인 子女規模에 대한 價値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로 한 부부의 자녀수를 결정하는 행동에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要因임에는 틀림없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平均 理想子女數를 年度別 및 年齡別로 비교한 결과는 <表 8-6>과 같다. 전반적으로 이상자녀수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줄어들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였다. 즉, 理想子女數는 1994년 2.2명에서 1997년 2.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금번 조사결과인 2000년의 이상자녀수는 2.2명이었다.

合計出生率은 1993년 1.75, 1996년 1.71, 그리고 1999년 1.425로 지

속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理想子女數는 1994년 2.2명에서 1997년 2.3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2명으로 미미하게 저하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과 이상자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그 내용은 다르지만 反比例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高出産率을 보이는 開發途上國에서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안정된 低出産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先進國에서는 이상자녀수가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表 8-6〉 15~44歲 有配偶婦人의 年齡別 平均 理想子女數 變動推移 (1976~2000年)

(單位: 명)

연령	1976 ¹⁾	1982 ²⁾	1985 ³⁾	1988 ⁴⁾	1991 ⁵⁾	1994 ⁶⁾	1997 ⁷⁾	2000 ⁸⁾
15~24세	2.4	2.1	1.8	1.8	1.8	2.0	2.1	2.1
25~29세	2.5	2.2	1.9	1.9	1.9	2.1	2.1	2.1
30~34세	2.8	2.5	2.0	2.0	2.1	2.2	2.2	2.2
35~39세	3.0	2.6	2.1	2.0	2.2	2.3	2.3	2.3
40~44세	3.2	2.9	2.2	2.1	2.3	2.3	2.3	2.3
전체	2.8	2.5	2.0	2.0	2.1	2.2	2.3	2.2

註: 1991년은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資料: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_____,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_____,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본 조사결과

이러한 경우는 日本 및 西歐 先進國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日本은 합계출산율이 1.72이던 1986년에 이상자녀수는 2.5명을 나타내었고, 199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0으로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자녀수는 2.6명으로 상승하였다(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1996).⁶⁵⁾ 그러나 2000년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와 이상자녀수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바, 이는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子女養育에 대한 實質的 負擔이 增大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부인의 개인적 및 그들 가족 내·외의 제반 여건변화가 이상자녀수에 대한 부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자녀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婦人年齡別 저하속도는 相異하였다. 즉, 1976년~2000년 기간의 이상자녀수 변화를 年齡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24세 연령층에서는 단지 0.3명의 저하를 보인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 폭이 커져 40~44세 연령층에서는 0.9명이나 저하되었다.

年齡別 理想子女數는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가장 낮은 15~24세 부인과 가장 높은 40~44세 부인간의 이상자녀수 차이는 1976년과 1982년에는 0.8명이었으며, 1985년에는 0.4명, 1988년과 1994년에는 0.3명, 그리고 1997년과 2000년에는 0.2명으로 점차 저하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少子女觀은 부인연령에 관계없이 普遍化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居住地域 및 年齡別 理想子女數 分布를 살펴보면 <表 8-7>과 같다. 먼저 1997년과 2000년의 이상자녀수 분포를 비교하면 0~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부인은 10.0%에서 9.3%

65) 이 자료에서의 이상자녀수는 미혼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로 0.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2명의 자녀가 理想的이라고 한 부인은 62.6%에서 64.3%로 1.7%포인트 증가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부인은 26.5%에서 25.8%로 0.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表 8-7〉 15~44歲 有配偶婦人의 地域別 및 年齡別 理想子女數 分布
(單位: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계(수)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1997년 ¹⁾	10.0	62.6	20.3	6.2	0.9	100.0(5,409)	2.3
2000년 ²⁾	9.3	64.3	20.1	5.7	0.7	100.0(6,361)	2.2
전국							
15~24세	10.5	67.6	20.0	1.0	1.0	100.0(210)	2.3
25~29세	10.7	73.0	13.8	2.3	0.2	100.0(1,215)	2.1
30~34세	8.5	64.8	21.2	5.1	0.4	100.0(1,568)	2.3
35~39세	8.6	61.0	23.3	6.2	0.9	100.0(1,775)	2.4
40~44세	9.7	60.4	20.1	8.8	1.0	100.0(1,593)	2.4
동부	9.6	64.6	19.7	5.5	0.6	100.0(5,819)	2.3
15~24세	11.1	66.1	20.6	1.1	1.1	100.0(189)	2.3
25~29세	11.1	73.5	13.3	2.1	0.1	100.0(1,121)	2.1
30~34세	8.8	65.2	20.6	5.0	0.3	100.0(1,448)	2.3
35~39세	8.8	61.3	23.3	5.9	0.7	100.0(1,616)	2.4
40~44세	10.1	60.8	19.5	8.7	0.9	100.0(1,445)	2.4
읍·면부	5.7	60.7	24.2	7.7	1.7	100.0(542)	2.5
15~24세	4.8	81.0	14.3	-	-	100.0(21)	2.1
25~29세	6.4	67.0	20.2	5.3	1.1	100.0(94)	2.3
30~34세	4.2	60.0	28.3	6.7	0.8	100.0(120)	2.5
35~39세	6.9	57.9	23.3	9.4	2.5	100.0(159)	2.5
40~44세	5.4	57.4	25.7	9.5	2.0	100.0(148)	2.6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2000년 조사에서 보여준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教育水準이 높고 젊은 年齡層의 婦人이 많이 살고 있는 洞部地域이 邑·面部地域 보다 少子女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74.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6.4%이었던 반면, 3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5.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1.9%로 반대양상을 보였다.

각 지역의 婦人年齡別 理想子女數 분포를 살펴보면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8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7.2%이었으며,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8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3.4%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 부인은 少子女 價値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男兒選好價値觀

가. 아들의 必要性

男兒選好 價値觀은 ‘아들의 必要性 與否’의 질문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들의 必要理由’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한 性選好 價値觀을 拂拭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이들 두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表 8-8>~<表 8-10>에 잘 나타난다.

15~44歲 有配偶婦人 中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16.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

다’는 의견은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39.5%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停滯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는 1991년 30.7%, 1994년 34.3%, 1997년 35.0%,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43.2%로 최근에 급증하였다. 따라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로 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⁶⁾

〈表 8-8〉 15~44歲 有配偶婦人의 아들 必要性的 變化(1991~2000年)
(單位: %)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91 ¹⁾	40.5	30.7	28.0	0.8	100.0(7,448)
1994 ²⁾	26.3	34.3	38.9	0.5	100.0(5,175)
1997 ³⁾	24.8	35.0	39.4	0.8	100.0(5,409)
2000 ⁴⁾	16.2	43.2	39.5	1.1	100.0(6,350)

註: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 資料: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본 조사결과

2000년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읍·면부지역 거주부인(꼭 있어야 함 22.7%, 있는 것이 좋음 44.8%)이 동부지역

66)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 그 외 연도의 조사자료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직접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추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 제시함.

거주부인(꼭 있어야 함 15.6%, 있는 것이 좋음 4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에 대한 選好度가 높았는데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함’ 12.0%, ‘있는 것이 좋음’ 38.5%로 낮았으나, 부인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 비율은 比例적으로 높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함’ 22.2%, ‘있는 것이 좋음’ 44.8%로 나타났다(表 8-9 參照).

〈表 8-9〉 15~44歲 有配偶婦人의 特性別 아들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16.2	43.2	39.5	1.1	100.0(6,350)
지역					
동부	15.6	43.1	40.2	1.1	100.0(5,807)
읍·면부	22.7	44.8	31.3	1.3	100.0(543)
연령					
15~24세	12.0	38.5	47.1	2.4	100.0(208)
25~29세	10.9	41.3	46.5	1.3	100.0(1,212)
30~34세	13.1	43.1	42.5	1.2	100.0(1,563)
35~39세	17.5	43.8	37.5	1.2	100.0(1,773)
40~44세	22.2	44.8	32.3	0.7	100.0(1,59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5.0	45.7	28.0	1.2	100.0(328)
중학교	21.7	45.1	32.0	1.1	100.0(802)
고등학교	16.7	42.8	39.3	1.2	100.0(3,413)
대학 이상	11.2	42.6	45.2	0.9	100.0(1,802)
현존자녀수					
0명	9.2	33.5	55.4	1.9	100.0(531)
1명	11.2	38.8	48.3	1.7	100.0(1,473)
2명	17.1	46.1	35.9	0.9	100.0(3,655)
3명	27.2	45.2	27.4	0.2	100.0(610)
4명 이상	27.5	46.3	23.8	2.5	100.0(80)

婦人의 教育水準에 따라 아들의 選好度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아

들이 ‘있는 것이 좋음’은 教育水準別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2.6%~45.7%), ‘꼭 있어야 함’은 教育水準別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꼭 있어야 함’을 주장한 부인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층에서 25.0%로 높았으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낮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11.2%만이 높은 아들 선호도를 보였다.

아들選好度는 적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낮았고, 많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높았다. 이는 소자녀를 가진 부인이 동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이며, 학력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에 많은 자녀를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高年齡層이며, 학력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나. 아들의 必要理由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아들을 원하는 부인이 많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 부인들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表 8-10>은 15~44세 유배우부인들의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들의 필요이유를 전통적 가계계승의 측면에서 ‘가문유지와 제사’를, 자식으로부터의 도움과 관련하여 ‘노후생활과 경제적 도움’을, 정신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 그리고 ‘기타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⁶⁷⁾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心理的 滿足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家庭幸福이 4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지표는 1997년도 조사에서도 각각 69.6%, 41.6%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67) 분석결과는 복수응답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즉,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아들 필요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임.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主流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精神的 滿足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전술한 <表 8-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아들의 필요성이 높는데 기인하여 아들이 필요한 이유도 각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心理的 滿足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80.6%)이 동부지역 거주부인(68.6%)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傳統的 家計繼承의 측면인 가문유지와 제사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가문유지 32.8%, 제사 11.5%)이 동부지역 거주부인(가문유지 22.1%, 제사 5.1%)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老後生活을 위해서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9.6%)이 동부지역 거주부인(5.0%)보다 높았다. 이 외에도 經濟的 도움, 家庭幸福 등도 미미하나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과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心理的 滿足과 家庭의 幸福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아들필요성은 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과 비교하여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고졸 이하: 70.1~78.2%, 대학 이상: 63.3%),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높았다(고졸 이하 30.6~44.0%, 대학 이상: 47.0%). 이들 항목 외에도 家門維持, 祭祀, 老後生活, 經濟的 도움 등의 항목에서도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아들필요성의 이유는 相對的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물론 아들의 필요성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층에서 낮는데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되기도 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보다 높은 支持率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表 8-10〉 15~44歲 有配偶婦人의 아들의 必要理由¹⁾

(單位: %)

특성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1997년 ¹⁾	35.1	10.3	8.0	2.9	69.6	41.6	1.4
2000년	23.1	5.7	5.4	2.4	69.8	43.3	0.7
지역							
동부	22.1	5.1	5.0	2.4	68.6	43.3	0.7
읍·면부	32.8	11.5	9.6	2.7	80.6	43.4	0.5
연령							
15~24세	26.7	4.8	9.5	1.9	61.0	41.0	-
25~29세	19.3	6.6	4.3	3.5	70.1	39.7	0.5
30~34세	17.2	4.4	4.7	2.4	65.7	46.5	1.1
35~39세	25.0	5.7	5.6	2.0	70.0	45.1	0.8
40~44세	28.0	6.4	6.2	2.3	73.7	41.4	0.5
교육수준							
초교 이하	36.6	10.4	8.2	3.9	74.6	30.6	-
중학교	28.4	7.5	7.3	2.8	78.2	39.3	0.9
고등학교	22.0	5.5	5.9	2.8	70.1	44.0	0.7
대학 이상	19.3	4.0	2.7	1.2	63.3	47.0	0.6
현존자녀수							
0명	23.3	8.4	7.9	3.1	68.3	39.5	0.4
1명	21.8	4.8	3.5	2.9	69.3	38.8	1.1
2명	22.6	5.3	5.6	2.3	69.3	45.6	0.6
3명	26.5	7.2	5.9	2.3	73.5	41.3	0.7
4명 이상	35.6	10.2	8.6	-	74.6	40.7	-

註: 1) 복수응답 결과임.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결과

다. 理想子女數의 性 選好

性選好의 수준은 前述한 ‘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부인의 理想子女數가 性區分 없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질문과 함께 理想子女數를 남아 및 여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상자녀수가 어떠한 性 構成을 갖기 원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男兒選好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한 요인⁶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하여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 出生性比 不均衡을 이루고 法的 및 倫理的 側面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가치관적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부인의 이상자녀수 규모는 2.2명으로 性 區分없이 자녀를 원하는 부인은 1997년 61.5%에서 2000년에는 57.3%로 감소하였고, 구별해서 원하는 경우는 37.2%에서 42.1%로 증가하여 성 선호적 태도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남아를 선호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아선호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고,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의 성을 구분하여 원한다는 견해는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이상자녀수 2.2명에는 최소한 아들이 1명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하게 있음을 類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性 選好的 價値觀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41.3%)

68) 딸을 출산한 경우 아들을 갖기 위하여 계속 출산하기도 하여 딸이 여러 명 있고 마지막 자녀는 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음.

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0.2%)이, 연령이 높을 수록(15~24세: 34.9%, 40~44세: 49.3%), 중학교 교육수준의 부인(51.0%)이,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0명: 32.6%, 4명 이상: 57.3%) 높게 나타났다.

〈表 8-11〉 15~44歲 有配偶婦人의 理想子女의 性區別 與否

(單位: %)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기타*	계(수)
1997년 ¹⁾	61.5	37.2	1.3	100.0(5,420)
2000년 ²⁾	57.3	42.1	0.7	100.0(6,349)
지역				
동부	58.1	41.3	0.6	100.0(5,807)
읍·면부	48.2	50.2	1.7	100.0(542)
연령				
15~24세	64.1	34.9	1.0	100.0(209)
25~29세	61.5	38.3	0.2	100.0(1,211)
30~34세	61.0	38.6	0.4	100.0(1,564)
35~39세	57.1	42.0	0.9	100.0(1,772)
40~44세	49.7	49.3	1.0	100.0(1,591)
교육수준				
초교 이하	49.2	48.9	1.8	100.0(331)
중학교	47.6	51.0	1.4	100.0(802)
고등학교	57.0	42.5	0.5	100.0(3,411)
대학 이상	63.7	35.9	0.4	100.0(1,801)
현존자녀수				
0명	66.0	32.6	1.3	100.0(530)
1명	64.0	35.4	0.6	100.0(1,473)
2명	56.0	43.4	0.5	100.0(3,653)
3명	43.0	56.5	0.5	100.0(609)
4명 이상	40.2	57.3	2.4	100.0(82)

註: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인 포함.

資料: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본 조사자료

이와 같은 性 選好的 態度를 가진 비율은 젊은 연령층(15~24세)의 부인(34.9%),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35.9%), 그리고 자녀수가 적은 부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개선될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도 많은 부인이 前近代的 思考方式에 젖어 있다는 것은 부인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은 社會制度的 改善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性 差別的 要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특히 法·制度的인 改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 3 節 家族關係 價値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妊娠 및 出産關聯 諸般 行態뿐만 아니라 가족생활방식과 가족구성원의 개별행위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의 핵심인 夫婦關係와 父母-子女關係에 관련된 價値觀은 우리 나라 가족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아 왔다. 즉, 전통적 가족이 父子關係를 중심으로 하는 직계가족이었다면, 현대가족은 夫婦關係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구체적 가족관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0).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결정적 원인이자 또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가족관계 가치관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本 節에서는 夫婦關係와 父母-子女關係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가치관을 살펴본다.

먼저 결혼을 개인간의 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양가의 관계로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한

응답은 15~64세 기혼부인 10,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부인의 74.9%가 동의를, 17.2%가 반대를 하였다. 즉, 많은 부인이 결혼은 개인당사자의 관계보다는 가족과 가족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태도를 婦人特性別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양가 가족간의 관계로 보는 경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74.6%)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7.4%)이, 가구소득이 200만원대의 부인(77.8%), 高年齡層 婦人(15~29세 71.7%, 60~64세 79.1%)이, 低學歷層 婦人(초교 이하 76.0%, 대학 이상 73.5%)이, 그리고 死別한 婦人(77.7%)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연령층의 학력이 낮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저소득층인 경우가 保守的인 性向이 많아 傳統的 價値觀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家口所得에 따른 차이이다. '결혼을 가족간의 관계로 보는 태도'는 가구소득이 200만원대인 부인이 77.8%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인 부인은 71.9%로 가장 낮았으나, 이러한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매우 동의'하는 경우는 15.7%로 다른 어느 소득계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수 상류층의 결혼행태에서 나타나는 '階級內婚'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공정자, 1990).

또한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부인은 '結婚을 兩家の 家族間의 關係'라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이혼·별거의 주요 사유 중 하나가 姑婦葛藤 또는 親族葛藤이라는 점(이영분·양심영, 1999)의 영향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同質婚(homogeneous marriage)의 성격이 일부 상류층에서는 자녀의 결혼지속여부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表 8-12〉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음	계(수)
전체	13.0	61.9	6.2	16.0	1.2	1.6	100.0(10,320)
지역							
동부	12.8	61.8	6.5	16.4	1.2	1.4	100.0(9,197)
읍·면부	14.3	63.1	4.4	13.4	1.1	3.7	100.0(1,12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1.7	63.8	5.9	14.6	0.8	3.3	100.0(2,213)
100~199만원	12.8	62.2	5.9	15.9	1.5	1.6	100.0(3,856)
200~299만원	13.4	64.4	6.2	14.0	1.0	1.0	100.0(2,271)
300만원 이상	15.7	56.2	7.8	19.0	1.0	0.3	100.0(1,577)
연령							
15~29세	13.5	58.2	8.0	17.4	2.2	0.8	100.0(1,411)
30~39세	13.6	61.6	6.4	16.7	1.0	0.7	100.0(3,398)
40~49세	11.9	62.3	5.9	17.2	1.3	1.4	100.0(2,907)
50~59세	12.5	63.9	5.8	13.7	0.7	3.5	100.0(1,819)
60~64세	15.0	64.1	4.6	11.5	0.9	3.9	100.0(785)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7	63.3	5.1	13.5	1.1	4.3	100.0(2,334)
중학교	11.5	65.5	6.7	14.2	0.6	1.6	100.0(1,723)
고등학교	12.4	61.7	5.7	17.9	1.3	0.9	100.0(4,230)
대학이상	15.8	57.7	8.2	16.5	1.6	0.1	100.0(2,026)
결혼상태							
유배우	12.9	62.0	6.1	16.3	1.2	1.4	100.0(9,224)
사별	11.7	66.0	5.3	12.6	0.1	4.3	100.0(749)
이혼·별거	17.9	50.4	10.7	16.7	2.9	1.4	100.0(347)

부부간의 獨立性和 自律性を 얼마나 중요시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89.5%가 (매우)동의하여, (절대)반대 4.7%보다 絶對적으로 優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부부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婦人特性別로 ‘(매우)동의’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84.1%)보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90.1%)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99만원 이하 84.6%, 300만원 이상 94.7%), 대체로 젊은 연령층의 부인(30~39세: 93.2%, 60~64세: 76.7%)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초교 이하: 79.9%, 대학 이상: 94.0%), 그리고 유배우부인(90.5%)이 높게 나타났다.

〈表 8-13〉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 에 대한 意見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음	계(수)
전체	17.5	72.0	4.2	4.3	0.4	1.6	100.0(10,315)
지역							
동부	17.9	72.2	4.0	4.1	0.4	1.4	100.0(9,193)
읍·면부	14.5	69.6	5.5	6.2	0.8	3.3	100.0(1,12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3.3	71.3	5.7	6.3	0.5	2.9	100.0(2,209)
100~199만원	16.3	73.5	4.3	3.8	0.6	1.5	100.0(3,856)
200~299만원	19.2	71.1	4.1	4.2	0.3	1.1	100.0(2,273)
300만원 이상	25.3	69.4	2.1	2.7	0.1	0.4	100.0(1,578)
연령							
15~29세	21.4	71.1	3.9	2.4	0.5	0.6	100.0(1,410)
30~39세	20.4	72.8	3.0	3.1	0.2	0.6	100.0(3,399)
40~49세	17.2	73.6	3.2	4.4	0.4	1.2	100.0(2,906)
50~59세	12.7	70.9	5.8	6.5	0.9	3.2	100.0(1,820)
60~64세	10.5	66.2	9.7	7.4	0.6	5.5	100.0(781)
교육수준							
초교 이하	11.4	68.5	7.5	7.4	0.9	4.4	100.0(2,333)
중학교	13.7	75.0	4.6	4.6	0.5	1.6	100.0(1,723)
고등학교	19.3	73.6	2.8	3.4	0.2	0.7	100.0(4,232)
대학이상	24.2	69.8	2.9	2.5	0.3	0.2	100.0(2,025)
결혼상태							
유배우	18.2	72.3	3.9	3.9	0.4	1.3	100.0(9,225)
사별	9.4	68.7	7.6	7.8	1.2	5.4	100.0(747)
이혼·별거	18.0	68.6	5.2	6.1	0.6	1.5	100.0(344)

확산되고 있는 부부관계 중심의 핵가족상이 부부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가장 우선시하는 西歐的 個人主義에 기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表 8-14〉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음	계(수)
전체 지역	2.2	24.9	13.6	39.9	8.4	11.0	100.0(10,255)
동부	2.3	25.4	13.9	40.0	7.9	10.5	100.0(9,141)
읍·면부	1.5	20.6	10.4	39.9	12.4	15.1	100.0(1,11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2.2	19.6	10.9	40.7	12.6	13.9	100.0(2,202)
100~199만원	2.2	25.0	13.0	40.2	8.5	11.0	100.0(3,826)
200~299만원	2.1	27.8	14.3	39.7	7.0	9.1	100.0(2,258)
300만원 이상	2.6	29.1	18.0	37.2	4.4	8.8	100.0(1,573)
연령							
15~29세	4.0	32.0	17.6	34.3	4.3	7.9	100.0(1,407)
30~39세	2.2	28.8	15.8	38.2	5.1	9.8	100.0(3,378)
40~49세	1.9	23.8	12.1	43.4	7.7	11.0	100.0(2,883)
50~59세	1.4	18.6	10.9	42.3	14.5	12.3	100.0(1,809)
60~64세	2.2	13.5	8.2	39.7	18.3	18.0	100.0(776)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	16.2	9.6	42.1	15.6	14.9	100.0(2,313)
중학교	2.2	23.1	10.7	41.3	11.1	11.5	100.0(1,715)
고등학교	2.3	27.5	14.0	40.2	5.5	10.5	100.0(4,206)
대학이상	2.8	30.9	19.6	35.8	3.9	7.0	100.0(2,018)
결혼상태							
유배우	2.1	25.4	14.1	40.3	7.7	10.4	100.0(9,168)
사별	1.9	16.0	9.0	37.5	16.3	19.3	100.0(742)
이혼·별거	5.8	30.7	8.5	36.8	9.1	9.1	100.0(342)

응답부인의 27.1%가 이에 대하여 (매우)동의를, 48.3%가 (절대)반대

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의 성생활만족 여부가 결혼관계 지속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表 8-14 參照).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는데 대한 태도는 부인의 특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2.1%)보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27.7%)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99만원 이하: 21.8%, 300만원 이상: 31.7%), 부인연령이 낮을수록(15~29세: 36.0%, 60~64세: 15.7%),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초교 이하: 17.9%, 대학 이상: 33.7%) 높았다. 結婚狀態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매우)동의한 경우는 이혼 및 별거부인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배우부인 27.5%이었으며, 사별부인은 17.9%에 불과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관계의 중심을 부부관계보다는 부자관계에 둔 ‘直系家族’을 이상형으로 여겼기 때문에(장현섭, 199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核家族化, 社會文化的 變化 등은 부모로 하여금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녀를 대하야 할 것이 요청되어 왔으며,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보았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전체 응답부인의 40.0%가 찬성을, 53.0%가 반대를 하여 자녀의 성취를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38.0%)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6.6%)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99만원 이하: 57.6%, 300만원 이상: 28.9%), 부인연령이 높을수록(15~29세: 12.3%, 60~64세: 76.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교 이하: 68.8%, 대학 이상: 15.7%), 그리고 사별부인(65.9%)이 높게 나타났다.

〈表 8-15〉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계(수)
전체	6.4	33.6	7.0	44.7	8.3	100.0(10,222)
지역						
동부	5.7	32.3	7.4	46.1	8.5	100.0(9,111)
읍·면부	12.0	44.6	4.1	32.7	6.7	100.0(1,111)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0.4	47.2	5.8	31.3	5.4	100.0(2,179)
100~199만원	6.4	32.6	6.5	46.4	8.1	100.0(3,833)
200~299만원	4.4	27.7	8.3	49.9	9.6	100.0(2,249)
300만원 이상	4.3	24.6	8.3	52.4	10.5	100.0(1,572)
연령						
15~29세	1.3	11.0	7.8	63.2	16.7	100.0(1,403)
30~39세	2.4	23.1	7.7	56.6	10.1	100.0(3,374)
40~49세	6.5	39.1	6.8	40.5	7.1	100.0(2,886)
50~59세	12.6	51.6	6.1	26.4	3.3	100.0(1,797)
60~64세	17.8	58.6	5.8	16.6	1.3	100.0(760)
교육수준						
초교 이하	15.0	53.8	5.0	22.6	3.6	100.0(2,287)
중학교	7.9	46.2	6.6	35.0	4.3	100.0(1,705)
고등학교	3.4	26.7	7.4	52.8	9.7	100.0(4,212)
대학이상	1.3	14.4	9.0	61.1	14.1	100.0(2,011)
결혼상태						
유배우	5.7	32.1	7.1	46.3	8.7	100.0(9,154)
사별	14.0	51.9	5.6	24.5	4.0	100.0(727)
이혼·별거	7.4	34.4	7.9	43.8	6.5	100.0(340)

자녀를 통한 父母의 代理滿足에 대하여 否定的인 視覺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젊은 年齡層, 高學歷, 높은 所得階層의 부인은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자녀관계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指標로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부인의 96.3%가 (매우)동의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였다(表 8-16 參照).

〈表 8-16〉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계(수)
전체	23.4	72.9	2.1	1.4	0.2	100.0(10,256)
지역						
동부	23.6	72.8	2.1	1.3	0.2	100.0(9,147)
읍·면부	21.6	73.5	2.5	2.1	0.4	100.0(1,109)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7.9	78.2	2.8	1.0	0.0	100.0(2,187)
100~199만원	23.1	73.0	2.0	1.6	0.3	100.0(3,840)
200~299만원	25.6	71.4	1.7	1.2	0.2	100.0(2,255)
300만원 이상	29.0	67.0	2.0	1.8	0.2	100.0(1,587)
연령						
15~29세	30.3	68.1	0.4	1.1	0.2	100.0(1,409)
30~39세	25.6	70.8	1.9	1.5	0.2	100.0(3,391)
40~49세	22.4	73.9	1.9	1.6	0.2	100.0(2,891)
50~59세	18.6	75.6	4.0	1.6	0.2	100.0(1,803)
60~64세	15.7	80.8	2.7	0.7	0.1	100.0(766)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8	76.3	3.8	1.8	0.3	100.0(2,297)
중학교	18.1	77.8	2.9	1.0	0.2	100.0(1,716)
고등학교	23.8	73.3	1.4	1.4	0.1	100.0(4,213)
대학이상	33.3	64.1	1.1	1.2	0.2	100.0(2,024)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즉, 동부지역 거주부인(96.4%)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95.1%)보다 약간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96.0%~97.0%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50~59세 연령층 부인은 94.2%로 가장 낮았으나 가장 높은 연령층인 15~29세의 98.4%와는 4.2%포인트에 불과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높았으나 초등학교 이하(94.1%)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97.4%)의 차이는 불과 3.3%포인트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8-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子女의 將來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性 役割에 기초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보여주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에 대한 同意程度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부인의 69.8%가 찬성을, 25.2%가 반대를 나타내어 성 역할에 있어서는 여전히 傳統的 價値觀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表 8-17 參照).

각 특성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68.6%)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80.1%)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99만원 이하 79.1%, 300만원 이상 60.7%), 부인 연령이 높을수록(15~29세 55.8%, 60~64세 86.7%),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교 이하 83.2%, 대학 이상 53.0%) 전통적 性 役割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기혼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性 役割分離 認識에 적응하기 위한 現實的 戰略이라고 판단된다.⁶⁹⁾

69) 기혼부인들의 경우 ‘평등한 부부상’은 ‘인격존중’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음(박민자, 1992). 또한 통계청(1999)에 의하면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직장생활(성차별 있다 75.6%, 없다 6.8%), 사회생활(있다 78.6%, 없다 5.1%)에 대한

〈表 8-17〉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계(수)
전체	16.8	53.0	5.0	22.5	2.7	100.0(10,263)
지역						
동부	16.1	52.5	5.2	23.5	2.8	100.0(9,146)
읍·면부	22.8	57.3	3.2	14.4	2.2	100.0(1,118)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21.0	58.1	4.0	15.1	1.8	100.0(2,200)
100~199만원	17.1	52.7	4.7	22.5	3.0	100.0(3,838)
200~299만원	15.0	51.8	4.8	25.5	2.9	100.0(2,257)
300만원 이상	13.6	47.1	6.6	29.4	3.4	100.0(1,574)
연령						
15~29세	11.3	44.5	7.3	32.6	4.4	100.0(1,406)
30~39세	12.1	49.1	5.8	29.4	3.5	100.0(3,386)
40~49세	18.6	55.4	4.3	19.4	2.3	100.0(2,887)
50~59세	23.0	60.0	3.5	12.2	1.3	100.0(1,808)
60~64세	26.0	60.7	3.2	9.3	0.8	100.0(776)
교육수준						
초교 이하	24.0	59.2	3.0	12.2	1.5	100.0(2,314)
중학교	20.5	57.6	4.4	16.0	1.5	100.0(1,711)
고등학교	14.1	53.1	4.9	25.0	2.9	100.0(4,219)
대학이상	11.2	41.8	7.9	34.6	4.6	100.0(2,016)

전통적 직계가족은 老父母 奉養을 부부 역할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핵가족은 子女中心의 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핵가족의 일반화 및 인구 노령화와 함께 노후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子女의 經濟的 支援으로 생활하고 있다.

것이 강하며, 가정생활(성차별 있다 40.2%, 없다 34.7%), 학교생활(있다 34.5%, 없다 29.4%)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즉, 가정내 남녀 역할분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전통적 성 역할에 기초한 자녀양육태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비한 社會保障制度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실태는 노후대책과 관련된 자녀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가족부양에 있어 先世代에 대한 ‘責任’보다 後世代에 대한 ‘投資’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부인의 77.0%가 (절대)반대를, 14.4%가 (매우)동의를 하고 있어 子女 扶養責任과 별도로 老父母 奉養의 책임을 중요시⁷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매우)동의’를 하는 비율을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0.4%)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3.6%)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99만원 이하: 20.9%, 300만원 이상: 10.2%), 부인연령이 낮을수록(15~29세: 8.9%, 60~64세: 29.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교 이하: 25.7%, 대학 이상: 7.2%), 그리고 사별부인(25.9%)이 유배우부인(13.6%) 또는 이혼 및 별거부인(12.3%)보다 높게 나타났다(表 8-18 參照).

이러한 결과는 보다 近代的이고 個人主義的 性向이 강한 부인일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별도로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獨立意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0) 노후 독립 생활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통계청(1997, 1999)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994년 87.3%(여성의 경우 85.8%)에서 1998년 89.9%(여성의 경우 89.1%)로 증가함. 단, 사회변화에 따라 노부모부양 태도는 장자 중심에서 아들·딸 모두 또는 능력있는 자녀 등으로 그 부양주체가 보다 다원화, 남녀평등화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表 8-18〉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음	계(수)
전체	1.3	13.1	7.1	60.6	16.4	1.5	100.0(10,304)
지역							
동부	1.2	12.4	7.1	61.6	16.2	1.4	100.0(9,180)
읍·면부	1.6	18.8	7.1	52.5	17.7	2.2	100.0(1,12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6	19.3	7.0	54.3	15.6	2.2	100.0(2,207)
100~199만원	1.2	13.3	6.6	61.2	15.9	1.7	100.0(3,855)
200~299만원	1.0	9.9	6.7	62.5	18.6	1.3	100.0(2,269)
300만원 이상	1.1	9.1	7.6	66.5	15.1	0.5	100.0(1,576)
연령							
15~29세	0.8	8.1	7.5	64.5	18.1	1.0	100.0(1,412)
30~39세	0.9	8.4	6.7	66.3	16.8	1.0	100.0(3,394)
40~49세	1.1	12.9	7.0	61.0	16.5	1.6	100.0(2,901)
50~59세	2.3	20.4	7.7	52.1	15.0	2.5	100.0(1,815)
60~64세	1.9	27.2	7.4	47.4	13.5	2.6	100.0(78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5	23.2	7.2	48.9	15.5	2.7	100.0(2,332)
중학교	0.9	15.4	7.0	59.4	16.3	1.0	100.0(1,715)
고등학교	0.9	9.9	6.4	65.0	16.3	1.5	100.0(4,228)
대학이상	0.8	6.4	8.5	66.0	17.5	0.7	100.0(2,023)
결혼상태							
유배우	1.2	12.4	7.1	61.6	16.4	1.4	100.0(9,213)
사별	2.3	23.6	7.1	49.4	14.9	2.8	100.0(747)
이혼·별거	1.5	10.8	8.5	59.2	18.1	2.0	100.0(343)

핵가족화와 함께 우리 나라 가족에서도 夫婦關係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既婚子女와 의 非同居 意識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노인부부만의 생활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부인의 71.4%가 (매우)동의하였으

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4%로 나타나 많은 부인이 남편이 자녀보다 본인에게 더 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表 8-19 參照).

〈表 8-19〉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음	계(수)
전체	14.3	57.1	10.5	15.1	1.3	1.7	100.0(10,298)
지역							
동부	13.6	57.3	10.7	15.5	1.3	1.6	100.0(9,176)
읍·면부	19.7	55.3	9.1	12.6	1.2	2.2	100.0(1,12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2.9	56.3	11.5	15.7	1.3	2.3	100.0(2,206)
100~199만원	14.8	58.1	9.7	14.9	0.9	1.5	100.0(3,853)
200~299만원	14.8	57.0	9.7	15.3	1.5	1.7	100.0(2,267)
300만원 이상	15.0	56.3	11.8	14.4	1.7	0.8	100.0(1,577)
연령							
15~29세	12.5	56.7	9.7	18.5	1.6	1.1	100.0(1,412)
30~39세	13.6	56.8	11.1	16.1	1.3	1.1	100.0(3,395)
40~49세	15.9	57.1	9.7	14.2	1.3	1.7	100.0(2,896)
50~59세	15.1	57.9	10.4	13.7	0.9	2.0	100.0(1,813)
60~64세	12.8	57.3	12.4	11.8	1.0	4.7	100.0(782)
교육수준							
초교 이하	15.3	57.6	10.6	12.7	0.9	2.9	100.0(2,330)
중학교	14.9	57.6	10.2	13.8	1.1	2.3	100.0(1,714)
고등학교	14.6	57.4	9.0	16.3	1.4	1.3	100.0(4,224)
대학이상	12.1	55.3	13.7	16.7	1.5	0.7	100.0(2,027)
결혼상태							
유배우	15.0	58.0	10.0	14.5	1.1	1.3	100.0(9,212)
사별	9.3	53.2	13.6	16.8	1.2	6.0	100.0(745)
이혼·별거	5.6	42.1	14.9	29.2	5.3	2.9	100.0(342)

이러한 견해를 婦人特性別로 살펴보면,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5.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70.9%)보다 높았으나, 가구소득,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

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前述한 다른 지표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연령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들일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流動的이고 獨立的인 態度가 강한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⁷¹⁾. 結婚狀態別로는 유배우부인(73.0%)이 찬성비율이 높았고, 이혼·별거부인(47.7%)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재의 生活 興件에 따른 差異가 反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8개 지표에 의하여 15~64세 기혼부인의 가족관계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가치관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 현재로서는 傳統的·儒敎的인 가치관과 個人主義的 또는 自由主義的인 價値觀 등이 다양하게 混在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다(장경섭, 1994; 김승권 외, 2000). 다만, 가구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우리 나라 부인의 가족가치관은 個人主義的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견해를 부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5.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70.9%)보다 높았으나, 가구소득,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다른 지표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연령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들일수록 配偶者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流動的이고 獨立的인 태도가 강한 반면,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등의 특정한 측면에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⁷²⁾.

71) 전통적 세대가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 또는 대리만족의 경향이 강한 것과는 달리 최근 젊은 중산층 주부들의 자녀 조기교육열 또는 영재교육열 등의 현상은 전문적인 자녀교육 자체를 자기 성취의 하나로 간주하는 이들 부인층의 개인주의적, 성취지향적 가치관에서 발로된 것으로 판단됨.

72) 전통적 세대가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 또는 대리만족 경향을 보다 강하게 보인 것

第 4 節 戶主相續 및 祭禮,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우리 사회에서는 儒敎的 家族價値觀이 여전히 지배적이어서 생활양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승권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家父長的 直系家族의 관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戶主制 및 祭禮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러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어떤 집단 또는 개인들에서 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家事分擔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서 性別分業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약화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5~64세 기혼부인들의 戶主相續에 대한 태도는 ‘아들, 딸 누구든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부인이 49.5%로 가장 높았고, ‘되도록 아들이어야 한다’는 부인은 21.7%로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비율은 18.7%, 그리고 ‘딸, 아들 중 더 나은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라는 부인은 7.3%로 나타났다(表 8-20 參照).

가장 傳統的인 價値觀의 發現이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부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2.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7.1%)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99만원 이하: 29.0%, 300만원 이상: 12.9%), 부인연령이 높을수록(29세 이하: 4.8%, 60~64세: 48.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교 이하: 41.0%, 대학 이상: 5.6%)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혼 및 별거부인(12.5%)이 가장 낮았고, 사별부인(38.9%)이 가장 높았으며, 아들이 있는 부인(23.3%)이 아들이 없는 부인(2.8%)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답부인이 처한 여건이 충분

과는 달리 최근 젊은 중산층 주부들의 자녀 조기교육 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열의는 전문적인 자녀교육 자체를 자기 성취의 하나로 간주되는 이들 부인층의 개인주의적, 성취지향적 가치관에 보다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表 8-20〉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戶主相續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반드시 아들이어 야 함	되도록 아들이어 야 함	딸, 아들 중 더 나은 자식에게 상속해야 함	아들, 딸 누구든 상관없음	모르 겠음	계(수)
전체	18.7	21.7	7.3	49.5	2.8	100.0(10,300)
지역						
동부	17.1	21.2	7.5	51.5	2.7	100.0(9,178)
읍·면부	32.0	25.3	6.1	33.2	3.4	100.0(1,122)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29.0	20.7	5.6	41.3	3.4	100.0(2,209)
100~199만원	17.8	20.9	7.9	50.6	2.9	100.0(3,856)
200~299만원	13.8	22.6	8.1	53.2	2.3	100.0(2,269)
300만원 이상	12.9	23.4	8.3	53.1	2.4	100.0(1,570)
연령						
29세 이하	4.8	17.0	10.6	64.1	3.4	100.0(1,409)
30~39세	7.39	20.6	8.5	60.3	2.7	100.0(3,389)
40~49세	18.0	22.9	6.6	49.9	2.7	100.0(2,904)
50~59세	38.1	25.4	5.2	29.1	2.2	100.0(1,818)
60세 이상	48.2	21.6	4.1	22.5	3.6	100.0(782)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41.0	23.4	4.0	28.5	3.0	100.0(2,337)
중학교	23.1	23.2	6.0	44.6	3.1	100.0(1,721)
고등학교	10.8	20.4	8.6	57.5	2.7	100.0(4,225)
대학이상	5.6	21.0	9.7	61.3	2.4	100.0(2,014)
결혼상태						
유배우	17.3	21.7	7.5	50.9	2.6	100.0(9,206)
사별	38.9	23.2	4.7	29.3	3.9	100.0(750)
이혼·별거	12.5	16.9	9.3	55.2	6.1	100.0(344)
아들 유무						
없음	2.8	11.5	11.9	71.3	2.5	100.0(1,694)
있음	23.3	24.4	6.2	43.4	2.7	100.0(7,817)

祖上의 祭禮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인이 집안 제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전체 부인의 75.2%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10.7%는 가끔 참여하였고,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음도 7.2%,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6.9%로 나타났다(表 8-21 參照).

〈表 8-21〉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祭祀에 대한 參與度

(單位: %)

특성	정기적으로 참여함	가끔 참여함	거의 참여하지 않음	전혀 참여하지 않음	제사를 지내지 않음	계(수)
전체 지역	75.2	10.7	4.6	2.6	6.9	100.0(9,693)
동부	74.2	11.2	4.8	2.7	7.2	100.0(8,624)
읍·면부	83.3	6.5	3.1	2.3	4.7	100.0(1,069)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75.5	8.3	3.7	4.7	7.8	100.0(2,073)
100~199만원	75.0	11.8	5.0	2.3	5.8	100.0(3,643)
200~299만원	75.2	10.9	4.6	2.1	7.2	100.0(2,129)
300만원 이상	75.4	10.9	5.2	1.8	6.8	100.0(1,481)
연령						
29세 이하	70.9	14.2	6.0	2.6	6.3	100.0(1,327)
30~39세	70.7	13.3	5.8	3.0	7.1	100.0(3,181)
40~49세	76.8	10.3	3.8	2.7	6.3	100.0(2,730)
50~59세	81.6	5.5	3.7	2.1	7.0	100.0(1,710)
60세 이상	81.0	6.2	2.1	2.1	8.6	100.0(747)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81.9	6.6	2.8	2.0	6.7	100.0(2,218)
중학교	77.6	9.2	4.5	2.6	6.1	100.0(1,635)
고등학교	72.6	12.9	5.1	3.0	6.5	100.0(3,964)
대학이상	70.8	12.0	5.8	2.8	8.6	100.0(1,871)
결혼상태						
유배우	75.6	11.2	4.7	2.2	6.4	100.0(8,705)
사별	83.5	5.1	2.8	2.1	6.5	100.0(710)
이혼·별거	40.4	9.7	7.6	19.9	22.4	100.0(277)

부인특성별로 定期的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74.2%)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83.3%)이, 50대 이상의 연령층 부인(50~59세: 81.6%, 60~64세: 81.0%)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81.9%, 대학 이상: 70.8%), 그리고 사별부인(83.5%)이 높았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7.2%)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7%)보다 높았으며, 특히 이혼 및 별거 중에 있는 부인이 22.4%로 유배우부인(6.4%), 사별부인(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 및 별거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의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많은 부인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祭禮는 여전히 普遍的 慣習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⁷³⁾

祭禮에 대한 態度는 향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어떠한 의례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에 의하여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表 8-22>에서 잘 보여주는데, 전체 응답부인의 64.1%가 전통에 맞추어 지낸다고 하였으며, 기도회나 추모식 형태로 지낸다가 22.3%, 그리고 특별한 의례가 필요치 않다는 11.8%이었다. 따라서 종교적 영향에 의한 경우 외에는 傳統的 祭禮를 선택할 것으로 사료된다.

傳統的 祭禮形態를 선택할 것이라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63.6%)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68.0%)이, 가구소득이 적을수록(99만원 이하: 68.7%, 300만원 이상: 58.3%), 50대 이상 연령층에서(50~59세: 70.2%, 60~64세: 73.3%),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74.3%, 대학 이상: 53.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73) 서울을 포함 전국 7대 광역시 20대 이상의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제례실태조사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5%에 불과하여 본 조사결과보다 더욱 낮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의 분포 및 응답범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별부인의 69.6%, 유배우부인의 63.8%, 이혼 및 별거부인의 58.7%로 結婚狀態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表 8-22〉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儀禮 形態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전통에 맞추어 지냄	기도회나 추모식 형태로 지냄	특별한 의례가 필요치 않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64.1	22.3	11.8	1.8	100.0(10,309)
지역					
동부	63.6	22.4	12.2	1.8	100.0(9,185)
읍·면부	68.0	21.4	9.2	1.5	100.0(1,124)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68.7	17.7	11.3	2.3	100.0(2,213)
100~199만원	64.6	21.4	12.3	1.7	100.0(3,853)
200~299만원	63.0	23.5	11.7	1.8	100.0(2,273)
300만원 이상	58.3	28.8	11.8	1.1	100.0(1,572)
연령					
29세 이하	60.0	22.0	15.8	2.2	100.0(1,412)
30~39세	59.3	25.4	13.7	1.7	100.0(3,393)
40~49세	65.4	21.9	10.8	2.0	100.0(2,901)
50~59세	70.2	19.4	9.1	1.3	100.0(1,822)
60세 이상	73.3	17.9	7.1	1.7	100.0(780)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74.3	15.9	8.2	1.6	100.0(2,339)
중학교	70.1	17.3	11.1	1.5	100.0(1,719)
고등학교	61.1	23.2	13.8	1.9	100.0(4,226)
대학이상	53.4	32.3	12.7	1.7	100.0(2,022)
결혼상태					
유배우	63.8	22.8	11.7	1.7	100.0(9,213)
사별	69.6	19.2	9.9	1.3	100.0(751)
이혼·별거	58.7	17.6	19.9	3.8	100.0(346)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하고 찬성자들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내는 편이 좋다는 입장이,

학력이 낮을수록 꼭 지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된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서도 제례 자체는 유지하되, 그 형식은 유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부인학력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종교별 인구분포의 영향도 있지만, 한편 이들 부인층의 경우 제례를 수행하는 가족생활상의 다양한 機能과 意味를 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⁷⁴⁾

전통적 가치관은 ‘男性은 職場, 女性은 家庭’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家父長制的 價値觀은 성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性 役割分擔에 대한 부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를 맡는 경우; 둘째, 맞벌이를 하며 부인이 가사를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경우; 셋째, 맞벌이를 하며 남편과 부인이 가사를 반반씩 균등하게 맡는 경우; 넷째, 누가 돈을 버는가는 상관없이 부인이 가사를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경우; 다섯째, 누가 돈을 버는가는 상관없이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가사를 맡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를 맡는다’는 전통적 태도를 지지한 부인은 23.0%에 불과한 반면,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가사를 맡되, 남편이 돕는다’ 및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가사

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 의하면 제례를 지내면 좋은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2%가 가족의 유대관계에 좋다, 18.9%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 9.3%는 아이들 가정교육에 좋다고 답하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유대관계에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를 반반씩 맡는다'는 61.1%가 지지하였으며,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가는 상관없다'는 脫傳統的 役割分擔을 주장하는 부인은 15.9%로 나타났다(表 8-23 參照).

〈表 8-23〉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夫婦間 役割分擔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남편- 경제 활동/ 부인- 가사 담당	맞벌이		소득원 여부는 무관			'계(수)
		부인이 주로 가사담당, 남편도움	남편, 부인 가사 분담	부인이 주로 가사담당, 남편도움	남편, 부인 가사 분담	경제활동 않는 사람이 가사전담	
전체	23.0	27.5	33.6	7.6	3.8	4.5	100.0(10,240)
지역							
동부	22.5	27.1	33.7	8.0	3.9	4.8	100.0(9,127)
읍·면부	26.6	30.1	33.2	5.0	2.5	2.6	100.0(1,113)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28.9	26.7	32.0	7.0	2.4	3.1	100.0(2,193)
100~199만원	22.7	26.8	34.6	7.8	3.2	4.9	100.0(3,826)
200~299만원	20.4	28.4	34.3	7.9	4.7	4.3	100.0(2,256)
300만원 이상	17.9	29.3	32.3	8.5	6.0	6.0	100.0(1,572)
연령							
29세 이하	14.9	22.8	40.6	9.0	6.5	6.1	100.0(1,405)
30~39세	19.7	26.0	35.1	8.5	4.7	6.0	100.0(3,376)
40~49세	22.2	29.3	34.1	7.3	3.4	3.8	100.0(2,880)
50~59세	30.3	30.6	28.6	6.1	1.8	2.7	100.0(1,808)
60세 이상	37.9	27.9	24.8	6.1	.8	2.5	100.0(770)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31.5	31.0	29.0	5.0	1.4	2.2	100.0(2,310)
중학교	23.6	29.9	33.0	7.8	2.5	3.2	100.0(1,707)
고등학교	20.6	26.2	35.6	8.2	4.4	5.0	100.0(4,202)
대학이상	17.5	23.9	35.5	9.3	6.5	7.3	100.0(2,015)
결혼상태							
유배우	22.2	27.2	34.0	7.8	4.0	4.8	100.0(9,158)
사별	31.6	30.1	28.8	6.1	1.5	1.9	100.0(737)
이혼·별거	24.2	28.0	35.6	6.1	3.5	2.6	100.0(343)
취업여부							
취업	18.0	31.7	38.1	5.7	3.6	3.0	100.0(4,623)
미취업	27.1	24.0	30.0	9.3	3.9	5.8	100.0(5,618)

전통적인 부부역할을 주장하는 비율을 婦人特性에 따라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6.6%)이 동부지역 거주부인(22.5%)보다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99만원 이하: 28.9%, 300만원 이상: 17.9%), 연령이 높을수록(29세 이하: 14.9%, 60~64세: 37.9%),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31.5%, 대학 이상: 17.5%), 그리고 사별부인(31.6%)이 이혼 및 별거부인(24.2%), 유배우부인(22.2%)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에 의하면 남편은 經濟的 活動을 하고, 부인은 가정에서 家事를 돌보는 性 役割 分擔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퇴색되고, 남편과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經濟活動과 家事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성 역할분담에 대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를 균등하게 절반씩 맡음'에 동의한 경우는 취업부인의 38.1%, 미취업 부인의 30.0%로 취업부인이 다소 높았다. 또한 '맞벌이를 하면서 부인이 가사를 주로 맡고 남편이 도움'에 동의한 경우는 취업부인의 31.7%, 미취업 부인의 24.0%로 취업부인이 높았다. 그러나 性 役割分離를 支持하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를 맡음'에 찬성하는 부인은 취업부인의 18.0%, 미취업부인의 27.1%로 미취업 부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여부에 따른 부인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은 취업부인이 미취업 부인보다 성 역할분담에 대한 否定的 意見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성 역할분리를 주장하는 부인(18.0%)도 상당히 있었고, 현재 專業主婦일지라도 맞벌이를 지지하는 경우(54.0%)도 매우 많이 있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 최근 젊은 층을 중

심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맞벌이에 대한 욕구는 향후 夫婦間 役割分擔의 行態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성 역할을 사회적 및 가족 내의 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家事에 국한하여 보다 상세하게 男便과 婦人間의 役割分擔에 대한 부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사는 ‘남편과 부인이 절반을 나누어 맡는다’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인이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돕는다’는 43.4%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전적으로 맡는다’는 3.3%, ‘남편이 절반 이상을 맡는다’는 0.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남편이 수행하는 家事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든, 부인을 도와주는 것이든 家事의 分擔을 기대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8-24 參照).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혼·별거한 부인들이 家事의 公平한 分擔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고연령층의 부인,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 그리고 사별부인 등의 경우는 가사는 ‘부인이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돕는다’에 대한 태도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家事가 전적으로 가정내 여성의 몫이라는 傳統的 態度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더 이상 기혼여성들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를 주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남편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價値補償 또는 相互認定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⁷⁵⁾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족생활에서의 個人主義的

75) 1998년 현재 여성의 가사분담태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2.9%,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40.7%, ‘공평하게 분담’이 54.8%, 남편만 취업한 경우 각각 32.3%, 58.3%, 7.5%로, 부인만 취업한 경우 각각 2.3%, 27.2%, 26.5% 및 ‘남편이 주로 담당’이 44.0%으로 나타남(통계청, 1999). 즉, 가사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한 태도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및 性 平等的 思考方式은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한 상호인정보다는 성
에 따른 역할구분 자체를 반대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이러한 가치
관은 平等的 家事分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表 8-24〉 15~64歲 既婚婦人 特性別 家事分擔에 대한 態度
(單位: %)

특성	부인이 전적으로 맡음	부인이 주로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도움	남편과 부인이 되도록 절반을 나누어 맡음	남편이 절반 이상을 맡음	계(수)
전체	3.3	43.4	52.7	0.6	100.0(10,264)
지역					
동부	3.4	42.9	53.1	0.6	100.0(9,150)
읍·면부	3.0	46.9	49.8	0.3	100.0(1,114)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5.2	44.0	50.3	0.5	100.0(2,198)
100~199만원	2.8	43.0	53.6	0.6	100.0(3,839)
200~299만원	3.2	42.8	53.3	0.7	100.0(2,264)
300만원 이상	1.9	45.4	52.1	0.6	100.0(1,574)
연령					
29세 이하	1.6	34.8	62.3	1.3	100.0(1,410)
30~39세	1.8	41.4	55.9	0.9	100.0(3,388)
40~49세	3.7	43.7	52.4	0.2	100.0(2,890)
50~59세	4.9	49.8	44.9	0.3	100.0(1,805)
60세 이상	8.0	51.1	40.8	0.1	100.0(773)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6.5	48.0	45.3	0.2	100.0(2,315)
중학교	3.0	48.0	48.6	0.5	100.0(1,711)
고등학교	2.5	42.4	54.6	0.5	100.0(4,214)
대학이상	1.8	36.0	60.9	1.2	100.0(2,023)
결혼상태					
유배우	3.1	43.0	53.3	0.6	100.0(9,180)
사별	5.0	50.7	43.6	0.7	100.0(740)
이혼·별거	5.8	37.2	57.0	-	100.0(344)
취업여부					
취업	3.0	44.5	51.9	0.6	100.0(4,634)
미취업	3.6	42.5	53.4	0.6	100.0(5,630)

부인의 취업여부는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1~2%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편과 부인이 家事를 均等하게 分擔하거나 또는 부인이 주로 가사를 맡고 남편이 돕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편이 家事에 적극 參與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 5 節 家族價値觀 變化의 示唆點

本章에서는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가치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의 가족관계 가치관, 그리고 호주상속, 제례, 성 역할분담 및 남편과 부인의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전체 가치관의 지표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性 平等的, 個人中心的인 價値觀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變化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부인은 少子女觀의 定着과 함께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인의 비율은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普遍的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후 생활기반을 잡을 때까지 또는 부부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첫 출산을 가능한 한 늦추려는 면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의 젊은 세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DINK(Double Income, No Kids) 또는 SINK(Single Income, No Kids) 부부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金勝權, 1992, 1997). 따라서 부인의 자녀에 대한 傳統的 價値觀은 여전히 강하지만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西歐化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남성인 家長中心에서 전체 가족원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점차 夫婦中心의 가족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의 ‘남성—직장생활, 여성—가정생활’이라는 모형은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으며, ‘모든 인간—직장 및 가정생활 병행’이라는 모형이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性 平等의이고, 能力中心의 均等負擔의 生活方式를 추구하고 있어 우리 나라 부부의 行爲樣式은 매우 합리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인층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鄉愁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文化遲滯를 겪고 있다. 이는 본인에게 갈등을 주게 되며, 다른 가족원, 더 나아가 전체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발전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노력이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男兒選好思想은 胎兒性鑑別에 의하여 人工妊娠中絶을 수용하는 경우가 야기되며, 이는 人爲的으로 자녀의 性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은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儒教的 價値觀에 뿌리를 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男女差別을 是正하기 위한 社會制度의 改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계몽을 통한 意識轉換이 필요하다. 특히, 性鑑別에 의한 人工妊娠中絶을 방지하기 위해 醫師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보건 의료망을 통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 변화에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

진 것이 많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산업화 및 서구화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가족형성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여성이 많이 있으며,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인이 있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성년자를 둔 부인의 이혼으로 인하여 매년 약 10만 명의 이혼가정 미성년자가 양산되고 있음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다(김승권, 2000). 다른 한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離婚 및 再婚家族은 持續化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낙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가족유형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政策的 支援을 講究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第 9 章 家族生活과 福祉

第 1 節 家族의 經濟生活

가족은 經濟生活의 기본단위로서 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임신 및 출산 등의 再生産 行態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많은 지표에 의하여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의 공간인 住居形態와 부동산, 동산, 자가용 등에 의한 財産狀態, 그리고 所得 및 消費支出 狀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住居 關聯 事項

가족구성원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安定된 住居’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집(家)’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만큼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物質的 準據點으로서 自家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住居空間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心理的 安定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그 경향이 다소 약화⁷⁶⁾되는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주택소유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支配的 思考觀念이라 하겠다.

76) 기성세대와는 달리 최근 젊은 세대는 주택마련보다는 자가용, 콘도회원권 등을 구매하여 여가생활 향유 등을 우선 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地域別 住宅類型을 살펴보면 54.2%가 단독주택에, 32.9%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국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59.8%, 아파트 거주비율 26.9%(통계청, 1995)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증가한 것이다(表 9-1 參照).⁷⁷⁾ 또한 이러한 변화는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읍·면부지역에서도 나타났는데,⁷⁸⁾ 그간 신규 주택공급이 아파트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거주비율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30~40대의 가구주가, 남성가구주가, 그리고 고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安定的인 經濟生活을 영위하는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며, 일반적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욱 普遍化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所有形態를 보면 전체의 51.3%가 自家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세 29.4%, 전·월세 10.0%, 월세 5.5%의 順이었다. 이는 199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⁷⁹⁾의 자가소유율 53.3%, 전세율 29.7%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자가소유율이 다소 낮아졌다(表 9-2 參照).

77) 이는 전국 12,10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즉, 1997년 조사에서 전국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55.7%, 아파트 거주비율은 28.4%이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각각 49.4%, 33.1%, 읍·면부지역에서는 각각 79.3%, 10.9%이었음(조남훈 외, 1997).

78)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비율은 동부지역이 각각 53.5%, 31.9%, 읍·면부지역은 각각 81.4%, 10.0%이었음(통계청, 1995).

79) 1995년 전국 가구의 자가, 전세, 기타 소유형태 구성비율은 53.3%, 29.7%, 17.0%이었으며, 동부지역은 46.3%, 35.3%, 18.5%, 읍·면부지역은 77.5%, 10.5%, 11.9%이었음(통계청, 1995).

〈表 9-1〉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現 居住住宅의 類型

(單位: %)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가구수)
전체	54.2	32.9	7.8	2.7	2.4	100.0(13,428)
지역						
동부	51.2	35.5	8.1	3.0	2.2	100.0(11,807)
읍·면부	76.6	13.6	5.5	-	4.3	100.0(1,621)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74.3	16.1	4.7	2.2	2.6	100.0(4,050)
100~199만원	54.9	31.4	8.1	3.4	2.2	100.0(4,678)
200~299만원	39.5	45.6	10.3	2.2	2.4	100.0(2,440)
300만원 이상	26.6	59.2	9.8	2.4	2.0	100.0(1,655)
가구주 성						
남자	51.2	35.5	8.1	3.0	2.2	100.0(11,807)
여자	76.6	13.6	5.5	-	4.3	100.0(1,621)
가구주 연령						
15~29세	64.0	24.3	4.5	4.0	3.2	100.0(1,445)
30~39세	43.1	43.5	8.4	3.1	1.9	100.0(3,556)
40~49세	43.1	42.5	9.5	2.2	2.8	100.0(3,557)
50~59세	59.4	26.4	8.8	2.5	2.8	100.0(2,333)
60세 이상	75.2	15.3	5.6	2.0	1.9	100.0(2,537)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80.5	11.1	4.6	1.6	2.2	100.0(2,708)
중학교	62.6	22.7	8.4	3.5	2.8	100.0(1,794)
고등학교	52.2	32.6	9.4	3.2	2.6	100.0(4,874)
대학 이상	35.5	52.3	7.8	2.3	2.1	100.0(4,040)

동부지역 자가소유율을 제외하면 읍·면부지역의 자가소유율과 전국의 전세율은 모두 낮아진 반면, 전·월세 및 월세, 기타형은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住宅供給事情은 보다 惡化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부분 IMF 경제위기의 영향, 특히 건설업의 불황 및 平均家計所得의 減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自家所有率은 읍·면부지역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그

리고 남성가구주 가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都·農間 주택공급여건의 차이, 그리고 주택소유형태가 무엇보다 가계 소득수준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表 9-2〉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現 居住住宅의 所有形態

(單位: %)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기타	계(가구수)
전체	51.3	29.4	10.0	5.5	3.8	100.0(13,429)
지역						
동부	48.4	32.1	10.7	5.7	3.1	100.0(11,807)
읍·면부	72.5	9.2	5.4	4.1	8.8	100.0(1,62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46.8	23.3	13.1	10.2	6.6	100.0(4,051)
100~199만원	46.9	33.7	11.3	5.2	2.9	100.0(4,678)
200~299만원	57.5	31.3	7.0	1.7	2.5	100.0(2,441)
300만원 이상	62.5	30.0	4.1	1.5	2.0	100.0(1,653)
가구주 성						
남자	54.2	29.5	8.7	4.5	3.1	100.0(11,111)
여자	37.5	28.9	16.2	10.2	7.2	100.0(2,317)
가구주 연령						
15~29세	9.5	50.0	22.3	12.9	5.4	100.0(1,445)
30~39세	35.4	44.5	11.4	5.4	3.3	100.0(3,555)
40~49세	58.2	25.1	9.4	4.8	2.5	100.0(3,555)
50~59세	70.8	16.6	6.2	4.0	2.4	100.0(2,332)
60세 이상	69.8	14.0	5.7	3.8	6.7	100.0(2,537)

우리 나라에서 1인당 주거공간은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대표적 指標라 할 수 있다. 지역별 각 가구의 주거공간 규모를 살펴보면 본 조사 대상가구의 70.4%가 10~29평 규모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평 이하 및 30~49평 규모는 동부지역에, 50평 이상의 보다 큰 규모는 읍·면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都·農間 인구밀도 및 주택부지 공급여건의 차이를 직접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⁸⁰⁾

〈表 9-3〉 地域別 住宅의 延建坪 分布 및 家口員 1人當 平均坪數
(單位: %, 坪)

주택 연건평	전국	동부	읍·면부	가구원 1인당 평균坪수
9坪 이하	13.6	14.2	9.3	4.1
10~19坪 이하	40.0	40.6	35.7	6.1
20~29坪 이하	30.4	29.8	34.7	8.1
30~49坪 이하	13.1	13.4	11.1	10.9
50~69坪 이하	1.0	0.8	2.4	20.3
70坪 이상	1.8	1.1	6.9	60.6
계 (가구수)	100.0 (13,302)	100.0 (11,704)	100.0 (1,598)	8.2 (13,302)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인당 住宅建坪은 평균 8.2坪으로 1995년의 5.2坪(통계청, 1996)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⁸¹⁾ 또한 가구원 1인당 평균 건평은 9坪 이하 주택에서는 4.1坪, 10~19坪 이하 6.1坪, 20~29坪 이하 8.1坪, 30~49坪 이하 10.9坪 등으로 주택규모에 대한 각 가구의 平均 家口員數⁸²⁾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80) 이 외에도 최근 부유층 및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원주택 등 교외 및 농촌지역으로의 주거지 이동도 한 요인으로 판단됨. 실제 1995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69坪 이상 주택이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였으나, 본 조사결과는 그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최근의 변화추세를 보여줌.

8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인당 건평은 1980년~85년 11.9%, 1985년~90년 22.1%, 1990년~95년 24.6%의 증가율을 보였음. 본 조사결과 2000년 1인당 건평은 1995년에 비해 57.7% 증가한 것임. 1995년~2000년 1인당 건평의 정확한 증가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최근 국민 1인당 주거공간의 대폭 증가는 실질적 변화추세로 판단됨. 왜냐하면 우리 나라 가족의 평균 가구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사정 악화 및 건설업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아파트 등의 주거형태가 계속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한국경제신문, 1997. 2. 11; 경향신문, 1999. 5. 27; 중앙일보, 2000. 1. 24; 한국일보, 2000. 10. 31 등 참조).

2. 財産保有實態

조사대상가구의 재산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및 동산의 규모와 자가용 소유여부를 활용하였다.

가. 不動産 保有實態

건물, 토지, 임야 등 不動産 保有現況을 살펴보면, 보유 부동산이 전혀 없는 가구가 전체의 42.5%에 달하였다.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가진 가구는 35.5%, 1~2억 미만은 14.0%, 2억 이상은 7.9%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平均 不動産 保有額은 6560만원이었다(表 9-4 參照). 따라서 일부 중류층과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유부동산은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小型住宅을 소유하고 있거나 傳貰金에 의한 재산보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表 9-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세, 전·월세 등의 경우가 39.4%나 되는 것에서 類推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규모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부동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동부지역에서 45.1%인 반면 읍·면부지역에서는 23.6%에 그쳤는데, 이는 동부지역 자가소유율(48.4%)이 읍·면부지역(72.5%)보다 훨씬 낮은 것과 一脈相通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2억 이상의 부동산 보유가구 비율은 동부지역 8.0%, 읍·면부지역 7.9%로 유사하였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이 높고, 농촌지역에서는 생계를 위하여 경작하는 農地가 부동산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地域別 平均 不動産 保有額은 동부지역 6520만원, 읍·면부지역 6830만원으로 농촌지역이 農地

82)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 나라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3명(동부지역 3.4명, 읍·면부지역 3.1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에서 파악된 2000년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12명(동부지역 3.17명, 읍·면부지역 2.77명)으로 감소하였음.

保有에 기인하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平均 月所得에 따른 보유 부동산 규모를 살펴보면,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월소득에 比例하였으며, 부동산이 없는 비율은 월소득에 反比例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월소득 99만원 이하가 38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액은 상승하여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진 가구는 1396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없는 가구가 23.0%나 있는 것은 젊은 연령층의 專門職 從事者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表 9-4〉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保有不動産 規模分布
(單位: %, 백만원)

특성	보유 부동산 규모					계(가구수)	평균 부동산 보유액
	없음	1~99	100~ 199	200~ 299	300 이상		
전체	42.5	35.5	14.0	4.3	3.6	100.0(12,508)	65.6
지역							
동부	45.1	32.5	14.4	4.4	3.6	100.0(11,010)	65.2
읍·면부	23.6	57.4	11.1	4.2	3.7	100.0(1,498)	68.3
월 소득수준							
99만원이하	52.8	36.4	7.4	1.7	1.7	100.0(3,673)	38.7
100~199만원	46.8	35.8	12.3	3.2	2.0	100.0(4,508)	50.7
200~299만원	32.5	38.7	20.1	4.6	4.2	100.0(2,326)	81.8
300만원 이상	23.0	29.1	25.1	12.3	10.5	100.0(1,638)	139.6
가구규모							
2인 이하	56.5	30.4	7.9	2.6	2.6	100.0(4,279)	43.7
3~4인	37.5	38.8	15.2	4.8	3.7	100.0(6,696)	71.4
5인 이상	25.3	35.4	25.9	7.4	5.9	100.0(1,532)	101.2
가구주 성							
남자	38.7	36.7	15.7	4.9	4.0	100.0(10,373)	72.7
여자	61.0	30.0	6.1	1.5	1.3	100.0(2,136)	31.0

가구원 수가 2인 이하일 때 보유 부동산 규모가 적게 나타나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인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4370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7140만원, 5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억 12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보유부동산 규모의 차이는 家族週期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2인 이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대부분 未婚獨身 또는 家族形成 初期의 젊은 부부가구이거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老人夫婦家口 또는 老人獨身家口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不動產 保有規模는 남성가구주 가구(7270만원)보다 여성가구주 가구(3100만원)에서 훨씬 낮았다. 그리고 보유부동산이 없는 가구도 남자가구주 가구는 38.7%이었는데 반하여 여자가구주 가구는 61.0%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偏母家族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나. 動產 保有實態

저축, 증권, 채권, 적금, 가치가 높은 물건 등 조사대상 가구의 보유 동산 규모⁸³⁾를 살펴보면, 보유 동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에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90만원 이하 15.8%, 1000~1999만원 13.5%, 그리고 2000~2999만원 12.2%의 순이었다. 결국 조사대상 가구의 平均 動產保有額은 1774만원이었는데, <表 9-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이 없는 가구가 42.5%인 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83) 조사대상가구는 실제 소득 및 재산규모를 정확히 밝히길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유층 및 일부 중산층의 응답내용은 보통 실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대상의 많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 외에는 저축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짐작된다.

保有 動産의 規模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부지역 가구의 평균 동산보유액은 1,900만원이었으나 읍·면부지역 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87만원이었다. 그리고 평균 동산보유액은 月所得에 比例하였는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동산보유액은 3747만원이나 되었다. 그리고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2129만원)와 남자가구주 가구(1932만원)가 가장 많은 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表 9-5〉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保有動産 規模分布

(單位: %, 십만원)

특성	보유 동산 규모					계(가구수)	평균 동산 보유액
	없음	1~99	100~199	200~299	300 이상		
전체	34.7	15.8	13.5	12.2	23.8	100.0(12,320)	177.4
지역							
동부	32.2	15.4	13.9	12.9	25.6	100.0(10,793)	190.0
읍·면부	52.7	18.8	10.7	7.3	10.5	100.0(1,527)	88.7
월 소득수준							
99만원이하	47.0	22.3	13.3	8.7	8.7	100.0(3,806)	84.8
100~199	31.4	16.1	15.9	14.9	21.7	100.0(4,452)	162.0
200~299	28.4	10.6	12.5	14.4	34.0	100.0(2,257)	233.4
300만원 이상	21.4	7.2	8.6	10.1	52.7	100.0(1,506)	374.7
가구규모							
2인이하	39.0	21.7	14.9	10.8	13.7	100.0(4,349)	120.7
3~4인	31.3	13.0	12.9	13.2	29.6	100.0(6,510)	212.9
5인 이상	37.1	11.1	12.0	12.1	27.6	100.0(1,457)	188.2
가구주 성							
남자	33.4	14.7	12.9	12.6	26.5	100.0(10,137)	193.2
여자	41.1	21.2	16.3	10.4	11.0	100.0(2,181)	104.1

본 조사대상의 가구가 보유한 平均 不動産 및 動産의 金額은 8334만원이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8420만원, 읍·면부지역은 7717만원, 남자가구주 가구는 9202만원, 여자가구주는 4141만원의 부동산 및 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보다는 家口主 性別에 따른 경제상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에 대한 특별한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自家用 保有實態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나라 가구의 自家用 차량보유는 크게 증가하여 1999년 현재 등록 자동차수는 1116만대이며 이중 승용차는 784만대로 인구 6명당 1대 수준에 있다(건설교통부, 2000; 통계청, 2000). 따라서 '1가구 1자가용 시대'가 도래되어 自家用 所有가 普遍化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조사대상 가구의 53.6%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자가용'이라는 인식은 아직은 좀 이른 듯하다.

자가용 보유율은 居住地, 家口所得, 家口主의 性 및 年齡에 따라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먼저 동부지역에서는 55.0%, 읍·면부지역에서는 43.2%의 자가용 보유율을 보여 11.8%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所得水準에 따라서는 보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의 가정에서는 21.1%, 100만원대의 가구에서는 56.2%, 200만원 대의 가구에서는 78.0%, 그리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86.9%의 자가용 보유율을 나타냈다(表 9-6 參照). 그런데 자가용 운영비를 감안할 경우 저소득층의 가구에서는 自家用을 승용차로 운영하기보다는 生業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表 9-6〉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自家用 所有 與否

(單位: %)

특성	소유	비소유	계(가구수)
전체	53.6	46.4	100.0(13,421)
지역			
동부	55.0	45.0	100.0(11,801)
읍·면부	43.2	56.8	100.0(1,620)
월 소득수준			
99만원이하	21.1	78.9	100.0(4,050)
100~199	56.2	43.8	100.0(4,677)
200~299	78.0	22.0	100.0(2,438)
300만원이상	86.9	13.1	100.0(1,654)
가구주 성			
남자	61.6	38.4	100.0(11,104)
여자	15.2	84.8	100.0(2,316)
가구주 연령			
15~29세	38.3	61.7	100.0(1,445)
30~39세	68.2	31.8	100.0(3,556)
40~49세	68.4	31.6	100.0(3,552)
50~59세	52.9	47.1	100.0(2,330)
60세 이상	21.6	78.4	100.0(2,537)

가구주의 性 및 年齡에 따라서도 자가용 보유율은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가구주의 성에 의한 동 율의 차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현저하였다. 남성가구주의 자가용보유율은 61.6%, 여성가구주의 동 율은 15.2%로 무려 4배나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 가구주의 자가용 보유율은 각각 68.2%, 68.4%로 높았고, 다음은 50대의 52.9%, 20대 이하의 가구주 38.3%이었으며, 60대 이상의 가구주는 21.6%의 가장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 自家用 選好度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20대 가구주의 경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⁸⁴⁾ 30~40대 가구주의

84) 물론 실질적으로 자가용 소유가 매우 어려운 15~19세 연령대 가구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사대상가구 중 가구주가 15~29세인 경우는 1,447가구

보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자가용 보유를 결정짓는 것은 安定的인 經濟力이 절대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自家用保有率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車種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가용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율은 동부지역 83.7%, 읍·면부지역 65.1%이었으며, 자가용 승합차 및 트럭의 보유율은 동부지역이 각각 8.9%, 5.1%, 읍·면부지역은 각각 12.1%, 17.8%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용차 자가용과 승합차 또는 트럭, 승합차와 트럭 등 두 가지 종류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2.6%가 있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승용차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生計維持를 위하여 자가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승용차 자가용과 승합차 또는 트럭, 승합차와 트럭 등 두 가지 종류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5.0%, 동부지역이 2.3%로 農村地域에서 자가승용차와 生計目的의 自家用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表 9-7〉 地域別 所有 自家用의 種類

(單位: %)					
지역	승용차	승합차	트럭	2종 이상 ¹⁾	계 (가구수)
전국	81.9	9.2	6.3	2.6	100.0(7,163)
동부	83.7	8.9	5.1	2.3	100.0(6,466)
읍·면부	65.1	12.1	17.8	5.0	100.0(697)

註: 1) 자가용 종류에서 2종 이상은 (1) 승용차+승합차, (2) 승용차+트럭, (3) 승합차+트럭 등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한 것이며, 세 경우의 분포비는 전국이 4.6 : 4.4 : 1.0, 동부지역 5.2 : 4.0 : 0.7, 읍·면부지역 1 : 3 : 1이었음.

였으며, 이 중 15~19세 가구주 가구는 5.18%인 75가구에 불과하므로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3. 家口의 所得 및 消費 實態

가족의 실질적 경제생활 상태는 무엇보다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가구의 전반적인 月 所得 및 消費分布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51.8%가 월 149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1996년 기준으로 소득 10분위 중 7분위까지에 해당하는 가구비율(49.6%)을 초과하는 것으로서(통계청, 2000),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貧富隔差의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⁸⁵⁾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동부지역 28.8%, 읍·면부지역 51.7%이었다. 특히 읍·면부지역의 가구는 월 49만원 이하인 경우가 30.4%로 나타났는데, 동 지역의 평균가구원수가 2.77명⁸⁶⁾임을 고려할 때 最低生計費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所得水準⁸⁷⁾으로 都·農間 소득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消費規模는 월 14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가 전국 69.4%, 동부지역 67.5%, 읍·면부지역 82.6%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구는 소득에 기준하여 소비 및 저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규모는 소득규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가구의 지출은 소득보다 낮은 경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所得激減과 실직으로 인하여 가구의 實質所得이

85) 경제위기 이후 '貧益貧 富益富'의 심화는 '中産層의 崩壞' 및 '貧困層의 急增'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통계청(1996)에 의하면 1996년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전국 12.8%, 시부 10.9%, 군부 21.6%로서,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시부 167.0%, 군부 137.5%의 증가를 보였음. 더군다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빈곤층의 증가율은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됨.

86) 본 조사 결과임.

87) 1999년 계측된 중소도시 2인가족의 1인당 월 최저생계비 26만 8,307원을 기준으로 추산된 2000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 6,614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73만 8,076원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건복지부, 1999).

減少됨으로써 이에 대한 가계의 일차적 대응전략인 지출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表 9-8〉 所得·消費 規模別 家口分布

(單位: %, 만원)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월소득			
49만원 이하	14.1	11.8	30.4
50~99만원 이하	17.5	17.0	21.3
100~149만원 이하	20.2	20.3	19.1
150~199만원 이하	16.3	16.9	12.4
200~249만원 이하	13.5	14.3	7.9
250~299만원 이하	5.5	5.9	3.0
300만원 이상	12.9	13.9	5.9
계 (가구수)	100.0 (12,821)	100.0 (11,237)	100.0 (1,584)
평균 월소득(만원)	158.0	164.5	111.8
월 소비지출			
49만원 이하	14.4	12.2	30.7
50~99만원 이하	28.6	28.4	29.8
100~149만원 이하	26.4	26.9	22.1
150~199만원 이하	15.0	15.7	10.1
200~249만원 이하	9.3	10.0	4.7
250~300만원 이하	2.3	2.5	1.0
300만원 이상	4.0	4.3	1.6
계 (가구수)	100.0 (13,096)	100.0 (11,503)	100.0 (1,593)
평균 월 소비지출(만원)	114.3	118.4	84.5

家計經濟의 危機對應戰略 效果는 우리 나라 경제상황이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수지는 꾸준히 赤字를 기록⁸⁸⁾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88)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흑자율은 1996년 28.3%, 1997년 29.6%, 1998년 31.5%, 1999년엔 25.1%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00).

월소비지출 49만원 이하 금액대의 경우 소득 및 소비와 가구구성비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가구가 저축은 물론 더 이상의 지출감소도 취할 수 없는 極貧層이 대부분임을 짐작케 한다.

〈表 9-9〉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家計 所得水準 分布

(單位: %)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가구수)
전체	31.6	36.5	19.0	12.9	100.0(12,821)
지역					
동부	28.8	37.2	20.2	13.9	100.0(11,238)
읍·면부	51.8	31.5	10.9	5.9	100.0(1,584)
가구규모					
2인 이하	60.6	27.2	8.1	4.1	100.0(4,421)
3~4인	17.2	42.8	23.8	16.1	100.0(6,828)
5인 이상	12.4	34.9	29.0	23.7	100.0(1,575)
세대결합형태					
1세대	60.3	27.0	8.4	4.3	100.0(3,867)
2세대	18.8	41.7	23.4	16.1	100.0(7,654)
3세대이상	21.0	34.2	24.7	20.1	100.0(1,182)
가구주 성					
남자	24.1	39.3	21.7	14.8	100.0(10,620)
여자	67.6	22.9	6.0	3.6	100.0(2,201)

家口特性別로 소득은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보다는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았다. 이는 都·農間 所得消費水準의 隔差가 크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소득원이 많으며,⁸⁹⁾ 남성가구주가구의 平均 家口員數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⁹⁰⁾.

89) 또한 세대구성에서 유추되는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의 연령별, 직급별 차이 등이 월평균 소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90) 본 조사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39명,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

家口特性에 따른 消費水準은 소득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보다는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基礎的 衣·食·住 費用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소득 및 소비의 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어려운 경제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表 9-10〉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家計 消費支出水準 分布

(單位: %)

특성	99만원 이하	100~ 199만원	200~ 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가구수)
전체 지역	43.0	41.3	11.7	4.0	100.0(13,096)
동부	40.6	42.6	12.5	4.3	100.0(11,504)
읍·면부	60.5	32.2	5.7	1.6	100.0(1,593)
가구규모					
2인 이하	74.6	21.2	3.3	0.9	100.0(4,497)
3~4인	29.0	51.5	14.6	4.9	100.0(6,977)
5인 이상	15.5	53.8	22.3	8.4	100.0(1,623)
세대결합형태					
1세대	74.5	21.1	3.4	1.0	100.0(3,924)
2세대	29.6	50.7	14.7	5.0	100.0(7,843)
3세대 이상	26.6	47.2	19.3	6.9	100.0(1,209)
가구주 성					
남자	35.8	46.1	13.5	4.6	100.0(10,840)
여자	77.4	18.5	3.3	0.8	100.0(2,257)

평균가구원수는 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정의 대부분이 편모가족이며, 또 여성노인단독가구가 남성노인단독가구보다 많은데 반해 노부모 및 자녀와 동거하는 등 보다 가구규모가 큰 경우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더 많기 때문이다.

第2節 婦人 및 男便의 就業實態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관인 성 역할분리의 개념은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사라지고 있다. 즉,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職場—男性, 家庭—女性」으로 구분되던 것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는 가족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 및 권력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꾸준히 증대되어 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이에 本節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男便과 婦人의 就業實態 變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既婚婦人의 就業實態 變化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양상은 결혼 및 출산 전·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여성의 年齡別 經濟活動參與率은 15세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여 결혼적령기인 25~29세 연령층을 전후로 가장 높아졌다가 결혼과 함께 낮아지며,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지난 30세 이후부터는 다시 높아지는 「M—字型」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인들의 종사상 지위, 산업 및 직업 등 女性의 就業構造가 變化한다는 특성이 있다(김승권 외, 2000).

조사대상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5.5%⁹¹⁾이었으며,

91) 이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여부를 구별하지 않은 결과임. 즉, 통계청에서 발

이는 부인의 결혼전 취업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은 현재 46.0%가 취업을 하고 있고, 결혼전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은 44.3%가 취업을 하고 있어 1.7%포인트의 차이만을 보였다(表 9-11 參照).

〈表 9-11〉 15~64세 既婚婦人の 結婚前·後 就業實態

(單位: %)

결혼전 취업여부	현 취업여부		계(수)
	취업	미취업	
전 체	45.5	54.5	100.0(10,694)
취업경험 있음	46.0	54.0	100.0(7,607)
취업경험 없음	44.3	55.7	100.0(3,087)

연령, 교육수준 등 個人特性別로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특징이 보다 잘 드러난다. 본 연구결과 전체 부인의 결혼전·후의 취업률 차이는 25.6%포인트(결혼전 71.1%, 현재 45.5%)로 현저하였으며, 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동부지역 기혼부인의 결혼전·후 취업률 차이는 29.0%포인트나 된 반면, 읍·면부지역 부인은 2.1%포인트에 불과하였다. 이는 農村地域 女性이 결혼 후에도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都市地域 女性은 결

표되는 여성의 취업률은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여성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따라서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기혼여성 중 취업중인 여성의 비율을 산출한 본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음. 참고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4)자료에 의하면, 1999년 현재 만 15세 이상 전체 기혼여성 중 취업중인 여성의 비율은 46.2%이었음. 1999년에 비해 2000년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증가(각각 0.9%포인트, 1.8%포인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 12)한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청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임. 이는 조사대상 부인의 연령제한(15세 이상 64세 이하)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혼 및 자녀양육을 위하여 自發的 또는 非自發的으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결혼 전 취업률은 24세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현 취업률은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졌다. 따라서 結婚과 子女出產 및 養育이 미혼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 결혼 후 취업률은 초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은 증가한 반면, 중학교 이상 학력의 부인은 감소하였다. 특히 혼전·현 취업률 격차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중졸: 7.7%포인트, 고졸: 41.8%포인트, 대졸 이상: 46.0%포인트)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교 이하 학력 부인일 경우 고연령층, 저소득층, 농촌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결혼 전·후에 경제활동상태가 큰 변화가 없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오히려 그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후 經濟活動脫落 比率은 더욱 높았는데, 남성보다 열악한 여성의 職業地位 및 賃金水準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학력수준에 반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0).⁹²⁾

결혼상태별 현재 취업률은 유배우부인(44.0%)보다 사별부인(55.1%)과 이혼·별거부인(66.3%)이 높게 나타나 이들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가구의 主 扶養者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혼·별거부인의 미취업률은 33.7%나 되었는데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가족원이 없을 경우 매우 심각한

92) 1980년대까지 우리 나라 여성의 학력과 취업참가 확률은 확실한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경향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편임(한국여성개발원, 1999).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表 9-12〉 15~64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結婚前 및 現 就業與否
(單位: %)

특성	취업률		계(수)
	결혼전	현재	
전체	71.1	45.5	100.0(10,694)
지역			
동부	71.8	42.8	100.0(9,527)
읍·면부	65.9	68.0	100.0(1,166)
연령			
15~24세	87.4	27.0	100.0(215)
25~29세	92.6	30.6	100.0(1,233)
30~34세	90.0	38.0	100.0(1,620)
35~39세	81.6	48.6	100.0(1,866)
40~44세	70.8	55.9	100.0(1,742)
45~49세	60.8	53.1	100.0(1,286)
50세 이상	46.9	45.9	100.0(2,734)
교육수준			
초교 이하	50.0	57.4	100.0(2,450)
중학교	61.0	53.3	100.0(1,801)
고등학교	80.1	38.3	100.0(4,361)
대학 이상	86.0	40.0	100.0(2,077)
혼전 최장거주지			
대도시	79.7	40.2	100.0(4,336)
중·소도시	74.0	43.7	100.0(2,747)
읍·면사무소 소재지	59.4	48.7	100.0(1,836)
기타 농·어촌	57.8	58.3	100.0(1,768)
현 결혼상태			
유배우	73.1	44.0	100.0(9,580)
사별	50.6	55.1	100.0(761)
이혼·별거	62.0	66.3	100.0(353)

현재 취업중인 15~49세⁹³⁾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서비스·판매직이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7.9%), 기능직(10.1%),

준전문직(9.1%) 순이었다(表 9-13 參照). 이는 1997년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서비스·판매직은 0.6%포인트, 단순노무직은 4.9%포인트, 준전문직은 1.2%포인트 증가하고, 기능직은 2.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⁹⁴⁾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이 賃金水準, 雇傭地位 등이 낮은 직업임을 감안할 때, 이는 1997년 이후 기혼부인의 職業地位가 전반적으로 低下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9-13〉 15~49歲 就業婦人の 年齡別 職業 分布

(單位: %)

직업	15~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전체
고위공무원, 관리직	-	-	-	0.8	0.4	1.2	0.5
전문직	3.5	10.6	7.3	7.0	4.9	2.6	6.0
준전문직	12.3	16.5	17.1	10.0	5.3	1.9	9.1
사무직	26.3	27.9	12.8	6.8	3.6	2.5	8.7
서비스·판매직	29.8	34.8	37.7	40.0	43.1	36.7	39.2
농·어·축산업	3.5	1.1	3.1	5.8	9.0	16.2	7.6
기능직	15.8	4.3	8.0	10.8	12.8	10.1	10.1
기계장치조작원	-	0.8	0.5	0.7	1.2	1.3	0.9
단순노무직	8.8	4.0	13.5	18.1	19.7	27.5	1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7)	(376)	(615)	(906)	(977)	(681)	(3,612)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의 여건뿐만 아니라

- 93)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15~49세 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94)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 취업중인 15~49세 기혼부인의 직업분포는 고위공무원·관리직이 0.2%, 전문직 6.2%, 준전문직 7.9%, 사무직 7.1%, 서비스·판매직 38.6%, 농·어·축산업 11.7%, 기능직 12.4%, 기계장치조작원 0.6%, 단순노무직 13.0%, 기타 2.3% 등이었음. 참고로 조사시점인 2000년 2/4분기 여성의 직업분포에 대한 통계청 조사결과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12.6%, 사무직 13.7%, 서비스·판매직 34.7%, 농어업 및 숙련근로자 12.7%,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직이 26.3% 등(경제활동인구월보, 2000. 12) 이었는데, 이는 결혼상태 및 연령 등 조사대상의 특성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勞動供給側面, 연령 및 학력, 가계소득, 자녀연령, 혼인상태,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및 성역할 태도 등의 個人的 및 家族關聯 變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부인의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低所得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高所得層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自我成就를 위한 欲求가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률은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이거나 5인 이상인 가구, 1세대 또는 3세대인 가구, 그리고 현존 자녀수가 2명이거나 3명 이상인 가구에서 높았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유무와 자녀를 대신 돌보아 줄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表 9-14 參照).

또한 남편의 특성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았으며, 이는 家計所得水準의 影響과 家族週期上的 必要性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편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산소득 등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부유층 가구와 최근의 경기악화와 함께 학력, 건강, 연령 등의 이유로 남편, 아내 모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極貧層 家口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중인 남편의 從事上 地位別로 보면 常傭雇일 경우 부인 취업률이 가장 낮고 自營業者일 때 가장 높았는데 이는 남편이 자영업 또는 고용주일 경우 아내는 보통 無給家族從事者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⁹⁵⁾ 반면, 남편이 임시·일용고일 경우는 대체로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 필요에 의해 부인의

95) 종사상지위별 취업 분포는 성별간 차이가 큰데 특히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음. 2000년 2/4분기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및 임시·일용고의 각 구성비율이 19.5%, 20.3%, 17.9%, 42.3%인 반면, 남성은 각각 34.6%, 1.9%, 37.4%, 26.1%임(경제활동인구월보, 2000. 12). 따라서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더욱 높을 것임.

취업률도 높았다. 남편의 월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취업률은 뚜렷이 낮아졌다.

〈表 9-14〉 家口 및 男便 特性別 15~64歲 既婚婦人의 就業率 (單位: %)

가구특성	취업률	남편특성 ²⁾	취업률
전체	45.5	전체	44.0
가구 월소득		연령	
99만원 이하	49.7	15~29세	31.8
100~199만원	39.5	30~34세	32.3
200~299만원	45.4	35~39세	39.8
300만원 이상	55.6	40~44세	48.6
		45~49세	51.9
		50세 이상 ³⁾	54.7
가구 규모		교육수준	
2인 이하	55.0	초등 이하	65.2
3~4인	42.0	중학교	55.6
5인 이상	47.9	고등학교	40.6
		대학 이상	35.3
세대결합형태		취업여부	
1세대	54.2	취업	44.8
2세대	42.6	미취업	38.2
3세대 이상	50.6		
현존 자녀수		종사상 지위	
1명 이하 ¹⁾	37.9	고용주	39.6
2명	44.4	상용고	35.5
3명 이상	51.2	임시·일용고	40.9
		자영업자	61.7
영유아자녀유무		월 근로소득	
영아 있음	21.8	99만원 이하	59.8
유아 있음	41.2	100~199만원	42.9
영유아 없음	51.5	200~299만원	37.9
		300만원 이상	34.3

註: 1) 출산자녀가 없는 경우는 12사례임.
 2) 15~64세 기혼부인 중 유배우 상태에 있는 부인(9,589명)만을 대상으로 함.
 3) 남편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7사례임.

2. 婦人の 就業 및 未就業 理由

출산력 저하 및 인구노령화 등에 따라 우리 나라의 勞動力 需給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기혼부인의 취업 및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家族福祉政策뿐만 아니라 향후 勞動力 確保를 위한 經濟政策 方案을 講究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결과 15~49세 기혼부인들의 就業 理由를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75.2%가 ‘생활비 보조를 위해서’라고 하여 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生活費 補助를 위한 취업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表 9-15 參照).

다음으로 제시된 조사대상부인의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直接的인 理由는 ‘사회적 성취·자기발전’이 13.6%,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한 취업은 7.4%, ‘시간이 많아 지루해서’, ‘노후대책 마련’ 1.5% 등이 있었다. ‘사회적 성취·자기발전’을 위한 취업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에게서 두드러졌다(附表 17 參照). 특히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의 40.9%가 이를 위하여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 학력의 부인 1.0%, 중학교 학력의 부인 1.5%,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 9.4%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한 취업은 40대 초반, 동부지역 거주부인, 그리고 고졸학력 부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생계비 외에도 子女教育費가 가계의 큰 支出項目이며,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表 9-15〉 15~49歲 既婚婦人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就業理由
(單位: %)

구분	생활비에 보탬	자녀 교육비 증당	노후 대책 마련	시간이 많아 지루해서	사회적 성취, 자기발전	기타	계(수)
전체	75.2	7.4	1.5	2.1	13.6	0.2	100.0(3,609)
지역							
동부	73.8	7.6	1.6	2.1	14.6	0.2	100.0(3,171)
읍·면부	84.5	5.5	1.1	1.6	6.6	0.7	100.0(438)
연령							
15~24세	67.2	-	3.4	8.6	20.7	-	100.0(58)
25~29세	65.8	3.7	0.8	5.0	24.4	0.3	100.0(377)
30~34세	68.4	6.4	2.1	1.1	21.7	0.3	100.0(614)
35~39세	74.9	7.7	1.0	2.3	13.8	0.2	100.0(904)
40~44세	77.7	9.9	1.5	1.0	9.5	0.4	100.0(972)
45~49세	83.8	7.2	1.8	1.8	5.4	-	100.0(681)
교육수준							
초졸 이하	93.6	4.7	0.2	0.4	1.0	-	100.0(488)
중학교	86.7	8.6	1.7	1.1	1.5	0.4	100.0(752)
고등학교	76.4	9.1	1.5	3.1	9.4	0.4	100.0(1,557)
대학 이상	50.7	4.5	2.0	1.9	40.9	-	100.0(806)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15~49세 기혼부인들의 未就業 理由를 살펴보면, 子女養育問題로 인한 미취업이 전체의 4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리가 없어서’(18.1%), ‘가사전념’(10.7%), ‘본인건강’(10.7%), 등이었다. 특히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미취업은 부인연령이 30대인 경우,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쫄아서 養育責任을 맡고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지대함을 시사하는 것이다.⁹⁶⁾ ‘본인건

96)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현상은 외국에서도 보고되며(Waite, 1980; Hill, 1990; 한국여성개발원, 1999 재인용),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早期教育 및 英才教育의 ‘熱風’은 養育者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專門性’ 요구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고학력 기혼여성의 經濟活動脫落率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 要因으로 판단됨.

강'으로 인한 미취업은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게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인은 동부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 최근의 景氣沈滯 및 産業構造 高度化에 따라 저학력 또는 고연령 여성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自發的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에 의한 미취업 부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하였다. 이는 고학력 부인은 남편의 소득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측면과 기혼여성의 就業障礙 要因에 의한 경제활동포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表 9-16〉 15~49歲 既婚婦人の 年齡 및 教育水準別 未就業理由
(單位: %)

특성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가사 전념	남편/시댁 식구 반대	본인 건강	기타	계(수)
전체 지역	5.9	18.1	49.0	10.7	3.0	10.7	2.6	100.0(4,334)
동부	6.0	18.3	48.9	10.7	3.0	10.5	2.6	100.0(4,065)
읍·면부	4.8	15.6	49.4	9.7	4.1	13.4	3.0	100.0(269))
연령								
15~24세	3.2	9.6	62.8	10.9	2.6	3.8	7.1	100.0(156)
25~29세	5.3	6.3	71.8	4.7	1.8	5.0	5.2	100.0(854)
30~34세	3.2	8.2	74.6	6.0	2.9	3.4	1.8	100.0(1,002)
35~39세	5.3	20.8	50.8	8.7	2.9	10.1	1.4	100.0(954)
40~44세	9.4	29.0	19.9	18.2	4.6	17.3	1.7	100.0(765)
45~49세	8.2	35.8	4.5	20.4	3.2	25.4	2.5	100.0(598)
교육수준								
초졸 이하	4.8	30.2	9.1	7.5	3.2	41.7	3.6	100.0(252)
중학교	3.9	26.8	24.6	15.9	4.7	22.8	1.4	100.0(492)
고등학교	5.9	17.9	52.6	10.5	2.8	8.2	2.1	100.0(2,408)
대학 이상	7.1	12.4	60.2	9.4	2.7	4.1	4.1	100.0(1,177)

第 3 節 子女의 養育實態

1. 嬰幼兒의 養育實態

가. 嬰幼兒 및 母의 特性

자녀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15~49세 기혼부인과 그들의 자녀이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모든 아동과 조사대상부인의 자녀로서 양육 등을 위하여 친척집 등 다른 가구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으나 조사대상부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 조사대상부인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⁹⁷⁾

따라서 본 분석을 위한 全體 嬰幼兒는 3,420명이었으며, 이 중 就業母의 자녀는 27.0%인 924명, 未就業母의 자녀는 73.0%인 2,496명이었다. 母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 자녀의 연령분포는 <表 9-17>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혼부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아동분포는 아동양육의 유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母의 취업여부와 자녀연령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서비스와 育兒休職制度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表 9-18>은 既婚婦人의 特性別 兒童分布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본 것이다.

97) 따라서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조카 등 친인척의 자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조사대상부인의 자녀이지만 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음. 다만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대상가구 내의 친인척의 자녀를 포함하였는데, 이 경우는 별도로 설명을 함.

〈表 9-17〉 15~49歲 既婚婦人の 就業與否別 嬰幼兒 年齡分布
(單位: %)

아동연령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0세	11.0	21.3	18.5
1세	10.0	17.4	15.4
2세	15.0	14.8	14.8
3세	19.9	14.7	16.1
4세	19.6	16.4	17.3
5세	24.5	15.5	17.9
0~2세	36.0	53.4	48.7
3~5세	64.0	46.6	51.3
계(수)	100.0(924)	100.0(2,496)	100.0(3,420)

영유아의 地域別 分布는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높았는데, 이는 인구분포가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家口形態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核家族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가족구성으로 보아 취업모의 자녀양육이 家族問題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영유아를 가진 就業母의 家口所得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0~199만원으로 19.6%를 차지하였으며, 200~249만원은 19.2%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未就業母의 家口所得은 100~149만원이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0~199만원으로 23.1%, 200~249만원 18.0%로 나타나 취업모의 가구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婦人の 年齡은 30~34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9세 이하이었다. 따라서 영유아를 가진 부인 중 34세 이하의 부인은 취업모의 76.5%, 미취업모의 82.4%로 매우 높았다. 이들의 教育水準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취업모 50.0%, 미취업모 60.6%, 대학 이상의 학력은 취업모 42.2%, 미취업모는 33.3%로 높게 나타났다.

〈表 9-18〉 15~49歲 既婚婦人의 特性別 兒童分布

(單位: %)

특성	취업모의 아동연령			미취업모의 아동연령		
	0~2세	3~5세	소계	0~2세	3~5세	소계
지역						
동부	89.8	88.8	89.2	92.4	93.2	92.8
읍·면부	10.2	11.2	10.8	7.6	6.8	7.2
가구형태						
부부+자녀	91.8	91.1	91.4	93.6	93.8	93.7
기타	8.2	8.9	8.6	6.4	6.2	6.3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7.5	7.5	7.5	12.7	11.7	12.2
100~149만원	9.1	13.1	11.6	33.7	25.8	30.0
150~199만원	18.1	20.4	19.6	23.1	23.1	23.1
200~249만원	21.3	18.1	19.2	16.9	19.3	18.0
250~299만원	13.4	11.0	11.9	5.3	8.3	6.7
300만원 이상	30.6	30.0	30.2	8.2	11.7	9.9
연령						
29세 이하	34.8	20.4	25.6	54.8	24.1	40.5
30~34세	49.2	51.9	50.9	34.0	50.9	41.9
35~39세	11.7	21.5	17.9	9.2	21.1	14.7
40세 이상	4.2	6.3	5.5	1.9	3.9	2.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	9.1	7.8	4.7	7.6	6.1
고등학교	40.1	55.6	50.0	61.7	59.3	60.6
대학교 이상	54.5	35.3	42.2	33.5	33.1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2)	(591)	(923)	(1,333)	(1,163)	(2,496)

前述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사대상부인의 자녀로서 양육 등의 이유로 다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보았다.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mother와 떨어져 사는 아동의 비율은 0.4%이었으며, 兒童年齡別로는 영아(0~2세)의 0.6%, 유아(3~5세)의 0.3%이었다. 또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mother와 떨어져 사는 아동의 비율은 0.2%이었으며, 아동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表 9-19 參照). 따라서 취업모의 아동이

미취업모의 아동보다 2배나 많이 떨어져 살고 있어 母의 就業에 基因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表 9-19〉 15~49歲 既婚婦人의 子女年齡別 同居與否

(單位: %)

동거여부	취업모			미취업모		
	0~2세	3~5세	계	0~2세	3~5세	계
동거	99.4	99.7	99.6	99.8	99.8	99.8
비동거	0.6	0.3	0.4	0.2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2)	(591)	(923)	(1,334)	(1,162)	(2,496)

나. 嬰幼兒의 養育實態

영유아는 다양한 형태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었는데, 가장 核心的인 영유아 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 영유아의 42.2%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9.1%,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8.6%,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는 경우’는 8.3%,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보내는 경우’는 8.1%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가족의 도움’, ‘사설학원 이용’ 등도 있었다. 특히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등 두 가지 이상의 施設保育을 하고 있는 경우도 2.3%나 되었다.

이와 같은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를 母의 就業與否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就業母의 嬰幼兒 子女養育形態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1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보육시설에만 의존’ 15.5%, ‘가족(외)의 도움’ 15.1%, ‘유치원에만 의존’ 10.5%,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의존’이 10.5%로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영유아 자녀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

당'하는 경우가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의존' 8.9%, '유치원에만 의존' 7.8%,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의존' 7.3%, '보육시설에만 의존' 6.3%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未就業母인 경우 가장 심하였고, 就業母인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주위에 자녀를 돌봐 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경우, 취업모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미취업모의 자녀는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영아(0~2세)의 경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취업모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더군다나 영아가 保育施設을 利用하는 비율은 유치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未就業母는 영아를 직접 돌보고 있었으며, 就業母는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는 있으나 시설에 內在된 많은 問題點으로 인하여 '가족(외)의 도움', '본인이 직접 돌봄', '본인이 직접 돌봄과 가족(외)의 도움' 등의 비율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地域別 擴充과 運營上의 內實化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表 9-20〉 15~49歲 既婚婦人의 嬰幼兒 養育形態

(單位: %)

양육형태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0세	1세	2세	3-5세	소계	0세	1세	2세	3-5세	소계	
양육형태의 구성 ¹⁾											
양육자 없음	0.0	1.6	0.5	0.4	0.4	0.2	1.0	1.1	0.7	0.7	0.6
어머니가 전적 담당	28.0	24.6	15.4	14.0	16.4	90.2	87.3	74.8	29.2	53.5	42.2
가족(외) ²⁾ 도움	43.3	39.6	26.1	5.7	15.1	1.3	2.8	0.5	0.2	0.8	5.1
시설에만 전적 의존											
• 유치원	0.0	0.0	3.6	14.7	10.5	0.0	0.0	0.7	13.6	7.8	8.6
• 보육시설	2.0	11.9	19.9	16.9	15.5	0.0	1.0	6.1	9.5	6.3	9.1
• 사설학원	0.0	1.6	0.5	6.3	4.5	0.5	0.0	1.4	6.1	3.7	3.9
어머니+가족(외) 도움	24.7	16.7	10.9	2.8	7.2	7.8	6.3	3.2	0.8	3.1	4.3
어머니+ 시설보육											
• 어머니+유치원	0.0	0.0	1.8	8.7	6.1	0.0	0.0	0.5	15.7	8.9	8.1
• 어머니+보육시설	1.3	2.4	12.2	12.5	10.5	0.0	1.4	9.0	10.6	7.3	8.3
• 어머니+사설학원	0.0	0.8	0.9	2.5	1.9	0.0	0.0	0.0	4.0	2.2	2.1
가족(외) 도움+시설보육											
• 가족(외) 도움+유치원	0.0	0.0	3.6	5.0	3.9	0.0	0.0	0.2	0.1	0.1	1.2
• 가족(외) 도움+보육시설	0.7	0.8	4.1	5.8	4.7	0.0	0.0	2.0	5.6	3.4	3.8
• 가족(외) 도움+사설학원	0.0	0.0	0.5	1.2	0.9	0.0	0.0	0.0	0.1	0.0	0.3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0.0	0.0	0.0	3.5	2.4	0.0	0.2	0.5	3.8	2.2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	(100)	(147)	(610)	(968)	(554)	(457)	(379)	(1,190)	(2,580)	(3,548)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³⁾											
보육시설	2.7	19.0	37.4	38.7	32.3	0.0	1.8	12.4	25.7	14.0	19.1
유치원	0.0	1.1	8.8	36.2	24.2	0.0	0.0	1.8	36.3	17.0	19.1
학원	0.0	3.0	1.4	25.4	16.5	0.0	0.2	2.9	27.7	13.3	14.2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양육방식 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양육방식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양육방식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조사대상가구에 살고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아동이多數의 養育者 및 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한 분석 결과는 <表 9-21>이 잘 보여준다.⁹⁸⁾ 즉, 아동양육자 및 利用施設 類型

98) 부인의 자녀로서 가구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을 보면, 현재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8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이 각각 19.1%, 19.0%로 유사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과외·학원의 이용률 15.0%, 가족의 보살핌 14.3%의 順이었으며, 아동혼자 있는 경우도 6.7%나 되었다.

5세 이하의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는 放任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과 安全한 兒童保護의 側面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며, 政策的 次元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表 9-21〉 0~5歲 兒童의 子女養育者 및 利用施設의 類型¹⁾

(單位: %)

구분	본인	가족	파출부 .이웃	혼자	보육 시설	유치원	과외 .학원	기타 ²⁾	(수)
전체	84.9	14.3	1.0	6.7	19.1	19.0	15.0	0.4	(3,536)

註: 1) 중복응답이며,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아동지도원, 장애인복지시설, 비즈교육(놀이) 등이 포함됨

특히 嬰兒保育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립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嬰兒의 각 세별 現 子女養育者 및 利用施設 類型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가구에 있는 아동의 主 養育者는 기혼부인 본인으로 주로 자신에 의해 아동이 양육되고 있었으며(89.4%),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거나(17.7%),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7.7%에 불과하였다. 0세의 경우 保育施設 이용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파출부나 이웃에 맡기는 경우(1.2%)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9-22 參照).

〈表 9-22〉 嬰兒 年齡別 現 子女養育者 및 利用施設 類型¹⁾

(單位: %)

아동연령	본인	가족	파출부· 이웃	혼자	보육 시설	유치원	과외· 학원	기타 ²⁾	(수)
0세	92.6	18.5	1.2	0.2	0.5	0.0	0.5	0.0	(665)
1세	89.4	17.8	2.0	2.3	5.0	0.0	0.9	0.5	(555)
2세	85.5	16.6	1.1	4.4	19.9	3.6	3.8	0.4	(523)
전체	89.4	17.7	1.4	2.1	7.7	1.1	1.6	0.3	(1,743)

註: 1) 중복응답이며,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아동지도원, 장애인복지시설, 비즈교육(놀이) 등이 포함됨.

현재 0~5세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保育施設의 運營主體를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이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법인보육시설 27.1%, 국·공립보육시설 25.6% 등의 순이었다.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은 취업모 자녀는 46.7%, 미취업모 자녀는 45.1%로 모두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시설로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을, 未就業母 자녀는 법인보육시설이었다(表 9-23 參照).

〈表 9-23〉 15~49歲 既婚婦人의 嬰幼兒가 利用하는 保育施設의 運營主體

(單位: %)

구분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국·공립	29.8	21.9	25.6
법인	22.7	31.0	27.1
민간	46.7	45.1	45.8
직장	0.8	0.8	0.8
장애인	-	0.4	0.2
기타	-	0.9	0.5
계(수)	100.0(656)	100.0(303)	100.0(959)

그런데 2000년 6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은

80.3%를 차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6.7%에 불과하며, 법인보육시설은 10.3%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財政的 支援이 타 유형의 보육시설보다 월등히 많아 보육서비스가 質的인 側面에서 良好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保育施設의 運營時間은 대부분 평일 주간이었으나, 평일 야간시간의 이용률도 다소 있어 이에 대한 需要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일야간이용률은 취업모의 5.5%, 미취업모의 1.3%로 평균 3.3%의 이용률을 보였다(表 9-24 參照).

〈表 9-24〉 15~49歲 既婚婦人 嬰幼兒의 保育施設 運營時間別 利用率¹⁾
(單位: %)

구분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평일주간	97.0	(271)	99.3	(304)	98.4	(575)
평일야간	5.5	(271)	1.3	(305)	3.3	(576)

註: 1) 평일의 주간과 야간을 모두 이용하는 영유아는 중복응답됨.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⁹⁹⁾ 이용률이 동 수준에 있다는 것은 潛在的 需要가 많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간제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이 널리 분포되어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夜間保育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주간에 보육시

99) 전국적으로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은 매우 적음. 즉, 전체 1만 9천여 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제 보육은 230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야간보육은 114개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은 97개 보육시설, 휴일보육은 19개 시설에서만 실시되었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終日制(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이후 夜間保育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3.0%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보육은 동부 지역에서는 3.2%이나 읍·면부 지역은 1.4%로 지역간 야간보육서비스 제공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夜間保育을 利用하고 있는 경우는 0~2세 아동 2.4%, 3~5세 아동 3.4%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表 9-25 參照).

〈表 9-25〉 兒童特性別 놀이방·어린이집의 晝·夜間 時間 利用率
(單位: %)

아동특성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지역		
동부	98.5	3.2
읍·면부	97.2	1.4
아동연령		
0~2세	99.2	2.4
3~5세	98.3	3.4
전체 (아동수)	98.3 (600)	3.0 (600)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은 월평균 27만 5천원이었으며,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0~1세 자녀는 44만 6천원, 2세의 자녀는 28만 1천원, 그리고 3~5세의 유아를 위한 비용은 17만 9천원이 소요되고 있었다(表 9-26 參照).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자녀양육비가 근소하나마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子女教育이 專門化됨에 따라 전업주부일지라도 유치원,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表 9-26〉 15~49歲 既婚婦人 嬰幼兒의 年齡別 月平均 養育費¹⁾
(單位: 千圓)

연령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보육료	(수)	보육료	(수)	보육료	(수)
2세 미만	432	(192)	449	(965)	446	(1,157)
2세	274	(139)	284	(369)	281	(508)
3~5세	171	(590)	184	(1,161)	179	(1,751)
전체	241	(921)	287	(2,495)	275	(3,416)

註: 1)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양육을 위한 의·식·주 비용은 제외하였음.

다. 保育施設 利用않는 理由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장 큰 理由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 50.5%로 가장 높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음 理由로는 教育에 대한 期待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다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비율이 30.7%로 나타나 保育施設에 대한 認識態度가 否定的인 側面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2세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거나’(6.8%), ‘保育料 負擔’(6.3%) 등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理由로 나타났다(表 9-27 參照).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은 동부지역의 아동의 31.5%, 읍·면부지역이 22.0%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質的 向上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보육시간이 맞지 않음’과 ‘가까운 곳에 돌봐 줄 곳이 없음’은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保育施設의 不均衡의 配置와 運營時間에 대한 不滿을 엿볼 수 있다.

〈表 9-27〉 應答婦人の 特性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¹⁾

(單位: %)

특 성	본인, 가까운 사람이 안심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없음	2세 미만 이라 거절함	보육 시간이 맞지 않음	보육료 가 부담됨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음	기타 ²⁾	계(수)
전체	50.5	3.2	6.8	0.5	6.3	30.7	0.5	1.4	100.0(2,934)
지역									
동부	50.3	3.0	6.7	0.5	6.3	31.5	0.5	1.2	100.0(2,701)
읍·면부	53.4	5.6	7.3	1.3	6.9	22.0	0.4	3.0	100.0(232)
아동연령									
0~2세	79.2	1.2	11.8	0.1	4.3	2.8	0.1	0.6	100.0(1,614)
3~5세	15.4	5.8	-	1.1	8.7	64.9	1.0	2.3	100.0(1,321)
취업여부									
취업	38.5	6.3	5.0	1.6	4.4	41.5	0.7	2.0	100.0(685)
미취업	54.2	2.3	7.4	0.2	6.9	27.4	0.4	1.2	100.0(2,248)
직업									
무직(전업주부)	54.2	2.3	7.4	0.2	6.9	27.4	0.4	1.2	100.0(2,248)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 ³⁾	-	-	-	-	-	-	100.0	-	100.0(*)
전문직	56.0	1.1	8.8	-	1.1	31.9	-	1.1	100.0(91)
준전문직	45.7	3.9	7.9	0.8	-	40.9	-	0.8	100.0(127)
사무직	43.9	10.2	5.1	-	-	38.8	-	2.0	100.0(98)
기능직	33.2	6.6	2.7	3.1	7.1	45.6	1.3	0.4	100.0(226)
기계·장치조작원	37.0	7.4	3.7	-	3.7	29.6	3.7	14.8	100.0(27)
단순노무직	31.9	12.8	4.3	2.1	14.9	34.0	-	-	100.0(47)
학생 ³⁾	-	-	-	-	-	66.7	-	33.3	100.0(*)
기타	19.4	6.0	1.5	1.5	9.0	56.7	-	6.0	100.0(67)

註: 1)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전체 영유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자녀가 가기 싫어서/적응 못해서, 시설사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서 등이 포함됨.

3) 실수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함.

특히 2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기혼부인의 79.2%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3세 이상 유아를 돌보는 기혼부인의 64.9%가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嬰兒施設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幼兒施設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적극 강

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부인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으로 38.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未就業婦人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이 27.4%로 뒤를 이었다.

婦人의 職業特性別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업주부,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그리고 기계장치조작원 등의 직업군에서는 대체로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 많았으며, 다음은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의 직업군에서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보다 높았다. 그리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단순노무직의 12.8%, 사무직의 10.2%가 ‘가까운 곳에 돌봐 줄 곳이 없음’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나타나 地域別 保育需要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14.9%는 ‘보육료가 부담됨’이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保育料 支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 이용률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저조하였으므로 영아의 각 세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9.2%였으며, ‘2세 미만

이러서 시설에서 거절함'의 경우도 11.8%나 되었다(表 9-28 參照). 이는 嬰兒保育施設에 있어 첫 번째 선결조건이 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함을 말하며, 나아가 현재 嬰兒保育施設 設置나 利用이 活性化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그 이유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表 9-28〉 嬰兒 年齡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

(單位: %)

연령	본인, 가까운 사람이 안심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없음	2세 미만이라 거절함	보육 시간이 맞지 않음	보육료가 부담됨	학원, 유치원이 교육 효과가 큼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없음	기타 ¹⁾	계(수)
0세	85.2	0.5	12.9	-	1.1	0.3	-	0.2	100.0(661)
1세	78.3	1.1	14.2	-	4.9	1.3	-	0.2	100.0(530)
2세	71.2	2.4	7.1	0.2	8.7	8.5	0.2	1.7	100.0(423)
전체	79.2	1.2	11.8	0.1	4.3	2.8	0.1	0.6	100.0(1,614)

註: 1) 기타에는 자녀가 가기 싫어해서/적응 못해서, 시설사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서 등이 포함됨.

라. 向後 兒童 保育 및 教育機關 利用與否

아동의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을 利用할 意思가 있는지 여부는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육시설, 교육기관 등의 需要供給을 豫測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가진 15~49세 기혼부인이 향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의 36.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嬰兒의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보면, 0세아 53.0%, 1세아 54.4%, 2세아 5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嬰兒專擔保育施設의 擴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表 9-29 參照).

〈表 9-29〉 0~5歲 兒童을 가진 既婚婦人의 向後 保育施設 및 兒童 教育機關 利用率 및 利用機關

(單位: %)

구분	이용률	이용기관				(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기타 ¹⁾	
취업모	96.1	39.5	35.9	20.3	0.4	(932)
0세	84.0	54.2	24.4	4.3	1.1	(94)
1세	94.6	66.7	20.5	6.4	1.0	(93)
2세	95.1	54.1	33.6	6.3	0.7	(143)
3~5세	98.5	29.6	40.6	28.2	0.1	(602)
미취업모	91.5	34.7	39.5	16.2	1.1	(2,422)
0세	80.4	46.6	32.6	1.0	0.2	(485)
1세	86.0	47.1	32.9	5.0	1.0	(420)
2세	93.9	45.2	38.1	9.0	1.6	(358)
3~5세	97.4	22.0	45.3	28.9	1.2	(1,159)
전체	92.8	36.0	38.5	17.4	0.9	(3,354)
0세	81.0	53.0	26.3	1.4	0.3	(579)
1세	87.5	54.4	26.9	5.3	0.9	(513)
2세	94.2	51.6	33.0	8.2	1.4	(501)
3~5세	97.8	24.5	43.7	28.7	0.9	(1,761)

註: 1) 학습지, 위탁모, 아가스포즈단, 비즈교육 등이 포함됨.

아동의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利用希望時間 類型을 보면 전체의 98.8%가 平日晝間에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취업모의 98.9%, 미취업의 98.8%가 평일주간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아동양육기능을 대리해주는 역할 이상의 普遍的 서비스로서 기대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평일야간에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모의 2.3%는 전술한 바와 같이 潛在的 需要者들의 욕구로 짐작된다. 특히 미취업모도 평일야간 보육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운영시간 및 보육서비스 제공방법의 多樣성과 우수한 質的管理가 요망된다.

〈表 9-30〉 15~49歲 既婚婦人의 兒童年齡別 놀이방·어린이집의 運營
時間 類型別 向後 利用率

(單位: %)

구분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이용률	(수)	이용률	(수)	이용률	(수)
평일주간	98.9	(857)	98.8	(2156)	98.8	(3,013)
평일야간	2.3	(857)	0.7	(2156)	1.2	(3,013)
공휴일주간	0.2	(857)	0.4	(2156)	0.3	(3,013)
공휴일야간	0.0	(857)	0.1	(2156)	0.1	(3,013)

註: 1) 중복응답 결과임.

5세 이하의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보육시설을 비롯하여, 유치원, 학원, 보육모, 친·인척에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월평균 21만 7천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月平均 保育料로 약 5만 8천원을 더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세 미만의 경우 11만 2천원이 경감된 33만 4천원, 2세는 8만 4천원이 경감된 19만7천원, 3~5세는 3만 4천원이 경감된 14만 5천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월평균 보육비용에 대한 기대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에서 보육료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專門化된 子女教育에 대한 열의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表 9-31〉 15~49歲 既婚婦人의 兒童年齡別 適切한 月平均 保育料

(單位: 천원)

연령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보육료	(수)	보육료	(수)	보육료	(수)
2세 미만	320	(190)	337	(951)	334	(1,141)
2세	190	(137)	200	(369)	197	(506)
3~5세	137	(585)	150	(1,162)	145	(1,747)
전체	183	(912)	229	(2,482)	217	(3,394)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92.8%였으며, 취업부인의 경우는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바 취업부인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기를 희망하거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就學前 兒童을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취업모가 90% 이상을 上廻하고 있음은 教育의 質的向上과 安全性的 요소가 해결된다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0세보다는 1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보육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育兒休職期間 이후 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취업모의 고충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表 9-32〉 未就學 兒童¹⁾을 가진 15~49歲 既婚婦人의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單位: %)

아동연령	전체	취업모
0세	81.1	82.7
1세	87.2	94.9
2세	94.4	94.7
3~5세	97.7	98.5
전체	92.8	96.1

註: 1) 미취학 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산출하였음.

2. 就學子女의 養育實態

가. 就學子女 및 母의 特性

본 조사에서 취학 연령 자녀를 둔 기혼부인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52.1%이었으며, 고학년 자녀를 둔 부인은 47.9%이었다. 자녀의 학년차이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表 9-33〉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學齡別 初等學校 兒童分布
(單位: %)

구분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저학년	49.0	54.7	52.1
고학년	51.0	45.3	47.9
계	100.0	100.0	100.0
(수)	(1,621)	(1,946)	(3,567)

조사대상부인의 자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술한 바 있다. 현재 이러한 아동을 兒童學齡別로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본 결과,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母와 떨어져 사는 低學年 兒童은 0.6%이었으며, 高學年의 경우는 0.2%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母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저학년의 경우 0.3%, 고학년의 경우는 0.5%나 되었다.

〈表 9-34〉 15~49歲 既婚婦人の 兒童學齡別 어머니 同居與否
(單位: %)

동거여부	취업모			미취업모		
	저학년	고학년	계	저학년	고학년	계
동거	99.4	99.8	99.6	99.7	99.5	99.6
비동거	0.6	0.2	0.4	0.3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94)	(827)	(1,621)	(1,063)	(882)	(1,945)

5세 이하 아동의 동거여부를 보여준 <表 9-19>에서는 오히려 취업모의 아동이 미취업모의 아동보다 2배나 많이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母의 就業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경우 미취업모가 고학년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는 별거나 이혼과 같은 家族解體의 結果이거나 專門化된 教育에의 期待로 자녀와 별거하는 형태로 짐작된다.

조사대상 기혼부인의 子女學齡別 特性을 부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비추어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35~39세의 연령대가 51.9%, 미취업모는 50.8%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령대의 고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모는 58.0%이었으며, 미취업모의 경우는 60%가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4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자녀 분포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으로 인해 子女出産과 養育 時期가 遲延된 현상으로 짐작된다.

교육수준은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보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地域別 特性에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읍·면부의 미취업모의 분포가 5.6%인데 반하여 취업모의 경우 13.5%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분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就業母의 家口所得 水準을 보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50~199만원이 21.2%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취업모의 가구소득은 200~249만원이 22.6%로 가장 높았고, 150~199만원이 21.6%로 미취업모의 가구소득이 취업모의 가구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表 9-35〉 兒童學齡別 既婚婦人 特性

(單位: %)

구 분	취업모			미취업모		
	저학년	고학년	계	저학년	고학년	계
연령						
29세 이하	4.2	1.0	2.5	5.2	1.2	3.4
30~34세	37.3	15.1	26.0	42.7	16.4	30.8
35~39세	45.6	58.0	51.9	43.2	60.0	50.8
40세 이상	13.0	25.9	19.6	8.9	22.3	1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1	23.9	19.1	9.3	13.2	11.1
고등학교	58.4	53.4	55.9	60.2	59.1	59.7
대학교 이상	27.5	22.6	25.0	30.5	27.8	29.3
지역						
동부	86.3	86.7	86.5	94.1	94.8	94.4
읍·면부	13.7	13.3	13.5	5.9	5.2	5.6
가구형태						
부부+미혼자녀	91.5	92.9	92.2	93.8	95.9	94.8
기타	8.5	7.1	7.8	6.2	4.1	5.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0	10.4	11.2	9.5	11.3	10.3
100~149만원	12.0	15.5	13.8	20.2	18.4	19.4
150~199만원	22.5	19.9	21.2	23.6	19.2	21.6
200~249만원	17.6	17.2	17.4	22.8	22.3	22.6
250~299만원	6.9	7.9	7.4	6.6	9.9	8.1
300만원 이상	29.0	29.1	29.0	17.3	18.9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94)	(827)	(1,621)	(1,064)	(882)	(1,946)

나. 就學兒童의 養育實態

초등학교 자녀양육형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장 核心的인 嬰幼兒 養育形態와는 달리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35.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로

취업모가 25.5%, 미취업모가 28.9%로 미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취업모가 18.1%, 미취업모가 22.0%로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36 參照).

〈表 9-36〉 15~49歲 既婚婦人의 兒童學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單位: %)

보육형태	취업모			미취업모			전체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보육방법의 구성 ¹⁾							
양육자 없음	7.5	6.9	7.2	4.1	6.2	5.1	5.9
어머니가 전적 담당	25.7	25.3	25.5	31.2	30.8	31.0	28.9
가족(외) ²⁾ 의 도움	0.7	0.3	0.5	0.0	0.0	0.0	0.2
시설에만 전적 의존							
•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4.8	6.5	5.7	4.6	4.2	4.4	4.9
• 사설학원	40.2	39.6	39.9	32.4	33.2	32.7	35.5
어머니+가족(외) 도움	0.0	0.0	0.0	0.0	0.0	0.0	0.0
어머니+시설보육							
•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4	2.0	1.7	1.7	1.7	1.7	1.7
• 사설학원	16.9	15.9	16.4	23.6	21.9	22.9	20.3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0	0.0	0.0	0.0	0.0	0.0	0.0
• 사설학원	0.7	0.3	0.5	0.0	0.0	0.0	0.2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2.2	3.1	2.7	2.4	2.0	2.2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94)	(827)	(1,621)	(1,064)	(882)	(1,946)	(3,567)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³⁾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7.8	10.8	9.3	8.7	7.9	8.3	8.7
학원	73.3	71.0	72.1	77.5	74.0	75.9	74.4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양육방식 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양육방식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양육방식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또한 영유아 양육형태와는 달리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취업모의 초등학교 학령의 자녀양육은 저학년의 경우가 40.2%, 고학년이 39.6%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방과후 아동교실이나 공부방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자녀는 ‘시설에만 의존하는 경우’나 ‘어머니가 돌보면서 시설에 맡기는 경우’ 모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의 경우 방과후 아동교실이나 공부방에서 부족한 학업을 보충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학년보다 사설학원에 맡겨지는 분포가 더 높았던 低學年의 경우는 원활한 學敎生活 適應을 위해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시간이 고학년보다 적기 때문에 專門化된 機關으로 子女養育의 기능을 이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취업모가 초등학교 학령의 자녀도 교육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돌봄과 같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初等學敎 學齡의 保育은 어머니의 돌봄과 같은 心理情緒的 要因이 충분히 고려되어지고 質的으로 우수한 시설보육이 되도록 內實化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第 4 節 家族의 情報生活

일반적으로 情報化는 사회 각 영역에서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정보화는 특히 家族의 開放性과 民主性을 涵養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보화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의 심화 및 세대차이의 증폭을 가져와 家族間 紐帶를 弱化시키는 등 가족에 否定的 影響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조정문, 1997; 조정문 외, 1999). 일상적인 生活方式, 社會的 關係, 그리고 個人的 및 集合的 價値觀에까지 정보

화가 가져올 이러한 변화들은 출산, 피임 등의 家族行動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족생활의 질적 측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대부분 개인을 관찰·분석단위로 하고 있어 가족생활과 정보화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아직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本節에서는 情報化가 家族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探索的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¹⁰⁰⁾를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전후 가족구성원의 생활패턴 및 가족생활의 몇 가지 변화 양상을 알아본다.

1. 家族 情報化 實態

가족의 정보화 실태는 가정내 컴퓨터, 통신기기 등 물적 설비 수준 및 그 설비의 이용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本 研究에서는 情報化를 컴퓨터 保有 및 活用に만 한정하여 개인이 아닌 家族背景에 따른 컴퓨터 사용 빈도와 가구원의 컴퓨터 공용여부, 그리고 主 使用者의 特性 등을 살펴본다. 조사대상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52.3%이었으며, 보유하면서 실제 활용까지 하고 있는 가구는 49.9%이었다. 컴퓨터 보유 및 이용 가구의 비율은 특히 동부지역(53.0%)과 읍·면부지역(27.1%)간 25.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都·農間

100) 우리 나라 국민의 컴퓨터 이용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PC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정보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장소에서의 컴퓨터 이용 역시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단위의 복지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정보화를 상정하였고, 그 실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정내 경우만으로 한정함. 또한 다른 조사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 2000)에 의하면 컴퓨터 이용장소는 가정인 경우가 가장 많고, 기관별 컴퓨터 보급대수 역시 개인·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통계청, 2000)에 이러한 제한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情報不平等의 일면을 보여준다.

〈表 9-37〉 地域別 컴퓨터 保有 및 인터넷 設置 現況

(單位: %, 대)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소유여부			
비소유	47.7	44.6	70.8
소유하나, 사용하지 않음	2.4	2.4	2.1
소유하고, 사용함	49.9	53.0	27.1
계(수)	100.0(13,421)	100.0(11,800)	100.0(1,621)
평균소유대수	0.556	0.591	0.305
인터넷 접속 가능여부 ¹⁾			
접속불가능	37.6	37.3	42.9
접속가능	62.4	62.7	57.1
계(수)	100.0(6,661)	100.0(6,223)	100.0(438)
인터넷 접속방법 ²⁾			
모뎀설치	63.0	61.7	83.5
케이블로 연결	36.8	38.1	16.5
기타	0.2	0.2	-
계(수)	100.0(4,132)	100.0(3,883)	100.0(249)

註: 1)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인터넷 접속가능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컴퓨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구는 62.4%이었으며, 그 중 63.0%가 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都·農間 컴퓨터 보유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은 都·農間 차이가 5.6%포인트에 그치고 있어 최근 정보화의 확대가 지역간 인터넷 활용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情報化의 進展은 컴퓨터의 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실제 컴퓨터 활용정도도 크게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양상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 社會人口學的 變數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6;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2000). 본 조사에서 가족생활의 量的 情報化 정도를 보기 위해 컴퓨터 使用 頻度를 살펴본 결과는 <表 9-38>에 잘 나타난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74.6%가 매일 또는 주 5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컴퓨터 활용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사용빈도는 읍·면부지역 보다는 동부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클수록, 또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이는 컴퓨터가 여전히 高價裝備이고 또한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所得水準의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컴퓨터 사용빈도는 소득수준 외에도 文化的 環境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社會的 誘引 내지 壓力과 같은 영향이나 가족원의 물질적, 심리적 지원 정도의 차이 등을 통해 컴퓨터 사용빈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가구주의 職業地位가 높거나 情報關聯 器機를 다루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컴퓨터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2000).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용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이들 가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구원 중 젊은 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컴퓨터 활용이 家族生活에 미치는 影響力은 가구원 중 1인만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공용하는 경우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어 컴퓨터의 共用與否를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가구원 2인 이상이 컴퓨터를 공용하는 경우가 61.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도시지역, 고소득층, 가구규모가 클수록 높았다.¹⁰¹⁾

101)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에 의하면 가족 내 컴퓨터 이용자는 2명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85.4%임. 본 조사에서는 비록 주관적 평가에 기반한 한계가 있지만, 단

〈表 9-38〉 家口 및 家口主 特性別 컴퓨터 使用 頻度

(單位: %)

특성	사용 안함	월 1회 미만	월 1회 이상	2주에 1회 정도	주 1회 이상	매일 또는 주 5일 이상	계(수)
전체	4.6	1.8	1.1	1.7	16.2	74.6	100.0(7,017)
지역							
동부	4.4	1.8	1.2	1.7	16.1	74.9	100.0(6,544)
읍·면부	7.2	1.5	0.6	1.9	17.1	71.7	100.0(473)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8.7	1.6	0.8	2.3	21.9	64.7	100.0(918)
100~199만원	5.0	2.4	1.7	2.0	18.6	70.4	100.0(2,537)
200~299만원	3.3	1.9	1.2	1.5	14.9	77.3	100.0(1,822)
300만원 이상	2.3	0.9	0.7	1.0	9.9	85.2	100.0(1,389)
가구 규모							
2인 이하	10.1	2.5	1.7	1.7	23.8	60.2	100.0(1,047)
3~4인	3.6	1.8	1.2	1.7	15.4	76.3	100.0(4,733)
5인 이상	3.4	1.2	0.6	1.6	12.5	80.7	100.0(1,239)
가구주 성							
남자	4.3	1.9	1.1	1.8	15.7	75.2	100.0(6,347)
여자	6.7	0.9	1.8	0.7	20.3	69.6	100.0(671)
가구주 교육수준							
초교 이하	9.5	3.2	0.7	3.1	21.1	62.5	100.0(589)
중학교	6.5	2.2	1.6	2.1	15.2	72.3	100.0(801)
고등학교	5.2	1.8	1.0	1.7	18.1	72.1	100.0(2,671)
대학 이상	2.3	1.4	1.3	1.2	13.6	80.2	100.0(2,949)
가구주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1.9	0.7	0.2	0.9	13.1	83.3	100.0(579)
전문직	3.0	0.9	1.7	0.4	10.2	83.9	100.0(540)
준전문직	3.7	0.6	1.5	0.7	16.9	76.7	100.0(540)
사무직	3.0	1.6	1.1	1.9	16.5	76.0	100.0(642)
서비스· 판매직	4.3	1.8	1.4	1.5	14.6	76.4	100.0(1,134)
농·어·축산업	9.5	0.3	0.1	0.6	16.0	70.2	100.0(262)
기능직	4.4	2.4	0.8	2.2	16.4	73.9	100.0(1,014)
기계장치 조작용	3.0	1.8	1.1	1.1	12.8	80.2	100.0(439)
단순노무직	10.0	2.6	1.0	1.8	18.8	65.9	100.0(384)

가정 내 일상생활 및 자녀교육이 대부분 主婦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순히 컴퓨터 공용여부보다는 가구원 2인 이상이 양적으로도 비슷한 정도로 이용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파악되어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기 때문에 婦人特性別로 컴퓨터 공용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직 자녀가 없거나 영유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대 이하 부인을 제외하면 부인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배우 상태일 때 컴퓨터를 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컴퓨터 使用頻도가 높은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빈도가 家口主의 職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假定에서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가정내 컴퓨터 公用 與否를 살펴본 결과는 마찬가지로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즉, 고위공무원·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가정 내 컴퓨터 사용빈도가 높은 가구에서 컴퓨터를 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준전문직, 서비스·판매직, 기계장치 조작용인 경우는 컴퓨터를 공용하는 비율이 사용빈도에 비해 낮았는데, 이들의 業務性格과 學歷水準, 이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의 理由 및 水準 등에 따라 컴퓨터를 여러 가구원들이 공용할 物質的·教育的 資源의 크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조사대상 가구 중 38.9%가 가구원 1인이 가정내 컴퓨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컴퓨터 主 利用者의 特性은 10~20대 미혼 자녀들이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성별로는 남학생이 많았다(表 9-40 參照). 이는 컴퓨터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계층에 대한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20대보다 10대에서 컴퓨터 주 이용자가 더 많은 것은 컴퓨터 利用場所를 家庭內로 限定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⁰²⁾.

102) 최근 들어 직장 및 학교에서의 컴퓨터 이용시간은 가정내 컴퓨터 이용시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장 주된 컴퓨터 이용장소는 여전히 가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은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999;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表 9-39〉 家口 및 夫婦 特性別 家族의 컴퓨터 共用 與否

(單位: %)

특성	공용형	독점형	계(수)
전체	61.1	38.9	100.0(5,962)
지역			
동부	61.3	38.7	100.0(5,563)
읍·면부	57.6	42.4	100.0(399)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45.9	54.1	100.0(575)
100~199만원	53.4	46.6	100.0(2,125)
200~299만원	64.4	35.6	100.0(1,674)
300만원이상	75.1	24.9	100.0(1,287)
가구 규모			
2인 이하	42.3	57.7	100.0(416)
3~4인	59.6	40.4	100.0(4,356)
5인 이상	72.8	27.2	100.0(1,160)
부인 연령			
15~29세	52.6	47.4	100.0(667)
30~39세	67.7	32.3	100.0(2,364)
40~49세	63.5	36.5	100.0(2,112)
50~59세	45.2	54.8	100.0(681)
60~64세	27.9	72.1	100.0(140)
부인 교육수준			
초등 이하	41.1	58.9	100.0(671)
중학교	53.3	46.7	100.0(1,000)
고등학교	63.4	36.6	100.0(2,700)
대학 이상	70.5	29.5	100.0(1,588)
부인 결혼상태			
유배우	62.0	38.0	100.0(5,667)
사별	44.2	55.8	100.0(215)
이혼·별거	40.0	60.0	100.0(80)
남편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77.2	22.8	100.0(566)
전문직	73.2	26.8	100.0(507)
준전문직	59.5	40.5	100.0(511)
사무직	67.4	32.6	100.0(605)
서비스·판매직	61.0	39.0	100.0(949)
농·어·축산업	56.6	43.4	100.0(219)
기능직	56.8	43.2	100.0(943)
기계장치조작원	62.9	37.1	100.0(421)
단순노무직	43.8	56.2	100.0(297)

이와 같이 컴퓨터 主 利用者가 대부분 청소년인 것은 읍·면부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다음으로 많은 가정 내 컴퓨터

〈表 9-40〉 컴퓨터 主 使用 家口員의 特性

(單位: %)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22.7	23.2	16.7
가구주의 배우자	7.3	7.6	4.2
가구주의 자녀	67.8	67.0	77.4
기타	2.2	2.2	1.8
성			
남자	68.4	68.6	66.7
여자	31.6	31.4	33.3
연령			
9세 이하	6.9	7.0	5.3
10~19세	35.7	33.9	58.0
20~29세	31.4	32.7	15.4
30~39세	22.2	22.9	14.2
40~49세	1.8	1.7	2.4
50세 이상	2.0	1.8	4.7
교육수준			
미취학	1.3	1.4	0.6
초등학교	11.8	11.4	16.6
중학교	10.3	9.6	19.5
고등학교	32.5	32.0	38.5
대학 이상	44.1	45.6	24.9
결혼상태			
미성년 ¹⁾	21.4	20.6	31.4
미혼	47.2	47.2	46.7
유배우	30.7	31.4	21.3
사별·이혼·별거	0.7	0.7	0.6
계	100.0	100.0	100.0
(수)	(2,305)	(2,137)	(168)

註: 1) 만 14세 이하 가구원임.

주 이용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家口主로서 20~30대의 젊은 기혼남성들이었다. 컴퓨터 주 사용자의 이러한 분포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등 社會人口學的 變數에 따라 情報化에의 接近度 및 活用度가 격차를 보인다는 기존 조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전산원,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999;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2000).

2. 情報化에 따른 個人 및 家族生活 變化

컴퓨터 활용도가 높을 수록 가구원의 컴퓨터 활용이 개인생활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컴퓨터 활용이 보다 활발한 도시지역, 고소득층, 남성가구주, 그리고 부인 또는 남편의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개인시간 및 가족생활 등에 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현재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화의 영향은 家族環境, 즉, 가족주기나 계층적 지위, 가족 관계 및 각 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相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컴퓨터 활용을 전후한 개인생활시간 및 가족생활에 대해 각각 5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자의 主觀的 評價를 통해 그 變化 程度 및 方向性을 가늠해 보았다.

우선 컴퓨터 활용 후 가족내 주 이용자 또는 전체 이용자의 개인생활은 타 매체 접촉, 취미활동, 수면, 공부·가사일 및 사회적 교제에 소요하는 시간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가구원(들)은 他 媒體接觸 時間과 睡眠時間은 감소하였고, 趣味活動 및 社會的 交際時間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공부·가사일 등 家庭內 主 業務時間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9-41 參照). 이러한 경향은 선행 조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1999;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¹⁰³⁾

〈表 9-41〉 컴퓨터 活用 前後 日常生活의 變化

(單位: %, 점)

일상생활 영역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변화 없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계(수)	평균 점수 ¹⁾
다른 매체접촉시간	1.9	29.2	28.2	34.7	6.0	100.0(5,934)	2.87
취미활동시간	2.3	36.8	38.6	19.7	2.6	100.0(5,936)	3.16
수면시간	2.1	30.1	28.3	33.6	5.9	100.0(5,936)	2.89
공부·가사일 시간	2.9	34.5	31.1	27.0	4.5	100.0(5,938)	3.04
사회적 교제시간	5.3	43.4	36.8	13.0	1.5	100.0(5,929)	3.38

註: 1) 일상생활 시간 변화정도는 5점 척도로 산출함. 3점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생활시간이 증가한 것임.

가정 내 컴퓨터의 주 이용자가 靑少年이고 자녀교육 및 가정생활에 대한 관리·통제가 주로 主婦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各 領域別 生活時間의 變化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情報化 程度가 性에 따라 차이가 있고, 딸보다는 아들일 때 부모의 支持·支援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됨(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999)에 따라 아들 유무를 獨立變數로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인이 30~40대일 때, 부인의 교육수준이 중·고등학교

103) 실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청소년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 단, 취미활동 시간의 경우 타 조사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대부분 기혼부인(부인이 없는 경우 기혼남성이 응답한 경우가 286사례임)임에 따라 개인별 조사에서 자신이 취미활동으로 생각하는 범주와 부인이 가구원의 취미활동이라 생각하는 범주가 다른데서 나타난 차이로 판단됨. 그리고 사회적 교제시간의 경우 타 조사에서 특별히 해당 항목을 취급한 경우는 없지만,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활용 이후 친구와의 대화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는 변화 등(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999)에서, 또한 최근 대중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아이러브스쿨' 등 컴퓨터 통신에 따른 '오프라인 모임'의 증가 추세에서 그 변화경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일 때,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보다 있는 경우 컴퓨터 이용 가구원(들)의 생활시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기상 이들 부인들은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 자녀 또는 남편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남자(남학생)가 여자(여학생)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일 때 컴퓨터 활용에 따른 가족원의 생활시간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나 가정관리 등 자기 일에 대한 成就欲求가 더 높다는 것(김승권 외, 2000), 즉, 가족원에 대한 婦人の 統制力 程度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附表 22~附表 26 參照).

컴퓨터 활용 후의 가족생활변화를 가족간의 대화시간, 대화내용(화제거리), 가족원간 갈등·다툼, 가사일 분담정도, 그리고 全般的 家族生活 質에 대한 主觀的 滿足度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¹⁰⁴⁾ 컴퓨터 활용 전후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변화정도는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대상가구에서 컴퓨터 활용은 가족의 共有·對話時間 및 對話素材를 늘리고 가족원간 갈등을 감소시키며 가사일 분담정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家族生活의 質을 向上시키는데 寄與하고 있다는 것이다(表 9-42 參照).¹⁰⁵⁾

104) 기존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가족과의 대화시간 및 부모와의 갈등·다툼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999).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컴퓨터 활용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또한 정보화에 익숙한 개인일수록 近代的이고 獨立的인 態度를 가진다고 보고된(조정문 외, 1999) 바와 같이 컴퓨터 활용은 가사분담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05) 이는 앞서 언급한 기존연구의 결과와는 일견 상반되어 보임. 이는 일차적으로 각 조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응답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조사연구는 대부분 실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조사의 응답대상은 각 가구의 기혼부인들로서 그 중 실제 컴퓨터를 쓰고있는 부인은 많지 않음(表 9-37, 9-38 參照). 즉, 여기서 제시되는 조사결과는 컴퓨터를 실제 활

〈表 9-42〉 컴퓨터 活用 前後 家族生活의 變化

(單位: %, 점)

가족생활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변화 없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계(수)	평균 점수 ¹⁾
가족공유 또는 대화시간	4.8	38.9	33.9	20.1	2.3	100.0(5,937)	3.24
대화내용 또는 소개	6.4	43.1	37.4	12.0	1.1	100.0(5,940)	3.42
가족원간 갈등 또는 다툼	2.7	20.2	30.8	38.4	7.9	100.0(5,940)	3.29
남편·아이의 가사일 참여	7.1	43.0	42.3	6.9	0.7	100.0(5,941)	3.49
전반적 가족생활 질	12.2	49.4	34.5	3.4	0.5	100.0(5,938)	3.70

註: 1) 가족생활 변화정도는 5점 척도로 산출함. 3점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가족생활의 변화방향이 긍정적인 것임.

각 가구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결과였다(附表 27~附表 31 參照). 그러나 가족생활변화의 정도는 개별 가구 및 부인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아들이 있는 가구보다는 딸만 있는 가구에서 각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와 컴퓨터 활용이 家族生活에 미치는 肯定的 效果가 이들 가구에서 보다 큼을 보여주고 있다. 所得水準別로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 이후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는 전반적으로 월소득이 100~199만원인 가구에서 현저하였으며,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긍정적 변화가 가장 작았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또 가구원 개인이 다양한 생활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의 主觀的 滿足感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간 소득층에는 한정되어 있던 생활기회를 넓혀주는 정보화의 효과가 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용하고 있는 개인 및 그가 속한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관찰자'로서 부인의 주관적 견해를 측정한 것임. 따라서 그 변화정도 및 방향에 대한 본 조사결과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본 조사결과의 활용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임.

世代的 結合形態別로 살펴보면, 1세대 가구에서 긍정적 변화 정도가 현저하였고,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1세대 가구가 대부분 젊은 부부거나 형제·자매로서 세대차이 문제가 크지 않고 또 정보화에 보다 익숙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의 肯定的 效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第 5 節 家庭暴力 實態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의 家族主義的 價値觀은 약화되고 家族의 機能과 役割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원간의 葛藤을 惹起하고, 심지어는 가족원간의 暴力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김승권의, 1998). 최근의 IMF 경제위기 하에서 한국 가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은 경제적 갈등의 증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와 자원 상실로 인한 무기력감과 열등감의 증가, 자존감의 저하, 사회지지 체계의 붕괴, 가족 결속력의 약화, 전반적 사회스트레스의 증가, 개인 및 사회적 분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상호 작용하여 심리적 좌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家庭暴力 現象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엄명용, 2000).

家庭暴力은 여러 가지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社會病理現象으로써 加害者와 被害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 부모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아동학대 및 폭력,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및 폭력,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 등 대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本節에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반적인 家庭暴力의 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全般的 家庭暴力實態

본 연구는 조사대상가구 13,429가구 중 15~64세 기혼부인들이 있는 10,592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1999년 6월~2000년 5월) 가족원간의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身體的 虐待 및 暴力과 情緒的 虐待 및 暴力, 放任 등의 暴力類型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15~64세 기혼부인들이 있는 가구 중 30.0%의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類型別로는 부부폭력이 7.4%, 아동학대 24.7%,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0.1%,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은 1.0%이었다. 이들 각 유형별 학대·폭력에는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에는 각각 2.9%의 중복 발생률이, 부모학대에는 0.0%,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에는 0.4%의 重複 發生率이 포함되었다.

〈表 9-43〉 家庭暴力發生率

(單位: %)

구분	부부 폭력	아동 학대	부모 학대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	계
가정폭력발생률	7.4 ²⁾	24.7 ³⁾	0.1 ⁴⁾	1.0 ⁵⁾	30.0 ¹⁾

註: 1) 전체 조사완료 부인가구에 대한 가정폭력발생가구의 비율임.
 2)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 발생하는 2.9%가 포함됨.
 3)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 발생하는 2.9%가 포함됨.
 4)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 발생하는 0.0%가 포함됨.
 5)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 발생하는 0.4%가 포함됨.

2. 夫婦虐待 및 暴力

歐美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1960년대 女權主義 運動家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승권 외, 1998).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며, 현재까지 일부 학자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까지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가정폭력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家庭暴力 實態 및 對策에 관한 研究』, 김재엽 교수에 의하여 수행된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그리고 김승권 외(1998)에 의한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家庭暴力 實態 및 對策에 관한 研究』는 이 분야에서 最初의 體系的인 實態調査에 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규모의 실태조사가 아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1,200명의 남·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겠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보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폭력이 발생한 가구는 전체 1,171가구 중 44.0%이었으며,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은 28.4%,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은 15.6%로 제시되었다.

김재엽 교수에 의하여 수행된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全國을 단위로 한 標本調査라는 점에서 가치있는 자료로 인정되고 있는데, 1997년 조사에서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부부폭력정도를 살펴본 것으로 조사대상 1,523가구 중 31.4%가 夫婦暴力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이 27.9%,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은 15.8%이었다.

김승권 외에 의한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는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피해자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부부간의 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형제자매간의 폭력 등 家庭暴力을 全般적으로 다루고 있어 매우 의의가 크다. 조사결과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발생률은 5.6%,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발생률은 1.1%로 부부폭력 발생률은 6.2%로 나타났다.

〈表 9-44〉 主要 先行研究의 夫婦暴力 發生率

(單位: %)

연구자(기관)	부부폭력		계
	남편→부인	부인→남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28.4	15.6	44.0
김재엽(1997)	27.9 ¹⁾	15.8 ¹⁾	31.4
김승권 등(1998)	5.6	1.1 ⁴⁾	6.2
미국(1985)			
경미한 폭력	10.2 ²⁾	11.9 ²⁾	16.1
심각한 폭력	3.4 ³⁾	4.8 ³⁾	6.3
홍콩(1994)	-	-	14.2

註: 1) 상호폭력 12.3%가 중복 계산됨. 2) 상호폭력 6.0%가 중복 계산됨.

3) 상호폭력 1.9%가 중복 계산됨. 4) 동일한 가구내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과 중복발생하는 0.5%가 포함됨.

資料: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사회복지학회, 1998.

김승권·조애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Straus, M. A. & R. J. Gel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1990.

Tang, So-kum, "Prevalence of Spouse Agg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4, 1994.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주요 연구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深刻한 暴力發生率(6.3%)과 유사한 수준을 제시한 김승권 외(1998) 이외의 다른 연구결과는 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즉, 미국(1985)의 부부폭력 발생비율은 16.1%이었으며, 홍콩

(1994)의 경우는 14.2%로 선행연구에 나타난 우리 나라 부부폭력 수준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¹⁰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家父長制的 文化的 지배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男性的 女性에 대한 학대라고 하였다(Schechter, 1988; 김승권 외 1998 재인용). 여기서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의 유형, 폭력발생이유, 폭력의 빈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및 교육 수준 분포는 <表 9-45>와 같다. 年齡別로는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 모두 4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의 순이었다. 이 외 加害者는 60대에서, 그리고 被害者는 20대 이하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教育水準別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남편 47.5%, 부인 46.4%이었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피해자인 부인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남편: 34.0%, 부인: 43.6%).

106) 일부에서는 ‘婦人’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비하한 용어라는 측면에서 부인학대를 ‘아내학대’로 표현하기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남편에 반대되는 개념상의 용어는 ‘부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인학대 및 폭력으로 표현함.

〈表 9-45〉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分布

(單位: %)

특성	가해자(남편)	피해자(부인)
연령		
29세 이하	5.4	14.9
30~39세	30.3	31.8
40~49세	32.8	32.1
50~59세	21.0	15.9
60세 이상	10.5	5.3
교육수준		
초교이하	17.2	22.8
중학교	16.8	20.8
고등학교	47.5	46.4
대학이상	18.5	10.0
계	100.0	100.0
(수)	(687)	(679)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의 教育水準을 交叉分析한 결과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이 동일한 학력수준인 부부가 64.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해자인 남편보다 피해자인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7.1%, 반대로 낮은 경우는 28.3%이었다(表 9-46 參照). 따라서 남녀의 결혼에 있어 대부분 연령이나 교육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高學力의 婦人—低學力의 男便」의 폭력이 7.1%나 된다는 것은 經濟的 및 社會的 資源을 적게 가진 사람이 不足한 資源의 補充을 위해 또는 資源의 한 手段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資源理論¹⁰⁷⁾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107) 이 이론의 기본가정은 모든 사회체제는 일정수준의 힘이나 협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가족 내에서 지배권을 가지려 할 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원, 예컨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인간관계기술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고 함. 이 이론에 의하면 다른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폭력

〈表 9-46〉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 教育水準

(單位: %)

가해자(남편)	피해자(부인)				전체
	초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초교이하	14.0	1.6	1.3	0.3	17.2
중학교	5.1	9.1	2.5	0.1	16.8
고등학교	3.6	9.4	33.2	1.3	47.5
대학이상	0.1	0.7	9.4	8.3	18.5
전체	22.8	20.8	46.4	10.0	100.0(686)

2) 婦人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및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기타 폭력 및 학대로 구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表 9-47>과 같다.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유형 중 身體的 暴力은 30.8%, 情緒的 虐待는 66.9%, 그리고 放任 및 其他 暴力 및 虐待는 2.3%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 13.2%이었고, 그 다음은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8.8%,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6.9%의 순이었으며,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폭력의 深刻性을 보여주었다. 情緒的 虐待의 類型으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이 5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부인이나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가 4.6%, 자녀 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폭

이 사용됨을 의미하는데, 폭력을 자원(resources)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임(Goode, 1971, 김승권 외, 1998 재인용). 기타 가정폭력 관련 제 이론에 관해서는 김승권 외(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언을 한 경우 3.9%,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3.5%, 그리고 放任 및 其他 暴力으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가 2.0%이었다.

〈表 9-47〉 婦人虐待 및 暴力의 暴力類型 分布

(單位: %)	
폭력유형	비율
(신체적 폭력)	
물건을 던지는 행위	13.2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6.9
꼬집거나 핏대를 하는 행위	1.3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8.8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0.4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0.2
(정서적 학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54.9
자녀 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남편행위	3.9
부인의 친가 또는 친가식구를 무시하는 남편행위	3.5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부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4.6
(방임 및 기타 폭력)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 행위	2.0
부부공동 재산을 배우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0.3
계(수)	100.0(865)

註: 중복응답 결과임.

3)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男便에 의한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は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7.2%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발생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22.0%, 주 1회 발생이 12.4%, 주 2~3회 발생

5.0%,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 3.9%의 순이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남편에 의하여 학대받는 부인은 43.3%나 되었다(表 9-48 參照).

〈表 9-48〉 婦人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年齡 및 教育水準別 發生頻度
(單位: %)

가해자 특성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1회	2~3개월 1회	기타	계(수)
연령							
29세 이하	-	-	24.3	24.3	37.9	13.5	100.0(37)
30~39세	3.4	4.3	8.3	20.4	33.5	30.1	100.0(206)
40~49세	4.9	6.3	12.5	24.1	31.7	20.5	100.0(224)
50~59세	3.4	4.1	15.9	15.9	51.7	9.0	100.0(145)
60세 이상	5.6	7.0	11.3	31.0	35.2	9.9	100.0(71)
교육수준							
초교이하	7.7	11.1	20.5	19.7	35.0	6.0	100.0(117)
중학교	3.5	11.3	11.3	21.7	39.1	13.0	100.0(115)
고등학교	3.7	1.8	10.1	23.0	38.0	23.3	100.0(326)
대학이상	0.8	1.6	12.0	22.4	34.4	28.8	100.0(125)
전체	3.9	5.0	12.4	22.0	37.2	19.5	100.0(683)

가해자의 年齡別 暴力發生頻度は 29세 이하의 가해자는 2~3개월에 1회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월 1회와 주 1회가 각 24.3%로 同一한 比率을 보였다. 30대 이후의 가해자도 모두 2~3개월에 1회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높은 비율(51.7%)을 보였다. 그 외 빈도가 잦을수록 비율은 낮아지기는 하나 주 1회 이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30대를 제외한 연령층 모두에서 약 24%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의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각 연령별로 3.4~5.6% 수준이었다. 加害者의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주 2~3회 이상의 잦은 폭력발생 빈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발생빈도는 높았다.

4) 婦人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婦人虐待 및 暴力은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는 社會環境的 및 時代的 興件에 따라 변화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인 부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부인을 虐待 및 暴力하는 경우가 1.7%이었으며, 나머지 98.3% 중에는 가해자인 남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피해부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부간의 性格差異로 인한 학대가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經濟的 問題 17.2%, 남편의 술버릇 16.5%, 스트레스 15.8%, 남편의 自激之心 및 劣等感 4.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시댁을 소홀히 한다던가, 자녀교육상의 문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도 있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폭력의 발생이유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表 9-49 參照). 특히 가해자인 남편의 개인적 이유에서 발생한 경우도 제법 있어 가정폭력이 기본적으로 個人的 病理的인 屬性에 의해서 비롯되다는 精神病理學的 理論¹⁰⁸⁾의 설명을 뒤받침 한다.

108) 가정폭력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병리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이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이 선천적인 신체적 불구, 정신적 및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후천적인 심신장애나 사고 등으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에 의해 야기되는 가학적 행위로 이해됨. 즉, 개인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정상(abnormality), 내적 이탈(internal aberration), 결함(defect), 그리고 알코올 및 마약 등에 의하여 폭력적이 된다는 것임(Gelles and Straus, 1979, 김승권 외 1998 재인용).

〈表 9-49〉 婦人虐待 및 暴力의 理由

(單位: %)

폭력이유 유무 및 유형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1.7
이유있음	98.3
계(수)	100.0(685)
폭력이유 유형 ¹⁾	
가해자의 열등감, 자격지심	4.3
시댁/친척 소홀히 함	3.9
성격차이	32.6
술버릇	16.5
경제적 문제	17.2
스트레스	15.8
순종하지 않음	2.9
자녀교육상의 문제	3.4
기타	3.4
계(수)	100.0(797)

註: 1) 폭력이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나. 婦人에 의한 男便虐待 및 暴力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폭력 유형, 폭력발생이유, 그리고 폭력의 빈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加害者인 婦人과 被害者인 男便의 特性은 <表 9-50>에서 잘 나타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30대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이었다. 教育水準別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비율이 부인 53.6%, 남편 48.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부인은 중학교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편은 대학 이상인 경우가 부인보다 더 높았다.

〈表 9-50〉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分布

(單位: %)

특성	가해자(부인)	피해자(남편)
연령		
29세 이하	20.8	12.1
30~39세	37.6	36.6
40~49세	27.5	30.0
50~59세	10.7	13.1
60세 이상	3.4	8.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8.9	11.6
중학교	12.9	13.3
고등학교	53.6	48.3
대학 이상	14.6	26.8
계(수)	100.0(267)	100.0(267)

男女의 結合類型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합이 높은 관계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력수준이 유사한 경우가 66.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해자인 부인보다 피해자인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29.1%, 반대로 낮은 경우는 4.9%로 나타나 學歷隔差가 있는 부부간의 가정폭력이 34.0%나 되었다(表 9-51參照).

특히 「低學力の 婦人-高學力の 男便」간의 폭력이 29.1%나 되었다는 것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資源理論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支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9-51〉 男便虐待 및 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單位: %)

가해자(부인)	피해자(남편)				전체
	초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교이하	10.1	4.9	3.4	0.5	18.9
중학교	-	5.0	7.9	-	12.9
고등학교	0.8	3.4	37.0	12.4	53.6
대학이상	0.7	-	-	13.9	14.6
전체	11.6	13.3	48.3	26.8	100.0(267)

2) 男便虐待 및 暴力의 類型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의 유형은 身體的 暴力 22.3%, 情緒的 虐待는 70.1%, 그리고 放任은 7.6%로 나타났다. 이를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신체적 폭력 30.8%, 정서적 학대 66.9%, 방임 2.3%)과 비교하면, 身體的 暴力은 8.5%포인트 낮았으며, 반대로 情緒的 虐待는 3.2%포인트, 그리고 放任은 5.3%포인트 높았다. 따라서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경우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具體的인 暴力類型을 살펴보면, 身體的 暴力에서는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가 7.2%,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6.6%, 얼굴·머리·뺨 등을 때리는 행위가 4.9%, 꼬집거나 핥키는 행위가 3.6%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情緒的 虐待에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이 5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행위가 4.9%, 남편의 친구 또는 친가식구 무시하는 행위가 4.6%, 그리고 자녀 앞에서 남편이 무식하다는 등의 暴言을 하는 행위가 4.3%이었다. 그리고 放任의 유형은 부인의 무관심으로 남편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행위가 7.6%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남편수입이 자기수입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도 다소 발생하였다.

〈表 9-52〉 男便虐待 및 暴力的 暴力類型 分布

(單位: %)	
폭력유형	비율
(신체적 폭력)	
물건을 던지는 행위	6.6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4.9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3.6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7.2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70.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55.3
자녀 앞에서 남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부인행위	4.3
남편의 친가 또는 친가식구를 무시하는 부인행위	4.6
실직남편에게 무능력하다고 폭언하는 부인행위	4.9
남편수입이 본인보다 적다고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부인행위	0.7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 및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0.3
(방임 및 기타 학대)	
(7.6)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인행위	7.6
부부공동 재산을 배우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계(수)	100.0(304)

註: 중복응답 결과임.

3) 男便虐待 및 暴力的 發生頻度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발생하는 경우 26.3%, 그리고 주 1회 이상 발생은 14.7%(주 1회: 9.0%, 주 2~3회: 3.4%, 거의 매일: 2.3%)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와 비교해 볼 때 월 1회 이하의 폭력발생은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높았다. 그러나 주 1회 이상은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비율이 높아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발생빈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9-53〉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單位: %)

가해자 특성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기타	계(수)
연령							
29세 이하	-	1.8	16.4	18.2	60.0	3.6	100.0(55)
30~39세	2.0	2.0	6.9	33.7	36.6	18.8	100.0(101)
40~49세	2.6	8.0	8.0	22.7	52.0	6.7	100.0(75)
50~59세	7.0	3.4	3.4	27.6	44.8	13.8	100.0(29)
60세 이상	-	10.0	10.0	30.0	50.0	-	100.0(10)
교육수준							
초교 이하	2.0	4.0	8.0	30.0	46.0	10.0	100.0(50)
중학교	5.7	-	2.9	37.1	45.7	8.6	100.0(35)
고등학교	2.1	4.2	10.4	21.0	49.0	13.3	100.0(143)
대학 이상	-	2.6	10.5	31.6	47.4	7.9	100.0(38)
전체	2.3	3.4	9.0	26.3	47.7	11.3	100.0(270)

4) 男便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남편학대 및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98.5%는 나름대로의 학대 및 폭력의 이유가 있었다. 부인이 남편을 학대 및 폭력을 하는 理由는 부부의 性格差異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經濟的 問題가 23.5%, 스트레스가 16.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친정을 소홀히 한다던가, 자녀교육상의 문

제, 부인의 술버릇 등이었으며, 부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등도 부인이 남편에게 학대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였다(表 9-54 參照).

이를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이유와 비교할 경우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가해자인 남편의 술버릇, 열등감 및 자격지심, 부인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높았던 반면,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성격차이, 경제문제, 스트레스, 자녀교육상의 문제, 친정 무시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加害者에 따른 虐待 및 暴力의 理由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表 9-54〉 男便虐待 및 暴力의 理由

(單位: %)

폭력이유 유무 및 이유	비율
폭력이유 유무	
이유없음	1.5
이유있음	98.5
계(수)	100.0(267)
폭력이유 ¹⁾	
가해자의 열등감, 자격지심	1.3
친정 소홀히 함	6.3
성격차이	35.7
술버릇	5.3
경제적 문제	23.5
스트레스	16.0
순종하지 않음	0.6
자녀교육상의 문제	6.3
기타	5.0
계(수)	100.0(319)

註: 1) 폭력이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이상으로 부부폭력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가해자인 남편의 精神病理學的인 問題에 의하거나 자신의 權威를 인정받거나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부인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문제, 친절 무시 등과 같이 家族이나 子女問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兒童虐待 및 暴力

가족 내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녀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가져온다. 身體的 損傷으로 명드는 것에서부터 화상, 뇌출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자녀의 목숨까지 잃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손상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情緒的 損傷이다. 즉, 부모에게 폭력을 당할 경우 낮은 자존감, 과도한 공격성, 반사회적 성격과 같은 정서적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이상 증세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손상은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子女暴力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有用性을 學習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되어 자칫 社會暴力 또는 社會問題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재엽, 1998).

본 조사결과 15~64세 기혼부인이 있는 가구의 24.7%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이 중복발생한 경우도 2.9%가 포함되었다.

가.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特性

아동학대 및 폭력의 加害者는 어머니 85.6%, 아버지 13.1%, 그리고 1.3%가 조부모 등의 기타 가족원이었다(表 9-55 參照). 이는 자녀교육

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表 9-55〉 兒童虐待의 加害者別 分布¹⁾

(單位: %)				
구분	아버지	어머니	기타가족원 ²⁾	계
비율	13.1	85.6	1.3	100.0
(학대·폭력수)	(581)	(3,811)	(60)	(4,452)

註: 1) 아동학대·폭력수를 기준으로 함.

2) 기타 가족원에는 조부모, 삼촌, 숙모 등이 포함됨.

被害兒童 特性別 加害者의 分布는 피해아동이 男兒인 경우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15.1%, 어머니인 경우 83.9%, 그리고 기타 가족원은 1.0%이었으며, 女兒인 경우 가해자는 아버지 10.5%, 어머니 87.8%, 그리고 기타 가족원은 1.8%이었다. 被害兒童의 教育水準別로는 아버지 에 의한 학대·폭력이 학력이 높을 수록 많았으며, 어머니와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폭력은 학력이 낮을 수록 많았다.(表 9-56 參照).

〈表 9-56〉 虐待 및 暴力 被害兒童의 特性別 加害者 分布

(단위: %)				
특성	아버지	어머니	기타 가족원 ¹⁾	계(학대·폭력수)
성				
남아	15.1	83.9	1.0	100.0(2,456)
여아	10.5	87.8	1.8	100.0(1,993)
교육수준				
미취학	11.1	87.4	1.5	100.0(1,737)
초등학교	12.7	85.9	1.4	100.0(2,044)
중학교	18.9	80.0	1.1	100.0(461)
고등학교 이상	20.0	80.0	-	100.0(210)
전체	13.1	85.6	1.3	100.0(4,452)

註: 1) 기타 가족원에는 조부모,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됨.

아동학대 및 폭력의 加害者 年齡 및 教育水準을 보면, 아버지는 30대가 53.8%, 40대가 41.9%인데 비해, 어머니는 30대의 비율이 71.5%나 되었다. 기타 가족원은 60세 이상이 55.1%, 50대가 32.8%로 50세 이상이 87.9%로 부모와는 연령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타 가족원의 상당수가 아동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教育水準別로는 고등학교 학력인 경우는 59.0%, 대학 이상의 경우는 28.2%이었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는 아버지 86.8%, 어머니 88.2%로 어머니의 학력이 더 높았다. 高齡層의 祖父母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타 가족원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62.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은 20.4%에 불과하였다.

〈表 9-57〉 兒童虐待 및 暴力 加害者의 特性

(單位: %)

가해자 특성	아버지	어머니	기타 가족원	전체
연령				
29세 이하	3.1	13.9	6.9	12.4
30~39세	53.8	71.5	5.2	68.4
40~49세	41.9	14.4	-	17.8
50~59세	1.2	0.2	32.8	0.7
60세 이상	-	-	55.1	0.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	2.8	62.7	3.7
중학교	9.9	8.9	16.9	9.1
고등학교	43.8	62.1	10.2	59.0
대학이상	43.0	26.1	10.2	28.2
계	100.0	100.0	100.0	100.0
(학대·폭력수)	(578)	(3,808)	(59)	(4,445)

나. 兒童虐待 類型

아동학대 및 폭력은 부부 또는 기타 가족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

정폭력과는 달리 신체적 폭력이 정서적 학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身體的 虐待 및 暴力은 83.8%인데 비해, 情緒的 虐待은 15.6%, 그리고 放任은 0.6%에 불과하였다. 이를 被害兒童의 性別로 보면,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는 男兒보다 女兒가 다소 높았고,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남아가 약간 높았다.(表 9-58 參照)

〈表 9-58〉 被害兒童의 性別 虐待 및 暴力 類型 分布

(單位: %)

폭력유형	남아	여아	전체
(신체적 폭력)	(83.2)	(84.4)	(83.8)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79.7	81.2	80.4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1.2	1.4	1.3
꼬집히거나 할퀴임	0.5	0.7	0.6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0.0	0.1	0.1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1.4	0.4	1.0
혁대로 맞음	-	-	-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힘	0.2	0.3	0.2
던진 물건으로 맞음	0.0	0.1	0.1
팔, 다리가 묶임	0.1	-	0.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힘	-	0.0	0.0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함	-	0.1	0.0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0.1	0.1	0.1
(정서적 학대)	(16.0)	(15.2)	(15.6)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함	11.4	10.9	11.2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1.8	2.4	2.1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0.6	0.5	0.6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0.7	0.4	0.5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0.4	0.2	0.3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음	0.3	0.3	0.2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쫓겨 남	0.8	0.5	0.7
울지 못하게 베게 등으로 누름	-	-	-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킴	0.0	0.0	0.0

〈表 9-58〉 계속

(單位: %)

폭력유형	남아	여아	전체
(방임)	(0.8)	(0.4)	(0.6)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 없음	-	-	-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음	0.1	-	0.0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봄	0.2	0.0	0.1
더러운 옷을 입거나, 추운 방에서 지냄	-	-	-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둠	-	-	-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음	0.4	0.2	0.3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0.1	0.1	0.1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	-	-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관심없음	0.0	0.1	0.1
몰래 남의 물건,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함	-	-	-
계	100.0	100.0	100.0
(학대·폭력수) ¹⁾	(2,827)	(2,265)	(5,092)

註: 1) 중복응답 결과임.

이를 暴力類型別로 보면, 身體的 虐待·暴力 중에서는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男兒(79.7%)보다는 女兒(81.2%)에게서 다소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男兒는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거나,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고, 女兒는 얼굴, 머리, 뺨 등을 맞거나 꼬집히거나 할퀴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情緒的 虐待는 남녀아동 모두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남아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다. 이 외에도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는 여아에게서, 그리고 나머지 폭력 유형은 모두 남아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放任 중에서는 학교 준비물 등을 제때 챙겨주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加害者別 虐待類型을 보면, 아버지에게 의한 경우는 身體的 暴力

86.6%, 情緒的 虐待 12.7%, 放任 0.7%이었고, 어머니에 의한 경우는 身體的 暴力 83.6%, 情緒的 虐待 15.8%, 放任 0.6%이었으며, 그리고 기타 가족원에 의한 경우는 身體的 暴力 69.9%, 情緒的 虐待 30.1%이었다. 따라서 身體的 暴力은 아버지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情緒的 虐待는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表 9-59〉 加害者別 兒童虐待 및 暴力類型 分布

(單位: %)

폭력유형	가해자			전체
	부	모	기타 가족원	
(신체적 폭력)	(86.6)	(83.6)	(69.9)	(83.8)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82.8	80.2	68.5	80.4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0.9	1.4	1.4	1.3
꼬집히거나 할퀴임	-	0.6	-	0.6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	0.1	-	0.1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2.2	0.8	-	1.0
혁대로 맞음	-	-	-	-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힘	0.3	0.2	-	0.2
던진 물건으로 맞음	0.2	0.1	-	0.1
팔, 다리가 묶임	-	0.1	-	0.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힘	-	0.0	-	0.0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함	-	0.1	-	0.0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0.2	0.1	-	0.1
(정서적 학대)	(12.7)	(15.8)	(30.1)	(15.6)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을 함	10.2	11.1	21.9	11.2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1.2	2.2	1.4	2.1
우리 집에서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	0.2	0.6	2.7	0.6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0.3	0.6	1.4	0.5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0.2	0.3	-	0.3
걸려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음	0.4	0.3	-	0.2

〈表 9-59〉 계속

폭력유형	가해자			전체
	부	모	기타 가족원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쫓겨 남 을지 못하게 베개 등으로 누름	0.2	0.7	2.7	0.7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킴	-	0.0	-	0.0
(방입)	(0.7)	(0.6)	(-)	(0.6)
위험한 것을 갖고 놀아도 상관없음	-	-	-	-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음	-	0.0	-	0.0
어두워질 까지 혼자 집을 봄	0.2	0.1	-	0.1
더러운 옷을 입거나 추운 방에서 지냄	-	-	-	-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둠	-	-	-	-
학교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음	-	0.4	-	0.3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0.3	0.1	-	0.1
이유없는 학교결석에도 무관심	-	-	-	-
어떤 친구를 사귀든지 관심없음	0.2	0.0	-	0.1
몰래 남의 물건, 돈을 가져가도 모른체 함	-	-	-	-
계	100.0	100.0	100.0	100.0
(학대·폭력수) ¹⁾	(636)	(4,383)	(73)	(5,092)

註: 1) 중복응답 결과임.

다.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아동학대 및 폭력의 發生頻度を 살펴보면, 월 1회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2~3개월에 1회 24.5%, 그리고 주 1회 발생 20.3%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주 2~3회 이상의 잦은 발생률을 보이는 경우도 18.2%나 되었다. 加害者別로는 아버지에 의한 학대·폭력은 2~3개월에 1회가 37.6%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에 의한 학대·폭력은 월 1회가 29.8%, 그리고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폭력은 주 1회가 34.5%로

가장 높았다. 주 1회 이상 발생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20.4%, 어머니인 경우 40.9%, 그리고 기타 가족원인 58.6%로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폭력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表 9-60〉 加害者別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單位: %)

가해자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1회	2~3개월 1회	기타	계 (학대·폭력수)
아버지	0.5	5.9	14.0	23.6	37.6	18.4	100.0(577)
어머니	5.2	14.7	21.0	29.8	22.7	6.6	100.0(3,807)
기타가족원	10.3	13.8	34.5	20.7	15.5	5.2	100.0(58)
전체	4.6	13.6	20.3	28.8	24.5	8.2	100.0(4,442)

라. 兒童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아동학대 및 폭력의 主要 發生 理由는 ‘아동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가 42.8%로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상 문제’가 33.8%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외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12.5%, ‘공부 못(안)한다’ 8.7% 등으로 부부폭력 등과 같은 유형과는 달리 가해자 본인의 문제로 인한 폭력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訓育을 위해서는 體罰로 다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하나의 人格體로 여기기보다는 부모의 所有物로 보는 社會·文化的인 側面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는 훈육상 필요한 것으로 여겨 문제시하지 않는 社會通念이 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表 9-61〉 兒童虐待 및 暴力的 理由

(單位: %)

폭력이유	비율
가해자 술버릇	0.0
경제적 문제	0.1
스트레스	1.0
순종하지 않는다고	12.5
자녀교육상 문제	33.8
(나쁜)버릇고친다고	42.8
공부 안(못)한다고	8.7
기타	1.1
계(학대·폭력수) ¹⁾	100.0(5,604)

註: 1) 폭력이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4. 其他 家族員間的 虐待 및 暴力¹⁰⁹⁾

만 15~64세 조사대상 既婚婦人이 있는 전체 가구 중 기타 가족원 간의 폭력이 발생하는 가구는 1.0%이었으며, 이 중에는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학대·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0.4% 있었다.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에서 폭력의 유형, 폭력 발생이유, 폭력의 빈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其他 家族員間的 虐待 및 暴力的 類型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身體的 暴力은 30.9%, 情緒的 虐待 65.1%, 그리고 放任은 4.0%로 정서적 학대의 비

109) 본 연구에서 기타 가족원 간의 학대·폭력은 부부폭력, 부모학대·폭력, 아동학대·폭력을 제외한 모든 학대·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 또는 모에 의한 자녀학대 중 피해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경우는 아동학대·폭력으로, 그리고 19세 이상인 경우는 기타 가족원 간의 학대·폭력에 포함시켰음.

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기타 가족원간의 虐待 및 暴力을 類型別로 살펴보면, 身體的 暴力은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이 23.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은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이 4.0%의 順이었다. 이 외에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던가,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나타나 기타 가족원간의 신체적 폭력행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表 9-62〉 其他 家族員間的 暴力類型 分布

(單位: %)	
폭력유형	비율
(신체적 폭력)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23.5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4.0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0.7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힘	1.3
던진 물건으로 맞음	0.7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 당함	0.7
(정서적 학대)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등과 같은 욕을 함	45.6
학교 그만 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4.7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	3.4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3.4
걸러온 전화를 욕을 하며 끊음	2.7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쫓겨 남	4.0
집안 일을 강제로 시킴	1.3
(방임)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 관심없음	1.3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관심없음	1.3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음	1.4
계(수) ¹⁾	100.0(149)

註: 1) 중복응답 결과임.

情緒的 虐待는 ‘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등과 같은 욕설을 하는 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집안 일이나 해라’, 집에서 쫓겨나거나 ‘나가 죽어라’ 등의 폭언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放任은 무관심으로 식사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숙제를 해 가는 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 등이었다.

나.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은 월 1회 정도 발생이 35.7%로 가장 높았고, 2~3개월에 1회가 33.1%이었으며, 그리고 주 1회 8.7%, 주 2~3회 5.5%, 거의 매일 6.5%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20.7%나 되어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학대발생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表 9-63〉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頻度

(單位: %)

빈도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1회	2~3개월1회	기타	계(수)
비율	6.5	5.5	8.7	35.7	33.1	10.5	100.0(136)

다.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의 發生理由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加害者가 虐待 및 暴力을 행사하는 理由는 ‘버릇 고친다’ 27.8%, 자녀교육상 문제 27.2%, 그리고 順從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8.5% 등이었다. 이 외에도 經濟的 問題, 性格 差異, 스트레스, 술버릇 등의 다양한 이유에 의한 학대 및 폭력이 발생되고 있었다.

〈表 9-64〉 其他 家族員間的 暴力理由

(單位: %)

폭력이유 ¹⁾	비율
가해자의 열등감, 자격지심	-
친정 소홀히 함	0.7
성격차이	3.3
술버릇	2.6
경제적 문제	6.6
스트레스	3.3
순종하지 않음	18.5
자녀교육상의 문제	27.2
(나쁜)버릇고친다고	27.8
공부안한다고	2.6
기타	7.4
계(수)	100.0(151)

註: 1) 폭력이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결과임.

第 6 節 家族生活과 福祉의 示唆點

本 章에서는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決定하는 要因으로 경제생활, 취업, 자녀양육, 정보생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족의 실질적 경제생활상태를 나타내주는 所得 및 消費分布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49만원 이하의 소득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대체적으로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家計主扶養者의 월 근로소득으로 남편이 가계주부양자일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취업률은 뚜렷이 낮았다. 이러한 性向은 高所得일수록 부인의 취업은 생계비 보조와 관련된 경제적 필요보다는 主觀的 要求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거나 高年齡層이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부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지역 여성보다 결혼 후에도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여성의 결혼후 자녀양육과 농사일의 이중고통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結婚適齡期는 25~29세 연령층을 전후로 가장 높아졌다가 결혼과 함께 낮아지고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지난 30세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하는 현상은 30대 연령의 부인들이 未就業한 理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장 큰 이유가 子女養育問題 때문이었다. 취업 여성의 가구가 저소득층일수록, 특히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원이 없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때 子女養育은 기혼부인의 經濟活動의 障礙要因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분포율을 보면,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기능직, 준전문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은 賃金水準, 雇傭地位 등의 낮은 직업임을 감안할 때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기혼부인의 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心理的 負擔이 얼마나 과중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간이 맞지 않거나 가까운 곳에서 돌봐줄 곳이 없어서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월평균 보육료가 아이를 여러 곳에 맡기면서 들어가는 이중부담으로 고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 등 보육시설의 不均衡 配置와 運營時間에 대한 不滿을 엿볼 수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低學歷, 高年齡女性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경제시장에의 참여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주위에 돌봐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이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勞動市場에 參與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비용은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근소하나마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子女教育이 專門化됨에 따라 유치원,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嬰幼兒子女를 가진 부인의 연령은 30~34세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34세 이하의 부인중 영유아 자녀를 가진 경우, 취업모의 76.5%, 미취업모의 82.4%가 이에 해당하였다.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核心的 形態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就業母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면 보육시설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未就業母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의존하는 兩立形態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혼부인들 가운데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이거나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이 教育效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은 향후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의 質的 向上이 요구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畚的으로 養育責任을 맡으면서 보다 전문화된 교육혜택을 기대하는 관심이 지대함을 시사하

는 것이다.

가족의 情報生活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컴퓨터 이용이 가구원들에게는 타매체 접촉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소시킨 반면 趣味活動 및 社會的 交際時間은 增加시킨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가 가족원들에게 미치는 상당히 肯定的인 側面을 반영해 주고 있다. 특히 중간소득층에게는 그 동안 한정되어있던 생활기회를 넓혀주는 情報化의 效果가 기존의 많은 活用資源으로 인해 가구원 개개인이 다양한 생활경험이 충족된 고소득층보다 크게 느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학업문제나 세대차이,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심화 문제는 정보화에 보다 익숙한 젊은 부부나 형제·자매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1세대 가구 혹은 3세대 이상 가구보다 2세대가구가 더 커서 컴퓨터 활용의 정적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家庭暴力은 15~64세 기혼부인이 있는 가구 중 조사완료된 가구(10,592가구)의 30.0%가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加害者에 따른 暴力類型別로는 아동학대 발생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폭력 발생가구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가구, 그리고 부모학대·폭력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유형별 폭력발생률에는 다른 폭력유형의 중복발생도 포함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 발생은 여러 유형이 중복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家庭暴力 類型別 分布를 보면,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폭력과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폭력,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은 신체적 학대·폭력보다는 정서적 학대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아동학대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보다는 신체적 학대·폭력비율이 높아 성인학대·폭력 유형과 아동학대 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동에게 있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학대·폭력보다 더 큰 心理的 損傷을 입힌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영향력에 대한 豫防的 措置가 時急하다고 사료된다.

가정폭력의 發生頻度에 있어서는 주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폭력유형에 따라서 15~39%까지 나타나 가정폭력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家庭暴力의 發生理由는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폭력이나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폭력 모두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는 共通的인 暴力發生 理由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그 외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폭력은 술버릇, 스트레스, 가해자 열등감, 자각지심 등의 個人的인 要因이, 그리고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폭력은 스트레스, 친절 소홀히 하는 점, 자녀교육문제 등 子女와 家族關聯 問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아동학대와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의 이유로는 자녀의 버릇을 고친다거나 교육상, 순종하지 않아서, 공부 안(못)해서 등이었다. 따라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개선 및 가족원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갈등요인해소를 위한 相談 支援 등의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폭력의 위험성으로부터 가족을 보호·예방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全國規模의 體系的인 實態調査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재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폭력의 豫防과 再發을 防止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실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부모의 훈육으로 인정되는

社會的 霧圍氣 등을 고려하여 이를 不息시키기 위한 社會·문화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즉, 家父長的 文化의 打破, 女權伸張, 兒童의 權利次元에서 아동을 독립적인 人格체로서 인정하는 아동에 대한 認識變化 등이 要求된다.

第 10 章 政策的 含意 및 提言

經濟開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人口增加抑制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와 어우러지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低出產·低死亡率 水準의 人口轉換을 달성하였다. 즉,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合計出產率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에 人口代置水準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 이후 1.6~1.75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유지하였으며, 최근에는 1.425 수준으로 저하하였다. 同 水準은 先進國家群인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한국은 세계적 저출산 국가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수준의 지속적 유지는 人口構造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향후 우리 사회에서 勞動力 不足과 高齡人口의 급속한 增加로 인하여 社會的 負擔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기인되는 男兒選好思想으로 인하여 성 선택적 인공임신 중절이 증가하고, 출생성비 불균형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人口轉換은 장기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형성된 서구 선진국의 인구전환과는 달리 정부차원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실현된 것으로 그 영향은 어느 저출산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適正人口를

상회하는 人口規模로 인해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출산수준 저하의 우려에 대한 反對立場으로서, 1996년 6월의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등 급격한 인구정책의 전환은 그 동안 조성된 低出產 및 避妊實踐의 基盤이 瓦解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本 調査는 1964년이래 18번째이며,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환된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출산력 및 가족보건 관련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로서 전국의 13,429가구를 標本抽出하여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 부인의 出產 및 避妊行態, 家族保健水準의 變化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1세기 人口政策의 基調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사결과는 한편으로 과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조사의 주요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21세기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관련 주요 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場으로서 향후 인구정책의 發展的 戰略을 講究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第 1 節 政策的 含意

본 조사는 다양한 영역의 많은 인구사회학적 현상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풍부한 인구정책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本 節에서는 이들을 모두 나열하기보다는 社會的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 논의를 한다.

1. 1989년 家族計劃事業의 縮小, 1996년 人口增加抑制政策의 廢止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개인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低出產 水準은 持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合計出產率은 1990년 1.6에서 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1993년 1.75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996년 6월 人口增加抑制政策의 廢止에도 불구하고 1996년 1.71명, 1999년 1.425명으로 감소되어 低出產 行態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1996~1999년 3년간에 이루어진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원의 결혼이 연기되고 출산이 포기 또는 지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미혼율의 상승, 소자녀관 정착 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 이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年齡別 出產率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가진다. 첫째, 합계출산율에 대한 25~29세 寄與率은 1993년 55.9%, 1996년 52.8%, 그리고 1999년에는 49.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高出產層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4세 및 35~39세 연령층의 出產率이 급격하게 低下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세 연령층의 出產率 減少는 女性의 教育水準의 向上과 雇傭機會의 擴大, 結婚年齡의 上昇에 기인하며, 35~39세 연령층에서의 出產率 減少는 少子女觀의 形成에 따른 避妊實踐率의 增加와 人工妊娠中絶의 擴散, 그리고 既婚女性의 就業率 增加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30~34세 연령층의 出產率 上昇이 엿보이는데, 이는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出產率 低下要因인 結婚年齡 上昇으로 인한 파급효과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다소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出産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人口政策 次元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니며, 母子保健 側面에서 産前 및 産後管理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부인의 妊娠經驗과 임신종결형태 중 妊娠消耗는 감소하고 正常出生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의 피임보급과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妊娠消耗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특히 자연유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부인의 임신경험은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1991년 44.9%, 1994년 31.7%, 1997년 29.2%), 2000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다음을 차지하여 부인의 평균임신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1994년 3.0회, 1997년 2.8회에서 2000년에는 2.7회로 감소하였다.

평균임신횟수는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임신경험횟수는 부인연령과 正比例하고, 교육수준과는 反比例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經濟水準의 向上 및 醫學技術의 發達에 따른 嬰兒死亡率의 減少, 避妊實踐의 生活化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경험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63.8%로 1994년 61.0%, 1997년 62.9%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임신소모는

34.0%로 1994년 36.9%, 1997년 35.5%보다 감소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과 질적 모자보건사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妊娠消耗率의 低下速度가 遲滯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이 양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質的 側面的 개선에는 문제점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임신소모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임신소모를 보이는 人工妊娠中絶은 24.1%로 1994년의 28.3%보다 감소하였고, 自然流産은 9.7%로 1994년 8.2%, 1997년 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 임신 중 死産으로 종결된 비율은 0.3%로 1994년의 0.4%, 1997년 0.3%와 유사한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전체 임신 중 妊娠消耗로 終結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부인의 임신소모는 아직 높은 수준에 있으며, 人口資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死産과 自然流産은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의 否定的 影響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효과적 피임사용을 증대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靑少年 生殖保健에 대한 교육이 制度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1989年 以來 政府支援에 의한 避妊普及物量이 대폭 縮小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避妊實踐率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임실천을 內容的 側面에서 살펴보면,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하나는 피임실천자가 女性爲主에서 이제는 男性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性 平等的인

측면이 었보였으며, 다른 하나는 永久的 避妊보다는 一時的 避妊을 選好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79.3%로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나 이는 폐경, 자궁적출 등에 의한 임신불가, 자연불임, 임신중인 경우 등을 감안할 때 피임실천의 限界水準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고 인구정책이 人口資質 및 福祉政策으로 轉換된 이후에도 높은 피임실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避妊實踐이 生活化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정부정책의 초점이 여성에게 있었던 만큼 女性避妊方法인 난관수술이 主導를 하였으나, 정부보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의존도는 낮아지고 男性避妊方法인 정관수술과 콘돔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피임실천이 여성피임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性平等的 現象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피임실천율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및 기타 피임방법 등 一時的인 避妊方法으로 轉換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방법의 사용증가로 원치 않는 妊娠에 露出될 可能性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피임실천의 목적은 68.8%가 斷産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7.4%, 그리고 건강이나 취업 또는 經濟的인 理由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전체 피임실천율 79.3%중에서 단산의 효과가 가장 높은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31.3%로 나타나 피임실천자의 39.5%만이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자였다. 따라서 많은 부인이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하여 斷産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효과적 측면에서 일시적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계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追加子女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妊娠露出狀態의 부인이 각 연령층에 산재해 있어 人工妊娠中絶의 우려가 높다.

妊娠의 危險에 露出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추가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68.5%,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3.3%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2.9%,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集中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자녀희망(+)	추가자녀비희망(-)	
피임실천(+)	A(13.3%)	B(68.5%)	81.8%
피임비실천(-)	C(12.9%)	D(5.3%)	18.2%
	26.2%	73.8%	100.0%

추가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5.4%)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7%)보다 약간 많았고, 25~2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며(6.7%), 40~44세 연령층(6.3%)을 제외하

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7.0%,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8.7%,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11.7%가 이와 같은 不願妊娠 危險集團이었다.

5. 婦人の 人工妊娠中絶率は 持續적으로 低下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男兒選好에 의한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이 잔존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나라 부인의 出産力 低下에 기여해온 주요 요인의 하나였던 人工妊娠中絶率は 199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 주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의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6년 79, 1999년 53으로 나타났으며,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물렀다. 30~34세 연령층은 1996년 49, 1999년 33으로 현저한 저하추세를 보였다. 또한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999년 12로 나타났고, 40~44세 연령층은 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低下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률에 힘입어 부인의 39%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1980~1990년대 초반의 52~54%, 1994년 49%, 1997년 44%보다 저하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의 누적적 개념인 평균횟수는 1994년의 0.8회에서 1997년과 2000년은 동일한 수준인 0.7회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저하양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人口資質 向上側面에서 不願妊娠의 豫防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경험한 人工妊娠中絶의 受容理由는 追加子女 不願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20.5%, 妊婦의 健康과 婚前妊娠이 각각 9.5%, 경제적 곤란 6.6%, 태아이상 4.8%, 남아선호에 의한 性選擇의인 경우 1.8%, 그리고 가정문제 1.5% 등이었다. 따라서 모자보건 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合法的 人工妊娠中絶은 14.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不法的 人工妊娠中絶이었다. 특히 婚前妊娠에 의한 人工妊娠中絶은 동부지역 거주부인 9.7%,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7.2%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의 強化와 避妊普及이 制限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不法的 醫療行爲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 性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은 동부지역 거주부인 1.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0.9%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체 부인의 78.6%가 性鑑別後의 人工妊娠中絶行爲를 반대하였고, 3.7%는 찬성하였다. 이는 1997년의 반대 73.5%, 찬성 8.3%와 비교하여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性選好에 기인하는 인공임신중절행위를 否定的으로 받아들이는 부인의 태도가 실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과 함께 性平等的 社會具顯을 위한 制度的 改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겠다.

6. 妊産婦의 産前 및 産後受診率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施設分娩率도 상승하고 있어 안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帝王切開에 의한 分娩率 增加와 母乳授乳率의 低下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8년부터 2000년 6월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15~44세 유배우부인의 産前受診率은 부인의 특성(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과 관

계없이 모든 부인이 100.0%로 완벽하게 나타났다. 또한 産後受診率은 1988년 52.3%에서 1997년 81.0% 2000년에 8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최종출생아의 施設分娩率은 1997년 99.7%에서 2000년 99.9%로 더욱 증가하여 대부분의 부인이 시설에서 분만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분만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1997년까지만 해도 분만이 종합병원 등의 대형의료기관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에는 일반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施設分娩의 普遍化는 안전분만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진 동시에 1989년이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醫療保險의 實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출생아의 帝王切開에 의한 分娩率은 1988년 11.9%, 1991년 17.3%, 1994년 31.5%, 1997년 35.9%, 2000년 37.7%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부인의 教育水準과는 負(-)의 관계, 出産時 婦人年齡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帝王切開의 주된 理由로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인 관계가 25.1%, 산모이상 23.1%, 태아이상 20.2%, 산모의 건강상 이유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心理的 理由인 ‘自然分娩에 대한 두려움’에 의한 제왕절개는 1997년 3.4%에서 2000년 7.3%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非醫學的 理由에 의한 제왕절개가 증가하고 있었다.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출생한 最終出生兒의 授乳方法을 살펴보면, 母乳授乳率이 10.2%로 1997년 조사결과인 14.1%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를 수유하지 않거나, 하다가 중단한 부인의 조사당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이유로는 ‘모유가 부족하거나 안나와서’가 4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젖을 땄 시기가 되어서(13.4%)’, ‘엄마의 건강상 이유(9.3%)’, ‘아기의 건강상 이유(8.6%)’등 순이었다.

BCG 豫防接種率은 99.6%로 거의 모든 출생아가 예방접종하고 있었

으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폴리오 등을 예방하기 위한 DTaP 1차 접종률은 98.7%, 2차 접종률은 98.0%, 그리고 3차 접종률은 95.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후 18개월시 접종하는 DTaP 追加接種率은 75.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접종하는 MMR의 예방접종률은 90.2%이었다. 간염 예방접종률은 1차 98.3%, 2차 94.8% 그리고 3차 80.4%로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방접종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최근 結婚樣相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出産率 低下, 平均壽命의 延長 등과 함께 家族週期の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變化를 先導하고 있었다.

배우자 선택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전 최장거주지 등에 있어 同質婚의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연하 남성의 비율도 증가하며, 재혼비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結婚樣相이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解體家族과 再婚家族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 家族週期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各 段階別 期間의 變化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의 가족주기는 결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 수의 감소, 자녀터울의 단축,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혼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짧아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후 노인부부 또는 여자노인 혼자 남는 시기는 점차 길어지는 特徵을 보이고 있다.

결혼후 첫째아 출산 전까지의 젊은 부부만의 기간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4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2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配偶者 死亡時까지 老人夫婦만의 期間은 195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9.5년이었으나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9.3년으로 약 10년 정도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부터 남편사망시까지의 夫婦結婚期間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에 있어 夫婦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수 감소에 따른 子女養育期間의 短縮은 기혼부인들의 就業率을 높이고 있어 자녀 양육과 노인부양에 여성이 담당하던 영역이 점차 社會的 機能으로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8. 結婚과 關聯된 價値觀과 子女價値觀은 西歐化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男兒選好價値觀도 弱化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殘存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러한 價値觀이 實際 行爲로 연결될 경우 不法的 醫療行爲에 의한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에 대하여 消極的 및 否定的 態度를 보이는 부인은 43.6%이었고, 積極的 또는 肯定的 態度를 보이는 경우는 55.6%로 나타나 결혼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지만 점차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離婚에 대하여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52.8%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경우는 30.2%,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각각 3.3%와 12.2%

로 積極的인 態度를 보인 경우도 있어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45.7%나 되었다. 또한 再婚에 대해서는 16.8%가 찬성을, 30.3%가 반대를 하였으며, 46.5%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보였다.

한 夫婦가 結婚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부인은 58.1%로 낮았으나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41.5%로 높았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0.0%나 되었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理想子女數는 2.2명으로 1985년 이후 계속적으로 人口代置水準(2.1명)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5~44歲 有配偶婦人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6.2%로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39.5%로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心理的 滿足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家庭幸福이 4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지표는 1997년도 조사에서도 각각 69.6%, 41.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精神的 滿足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主流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 選好的 態度를 가진 비율은 젊은 연령층의 부인(15~24세 34.9%),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35.9%), 그리고 자녀수가 적은 부인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女性的 教育水準 向上에 의하여 개선될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도 많은 부인이 前近代的 思考方式에 젖어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性 差別的 要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9. 家族關係는 男性家長中心에서 全體 家族員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점차 夫婦中心의 家族關係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또한 과거의 性 役割分擔의 행동양식은 감소되고 있어 性 平等的이고, 能力中心의 均等負擔의 生活方式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과 많은 남성은 傳統的인 家父長制의 價値觀의 鄉愁에 젖어 社會變化에 適應을 하지 못하고 文化的 遲滯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家族葛藤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부인의 74.9%가 동의를, 17.2%가 반대를 하여 많은 부인이 결혼은 개인당사자의 관계보다는 가족과 가족간의 관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27.1%가 이에 대하여 ‘(매우)동의’를, 48.3%가 ‘(절대)반대’를 하고 있어 부부간의 성생활만족 여부가 결혼관계 지속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40.0%가 찬성을, 53.0%가 반대를 하여 자녀의 성취를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에 대해서는 否定的 態度가 좀 더 優勢한 것으로 나타났다. 父母—子女關係의 價値觀을 보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96.3%가 ‘(매우)동의’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불과 1.6%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에서 77.0%가 (절대)반대를, 14.4%가 (매우)동의를 하고 있

어 子女의 扶養責任과 별도로 老父母 奉養의 責任을 중요시¹¹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하여는 71.4%가 ‘(매우)동의’ 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4%로 나타나 많은 부인이 남편이 자녀보다 본인에게 더 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戶主相續에 대한 태도는 ‘아들, 딸 누구든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부인이 49.5%, ‘되도록 아들이어야 한다’는 부인은 21.7%,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18.7%, 그리고 ‘딸, 아들 중 더 나은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7.3%로 나타났다.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를 맡는다’는 傳統的 態度를 支持한 부인은 23.0%에 불과한 반면,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가사를 맡되, 남편이 돕는다’ 및 ‘남편, 부인 모두 돈을 벌고 가사를 반반씩 맡는다’는 61.1%가 지지하였다. 따라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맞벌이에 대한 욕구는 향후 夫婦間 役割分擔의 形態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 既婚女性의 就業은 증가하고 있으나 從事職種은 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 單純勞務職 등이 많았다. 취업이유는 ‘生計維持型 就業’과 ‘內助型 就業’이 많았으며, 여성의 自我成就 등을 위한 就業도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專門職 女性의 增加와 함께 이러한 ‘自我成就型 就業’

110) 노후 독립 생활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통계청(1997, 1999)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994년 87.3%(여성의 경우 85.8%)에서 1998년 89.9%(여성의 경우 89.1%)로 증가함. 단, 사회변화에 따라 노부모부양 태도는 장자 중심에서 아들·딸 모두 또는 능력있는 자녀 등으로 그 부양주체가 보다 다원화, 남녀평등화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5.5%이었으며,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은 현재 46.0%가 취업을 하고 있고, 결혼전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은 44.3%가 취업을 하고 있어 1.7%포인트의 차이만을 보였다. 취업률은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졌다. 따라서 結婚과 子女出產 및 養育이 미혼 및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與를 妨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취업중인 부인들의 職業 分布率은 서비스·판매직이 39.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單純勞務職(17.9%), 技能職(10.1%), 準專門職(9.1%)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이 賃金水準, 雇傭地位 등이 낮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1997년 이후 기혼부인의 職業地位가 전반적으로 低下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혼부인들의 취업 이유는 75.2%가 ‘生活費 補助를 위해서’라고 하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社會的 成就와 自己發展’이 13.6%, ‘子女教育費 充當’을 위한 취업은 7.4%, ‘시간이 많아 지루해서’, ‘老後對策 마련’ 1.5% 등이 있었다. 未就業 理由를 살펴보면, 子女養育問題로 인한 미취업이 전체의 4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리가 없어서’(18.1%), ‘가사전념’ 및 ‘본인건강’(10.7%씩) 등이었다. 특히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미취업은 부인연령이 30대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전적으로 양육책임을 맡고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嬰幼兒 子女의 養育에 관심이 지대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1. 嬰幼兒 子女의 保護는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未就業母 뿐만 아니라 就業母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를 돌

봐 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經濟的 또는 施設 環境的 理由로 이에 依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특히 2세 이하의 嬰兒의 경우에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영유아는 다양한 형태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嬰幼兒 養育形態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53.5%를 차지하였으며, ‘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존’ 9.1%, ‘유치원에 전적으로 의존’ 8.6%, ‘어머니가 돌보면서 보육시설에도 보내는 경우’ 8.3%, ‘어머니가 돌보면서 유치원에도 보내는 경우’ 8.1% 등의 順이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保育施設 利用率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저조하였으며, 이는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게 안심’이 되기 때문’이 많아 보육시설의 이용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였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92.8%이었으며, 취업부인의 경우는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就業婦人이 保育施設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교육효과가 큰 기관인 학원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기를 희망하거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보육시설의 實際 利用率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個人主義的 價値觀, 經濟的 困難, 夫婦葛藤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家庭暴力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특히 兒童虐待와 婦人虐待에 대하여는 강력한 정책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5~64세 기혼부인이 있는 가구 중 30.0%의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暴力 類型別로는 부부폭력은 7.4%, 아동학대 24.7%,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0.1%, 그리고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폭력은 1.0%이었다. 본 조사에서의 兒童虐待의 加害者는 98.7%가 부모이었으며, 이 중 85.6%가 어머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의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 모두 40대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등의 순이었다. 이 외 가해자는 60대에서, 그리고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남편 47.5%, 부인 46.4%로 가장 높았다.

第 2 節 政策的 提言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은 短期的으로는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對應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長期的으로는 적정인구규모의 산출과 인구구조의 적정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適正 出產率, 死亡率, 人口移動 등을 調節하기 위한 體系를 構築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家族計劃事業,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生殖保健 關聯事業의 體系化 및 內實化를 통하여 人口의 資質向上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倍加되어야겠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들 출산력 및 가족보건의 변화수준과 제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人口資質 및 福祉 次元에서의 主要 政策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適正出産率을 算出하고 이를 達成 및 維持하기 위한 長·短期 社會政策을 마련하여 汎政府的 次元에서 體系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적정 출산율을 산출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먼저 出産率을 다양하게 假定하고 死亡率 및 人口移動의 假定과 함께 人口推計를 실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서구 선진국의 人口轉換過程에서 경험한 많은 問題點을 最小化시킬 수 있는 人口構造의 適正模型을 생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低出産 國家에서 適正出産率의 유지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은 서구 선진국의 많은 경험에서 보았듯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즉,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수준의 회복이 성공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人口政策動向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 알맞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出産率이 人口代置水準(TFR 2.1)의 70% 수준까지 저하한 근본 원인은 前述(제10장 제1절)한 바와 같이 기혼부인의 少子女觀 定着과 미혼남녀의 結婚遲延 또는 忌避現象이 병존한 결과이며, 최근에는 後者가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점차 西歐化, 個人主義化되고 있는 미혼남녀의 結婚價値觀을 변화시켜 家族의 重要性을 인식시키고 家族形成에 대한 觀心을 증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여성의 自我成就를 위한 欲求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으로 결혼이 경제활동에의 障礙要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保育政策의 內實化, 出產休暇期間의 擴大, 育兒休職의 活性化 對策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家事役割이 性 平等次元에서 分擔될 必要性이 있다. 물론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의 가사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인이 담당하는 가사를 支援하는 자세가 아니라 平等한 關係에서 家事를 分擔하려는 男便의 態度變化가 필요하다.

2. 效率的 避妊實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避妊普及 및 管理의 死角地帶와 非效率的 避妊方法 利用者에 대한 철저한 事後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피임보급물량 감소, 가족계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피임은 개별부부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避妊失敗妊娠과 妊娠露出婦人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 부인은 임신이 될 경우 人工妊娠中絶로 歸結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一時的 避妊方法에 의한 避妊實踐率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失敗妊娠을 豫防하기 위하여 피임방법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겠다.

둘째, 부부의 性生活 行態에 따라서는 일시적 피임방법보다는 효과가 높은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방법으로의 轉換을 誘導하는 것이 失敗妊娠을 豫防하고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특히 追加子女를 원하지 않는 高年齡層 婦人의 임신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을지라도 임신이 될 경우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 연령층 부인에 대한 持續的 管理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넷째, 최근 男性에 의한 避妊實踐率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수술 또는 콘돔에 의한 피임수용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콘돔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계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병 및 에이즈의 예방하는 측면에서 接近度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3.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기혼부인의 否定的 態度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弘報啓蒙이 강화되고, 性 平等的 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制度的 補完이 지속화되어야 한다.

少子女觀의 정착으로 2명 이상의 女兒을 가진 부인은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行爲에 대해 否定的인 견해가 0~1명의 女兒 또는 男兒를 가진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부인의 태도가 직접 行爲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여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키고 人命尊重의 思想을 鼓吹하며, 그리고 出生性比의 不均衡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男兒選好價値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傳統的 意識構造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및 사회에 잔존해 있는 다

양한 형태의 가부장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社會運動과 制度改善이 뒤따라야겠다.

둘째, 胎兒 性鑑別과 性 選擇的 人工妊娠中絶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不法的 醫療行爲인 性鑑別을 실시하는 醫療人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關聯團體의 자율적인 自淨努力 및 監視活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행위를 요청하는 依頼人에 대한 處罰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4. 妊娠消耗를 감소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教育 및 制限的 避妊普及, 妊産婦의 체계적 및 효율적 産前管理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妊娠消耗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첫 임신이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에 다음 임신은 自然流産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吸煙, 飲酒의 危害性을 적극 홍보하여야겠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을 통한 性教育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避妊使用의 效果的 方法, 性暴力 豫防 및 對處方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靑少年에 대한 制限的 形態의 避妊普及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性 開放 물결로 인한 婚前妊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임신의 대부분이 人工임신중절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5. 人口資質向上을 위해서 母子保健事業의 內實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 부인의 産前受診率이나 施設分娩率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 自然流産, 死産 등 妊娠消耗率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母子保健事業 評價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겠다.

첫째, 자녀를 원하는 부인에 대하여는 임신여부에 불문하고 ‘行動準則’의 제공으로 홍보·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妊産婦에 대하여는 産前受診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質的 管理를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증가하고 있는 帝王切開에 의한 分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약절개의 分娩基準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日本의 경우처럼 分娩을 醫療酬價 適用에서 제외하거나 非醫學的인 理由에 의한 제약절개의 費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低體重兒의 출생으로 인한 新生兒 및 嬰幼兒期의 死亡과 疾病罹患率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高危險婦人群을 집중 대상으로 저체중아의 출생방지를 위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初婚年齡의 상승으로 출산시기가 20대에서 30대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自然流産이나 畸形兒 發生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기간 중 畸形兒 檢査, 출산후 선천성대사이상의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妊産婦와 出産兒의 健康管理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유아의 건강 및 지능발달을 위해서 母乳授乳率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公共機關과 民間醫療機關이 상호 협조하여야겠다.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社會的 環境의 造成이 필요한데, 이는

出産休暇期間의 延長과 育兒休職制度의 內實化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低出産觀의 定着, 平均壽命의 延長 등으로 인한 家族週期의 全體 및 段階別 期間의 變化양상을 적극 고려한 家族福祉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의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과 단계별 기간의 변화는 夫婦關係의 중요성과 老人夫婦 및 獨居老人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夫婦關係의 重要性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平等的, 協力的 夫婦關係 定立을 위한 노력을 위한 社會的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의 고령화 추세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부 및 여성노인단독가구를 위한 老後所得保障策 擴充, 노인 성질환관리를 위한 地域保健事業 活性化 및 在家福祉서비스의 擴大實施 등이 요구된다.

7. 經濟的 豊饒의 追求, 女性의 自我成就에 대한 欲求增大, 出産負擔의 減少 등으로 인하여 既婚女性의 就業希望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活性化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家庭 및 職場生活의 兩立을 위한 支援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의 경우에도 自我成就 및 家族所得支援을 위한 婦人就業은 普遍化될 전

망이다. 따라서 이들의 就業欲求를 증대시키고 취업으로 인한 子女養育負擔을 감소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多様な 就業職種의 개발, 職級別 割當制 실시, 就業年齡의 制限撤廢 등을 통하여 就業의 門을 넓히고, 職業訓練·教育의 強化를 통하여 여성의 資質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에 알맞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就業希望者와 採用機關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实效性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혼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保育施設의 地域的 均衡設置를 기하고, 運營의 內實化를 도모하며,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채택되고 있는 育兒休職制度和 家庭看護休職制度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活用度가 매우 낮으므로 制度의 補完 및 改善를 통한 內實化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同 制度가 民間領域에까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誘導하고 稅制惠澤이 병행되어야 한다.

8. 최근의 經濟的 어려움과 個人主義的 價値觀의 蔓延 등으로 인하여 家族葛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核家族 制度 하에서는 이를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는 裝置가 없어 家庭暴力 등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夫婦關係를 포함한 家族關係의 質을 低下시켰으며, 심지어 家族解體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았다. 특히 우리 나라 父母의 子女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數의 子女를 됨으로써 더욱 강하

게 나타나 兒童虐待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政策的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家族關係에서 夫婦關係, 父母—子女關係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최근 西歐化의 영향으로 夫婦關係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對話와 技術이 부족하여 갈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夫婦暴力으로까지 비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부인학대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또한 자녀를 부모의 所有物로 생각하고 있는 家父長制的 價値觀과 자녀에 대한 過度한 期待, 그리고 夫婦葛藤은 兒童虐待를 야기하고 있어 社會問題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부부간 對話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원만한 對話를 위한 技術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이상의 教育課程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社會教育에서도 이를 위한 講座가 다양하게 開設될 필요가 있다.

둘째, 父母—子女間의 關係는 支配—服從의 關係가 아니라 平等한 人格體로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홍보·계몽이 있어야겠다. 특히 자녀를 부모의 所有物로 여기거나 代理成就를 위한 道具로 생각하고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葛藤은 兒童虐待로 연결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는 汎 社會的 運動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 선진국가가 약 100년에 걸쳐 이룩한 低出產·低死亡 水準의 人口轉換을 30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일구어 냈다. 이는 정부의 人口增加抑制政策과 經濟, 社會, 文化的 發展이 조화를 이루어 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1996년 정부에서 단행한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低出產率과 높은 避妊實踐率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出産 및 避妊의 行態가 安定的인 樣相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근의 과도한 低出産率은 장기적으로 人口構造의 不均衡을 초래하여 社會經濟的으로 否定的 影響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長·단기 政策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人口資質 向上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社會的 및 保健醫療的 側面에서 强구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避妊實踐率과 완벽한 수준의 産前·産後管理에도 불구하고 表출되는 많은 문제점과 잔존하고 있는 男兒選好를 拂拭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强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적정수준의 出産率 維持와 人口資質 向上이 동시에 追求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1권, 전국편, 1977.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 공세권 외 3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공정자, 『재벌가의 혼인유형』,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까치, 1990.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 김기환,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을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호, 1995.
-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http://root.re.kr/ho/ho-forum1.htm>, 2000.
- _____,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승권 외,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재엽, 「한국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6호, 1998.
-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사회복지학회, 1998.
- _____, 「한국인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상」,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 토론회』, 보건복지부, 2000.
- 문현상·함희순·신성희,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문현상 외 3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문현상 외 3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 박민자,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1992.
- 박병태·최병목·권호연,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 박정환 외, 「분만방법 및 수유지도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3권, 1999.
- 보건복지부, 『2000년도 가족보건사업 안내』, 2000.
- _____, 『가족보건사업지침』, 1997~1999 각 연도.
- 엄명용, 「가정폭력 추이: IMF전과 후의 비교」, 『가정폭력 대응전략

-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보건복지부, 2000, 10.
- 윤성도, 「제왕절개술에 대한 반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창간호, 1997.
- 윤종주, 「우리 나라 가구구성의 변화추이」, 『인구문제논집』 제28호, 인구문제연구소, 1994.
- 이무식 외, 「산모의 임신전 비만지수, 임신중 체중증가와 출생아 체중과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3권, 1999.
- 이영분·양심영,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1999.
- 장경섭,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적 모순」, 『철학과 현실』, 제22호, 1994.
- 장현섭,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문학과 지성, 1993.
- 정 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조정문,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및 세대공동체」, 『사회조사연구』, 제12권, 제1호, 부산대사회조사연구소, 1997.
- 조정문 외,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33집, 여름호, 1999.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_____, 『1995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6.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_____,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특성 변화』,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종합분석 사업보고서(7-2)』, 1997.
- _____,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종합분석 사업보고서(7-1)』, 1997.
- _____,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7.
- _____,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5 인구주택 총조사 종합분석 사업보고서(7-3), 1997.
- _____, 『사회통계조사』, 1999.
- _____,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99, 2000.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례 및 성묘 실태와 변화방향』, 2000.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1999.
- 한국전산원, 『정보화와 삶의 질』, 1996.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2000.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정보화 실태조사 연구』, 1997.
- _____, 『청소년 정보화 실태와 새로운 정책의 방향』,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 한영자 외, 『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홍문식 외 3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Binkin N. J., Yip, Fleshood I. Trowbridge F. L., "Birth Weight and Childhood Growth", *Pediatrics* Vol.82, 1988, pp.828 ~ 834.
- Hamson L. A., Winberg J. Breast Milk and Defence Against Infection in the Newborn, *Arch Dis Child*, Vol.47, 1972, pp.845 ~ 848.
- Kramer M. S., Determinants of Low Birth Weight: Methodological Assessment and Meta-analysis, *Bulletin of WHO*, Vol.65, No.5, 1987, pp.663 ~ 737.
- Lawrence R. A., *Breast-feeding: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 C. V. Mosby, St. Louis, 1980.
- Niswander K. Jackson E. C.,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Gravida and their Association with Birth Weight and Perinatal Death, *American Journal Obstet Gynecol*, Vol.136, NO.44, 1980, pp.1 ~ 20.
- Schechter, 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Empowering Battered Women" in M. Strauss(ed.), *Abuse and Victimization Across the Life Sp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Sciarrà, John J., "Infertility: A Global Perspectives on the Role of Infec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New York), No.626, 1991, pp.478 ~ 483.
- Sherris, Jaqueline D., and Gordon Fox, "Infertilit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 Public Health Challenge", *Population Reports*, Series L. No.4(July),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s, 1983.
- Straus, M. A. and R. J. Gelle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1990.

- Tang, So-kum, "Prevalence of Spouse Aggression in Hong Ko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No.4, 1994.
-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oward a New Century of Equality and Symbiosis*, The Mainichi Shimbun, 1996, Tokyo, Japan.
- U. N., *1997 World Population Data Sheet*,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nc., 1997.
- Waite, L. J., "Working Wives and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6, 1980.
- Wang X, Huyer B. Paige D. M., "Difference in Gestational Age Specific Birth Weight among Chinese, Japanese and White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Vol.23, NO.1, 1994, pp.119~128.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Information Statistics*, 1999.

附 錄

附錄 1. 標本設計 概要

附錄 2. 主要 統計表

附錄 3. 調查票

附錄 4. 調查地域

附錄 1. 標本設計 概要

1. 標本調査區 抽出의 企劃段階에서 考慮된 事項

가. 주어진 條件

1) 調査規模

조사의 기획단계에서 조사규모는 주어진 예산, 조사관리능력 및 1997년도 조사경험 등을 綜合적으로 고려하여 200개 조사구의 약 13,400가구로 결정하였다(조사구당 평균 67가구). 따라서 調査未完率을 10%로 가정하면 약 12,00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現地 調査팀의 編成

현지 조사는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13개로 편성하여, 각 팀이 주어진 일정에 따라 1개 조사구의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조사구로 이동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이 때, 각 조사구의 실제 조사 소요기간은 67가구의 調査業務量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키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구별 조사 가구수는 65~69가구가 되어야 한다.

3) 洞地域과 邑·面地域의 標本調査區數

家族福祉政策수립을 위하여는 基本項目에 대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별 추정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200개의 標本調査區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가구수에 비례하는 79:21로 배분하면, 동지역에 158개 조사구와 읍·면지역에 42개 조사구가 배분된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표본조사구수가 42개로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의 생산이 곤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지역에 2배의 加重値를 適用하여 배분하면 $65:35(79+21 \times 2 = 121)$, 동지역 $79/121= 65$, 읍·면지역 $21 \times 2/121 = 35$ 가 되므로, 이에 따라 동지역에서 130개 조사구와 읍·면지역에서 70개 조사구를 추출하여야 한다.

나. 標本調査區 抽出 基礎資料

1) 1995년 人口住宅總調査의 調査區 資料

표본조사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施設單位 調査區를 제외한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 중에서 추출기로 하였다.

실제적으로 標本調査區를 抽出하게 되면 65가구 미만이거나 70가구 이상인 조사구도 많이 추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65가구 미만인 조사구가 추출되면 경계선과 인접한 조사구 밖의 거처(living quarter, 居處)를 포함시켜 65~69가구가 되도록 경계선을 확대하고, 70가구 이상인 조사구의 경우에는 경계선 인접의 일부 거처를 제외시켜 65~69가구가 되도록 境界線을 縮小기로 하였다.

2) 新築 아파트 資料

현지 조사과정에서 표본조사구 내에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주택의 신축으로 가구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도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 신축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1995. 11. 1) 이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본조사구를 추출기로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신축

아파트 자료를 수집 중이었던 中間集計結果에 의하면 1,336,000가구분의 아파트가 신축되었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가구수는 12,970,000가구이므로, 200개 조사구를 이들 2개 자료의 가구수에 比例配分하면, 인구주택총조사 부문에 181개 조사구와 신축 아파트 부문에 19개 조사구가 배분된다. 따라서 200개 조사구 중에서 19개 조사구는 신축아파트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2. 標本調査區의 抽出

가. 人口住宅總調査의 調査區를 利用한 標本調査區 抽出

1) 調査區의 層化 및 層別 標本調査區수의 決定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잠정집계에서 사용된 조사구별 자료에서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998개 조사구(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개 층으로 層化하였다.

제1층 : 7대 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

제2층 : 기타 시의 동

제3층 : 읍·면

이 때,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9년 10월말까지의 기간 중에 일반 시에서 광역시로, 면에서 읍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行政區域이 變更된 지역의 조사구는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랐다. 따라서 1999년 11월 1일 기준의 행정구역에 따라 層化한 결과가 되었다.

각 층에서는 조사구를 1차적으로 住宅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렬하였다.

① 단독주택이 많은 조사구

- ② 아파트가 많은 조사구
-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많은 조사구
- ④ 기타 조사구

주택특성에 의한 각 분류 내에서는 다시 행정구역번호 및 조사구번호 순서로 다시 정렬하였다. 이때 행정구역번호는 1999년 11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번호를 사용하였다. 각 층별로 조사구를 이와 같이 정렬한 다음에는 각 조사구의 일반가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測度(MOS, measure of size)로 부여하였다.

結果적으로 220,998개 조사구의 총 가구수는 12,969,690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따라서 조사구당 平均 家口數는 58.7가구가 된다. 그리고 각 조사구에 크기의 측도를 부여한 결과의 크기의 測度의 合計는 2,595,215가 되었다. 이에 관한 層別 內譯은 <附表 1> 과 같다.

<附表 1> 人口住宅總調查區의 層別 家口數 및 크기의 測度(MOS)

층	조사구수	가구수	MOS	평균 가구수
(1) 7대 시의 동	108,208	6,281,200	1,256,890 (48.6)	58.0
(2) 기타 시의 동	65,346	3,858,702	772,303 (29.8)	59.1
(3) 읍·면	47,444	2,829,788	566,022 (21.8)	59.6
계	220,998	12,969,690	2,595,215 (100.0)	58.7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동지역인 제1층과 제2층의 크기의 측도는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인 제3층의 크기의 측도는 2배를 하여 181개 조사구를 각층에 比例配分한 결과를 층별 표본조사구수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附表 2> 와 같다

〈附表 2〉 人口住宅總調查區의 層別 標本調查區數 配分 內譯

층	MOS	가중치	가중치 적용 MOS	표본조사구수
(1) 7대 시의 동	1,256,890	1	1,256,890 (39.76)	181×0.3976 = 72
(2) 기타 시의 동	772,303	1	772,303 (24.43)	181×0.2443 = 44
(3) 읍·면	566,022	2	1,132,044 (35.81)	181×0.3581 = 65
계	2,595,215	-	3,161,237 (100.00)	181

2) 標本調查區의 抽出

각 층에서는 〈附表 2〉에서 결정된 수의 표본조사구를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계통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결과의 총 가구수는 조사구당 평균 66.7가구인 12,068가구가 되었으며, 가구수에 관한 층별 세부 내역은 〈附表 3〉과 같다.

〈附表 3〉 人口住宅總調查區 中에서 抽出한 家口數別 調查區數

층	계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1) 7대 시의 동	72	5	8	12	27	16	4	-
(2) 기타 시의 동	44	3	5	7	17	8	2	2
(3) 읍·면	65	1	2	10	26	19	3	4
계	181	9	15	29	70	43	9	6

표본조사구에 대하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를 복사하여 조사구요도에 노란 형광색으로 조사구 경계선을 표시하였다. 조사구요도는 동·읍·면별로 각각 항공측량 약식현황도의 전사과일에 조사구 경계선을 그려 넣고 조사구별로 A3규격의 용지에 출력한 것에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단계에서 수정·보완하여 각 거처에 거처번호와 가구수를 기입한 調查區 現況圖이다.

조사구요도에 노란 형광색으로 조사구 경계선을 표시할 때에 65가구 미만인 조사구에서는 경계선에 인접한 조사구 밖의 일부 거처를

연속하여 포함시키고, 70가구 이상이 되는 조사구에서는 경계선에 인접한 거처부터 일부의 거처를 連續적으로 除外시켜, 65~69가구가 되도록 경계선을 縮小 調整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크기의 측도를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181개 표본조사구의 總家口數는 12,151가구가 되었으며, 조사구당 平均 家口數는 67가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층별 세부내역은 <附表 4> 와 같다.

<附表 4> 人口住宅總調查區를 利用한 標本調查區 抽出 및 境界線 調整 結果

층	조사구 수	최초 가구수	조정 내용		조정결과 가구수	평균 가구수
			추가	제외		
(1) 7대 시의 동	72	4,735	210	106	4,839	67.2
(2) 기타 시의 동	44	2,897	119	77	2,939	66.8
(3) 읍·면	65	4,436	100	163	4,373	67.3
계	181	12,068	429	346	12,151	67.1

나. 新築 아파트에 대한 標本調查區 抽出

1) 新築 아파트의 層化 및 層別 아파트의 整列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1995. 11. 1)이후 1999년 10월말까지의 준공 검사가 완료된 1,336,330가구분의 신축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3개 층으로 층화하였다.

제4층 : 7대 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

제5층 : 기타 시의 동

제6층 : 읍·면

그리고 각 층에서는 아파트를 구·시·군의 ‘가나다’ 순서로 정렬하였으며, 각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여부를 불문하고 아파트의 호수를 5

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크기의 측도로 부여하였다.

2) 標本 아파트의 抽出 및 標本調査區의 設定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자료에서 층별 표본조사구수를 결정할 때와 같이 동지역인 제4층과 제5층의 크기의 측도는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인 제6층의 크기의 측도는 2배를 한 결과에 19개 조사구를 비례배분한 결과를 층별 표본조사구수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附表 5> 와 같다.

<附表 5> 新築 아파트의 層別 標本調査區數 決定 內譯

층	가구수	MOS	가중치	가중치 적용 MOS	표본 조사구수
(4) 7대 시의 동	573,775	114,767	1	114,767 (36.8)	7
(5) 기타 시의 동	539,249	107,865	1	107,865 (34.6)	7
(6) 읍·면	223,306	44,667	2	89,334 (28.6)	5
계	1,336,330	267,299	-	311,966(100.0)	19

각 층에서는 <附表 5> 의 표본조사구수에 해당하는 수의 표본 아파트를 크기의 測度에 比例하는 確率로 系統抽出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아파트 전면도를 작성하였다. 이 아파트 전면도에서 층 또는 계단을 따라 65~69가구분의 조사구를 설정하였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를 하지 않은 空家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수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여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즉, 미입주의 경우에도 1가구로 취급한 결과가 되었다).

結果的으로 신축 아파트 조사구의 總家口數는 조사구당 평균 67가구인 1,265가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층별 세부내역은 <附表 6> 과 같다.

〈附表 6〉 新築 아파트의 層別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층	아파트 동수	조사구수	가구수 ¹⁾	평균 가구수
(4) 7대 시의 동	7	7	472	67.4
(5) 기타 시의 동	7	7	462	66.0
(6) 읍·면	5	5	331	66.2
계	19	19	1,265	66.6

註: 1) 준공검사 결과의 가구수

다.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要約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신축 아파트의 2개 자료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결과를 〈附表 7〉에 종합하였으며, 200개 조사구의 총가구수는 13,416가구로 조사구당 평균 67가구가 되었다.

〈附表 7〉 標本調査區 抽出結果

자료	층	조사구수	가구수 ¹⁾	평균 가구수
인구주택 총조사	(1) 7대 시의 동	72	4,839	67.2
	(2) 기타 시의 동	44	2,939	66.8
	(3) 읍·면	65	4,373	67.3
신축 아파트	(4) 7대 시의 동	7	472	67.4
	(5) 기타 시의 동	7	462	66.0
	(6) 읍·면	5	331	66.2
계		200	13,416	67.1

註: 1)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가구수,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 결과의 가구수

3. 現地調査

가. 家口數 變動에 대한 措置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하여 추출한 181개 표본조사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지 5년이 지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신축 및 철거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가구수가 많이 변동된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에서 추출한 조사구의 경우에는, 배부된 調査區要圖를 修正·補完하면서 각 거처 및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구별 조사 가구수는 정해진 조사일정을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65~69가구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조사 당시에 가구수가 감소하여 65가구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구 경계선 밖의 隣接 居處를 連續적으로 追加하여 65~69가구를 조사하고, 가구수가 증가하여 69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에 인접한 일부 거처를 제외하고 65~69가구를 조사하였다. 이 때, 추가된 거처와 제외된 거처에 관한 사항을 조사구요도 상단에 기입하였다.

정해진 조사일정 때문에 조사거처 내의 가구 중에서 일부 가구의 조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감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 미착수 가구에 대하여도 가구명부에 기입하되 調査 未着手 사실을 비고란에 기입하였다(이러한 경우는 6개 조사구의 11가구이었음).

그리고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가구수가 많이 증가한 조사구에서는 거처를 단위로 65~69가구가 포함되는 구역에서만 조사하고, 조사에서 제외된 구역의 거처(대부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가구수를 파악하여 조사구요도에 기입하였다(이러한 경우는 2개 조사구의 134가구이었음).

조사 과정에서 再建築 또는 再開發로 모든 거처가 철거된 2개의 조사구(기존의 아파트 조사구)와 댐 건설로 수몰된 1개 조사구의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1개 조사구는 군부대 밖의 아파트로서 군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이나 조사에 애로가 많아 다른 조사구로 교체하여 조사하였다.

나. 1995년 家口數 및 크기의 測度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구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본조사구의 경우에, 가구수가 많이 증가하여 조사구내의 일부 거처를 제외한 경우에는 조사구 경계선 내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에서 제외된 거처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수를 빼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가구수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도 修正하였다.

그리고 가구수가 부족하여 조사구 경계선 밖의 隣接 居處를 추가하여 조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수와 크기의 측도를 수정하였다.

신축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에는 조사 당시에도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구수가 부족하여 일부 거처를 추가 조사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가구수에 추가 조사한 거처의 가구수(공가 포함, 한집을 1가구로 취급한 가구수)를 더하여 조사구내 준공검사 가구수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기의 측도도 修正하였다.

가구수 조정에 관한 증별 세부 내용은 <附表 8> 및 <附表 9> 와 같다.

〈附表 8〉 標本調査區 抽出 基礎資料 上の 家口數 調整結果

자료	층	조사구 수	조사전 가구수	조정 내용		조정후 가구수
				제외	추가	
인구주택 총조사	(1) 7대 시의 동	72	4,839	234	348	4,953
	(2) 기타 시의 동	44	2,939	99	242	3,082
	(3) 읍·면	65	4,373	66	364	4,671
신축 아파트	(4) 7대 시의 동	7	472	-	10	482
	(5) 기타 시의 동	7	462	-	-	462
	(6) 읍·면	5	331	-	10	341
계		200	13,416	399	974	13,991

〈附表 9〉 크기의 測度 調整結果

자료	층	모집단 MOS	조사구 수	MOS		평균 표본비율
				조정전	조정후	
인구주택 총조사	(1) 7대 시의 동	1,256,890	72	966	989	1/1,271
	(2) 기타 시의 동	772,303	44	582	615	1/1,256
	(3) 읍·면	566,022	65	873	934	1/ 606
신축 아파트	(4) 7대 시의 동	114,767	7	94	96	1/1,195
	(5) 기타 시의 동	107,865	7	92	92	1/1,172
	(6) 읍·면	44,667	5	66	68	1/ 657
계		2,862,514	200	2,673	2,794	1/1,025

다. 調査結果 家口數

조사결과 200개 조사구의 총가구수는 13,429가구이었으며, 이 중에서 13,284가구(98.9%)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를 착수한 13,284가구 중에서는 11,388가구(85.7%)에 대하여 調査를 完了하였다. 이에 관한 층별 세부 내역은 〈附表 10〉 과 같다.

〈附表 10〉 調査着手 및 未着手 家口數

자료	층	조사구 수	가구수	조사 착수 가구수			조사 미착수 가구수
				계	조사 완료	조사 미완	
인구주택 총조사	(1) 7대 시의 동	72	4,805	4,801	3,963	838	4
	(2) 기타 시의 동	44	2,913	2,906	2,475	431	7
	(3) 읍·면	65	4,450	4,316	3,865	451	134
신축 아파트	(4) 7대 시의 동	7	473	473	413	60	-
	(5) 기타 시의 동	7	458	458	381	77	-
	(6) 읍·면	5	330	330	291	39	-
계		200	13,429	13,284	11,388	1,896	145
가구수 = 100		-	100.0	98.9	84.8	4.1	1.1
조사착수 가구수 = 100		-	-	100.0	85.7	14.3	-

4. 推定方法

이 조사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加重標本合計値(weighted sample total)와 이를 기초로 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합산한 單純標本合計値(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고 가중표본합계치를 사용한 이유는, 각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서로 다르고, 가구조사의 조사미착수율이 조사구에 따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조사착수 가구중의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특성 Y의 관한 가중표본합계치의 산출을 위한 調査區別 加重値는 다음과 같이 算出하였다.

- ① 각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의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총수 추정용 승수를 산출

$$M_{hi} = (S_h / n_h S_{hi}) (X_{hi}' / X_{hi}) \quad (1)$$

이 公式에서

M = 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 5,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S = 크기의 측도

n = 표본조사구수

X' = 조사결과 가구수(조사완료 + 조사미완 + 조사 미착수)

X = 조사 완료 가구수

- ② 각 조사구별로 조사완료 가구수에 공식 (1)의 확대승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하여 調査母集團의 총가구수의 추정치를 산출

$$\hat{X} = \sum_h \sum_i M_{hi} X_{hi} \quad (2)$$

이 공식에서

\hat{X} =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 추정치

X = 조사완료 가구수

- ③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표본조사구 내의 총가구수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공식 (1)의 擴大乘數를 다음과 같이 조정

$$M'_{hi} = M_{hi} (X / \hat{X}) \quad (3)$$

이 공식에서

M' = 가중치

이와 같이 산출된, 공식 (3)의 조사구별 가중치를 특성 Y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특성 Y의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hat{y} = \sum_h \sum_i M_{hi}' Y_{hi} \quad (4)$$

이 公式에서

\hat{y} = 특성 Y에 관한 가중표본합계치

Y = 특성 Y에 관한 값(인구, 가구수 또는 어떤 다른 값)

附錄 2. 主要 統計表

〈附表 11〉 家口主의 地域別, 性別 年齡 및 結婚狀態

(單位: %, 世)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결혼상태 ¹⁾						
미혼	6.4	25.5	6.7	29.0	4.5	4.1
유배우	89.5	7.8	89.4	8.0	89.7	5.9
사별	1.6	51.4	1.4	46.2	3.5	83.4
이혼·별거	2.5	15.3	2.5	16.8	2.3	6.6
연령						
15~29세	9.1	18.5	9.6	21.1	5.8	2.5
30~39세	29.2	13.5	30.5	14.7	19.6	5.6
40~49세	28.6	16.2	29.2	17.3	24.2	9.4
50~59세	17.7	15.9	17.5	16.1	19.2	15.1
60세 이상	15.4	35.9	13.2	30.8	31.2	6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09)	(2,317)	(9,806)	(1,998)	(1,303)	(319)
평균연령	45.0	49.8	44.2	47.8	50.8	62.1

註: 1) 1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함.

〈附表 12〉 地域別 家口員の 年齢 및 結婚狀態別 分布

(單位: %, 世)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연령									
0~19세	30.0	31.9	28.2	30.6	32.4	28.8	25.4	27.4	23.6
20~29세	15.5	14.5	16.5	16.2	15.0	17.3	9.8	10.1	9.5
30~39세	17.9	18.2	17.7	18.4	18.6	18.3	13.8	14.5	13.2
40~49세	15.3	16.0	14.7	15.5	16.1	14.9	14.1	15.0	13.3
50~59세	9.5	9.7	9.2	9.2	9.5	8.9	12.1	11.7	12.4
60세 이상	11.7	9.7	13.6	10.2	8.4	11.9	24.9	21.4	2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884)	(20,463)	(21,421)	(37,391)	(18,304)	(19,087)	(4,493)	(2,159)	(2,334)
평균연령	32.9	31.9	33.9	32.1	31.2	33.0	39.7	37.8	41.4
결혼상태 ¹⁾									
미혼	26.7	29.9	23.7	27.9	30.9	25.1	17.3	22.1	13.1
유배우	63.5	66.2	61.0	63.0	65.5	60.7	67.5	71.8	63.7
사별	7.5	1.8	12.8	6.8	1.5	11.7	13.4	3.8	21.9
이혼·별거	2.3	2.2	2.4	2.4	2.1	2.6	1.8	2.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2,647)	(15,606)	(17,041)	(29,018)	(13,897)	(15,121)	(3,629)	(1,709)	(1,920)

註: 1) 15세 이상 가구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附表 13〉 核家族의 形態別 家口主의 年齡 分布

(單位: %, 세)

연령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전체
전국				
15~29세	11.6	4.8	1.1	5.8
30~39세	14.4	34.6	16.1	29.2
40~49세	7.4	35.9	32.6	30.2
50~59세	18.1	18.1	29.7	19.0
60세 이상	48.5	6.6	20.5	15.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810)	(6,846)	(747)	(9,403)
평균연령	54.4	43.2	49.9	45.9
동부				
15~29세	14.1	4.8	1.2	6.0
30~39세	17.8	34.8	16.0	30.5
40~49세	7.2	35.8	33.1	30.9
50~59세	17.0	18.2	29.5	18.9
60세 이상	43.9	6.4	20.2	13.7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381)	(6,312)	(682)	(8,375)
평균연령	52.2	43.1	49.8	45.2
읍·면부				
15~29세	3.5	5.1	-	4.1
30~39세	3.5	32.2	15.4	19.2
40~49세	7.9	35.8	27.7	23.6
50~59세	21.7	17.2	33.8	20.1
60세 이상	63.4	9.7	23.1	33.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429)	(534)	(65)	(1,028)
평균연령	61.3	44.1	50.7	51.7

〈附表 14〉 15~64歲 應答婦人の 年齡別 特性

(單位: %)

특성	15~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교육수준									
무학	-	0.1	0.1	0.2	0.8	1.8	5.4	14.9	28.8
초등학교	-	0.2	1.3	5.0	13.3	27.2	42.7	47.8	50.2
중학교	3.7	2.0	6.1	17.1	25.1	28.8	25.3	20.8	12.7
고등학교	77.9	59.6	58.0	51.2	44.8	31.1	21.6	13.7	6.4
대학 이상	18.4	38.1	34.5	26.5	16.0	11.1	5.0	2.8	1.9
종교									
없음	51.6	54.6	45.4	38.2	32.2	27.4	29.9	28.2	31.4
불교	18.0	18.3	23.7	29.2	32.6	39.9	41.3	43.2	41.2
기독교	24.9	20.4	23.1	23.1	21.9	20.7	18.4	19.7	18.8
천주교	5.5	5.9	7.4	9.2	12.3	11.0	9.7	7.5	8.0
기타	-	0.8	0.4	0.3	1.0	1.0	0.7	1.4	0.6
현 취업여부									
취업	26.7	30.7	38.0	48.6	56.0	53.1	50.8	42.8	43.5
미취업	73.3	69.3	62.0	51.4	44.0	46.9	49.2	57.2	56.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8	1.2	3.6	6.3	9.5	12.5	17.2	19.2	29.0
배우자	87.1	93.9	93.6	92.6	89.8	87.3	79.3	74.5	57.8
며느리	8.3	4.2	2.0	0.8	0.5	-	-	-	-
기타	2.8	0.7	0.8	0.3	0.2	0.2	3.5	6.3	13.2
혼전최장거주지									
대도시	33.2	51.1	56.2	49.7	43.1	36.6	26.1	20.3	16.3
중·소도시	47.9	37.4	30.7	30.1	25.3	19.5	18.7	16.2	12.5
읍·면사무소	12.0	7.7	8.1	11.6	17.1	22.3	24.4	29.4	33.0
소재지									
기타	6.9	3.8	5.0	8.6	14.5	21.6	30.8	34.1	38.2
현존자녀수									
0명	39.6	26.0	5.7	2.4	2.1	2.2	-	-	-
1명	44.7	44.7	25.1	14.1	14.8	8.9	-	-	-
2명	14.8	26.5	61.3	69.6	66.1	51.4	-	-	-
3명 이상	0.9	2.8	7.9	13.9	17.0	37.5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7)	(1,232)	(1,621)	(1,867)	(1,750)	(1,285)	(976)	(939)	(828)

註: 현존자녀수는 15~49세 부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됨.

〈附表 15〉 15~49歲 應答婦人的 地域別 一般特性

(單位: %)

특성	전 국	동 부	읍·면부
연령			
15~24세	3.7	3.5	4.9
25~29세	16.7	16.8	16.2
30~34세	22.1	22.6	19.8
35~39세	24.6	24.5	24.9
40~44세	19.3	19.6	17.4
45~49세	13.6	13.0	16.8
교육수준			
무학	1.0	0.8	2.3
초등학교	11.4	8.6	24.7
중학교	18.8	18.1	22.5
고등학교	48.1	49.7	40.3
대학 이상	20.7	22.8	10.2
종교			
없음	36.5	36.0	39.1
불교	31.4	30.5	35.8
기독교	23.1	24.1	18.3
천주교	8.0	8.4	5.8
기타	1.0	1.0	1.0
현취업여부			
취업	44.7	41.6	60.1
미취업	55.3	58.4	39.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3.6	3.6	3.7
배우자	94.8	95.0	93.7
며느리	1.1	0.9	1.8
기타	0.5	0.5	0.8
혼전 최장 거주지			
대도시	42.3	46.1	23.6
중·소도시	27.6	28.7	22.2
읍·면사무소 소재지	19.9	16.9	34.8
기타 농·어촌	10.0	8.2	19.1
기타	0.2	0.1	0.3
현존자녀수			
0명	7.3	7.7	5.0
1명	19.2	20.0	15.2
2명	55.5	57.0	47.9
3명 이상	18.1	15.3	31.8
계	100.0	100.0	100.0
(수)	(6,450)	(5,399)	(1,091)

〈附表 16〉 15~49歲 應答婦人的 年齡別 特性

(單位: %)

특성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교육수준						
무학	-	-	0.1	0.4	1.9	4.1
초등학교	1.0	1.2	3.1	9.0	19.4	32.8
중학교	3.7	4.8	12.6	24.1	28.3	27.5
고등학교	81.9	63.1	55.2	46.8	36.3	27.8
대학 이상	13.4	30.9	29.0	19.7	14.1	7.8
종교						
없음	54.7	52.0	41.5	33.2	25.5	25.5
불교	21.0	20.6	26.6	33.3	38.1	42.4
기독교	18.9	20.5	23.9	23.6	24.5	23.4
천주교	4.9	6.3	7.4	8.8	10.1	7.6
기타	0.5	0.6	0.6	1.1	1.8	1.1
현취업 여부						
취업	25.0	31.9	40.3	49.7	53.2	52.0
미취업	75.0	68.1	59.7	50.3	46.8	48.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	0.9	1.6	4.2	6.3	6.5
배우자	90.8	95.8	97.0	95.0	93.3	92.5
며느리	8.5	2.2	1.1	0.5	0.1	0.1
기타	0.7	1.1	0.3	0.3	0.3	0.9
혼전 최장거주지						
대도시	38.4	48.6	47.5	42.6	39.5	30.9
중·소도시	42.0	33.9	30.6	26.5	22.6	19.9
읍·면사무소소재지	12.3	13.8	15.3	21.7	24.2	27.7
기타 농·어촌	6.0	3.4	6.5	9.1	13.7	21.4
기타	1.3	0.3	0.1	0.1	-	0.1
현존자녀수						
0명	41.3	21.8	3.8	2.5	2.5	0.8
1명	45.7	41.8	19.7	12.5	11.4	6.6
2명	12.1	33.6	68.8	70.2	60.6	39.0
3명 이상	0.9	2.8	7.7	14.8	25.5	5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9)	(1,078)	(1,425)	(1,587)	(1,242)	(879)

〈附表 17〉 15~49歲 既婚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就業理由

(單位: %)

연령	생활비 에 보탬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마련	시간이 많아 지루함	사회적 성취, 자기 발전	기타	계(수)
동부	73.8	7.6	1.6	2.1	14.6	0.2	100.0(3,171)
15~24세	64.8	-	3.7	9.3	22.2	-	100.0(54)
25~29세	65.6	3.8	0.9	4.7	25.1	-	100.0(343)
30~34세	66.2	6.7	2.4	1.3	23.0	0.4	100.0(551)
35~39세	74.0	7.7	0.9	2.4	14.9	0.1	100.0(796)
40~44세	76.5	10.2	1.6	0.9	10.2	0.5	100.0(852)
45~49세	82.6	7.7	2.1	2.1	5.6	-	100.0(575)
읍·면부	84.5	5.5	1.1	1.6	6.6	0.7	100.0(438)
15~24세	80.0	-	20.0	-	-	-	100.0(5)
25~29세	65.7	2.9	-	8.6	20.0	2.9	100.0(35)
30~34세	85.9	1.6	-	1.6	9.4	1.6	100.0(64)
35~39세	82.2	7.5	1.9	1.9	5.6	0.9	100.0(107)
40~44세	86.6	7.6	0.8	0.8	4.2	-	100.0(119)
45~49세	89.8	4.6	0.9	-	4.6	-	100.0(108)

〈附表 18〉 15~49歲 既婚婦人의 地域 및 年齡別 未就業 理由

(單位: %)

연령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서	일자리 없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가사 전념	남편, 시댁 식구 반대	본인 건강	기타	계(수)
동부	6.0	18.3	48.9	10.7	3.0	10.5	2.6	100.0(4,065)
15~24세	2.8	9.2	61.7	12.1	2.8	3.5	7.8	100.0(141)
25~29세	5.0	6.1	71.9	4.8	1.6	5.3	5.3	100.0(793)
30~34세	3.2	8.3	74.7	6.0	2.9	3.3	1.7	100.0(940)
35~39세	5.7	20.8	50.9	8.7	2.8	9.8	1.3	100.0(899)
40~44세	9.8	29.4	19.9	17.9	4.7	16.8	1.5	100.0(727)
45~49세	8.1	27.5	4.6	20.9	3.0	24.6	2.5	100.0(565)
읍·면부	4.8	15.6	49.4	9.7	4.1	13.4	3.0	100.0(269)
15~24세	5.9	11.8	64.7	5.9	-	5.9	5.9	100.0(17)
25~29세	8.2	9.8	70.5	4.9	3.3	1.6	1.6	100.0(61)
30~34세	3.1	7.8	70.3	6.3	4.7	3.1	3.1	100.0(64)
35~39세	1.8	19.6	48.2	8.9	5.4	1.8	1.8	100.0(56)
40~44세	2.6	23.1	15.4	23.1	5.1	5.1	5.1	100.0(39)
45~49세	9.4	28.1	3.1	12.5	3.1	3.1	3.1	100.0(32)

〈附表 19〉 兒童年齡別 保育施設 이용 않는 理由

(單位: %)

보육시설 이용 않는 이유	0세	1세	2세	3~5세	전체
본업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되므로	85.6	78.7	71.0	15.4	50.2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없음	0.3	1.1	2.1	5.7	3.2
2세 미만이라 거절함	12.5	13.2	7.2	0.7	6.5
보육료 부담	1.1	5.3	9.0	8.8	6.5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	0.3	1.4	8.6	65.0	31.2
기타	0.1	0.3	2.1	4.4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29)	(500)	(409)	(1,292)	(2,830)

〈附表 20〉 15~49歲 既婚婦人的 兒童年齡別 保育施設에 보내지 않는 理由

(單位: %)

구분	취업모			미취업모		
	0~2세	3~5세	계	0~2세	3~5세	계
본인/가까운 사람이 안심	75.7	13.9	38.6	80.4	16.1	53.8
가까운 곳에 돌봐줄 곳이 없음	1.9	8.7	6.0	0.9	4.3	2.3
2세 미만이라 거절함	10.0	0.3	4.2	11.6	0.9	7.2
보육시간이 맞지 않음	0.4	2.6	1.7	0.0	0.6	0.2
보육료가 부담됨	3.5	5.1	4.5	4.8	10.4	7.1
학원, 유치원이 교육효과가 큼	6.6	66.3	42.4	2.1	64.5	27.9
아이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음	0.4	1.0	0.8	0.0	1.0	0.4
기타	1.4	2.1	1.8	0.2	2.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9)	(589)	(848)	(1,278)	(902)	(2,180)

註: 기타에는 자녀가 가기 싫어서/적응못해서, 시설사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서 등이 포함됨.

〈附表 21〉 15~49歲 既婚婦人的 嬰幼兒의 向後 兒童教育機關 利用率

(單位: %)

구분	이용률	이용기관				(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기타 ¹⁾	
취업모	96.1	40.9	37.2	21.4	0.5	(893)
0~1세	89.0	65.6	26.6	6.5	1.3	(173)
2세	94.8	58.9	34.1	6.2	0.8	(136)
3~5세	98.5	30.3	40.7	28.9	0.2	(584)
미취업모	91.6	37.3	43.4	18.0	1.3	(2,354)
0~1세	83.0	56.1	39.6	3.6	0.7	(872)
2세	94.2	48.0	40.4	9.8	1.8	(347)
3~5세	97.4	21.9	46.7	29.9	1.5	(1,135)
전체	92.8	38.3	41.6	19.0	1.1	(3,247)
0~1세	84.0	57.8	37.4	4.0	0.8	(1,045)
2세	94.4	51.1	38.6	8.8	1.5	(483)
3~5세	97.7	24.7	44.6	29.6	1.1	(1,719)

註: 1) 기타에는 학습지, 위탁모, 아기사포츄단, 장애인복지시설, 비즈교육 등이 포함됨.

〈附表 22〉 婦人特性別 컴퓨터活用後 家族員의 他 媒體 接觸時間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6.0	34.7	28.2	29.2	1.9	100.0(5,934)	2.86
부인 연령							
15~29세	4.4	32.1	26.4	34.7	2.4	100.0(663)	2.99
30~39세	6.7	36.5	25.5	29.6	1.7	100.0(2,359)	2.83
40~49세	6.4	36.7	26.8	28.0	2.1	100.0(2,097)	2.83
50~64세	4.1	26.5	41.3	26.3	1.8	100.0(814)	2.95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4.4	26.0	35.4	32.0	2.3	100.0(666)	3.02
중학교	4.6	32.8	31.3	28.3	3.0	100.0(994)	2.92
고등학교	6.4	36.8	26.6	28.2	1.9	100.0(2,687)	2.82
대학 이상	6.7	35.8	26.0	30.3	1.2	100.0(1,582)	2.84
아들 유무							
없음	4.7	31.1	30.6	31.5	2.0	100.0(1,012)	2.95
있음	6.2	35.8	27.6	28.4	2.0	100.0(4,613)	2.84

〈附表 23〉 婦人特性別 컴퓨터活用後 家族員의 趣味活動時間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2.6	19.7	38.6	36.8	2.3	100.0(5,936)	3.16
부인 연령							
15~29세	1.5	15.8	34.7	44.3	3.8	100.0(666)	3.33
30~39세	2.8	20.8	35.7	38.8	1.8	100.0(2,357)	3.16
40~49세	2.9	21.6	39.4	34.1	2.1	100.0(2,099)	3.11
50~64세	2.0	15.0	48.6	31.7	2.8	100.0(815)	3.18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1.9	13.2	45.0	37.3	2.5	100.0(666)	3.25
중학교	2.3	19.6	40.1	34.5	3.4	100.0(994)	3.17
고등학교	3.1	21.2	37.1	36.5	2.1	100.0(2,687)	3.13
대학 이상	2.1	20.0	37.8	38.4	1.8	100.0(1,582)	3.18
아들 유무							
없음	2.6	16.2	39.6	39.3	2.4	100.0(1,014)	3.23
있음	2.6	20.9	38.6	35.9	2.1	100.0(4,613)	3.15

〈附表 24〉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睡眠時間 變化
(單位: %, 집)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5.9	33.6	28.3	30.1	2.1	100.0(5,936)	2.89
부인 연령							
15~29세	3.7	31.8	24.9	36.0	3.6	100.0(667)	3.04
30~39세	4.4	30.2	29.8	33.4	2.2	100.0(2,358)	2.99
40~49세	8.5	37.5	25.4	26.8	1.8	100.0(2,099)	2.76
50~64세	5.4	35.1	34.0	24.3	1.1	100.0(814)	2.81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5.6	34.8	28.8	29.0	1.8	100.0(666)	2.87
중학교	7.9	36.5	27.8	24.9	2.8	100.0(994)	2.78
고등학교	5.5	31.8	28.7	31.8	2.2	100.0(2,688)	2.93
대학 이상	5.5	34.3	27.6	31.0	1.5	100.0(1,585)	2.89
아들 유무							
없음	3.9	31.9	29.2	33.0	2.0	100.0(1,016)	2.97
있음	6.5	34.7	28.0	28.8	2.0	100.0(4,612)	2.87

〈附表 25〉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工夫·家事時間 變化
(單位: %)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4.5	27.0	31.1	34.5	2.9	100.0(5,938)	3.04
부인 연령							
15~29세	1.8	13.1	32.0	49.1	4.1	100.0(666)	3.41
30~39세	4.0	30.4	28.5	34.2	2.8	100.0(2,358)	3.01
40~49세	7.0	32.4	27.6	30.5	2.4	100.0(2,099)	2.89
50~64세	1.7	14.1	46.6	34.0	3.6	100.0(815)	3.24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2.7	17.7	40.8	35.8	3.0	100.0(667)	3.19
중학교	5.7	28.5	32.7	29.3	3.7	100.0(995)	2.97
고등학교	5.3	28.8	28.3	34.4	3.1	100.0(2,688)	3.01
대학 이상	3.2	26.8	30.7	37.4	2.1	100.0(1,585)	3.09
아들 유무							
없음	3.2	21.5	33.6	38.8	3.0	100.0(1,015)	3.17
있음	5.0	29.2	30.4	32.6	2.8	100.0(4,614)	3.01

〈附表 26〉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의 社會的 交際時間 變化
(單位: %)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접수
전체	1.5	13.0	36.8	43.4	5.3	100.0(5,929)	3.38
부인 연령							
15~29세	1.1	7.5	32.1	52.6	6.8	100.0(664)	3.56
30~39세	1.8	15.2	34.7	44.1	4.2	100.0(2,358)	3.33
40~49세	1.7	14.0	37.3	41.0	6.1	100.0(2,092)	3.36
50~64세	0.9	8.5	44.9	40.5	5.3	100.0(813)	3.41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0.8	6.9	43.6	41.8	6.9	100.0(665)	3.47
중학교	1.2	12.5	38.4	41.1	6.8	100.0(995)	3.40
고등학교	1.9	13.9	34.8	44.5	4.8	100.0(2,683)	3.36
대학 이상	1.5	14.3	36.2	43.5	4.5	100.0(1,585)	3.35
아들 유무							
없음	1.6	9.7	38.0	46.1	4.5	100.0(1,012)	3.43
있음	1.6	14.0	36.6	42.5	5.3	100.0(4,608)	3.37

〈附表 27〉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의 共有·對話時間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2.3	20.1	33.9	38.9	4.8	100.0(5,937)	3.24
지역							
동부	2.2	20.3	34.5	38.4	4.5	100.0(5,542)	3.23
읍·면부	3.0	17.5	25.6	46.3	7.6	100.0(395)	3.38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9	17.5	36.1	38.4	6.1	100.0(573)	3.29
100~199만원	2.3	20.3	31.1	41.0	5.3	100.0(2,122)	3.27
200~299만원	1.8	20.9	33.4	39.4	4.6	100.0(1,669)	3.24
300만원 이상	2.6	20.5	39.1	34.3	3.5	100.0(1,280)	3.16
세대결합형태							
1세대	2.6	11.2	33.9	44.7	7.7	100.0(313)	3.44
2세대	2.2	20.9	33.6	38.6	4.6	100.0(4,934)	3.22
3세대 이상	2.1	18.4	36.0	39.2	4.4	100.0(659)	3.26
부인 연령							
15~29세	3.0	19.2	27.9	45.2	4.7	100.0(666)	3.29
30~39세	1.7	20.5	32.5	40.2	5.2	100.0(2,360)	3.27
40~49세	2.5	21.4	33.4	37.8	4.9	100.0(2,100)	3.21
50~64세	2.6	16.5	44.5	33.1	3.3	100.0(813)	3.18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	16.5	41.7	35.0	5.6	100.0(666)	3.27
중학교	1.9	21.2	34.7	36.2	5.9	100.0(996)	3.23
고등학교	2.5	19.9	32.2	40.7	4.7	100.0(2,686)	3.25
대학 이상	2.6	21.3	33.1	39.2	3.7	100.0(1,588)	3.20
아들 유무							
없음	1.6	17.1	35.2	40.0	6.1	100.0(1,015)	3.32
있음	2.4	21.2	33.9	38.2	4.4	100.0(4,613)	3.22

〈附表 28〉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間 對話內容의 變化
(單位: %, 집)

특성	매우 단조로 워집	조금 단조로 워집	변화 없음	조금 다양 해집	매우 다양 해집	계(수)	평균 점수
전체 지역	1.1	12.0	37.4	43.1	6.4	100.0(5,940)	3.42
동부	1.1	12.1	38.0	42.5	6.3	100.0(5,542)	3.41
읍·면부	1.5	11.4	28.5	51.5	7.1	100.0(396)	3.5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9	12.7	38.9	40.0	7.5	100.0(573)	3.41
100~199만원	1.1	11.7	35.4	45.0	6.8	100.0(2,120)	3.45
200~299만원	.8	11.7	37.1	44.3	6.1	100.0(1,669)	3.43
300만원 이상	1.3	12.4	41.1	39.9	5.2	100.0(1,281)	3.35
세대결합형태							
1세대	.3	6.1	33.9	51.4	8.3	100.0(313)	3.61
2세대	1.2	12.6	37.3	42.6	6.3	100.0(4,932)	3.40
3세대 이상	.9	11.0	39.0	43.3	5.7	100.0(661)	3.42
부인 연령							
15~29세	.9	7.8	32.8	51.6	6.9	100.0(665)	3.56
30~39세	1.1	12.8	35.2	44.3	6.7	100.0(2,359)	3.43
40~49세	1.4	12.8	38.1	41.5	6.2	100.0(2,099)	3.38
50~64세	0.7	11.1	45.9	37.1	5.2	100.0(813)	3.35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0.3	9.6	44.4	39.6	6.0	100.0(666)	3.41
중학교	0.5	14.1	38.6	39.6	7.3	100.0(996)	3.39
고등학교	1.3	13.1	35.7	43.4	6.6	100.0(2,686)	3.41
대학 이상	1.5	10.0	36.7	46.4	5.5	100.0(1,585)	3.44
아들 유무							
없음	1.0	8.7	38.4	44.1	7.8	100.0(1,015)	3.49
있음	1.2	13.0	37.5	42.2	6.0	100.0(4,614)	3.40

〈附表 29〉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員間 葛藤·다툼 頻度の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변화 없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계(수)	평균 점수
전체	2.7	20.2	30.8	38.4	7.9	100.0(5,940)	3.29
지역							
동부	2.6	20.0	31.2	38.3	7.9	100.0(5,542)	3.29
읍·면부	4.3	22.2	25.9	39.8	7.8	100.0(397)	3.24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3.1	15.0	36.4	38.1	7.3	100.0(572)	3.31
100~199만원	2.4	18.1	29.5	40.9	9.1	100.0(2,121)	3.36
200~299만원	2.2	22.2	30.1	38.1	7.4	100.0(1,668)	3.26
300만원 이상	3.1	24.4	31.2	35.3	6.0	100.0(1,280)	3.17
세대결합형태							
1세대	0.3	6.1	47.6	32.9	13.1	100.0(313)	3.52
2세대	3.0	20.8	29.7	38.9	7.6	100.0(4,934)	3.27
3세대 이상	1.7	22.2	30.6	38.1	7.4	100.0(661)	3.28
부인 연령							
15~29세	2.0	7.2	40.1	38.9	11.9	100.0(666)	3.52
30~39세	3.6	27.2	25.7	36.4	7.1	100.0(2,359)	3.16
40~49세	3.0	21.9	29.0	38.8	7.3	100.0(2,100)	3.25
50~64세	0.1	5.7	42.9	42.9	8.4	100.0(813)	3.54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1.0	10.5	39.1	40.9	8.4	100.0(667)	3.45
중학교	3.0	15.3	33.2	39.6	8.9	100.0(996)	3.36
고등학교	3.2	23.6	27.5	38.3	7.4	100.0(2,687)	3.23
대학 이상	2.4	21.4	31.4	36.9	7.9	100.0(1,586)	3.27
아들 유무							
없음	1.4	14.9	32.9	40.1	10.6	100.0(1,017)	3.44
있음	3.1	22.2	29.2	38.3	7.2	100.0(4,613)	3.25

〈附表 30〉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前後 家族員間 家事 共有 程度의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점수
전체	0.7	6.9	42.3	43.0	7.1	100.0(5,941)	3.49
지역							
동부	0.6	6.9	42.8	42.7	7.0	100.0(5,542)	3.48
읍·면부	0.8	7.1	36.4	46.7	9.1	100.0(396)	3.56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0.7	5.8	44.7	41.7	7.2	100.0(573)	3.49
100~199만원	0.7	6.6	39.9	44.7	8.2	100.0(2,121)	3.53
200~299만원	0.6	7.9	40.5	44.7	6.3	100.0(1,668)	3.48
300만원 이상	0.6	7.6	47.4	38.5	5.9	100.0(1,282)	3.41
세대결합형태							
1세대	0.6	6.7	35.4	48.4	8.9	100.0(314)	3.58
2세대	0.6	7.0	42.8	42.7	6.9	100.0(4,934)	3.48
3세대 이상	0.8	7.1	41.7	42.3	8.2	100.0(662)	3.50
부인 연령							
15~29세	1.2	8.4	34.5	48.6	7.2	100.0(666)	3.52
30~39세	0.7	8.3	40.2	44.0	6.7	100.0(2,361)	3.48
40~49세	0.6	6.0	45.4	40.4	7.6	100.0(2,100)	3.49
50~64세	0.2	3.9	46.9	41.9	7.0	100.0(814)	3.51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0.1	3.6	48.4	40.2	7.6	100.0(667)	3.52
중학교	0.7	6.1	43.3	41.8	8.0	100.0(995)	3.50
고등학교	0.6	7.3	40.7	44.2	7.3	100.0(2,686)	3.50
대학 이상	0.9	8.2	41.9	42.8	6.1	100.0(1,588)	3.45
아들 유무							
없음	0.4	6.8	43.1	41.7	8.0	100.0(1,016)	3.50
있음	0.7	7.0	42.5	42.9	7.0	100.0(4,613)	3.49

〈附表 31〉 婦人特性別 컴퓨터 活用 後 家族生活의 質 變化
(單位: %, 점)

특성	매우 낮아 짐	조금 낮아 짐	변화 없음	조금 향상 됨	매우 향상 됨	계(수)	평균 점수
전체	0.5	3.4	34.5	49.4	12.2	100.0(5,938)	3.70
지역							
동부	0.4	3.4	35.3	49.0	12.0	100.0(5,542)	3.69
읍·면부	0.8	3.8	24.1	56.0	15.3	100.0(398)	3.8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0.9	3.0	35.7	48.4	12.1	100.0(572)	3.68
100~199만원	0.3	3.2	33.0	50.8	12.7	100.0(2,121)	3.72
200~299만원	0.2	3.5	33.9	50.4	12.0	100.0(1,669)	3.71
300만원 이상	0.7	4.0	37.1	46.7	11.5	100.0(1,282)	3.64
세대결합형태							
1세대	0.3	1.3	27.4	55.4	15.6	100.0(314)	3.85
2세대	0.5	3.4	34.7	49.3	12.0	100.0(4,933)	3.69
3세대 이상	0.2	4.4	35.6	47.8	12.1	100.0(661)	3.67
부인 연령							
15~29세	0.5	3.2	27.6	56.0	12.8	100.0(666)	3.77
30~39세	0.6	3.4	33.1	50.3	12.6	100.0(2,360)	3.71
40~49세	0.5	3.8	35.6	48.1	12.0	100.0(2,100)	3.67
50~64세	-	2.3	41.6	45.1	10.9	100.0(813)	3.65
부인 교육수준							
초교 이하	0.1	2.1	39.4	45.3	13.0	100.0(667)	3.69
중학교	0.6	3.1	37.0	46.7	12.5	100.0(997)	3.67
고등학교	0.4	4.1	33.3	51.1	11.1	100.0(2,686)	3.68
대학 이상	0.6	3.0	33.1	50.0	13.4	100.0(1,587)	3.73
아들 유무							
없음	0.2	2.0	35.1	50.1	12.7	100.0(1,018)	3.73
있음	0.6	3.8	34.7	48.9	12.1	100.0(4,615)	3.69

附錄 3. 調查票

제 1 장 가 구 사 항

I. 가구원사항

* 현재 이 택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식구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 조사원: 가구원 기입을 완료한 후 오른쪽 확인 사항을 질문하여 추가 기입하거나 삭제하십시오)										
번호	1. 가구원 이름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별	4. 연령(생년월일 및 띠)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결혼상태		확인사항
일 련 번 호	가구주부터 기록 가족은 아니지만 택에서 먹고 자는 사람 포함.	예: 조부, 장모, 처, 장남, 장남의 처, 조카, 2녀, 매, 제, 가정부, 하숙생 등	① 남 ② 여	사실상의 연령확인	생년월일(띠), 양·음력 확인 (※ 조사원: 음력인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십시오)	① 무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이상 ⑥ 미취학	① 재학중 (____학년) ② 중퇴 (____학년) ③ 졸업 ⑧ 비해당	사실상의 결혼상태 확인(해외취업 및 지사과건 등으로 인한 별거는 동거로 간주) ① 유배우 ④ 별거 ② 사별 ⑤ 미혼 ③ 이혼 ⑧ 비해당(14세이하)	※ 만 15~49세 이하 및 50~64세 이하의 기혼부인 여부 및 만 18~34세 미혼여부 확인.	※ 조사원: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시오.
01		가구주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① 15~49세이하 ② 50~64세이하 ③ 18~34세이하 ⑧ 비해당	조사되어야 할 사람
02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1)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한 분
03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2)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출산을 위하여 당분간 시택, 친정 등 다른 곳에 있는 분
04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3) 항공기나 배를 타는 가족
05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4) 택의 식구는 아니지만 이 택에서 먹고 자는 친지, 하숙인 또는 3개월이상 계속 동거중인 사람 또는 동거할 계획인 사람
06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조사에서 제외되어 할 사람
07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1) 잠시 와 계시는 친지분
08				세는나이: ____세 만 나이 : ____세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 ____년 ____월					

II. 출생에 관한 사항

* ①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아이중에서 1998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한 아기와, ② 1998년 1월 1일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아기 (사망아 포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조사원: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로 가구원사항에 기록된 아이부터 먼저 한명씩 질문하고 (출생년월, 성별, 연령은 가구원 사항에서 그대로 이기하고 나머지 사항만 질문) 그 다음 이 가구에서 1998년 1월 이후 출산하였으나 가구원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질문하시오. <어머니 조사에서의 기록여부>는 임신·출산기록표(p.8)를 작성한 후 확인하여 기입하시오.

* 우선 그런 아기가 있는지요?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 p. 3의 <질문 III.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번호	1. 출생년월일	2. 성	3. 출생당시 모의 연령	4.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5. 아기의 현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6. 어머니 현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아기연령 (생존기간)	* 어머니 조사에서의 기록여부
일련번호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① 남 ② 여	이 아기 출생당시 아주머니(아기엄마)는 몇세이셨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언제 사망하였습니까? (아기가 사망한 경우)	이 아기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1 참조】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현재 이택에 살고 계신지요?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2 참조】	※ 조사원이 계산하여 기입한 후 확인 하시오.	※ 조사원: 부인조사 p.8의 임신출산 기록표에 반드시 기입하시오.
1	____년__월__일 (양, 음) ()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__월__일 (양, 음) 만나이: ____세	① 생존 ② 사망 → (____년__월__일) (양, 음) ③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 기록 ② 비기록 (부인 조사불능)
2	____년__월__일 (양, 음) ()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__월__일 (양, 음) 만나이: ____세	① 생존 ② 사망 → (____년__월__일) (양, 음) ③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 기록 ② 비기록 (부인 조사불능)
3	____년__월__일 (양, 음) ()띠		세는나이: ____세 19__년__월__일 (양, 음) 만나이: ____세	① 생존 ② 사망 → (____년__월__일) (양, 음) ③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산다(이유:_____) ③ _____	____년 ____개월 ____일	① 기록 ② 비기록 (부인 조사불능)

※ 확인사항: 혹시 1998년 1월 ~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중 태어나서 바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얼마동안 자라다가 사망한 아기는 없는지요?
 ② 없다 ① 있다 ➡ (위 표에 추가 기입하시오)
 【 보기 1 】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으나 아기는 같이 살지 않는 이유: 아기사망, 아기를 친정·시댁·남의 집에 맡겨 놓은 경우, 아기를 양자로 보낸 경우, 아기 어머니의 이혼·재혼 등으로 아기를 어머니가 데리고 살지 않는 경우 등
 【 보기 2 】 아기는 살고 있으나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지 않는 이유: 어머니 사망, 아기 어머니가 이혼·별거·재혼 등으로 타지역에 거주, 아기만 맡겨 놓고 어머니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처의 자식인 경우 등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인번호
제 33101 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조사표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조사구내 가구번호	부인번호				
			가구내 부인번호	응답부인 일련번호			

주소	시 · 도	구 · 군	동 · 읍 · 면	아파트 · 리	동 · 번지	호 · 통 · 호	반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인사말씀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2,000 가구에 거주하는 15~64세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귀 닥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개인 및 가구의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대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5.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1. 현재의 임신을 출산할 예정이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질문 6으로 가시오)



5-2. 출산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출산예정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6. 부인께서는 남아출산을 위해 임신전 또는 임신후에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6-1.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복수응답)

① 자연요법

② 양수검사

③ 용모막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 기타()

※ 조사원: 이상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확인하십시오.

◎ 총임신했수 (_____ 회) = 출생횟수 (_____ 회) + 자연유산수(_____ 회)
 + 사산횟수 (_____ 회) + 인공유산수(_____ 회)
 + 현임신 (0 또는 1)

7. 부인께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몇번 임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7년에 임신하여 1998년까지 진행된 경우와 현재 임신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있다(임신히트수: ___회, 정상출생횟수: ___회) ② 없다 → p.9 <질문 8>로 가시오



(최종임신년월: ___년 ___월)

(※ 조사원: 1998년 1월 이후 **임신·출산기록표**를 간단히 작성한 후 매임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98												
1999												
2000												

기입요령	임: 임신 자: 자연유산	출: 출생 인: 인공유산 또는 월경조절술(MR)	사: 사산
------	------------------	-------------------------------	-------

번호	7-1. 언제 임신하셨 는지요?	7-2. 임신당시 그 임신은 원했 었는지요? 원하지 않았 었는지요?	7-3. 그 임신 당시 피임을 사용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방법은 무엇 입니까?	7-4 임신 당시 자녀 수는 몇 명이었 습니까?	7-5. 임신의 결과 는 어떻게 되었나요?	7-6. 그 때가 언제였습 니까?	(※ 조사원: 출생아가 p.2 의 <출생에 관한 사항>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1	___년 ___월	① 원함 ② 원치 않음	① 비사용 ②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 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___년 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2	___년 ___월	① 원함 ② 원치 않음	① 비사용 ②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 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___년 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3	___년 ___월	① 원함 ② 원치 않음	① 비사용 ②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 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___년 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4	___년 ___월	① 원함 ② 원치 않음	① 비사용 ②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 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 ___년 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질문 7-3 보기> 피임방법: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페미돔 ⑧ 월경주기법
⑨ 기타()

5.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임신 몇 주만에 분만하였으며, 분만시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5-1. 분만시기: 임신 _____ 주후 분만

5-2. 분만시 체중: _____ g

5-3. 분만시 아이의 체중이 2,500g 이하인 경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의사 등으로부터 진찰내용을 기억하여 해당란 모두에 응답합니다)

- ① 산모의 음주습관 때문에
- ② 산모의 흡연습관 때문에
- ③ 약물복용 때문에
- ④ 조기분만
- ⑤ 기타(_____)
- ⑧ 비해당(2,500g 초과)

II.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최종출생아 ○○(이)를 출산한 후 산후진찰(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 ① 있다



1-1. 있다면 언제까지 몇 회나 받았습니까?
 산후진찰 시기: 출산 후 _____ 개월까지
 산후진찰 횟수: _____ 회 (없으면 '0'회로 표시)

2. 부인께서는 산후조리를 받고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① 있다



2-1. 산후조리원에서 부인이나 ○○이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① 있다(무엇: _____)

2-2. (출산계획이 있는 부인의 경우) 향후 출산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계획입니까?
 ① 없다 ① 있다 ⑧ 비해당(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3. ○○(이)의 뇌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에 관한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셨습니까?

- ① 했다
- ② 하지 않았다
- ③ 잘 모르겠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3-1. 그러면 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셨습니까?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셨습니까?
 ① 자비부담(병의원)(지불금액: _____ 원) ④ 기타(_____)
 ② 무료(보건소/보건요원) ⑤ 잘 모르겠다
 ③ 자비+정부(보건소) 지원(본인 지불금액: _____ 원)

제 5장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5~64세 기혼부인대상)

※ 조사원: 현재 초혼인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단, 만 50~64세이하 부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총출생아수: ____명(아들: ____명, 딸: ____명) • 사망자녀수: ____명(아들: ____명, 딸: ____명)
- 현존자녀수: ____명(아들: ____명, 딸: ____명)

1.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

※ 조사원: 현재 비동거중이거나 사망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88」로 기재하고, 출산자녀(사망자녀 포함)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p. 16의 <조사원 사항: 가족주기단계>로 가시오.

질문내용	첫째아(가구원 번호: ____)	막내아(가구원 번호: ____)
1. (첫째/막내) 자녀를 낳을 당시 부인께서는 몇세이셨습니까?	출산시 부인연령: ____세 (만____세)	출산시 부인연령: ____세 (만____세)
1-1. (첫째/막내) 자녀의 성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① 남자 ② 여자
1-2. (첫째/막내) 자녀의 연령은 몇세이며,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연령: 만 ____세 생년월일: ____년__월__일 (양, 음)	연령: 만 ____세 생년월일: ____년__월__일 (양, 음)

〈자녀결혼에 관한 사항〉

2.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들은 몇 명이나 결혼하였습니까?

- ① 모두 결혼 (결혼자녀수: __명)
- ② 일부 결혼, 일부 미혼 (결혼자녀수: __명, 미혼자녀수: __명)
- ③ 모두 미혼 ➡ p.16의 <가족주기단계>로 가시오

※ 조사원: 부인이 낳은 자녀중 첫 번째 또는 맨 마지막에 결혼한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	첫 번째 결혼한 자녀	마지막 결혼한 자녀
3. (첫 번째/마지막) 결혼한 자녀가 결혼한 연월일은 언제이며, 그 당시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셨습니까?(출생순위와 다를 경우 생년월일 확인)	자녀 결혼년월일 ____년 __월__일(양, 음) (자녀결혼 연령: 만____세) 생년월일: __년__월__일(양, 음)	자녀 결혼년월일 ____년 __월__일(양, 음) (자녀결혼 연령: 만____세) 생년월일: __년__월__일(양, 음)
3-1. (첫 번째/마지막) 결혼한 자녀가 결혼할 당시 부인께서는 몇세이셨습니까?	세는 나이: ____세 (만____세)	세는 나이: ____세 (만____세)
3-2. (첫 번째/마지막) 결혼한 자녀의 성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3. (첫 번째/마지막) 결혼한 자녀의 출생순위는 몇 째입니까?	출생순위: ____번째	출생순위: ____번째

III. 자녀양육(보육)에 관한 사항

1. 부인택에는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 조사원: 떨어져 사는 자녀도 기재하시오).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

p.20의 <질문 IV>로 가시오



2.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제일 어린 아이부터 한명씩 대답해 주십시오.

(※ 조사원: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하시오. 초등학생인 경우는 방과후에 누가 돌보고 있는지 질문하시오)

(※ 조사원: 가구사항을 참조하여 가구원 번호, 성, 연령 또는 학년을 체크 해주십시오. 단,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인에게 확인하시오)	1. 이름	2. 이름	3. 이름
• 가구원 번호	_____	_____	_____
• 성: ① 남아 ② 여아	_____	_____	_____
• 연령 또는 학년: (예: 미취학 3세인 경우 → ① (3)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 ② (5)) ① 미취학아동(세) ② 초등학생(학년)	____()	____()	____()
2-1.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시설(해당사항 모두 체크): (※ 조사원: 가장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순서대로 3개 체크하시오.) ① 본인이 돌본다 ⑧ 놀이방 ② 가족(시/친정부모, 형제자매 등) ⑨ 어린이 집 ③ 파출부, 가정부가 돌본다 ⑩ 방과후 아동교실/ ④ 이웃·위탁모(아이만 보는 사람) 복지관 등의 공부방 ⑤ 아동지도원 ⑪ 과외(학원 등) ⑥ 유치원(유아반포함)반일반 ⑫ 선교원(교회의 보육) ⑦ 유치원 종일반 ⑬ 봐주는 사람 없음 ⑭ 기타(_____)	_____	_____	_____
2-1-1. (2-1이 ⑧, ⑨, ⑩인 경우) 어떤 유형의 시설입니까? ① 국·공립보육시설 ④ 직장보육시설 ② 법인보육시설 ⑤ 기타(_____) ③ 민간보육시설			
2-1-2. (질문 2-1이 ⑧, ⑨, ⑩인 경우) 어떤 시간을 이용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평일 주간시간 ④ 공휴일 야간 ② 평일 야간시간 ⑤ 기타(_____) ③ 공휴일 주간			
2-1-3. (2-1이 ②~⑫인 경우) 월평균 비용(보육료)는 얼마나 지급 합니까? (천원 단위까지 질문하시오)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IV. 정보화 관련 가족생활의 변화

1. 귀댁의 가족원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특정 가족원만 주로 이용합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구원의 번호를 말씀해주시시오.

- ① 가족원 모두 이용 ② 특정 가족원만 이용 (가구원 번호: _____)

■ 컴퓨터 사용을 전후로 변화가 있음직한 (가족)생활내용에 대한 기술입니다. 귀댁에서 일어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 항목을 말씀해주시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변화 없다'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변화 없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	-----------	-----------	----------	-----------	-----------------

2. 일상생활시간의 변화

2-1.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열람 또는 독서시간 등 다른 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운동, 영화감상 등 취미활동 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면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공부(연구) 또는 가사일 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와의 만남, 모임 등 각종 사회적 교제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생활의 변화

3-1. 가족과의 (TV시청, 외식, 여행 등) 공유시간 또는 대화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가족과의 대화내용(화제거리)이 단조로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3-3. 컴퓨터 사용을 둘러싸고 자녀와의 갈등이나 다툼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남편이나 아이의 가사일에 대한 참여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5. 컴퓨터 사용이후 전반적인 가족생활 질이 떨어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V. 가족관계 관련 사항

※ 조사원: 지난 1년간(1999. 6~2000. 5)의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사항으로 각 가구원간의 폭력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사항을 참조하여 가해자의 일반특성을 이기하여 주십시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 연령 및 교육수준 등 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등

성 - ① 남 ② 여

연령 - 만 연령(생년월일)

교육수준 - ① 취학전·무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 이상

2. 폭력유형은 <별첨> 참조

번호	가해자				피해자				폭력유형 (별첨 폭력유형 참조)			
	관계	성	연령	교육 수준	관계	성	연령	교육 수준	신체	정서	방임	경제
1												
2												
3												
4												

번호	2.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에 2~3번 이하 ③ 1주에 1번 이하 ④ 한 달에 1번 이하 ⑤ 2~3개월에 1번 이하 ⑥ 기타(구체적으로)	3. 폭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유 없음 ② 열등감/자격지심/무시한다고 ③ 시댁/친정에 소홀히 한다고 ④ 성격차이 ⑤ 술버릇 ⑥ 경제적 문제 ⑦ 스트레스 ⑧ 순종하지 않는다고 ⑨ 자녀교육상의 문제로 ⑩ 의처증/의부증 ⑪ 부모 모시기 싫다고 ⑫ (나쁜)버릇 고친다고 ⑬ 공부안(못)한다고 ⑭ 기타(구체적으로)
1		
2		
3		
4		

제 6장 가족가치관에 관한 사항

I.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1. 부인께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② 하는 편이 좋다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모르겠다
2. 부인께서는 이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④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②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⑥ 모르겠다
3. 부인께서는 재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⑥ 모르겠다

II.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1. 부인께서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있어야 한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④ 모르겠다
2. 부인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자녀수: _____ 명 ② 잘 모르겠다

2-1.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 ① 구별없이 ② 구별해서(㉠ 아들: _____명, ㉡ 딸: _____명) ③ 기타(_____)

3.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아들의 필요성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④ 모르겠다

3-1. 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 ① 가문(대)를 잇기 위해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된다, 알보이지 않는다 등)
 ② 노후 생활을 위해서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③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⑦ 기타(_____)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4. 만약 부인께서 자녀를 한 명만 가져야 한다면 남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자아이가 좋다 ④ 여자아이가 좋다
 ② 되도록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다 ⑤ 상관없다
 ③ 되도록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

4-1. "아들이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⑤ 잘 모르겠다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반대한다

5. 부인께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병원에 가서 태아의 성을 알아보신 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반대한다 ③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다 ⑤ 적극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④ 찬성한다 ⑥ 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III. 가족관계별 가치관

■ 다음은 부인께서 가족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문장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 아주머니가 얼마나 동의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	--------	-----	--------	--------	-----------	------

1. 결혼 및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

1-1. 결혼이란 부부 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다.	①	②	③	④	⑤	⑨
1-2.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1-3.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

2-1. 부모가 못다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2.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3.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⑨
2-4.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5.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IV. 호주상속, 제사 및 가사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 호주 상속에 대한 다음의 여러 의견들 중에서 부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① 호주는 반드시 아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② 호주가 딸에게도 상속될 수 있으나, 되도록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호주는 아들이나 딸 중 더 나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호주가 아들이나 딸 중 누구에게 상속되더라도 상관없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의견 (_____)

2. 부인께서는 요즈음 집안의 제사에 참여하십니까?

- 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③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⑧ 비해당(제사 안지냄)

附錄 4. 調査地域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	비고
101	서울	종로구	교남동
102		중구	신당5동
103		성동구	옥수1동
104		광진구	능동
105		중랑구	면목1동
106		성북구	안암동
107		성북구	장위2동
108		강북구	수유2동
109		도봉구	도봉2동
110		서대문구	천연동
111		마포구	용강동
112		양천구	신정3동
113		강서구	공항동
114		구로구	오류2동
115		동작구	흑석1동
116		관악구	봉천3동
117		관악구	신림7동
118		송파구	송파1동
140		광진구	노유2동
141		노원구	월계3동
142		노원구	상계7동
143		양천구	목6동
144		강서구	가양2동
145		관악구	봉천3동
146		강남구	수서동
147		송파구	잠실3동
161		용산구	효창동
162		성북구	정능4동
163		노원구	월계2동
164		마포구	아현2동
165		강서구	화곡본동
166		금천구	독산3동
167		관악구	봉천5동

조사구 번호		행 정 구 역	비 고
168	서울	송파구	송파2동
401		구로구	개봉동
402		성동구	행당2동
소계		36개 조사구	
119	부산	중구	보수동
120		서구	암남동
121		부산진구	범전동
122		동래구	온천2동
123		남구	우암2동
124		해운대구	중1동
125		사하구	감천1동
126		사상구	괘법동
148		부산진구	연지동
149		북구	금곡동
150		사하구	하단2동
151		연제구	연산1동
169		사하구	당리동
301		기장군	장안읍
403		남구	용호4동
404		해운대구	좌동
소계		16개 조사구	
127	대구	동구	신암1동
128		서구	내당4동
129		남구	대명5동
130		북구	칠곡3동
131		수성구	상동
132		달서구	송현1동
152		남구	이천동
153		수성구	범물1동
170		수성구	지산2동
405		수성구	고산동
소계		10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	비고
133	인천	연수구	연수2동
134		부평구	십정1동
154		연수구	연수1동
155		부평구	산곡4동
156		서구	가좌2동
171		남구	주안4동
324		강화군	선원면
소계		7개 조사구	
135	광주	서구	농성2동
136		광산구	신기동
157		북구	운암1동
158		광산구	어룡1동
406		광산구	소촌동
소계		5개 조사구	
137	대전	중구	대사동
138		대덕구	오정동
159		서구	월평3동
172		중구	석교동
407		서구	가수원동
소계		5개 조사구	
20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2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03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04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5		평택시	신장1동
206		안산시	원곡본동
20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8		안성시	안성3동
222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2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24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	비고
22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226		평택시	중앙동
227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228		군포시	수리동
238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239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240		안산시	고잔1동
302		평택시	팽성읍
303		용인시	기흥읍
308		이천시	부발읍
311		광주군	광주읍
325		평택시	청북면
326		이천시	호법면
327		안성시	미양면
342		양주군	광적면
343		화성군	장안면
344		연천군	청선면
365		화성군	매송면
501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502		시흥시	정왕동
503		평택시	비전1동
601		용인시	기흥읍
604		안성시	대덕면
소계		34개 조사구	
209	강원	강릉시	홍제동
229		원주시	단계동
241		춘천시	후평3동
312		철원군	갈말읍
328		강릉시	옥계면
345		횡성군	우천면
346		인제군	북면
605		고성군	토성면
소계		8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	비고
2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211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30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31		충주시	연수동
313		음성군	금왕읍
323		음성군	음성읍
347		청원군	부용면
348		진천군	이월면
504		충주시	달천동
소계		9개 조사구	
212	충남	보령시	대천3동
304		논산시	강경읍
314		예산군	예산읍
321		부여군	부여읍
329		천안시	동면
330		서산시	성연면
349		금산군	추부면
350		예산군	덕산면
603		연기군	조치원읍
소계		9개 조사구	
2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232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242		익산시	신동
315		완주군	삼례읍
331		익산시	망성면
332		남원시	보절면
333		김제시	광활면
351		진안군	상전면
352		임실군	강진면
353		부안군	진서면
505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계		11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 정 구 역	비 고
214	전남	목포시	산정2동
233		순천시	매곡동
244		목포시	만호동
305		광양시	광양읍
316		고흥군	고흥읍
317		해남군	해남읍
334		광양시	옥룡면
335		여수시	율촌면
354		장흥군	용산면
355		해남군	송지면
356		무안군	현경면
357		완도군	군외면
358		신안군	입해면
소계		13개 조사구	
215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1동
216		김천시	양금동
217		영천시	서부동
234		포항시 북구	장량동
306		영천시	금호읍
309		경산시	하양읍
310		문경시	문경읍
318		청도군	청도읍
336		김천시	지례면
337		구미시	장천면
338		상주시	공성면
359		영양군	청기면
360		청도군	매전면
506		경산시	동부동
60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계		15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	비고
139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5동
160		울산시 동구	전하3동
218		창원시	명곡동
219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220		진주시	하대동
235		창원시	반송동
236		창원시	사파동
237		통영시	미수2동
243		김해시	삼안동
307		밀양시	삼랑진읍
319		함양군	함양읍
322		거창군	거창읍
339		창원시	북면
340		김해시	대동면
341		양산시	하북면
361		의령군	궁유면
362		남해군	서면
363		함양군	안의면
364		합천군	대양면
507		마산시	월영2동
소계		20개 조사구	
221	제주	서귀포시	중앙동
320		남제주군	남원읍
소계		2개 조사구	

□ 著者 略歷 □

• 金勝權

美國 University of Hawaii 社會學 碩士

美國 University of Hawaii 社會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家族福祉·人口政策팀장

〈主要 著書〉

『韓國 家庭暴力的 概念定立과 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
社會研究院, 1998.(共著)

『失業家庭의 生活變化와 對應方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9.(共著)

• 曹愛姐

淑明女子大學校 政策大學院 社會福祉學 碩士課程 修了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李三植

카이로 UN 人口研修所 人口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金柔敬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社會福祉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宋寅珠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員

調查研究報告書 2000-01

2000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Report

2000年 12月 日 印刷 畝: 12,000 원

2000年 12月 日 發行

著 者 金勝權外

發行人 鄭敬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대명기획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0

ISBN 89-8187-231-7 93510